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	---------	---------

2014.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일반회계〉

(1)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4
(2)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16
(3)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23
(4)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	28
(5)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R&D)	34
(6)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R&D)	39
(7)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구축(R&D)	45
(8)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50
(9) 나노융합2020(R&D)	59
(10)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R&D)	67
(11)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R&D)	77
(12) ICT임상지원센터(신규, R&D)	82
(13)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신규, R&D)	86
(14) 지식서비스기반구축	90
(15)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101
(16) 이러닝산업활성화	107
(17)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신규)	117
(18) 디자인산업진흥	132
(19)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41
(20) 유통물류기반조성	150
(21)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및확산	157
(22)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사업	170

〈지특회계〉

(23) 동물약품허브조성(R&D)	184
(24)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R&D)	190
(25) 용암수용합산업육성(신규, R&D)	205

2. 지역경제정책관 211

I . 세입 (지특회계) 213

(1) 기타재산수입(지특회계) 216

(2) 기타경상이전수입(지특회계) 218

II . 세출 221

<일반회계>

(1)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224

(2) 산업단지환경조성 229

(3) 종합비즈니스센터 239

(4) 지역발전위원회인건비 245

(5) 지역발전위원회지원 249

<지특회계>

(6) 경제협력권산업육성(신규) 253

(7) 경제협력권산업육성(신규, R&D) 261

(8)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269

(9) 산학융합지구조성(R&D) 277

(10) 지역산업육성지원 287

(11)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295

(12) 지역투자촉진 299

(13) 지역투자촉진(세종)(신규) 305

(14) 지역특성화산업육성 309

(15)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신규) 318

(16) 지역특화산업육성 322

(17) 지역특화산업육성(R&D) 328

3. 산업기술정책관 337

<일반회계>

(1)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 340

(2)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R&D) 352

(3)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사업(신규) 357

(4) 산업기술시험원 362

(5) 산업기술저변확충 370

(6)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R&D) 374

(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R&D) 383

(8) 기술확산지원(주력및신산업) R&D)	395
(9)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408
(10)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R&D)	420
(11)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441
(12) 산업기술국제협력(R&D)	451
(13)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461
(14)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사업(R&D)	467
(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방이전(R&D)	478

〈지특회계〉

(16) 국립산업기술박물관건립(신규)	483
----------------------------	-----

〈에특회계〉

(17)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R&D)	488
(18)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496
(19) 에너지기술정책수립(R&D)	501
(20)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509

창의 산업 정책 관

창의산업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48,014	258,105	292,478	34,373	13.3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1,145	26,354	29,907	3,553	13.5
디자인혁신역량강화(과목개편)	18,547	24,877	36,570	11,693	47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88,216	74,386	86,471	12,085	16.2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2,000	10,000	8,700	△ 1,300	△ 13.0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	5,000	15,810	10,810	216.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6,000	6,409	409	6.8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	1,000	1,975	975	97.5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54,086	49,054	50,247	1,193	2.4
나노융합2020	12,000	14,530	15,272	742	5.1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4,000	11,000	11,627	627	5.7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500	2,750	250	10.0
ICT임상지원센터	-	-	2,000	2,000	순증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사업	-	-	500	500	순증
지식서비스기반구축	360	726	653	△ 73	△ 10.1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	613	600	△ 13	△ 2.1
이러닝산업활성화	1,800	1,800	1,810	10	0.6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0	1,000	1,000	순증
디자인산업진흥	16,035	14,540	11,295	△ 3,245	△ 22.3
생활산업경쟁력강화(과목개편)	15,800	11,695	4,940	△ 6,755	△ 57.7
유통물류기반조성	1,720	1,300	1,330	30	2.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및확산	85	266	148	△ 118	△ 44.4
바이오분야국제 협약이행	2,220	2,464	2,464	-	-
<지특회계>	61,889	72,664	118,074	45,410	62.5
동물약품허브조성(R&D)	1,500	1,285	6,215	4,930	383.7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R&D)	60,389	71,379	108,859	37,480	52.5
융합수용합산업육성(R&D)	-	-	3,000	3,000	순증
총계	309,903	330,769	410,552	79,783	24.1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1,145	26,354	29,907	3,553	13.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600 - 3683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국(이인호), 창의산업정책과(조영신, 044-203-4360), 사무관(김효, 436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해 당 없음('09~'13까지 1,217억 원)
사업규모	과제 당 7~30억 원, 3~5년 지원
지원조건	출연(총사업비의 3/4 이내 정부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동반향상
- 서비스의 과학화·IT융합화, 지식화를 통해 기존 산업(제조업·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新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 (국정과제 7-2) '지식+제조' 융합의 본격 확산체제 확립
 - * (국정과제 7-5) 융합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 창출과 확산기반 조성
 - * (국정과제 74-2) 성폭력 전담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제조업 지원 서비스 : 3,400백만원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 (계속과제) 2,400백만원 = 2개 과제 x 1,200백만원
 - (신규과제) 1,000백만원 = 1개 과제 x 1,000백만원

○ 서비스산업 고도화 : 2,985백만원

- 컨설팅, 유통·물류, 디자인 등 既 존재하는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 (계속과제) 1,990백만원 = 2개 과제 x 995백만원

(신규과제) 995백만원 = 1개 과제 x 995백만원

○ 융합新서비스 창출 : 14,850백만원

- 창조경제 견인을 위하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 (지정공모-PD기획) '스포츠+컨설팅', 'U-헬스+이러닝' 등 산업·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창출·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 (자유공모-BI연계*) 창의적·도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유망한 비즈니스모델(BM)을 발굴하고, 이를 R&D와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국정과제7-5)

* BI연계형 R&D : 우수 BI 선정 → BM 개발 지원 → R&D 지원

* ㉠ 지정공모형(PD기획) : 12,550백만원

· 계속과제 : 11,800백만원 (11개 과제×1,073백만원)

· 신규과제 : 750백만원 (1개 과제×750백만원)

* ㉡ 자유공모형(Business Idea 연계) : 2,300백만원

· 신규과제(BM개발 지원) : 300백만원 (5개 과제×60백만원)

· 신규과제(R&D 지원) : 2,000백만원 (2개 과제×1,000백만원)

○ 기반기술개발 활성화 : 7,200백만원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기반기술 개발

· 국내 주요 연구소를 지식서비스 연구센터로 선정하여 서비스 핵심요소·역량 연구 및 서비스 기반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국정과제7-2)

·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의 비전 및 방향설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서비스 디자인 연구개발 지원

* ㉢ 지식서비스 연구기관 지원 : 6,200백만원

· 계속과제 : 4,200백만원 (4개 과제×1,050백만원)

· 신규과제 : 2,000백만원 (2개 과제×1,000백만원)

* ㉣ 서비스디자인 연구개발 지원 : 1,000백만원

· 신규과제 : 1,000백만원 (1개 과제×1,0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472백만원(전체 예산의 4.9% 수준)

□ 지원 필요성

- 창조경제 실현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적·도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에 기반한 융합新서비스 창출 지원강화 필요
 - BI연계형 R&D* 트랙을 신설('14년)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BI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하고, 이를 R&D와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 추진절차 :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선정 → BM 개발 지원 → R&D 지원
-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식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활성화 필요
 -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지식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구기반 구축이 가능토록 지원강화(국정과제 7-2)
 -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의 비전 및 방향설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서비스 디자인 연구개발 지원
- 제조업 동반성장型 新산업 창출 및 서비스산업 고도화 등 과제발굴·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1,145	26,354	29,907	3,553	13.5
▪ 제조업지원서비스	1,560	2,100	3,400	1,300	61.9
▪ 서비스산업고도화	8,208	6,907	4,457	△2,450	△35.5
▪ 융합신서비스창출	10,377	14,347	14,850	503	4
▪ 기반기술개발활성화	1,000	3,000	7,200	4,200	140
□ 비목	21,145	26,354	29,907	3,553	13.5
▪ 출연(350-01)	21,145	26,354	29,907	3,553	13.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창조경제 실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성과목표 및 「지식서비스분야 산업기술 R&BD 전략」 등과 연계하여 핵심 기술개발 지원
-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과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63.54	- 계속과제 175.9 - 신규과제 74.47 - 기획평가관리비 13.17
'15	29,907	- 계속과제 203.9 - 신규과제 80.45 - 기획평가관리비 14.72
'16	29,907	- 계속과제 203.9 - 신규과제 80.45 - 기획평가관리비 14.72
'17	29,907	- 계속과제 203.9 - 신규과제 80.45 - 기획평가관리비 14.72
'18	29,907	- 계속과제 203.9 - 신규과제 80.45 - 기획평가관리비 14.7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08.5.)

◆ 기술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 ① 지식경제 R&D의 중점 투자방향 설정 및 핵심기술 개발 투자
 -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전략기술 분야 설정
 - 14대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 추진경위

- 1990.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착수
- 1995.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착수
- 1999.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착수
- 2004.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착수
- 2008. 지식서비스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2009. 지식서비스·USN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2013. 지식서비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273.96	225.60	211.45	263.54	299.0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73.96	0	0	273.96	273.96	0	0
	(273.96)	(0)	(0)	(273.96)	(273.96)	(0)	(0)
'12년	225.6	0	0	225.6	225.6		
	(225.6)	(0)	(0)	(225.6)	(225.6)	(0)	(0)
'13년	211.45	0	0	211.45	211.45		
	(211.45)	(0)	(0)	(211.45)	(211.45)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결과
 - 국가R&D사업 2011년도 상위평가 결과(국과위) : 보통
 - 2014년도 산업부 자체평가 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02년부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별도의 서비스 R&D 프로그램 SEP(Service Enterprise Program) 도입
 - 기업보다는 대학을 대상으로, 개발연구보다는 기초연구에 집중
- '04년 국가경쟁력협의회에서 'Innovate America' 전략을 수립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서비스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결정
 - *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심리학 등을 결합하여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및 체계적인 분석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 독일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98년부터 Innovative Service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R&D 지원
-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이외에도 경영학적 연구 및 시장분석, 전략 수립까지 포괄하여 지원
 - * '06년 프로그램의 중점 분야가 「의료 서비스 수출」로 정해지자, 원격 진료기기 개발 이외에도,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시장분석, 해외 진출 전략수립 연구까지 지원

□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은 '06년 서비스 R&D 지원 및 로드맵 작성 실시
- 기술개발 외 세계적 수준의 일본 제조업 노하우의 서비스업 적용 노력
 - * 호텔, 병원, 이벤트 업체 등에 대해 도요타 생산방식 등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추진

□ 핀란드

- 새로운 서비스 개념에 기반한 서비스 비즈니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 'Serve Program'을 수행
- 초창기에는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先비즈니스 모델 개발 後비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한 기술개발' 추진

(5) 사업추진절차

산업기술 5개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5개년 계획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체결 시 정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지식서비스 R&D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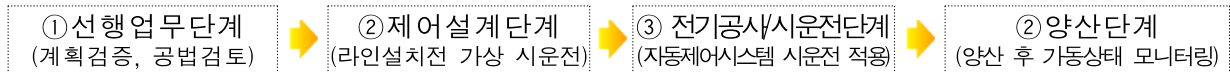
DMS(Digital Manufacturing System, 아주대)

1. 과제개요

개발기술명	디지털기반 실시간 적응생산체계 지원 플랫폼 개발		
주관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왕지남
총개발기간	'08.12.1~'13.9.30	총 정부출연금	7,900백만원

2. 기술내용

- 기술내용 : 산업현장의 제품, 공정, 자원을 컴퓨터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최적의 생산라인 설치 및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기술로,
 - 생산공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모니터링·예측하여 자원, 설비, 인력의 배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제품 개발기간 단축 및 공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적용제품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조선산업 등 제조업 생산공정에 DMS(Digital Manufacturing System)기술 확장 적용



3. 주요 성과

- DMS 기술을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등에 적용하여 총 134억원 매출 달성
-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도입으로 제조업의 제품개발 기간 및 비용절감 효과
 - 자동차 생산라인의 경우 설계 및 설치·시운전 등 사이클타임 6개월 단축 효과
 - 개발비용 및 설비투자비용 30% 절감 효과(자동차 연간 10만대 기준, 3만대 증산 효과)
- 대한민국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수상(2010년)

SCCM(Smart Cold Chain Management, 전품연)

1. 과제개요

개발기술명	Smart Cold Chain 기술개발		
주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총괄책임자	이상학
총개발기간	'08.12.1~'13.9.30	총 정부출연금	7,666백만원

2. 기술내용

- 기술내용 : 냉장·냉동 신선식품, 가축, 약품 등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제품을 RFID 및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 실시간 온도관리를 통해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손실률을 줄이고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기술*
 - * 기존의 공간단위(창고, 차량 등) 온도관리에서 개별 상품단위로 실시간 이력추적 및 품질관리 가능
- 적용제품 : 기초농산품(수산물, 육류, 청과물 등), 냉동·냉장식품, 특수상품(화공제품, 의약품 등), 섬유·가죽제품류 등

개발제품



<SCCM 개념도>



<온도센서 태그>



<RFID 리더>

적용제품



<냉장·냉동식품류>



<바이오회약품류>



<가죽제품류>

3. 주요 성과

- 버섯 수출기업인 그린피스는 SCCM 기술적용 후 반품률이 낮아져 연간 10억원의 손실비용 절감
- 미국, 일본 등 외산솔루션 위주의 RFID/USN 기반 Cold Chain 시장에 국산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 EPC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센서태그/리더의 국내 최초 개발로 해외 Intellex, Alien, Identec사 등과 경쟁 가능
 - 기존 RFID 미들웨어 표준과 호환되며 센서 데이터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컴포넌트 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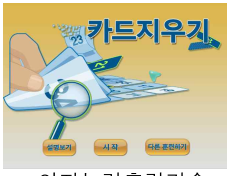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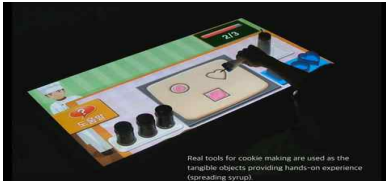
[장노년인지능력 측정기술, KIST]

1. 과제개요

개발기술명	장노년인지능력측정기술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총괄책임자	박세형
총개발기간	'10. 4.1~ '13.3.31	총 정부출연금	3,020백만원

2. 기술내용

- 기술내용 : 고령화 대응 기술로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정도를 조기에 측정하여 인지 기능저하의 예방 및 초기 환자의 훈련도구 개발
 - 컴퓨터 기반 한국형 중장년층의 인지능력 측정 기술 (CoCoMO)
 - 온라인 기반 한국형 인지능력 훈련 도구 기술 (CoCoTA)
 - 노인친화형 다감각 인터페이스 플랫폼 기술 (E-CoRe)
- 적용영역 : 건강검진 프로그램(인지능력평가), 노인복지센터(측정기술 및 훈련플랫폼), 재활병원 (병원의 재활프로그램), 보건소 등 국가 의료시설, 아동용/교육용플랫폼으로 확장가능

개발제품	적용영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지능력측정기술 (CoCoMO)></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인지능력훈련기술 (CoCoTA)></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노인친화형 다감각인터페이스기술 (E-CoRe)></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노인 복지센터></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강검진센터, 병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동용 인지훈련플랫폼></p> </div> </div>

3. 주요 성과

- 인지능력측정(치매 등)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조기검진 활성화 기대
 - 기존의 간이인지기능검사(MMSE)에 비해 조기측정(2시간→30분) 및 저비용(약 20만원→5만원 내외) 검진 가능
-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훈련의 경우 치매위험도가 이전대비 50%이상 감소, 10년 동안 40%이상 치매환자 감소 효과 기대
- 국내최초, 컴퓨터기반 장노년층 인지 규준자료(745명, 전국) 및 국내 인지 측정, 훈련 도구 기반 연구환경 구축
- 임상적으로 검증(23명, 12주, 뇌 구조적, 기능적 변화 측정)된 새로운 형태의 인지 훈련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훈련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인지재활 효과 극대화

참고 2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목록

□ 제조업 지원 서비스

과제명	주관기관	개발시작일	개발종료일	세부분야	비고
나노융합스마트패키지를이용한제품 안전정보서비스 솔루션 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10701	20140630	제조지원	
개인별 피부·모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화장품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아람휴비스(주)	20121201	20161130	제조+서비스	

□ 서비스 新산업 창출

과제명	주관기관	개발시작일	개발종료일	세부분야	비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주)유비온	20100401	20140331	이러닝	
지능형 전시마케팅을 위한 개인화 마케터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401	20140331	기타	
만성질환자를 위한 멀티플랫폼 기반 건강관리 및 증진서비스 개발	가천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0601	20140331	u-헬스	
자동차 정비 훈련을 위한 자기주도 체험형 e-Training 서비스 기술 개발	테크빌닷컴(주)	20110601	20140531	이러닝	
의사-환자간 소통증진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클라우드 연계환경의 사용자 실감형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디자인 기술개발	(주)제론헬스케어	20120601	20150531	u-헬스	
다차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컨버전스 지원 기술 개발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120601	20150531	기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소셜러닝용 교육 콘텐츠 및 전문가 실시간 추천/연계 기술 개발	(주)포씨소프트	20120601	20150531	이러닝	
서비스 효과 증강을 위한 다감각 서비스 공통기술개발	상명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	20130601	20170531	기타	
완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ToyWeb 서비스 기술 개발	(주)유진로봇	20130601	20170531	이러닝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과 서비스 모델 개발	승화기술정책연구소	20130601	20160531	기타	
국제대회급 스포츠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주)온더아이티	20131101	20181031	스포츠+컨설팅	
지능형 위치추적 기반의 Pre-SAFE 서비스 플랫폼 개발	(주)휴메이트	20131101	20161031	기타	
자율선택형 비행식 학습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서비스기술과 플랫폼 개발	(주)위두커뮤니케이션즈	20131101	20161031	이러닝	

□ 서비스산업고도화

과제명	주관기관	개발시작일	개발종료일	세부분야	비고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적용기술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1201	20140228	디자인	
연구개발 통합 M&S (Modeling & Simulation) 지원 서비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401	20140331	컨설팅	
B2C 서비스 산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정성적 고객 피드백 분석과 서비스 구성 및 평가 기술 개발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601	20160531	컨설팅	
디자인 산업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융합형 디자인 컨설팅 지원기술 개발	한성대학교산학협력단	20110701	20150630	디자인	
유통 물류 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형 Green Chain Management 기술개발	전자부품연구원	20110601	20150531	유통물류	
공공서비스 수출 사업화 플랫폼 개발	IT서비스산업협회	20120601	20150531	컨설팅	
사용자 경험(UX) 기반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기술개발	(주)넷캐스터아이즈	20121201	20151130	디자인	
FTA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 통합 국제물류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0130601	20160531	유통물류	

□ 기반기술개발활성화(지식서비스 전문연구센터 지원강화)

과제명	주관기관	개발시작일	개발종료일	세부분야	비고
지식집약형 디지털 모델기반 제조업 지원서비스 플랫폼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31201	20161130	제조지원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원 프레임워크 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201	20161130	제조+서비스	

디자인혁신역량강화(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18,547	24,877	36,570	11,693	47

* 사업코드 : 110-114-4800-4802-304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디자인생활산업과장(이종석 044-203-4370), 사무관(이원규, 044-203-4373)

※ '15년부터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사업 내역사업인 '디자인전문기술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명칭 변경(기존 세부사업명 : 디자인기업역량강화)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1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민간 매칭, 총 사업비의 25% 이상)
사업시행주체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연구소, 대학 등

2. 사업목적

- 기술·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창조경제를 구현할 제조업혁신3.0전략 추진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新시장 창출을 견인할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개발과 제품·서비스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중소중견기업을 견인할 글로벌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개발(14,750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신규과제 (15개×5억원)+(10개×3.5억원)+(15개×2.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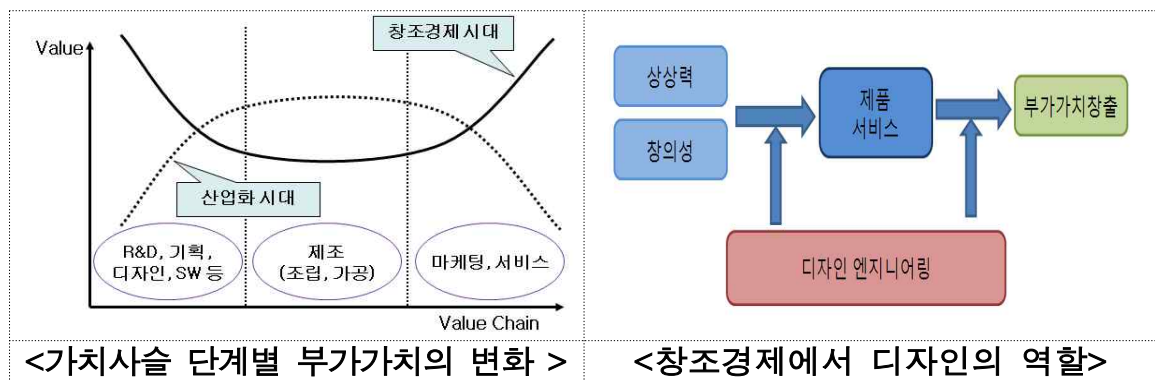
< 개별 글로벌 디자인전문기업 지원사업(예시) >

- [프레임워크 개발] UX리서치, 트렌드 연구, 전략적 컨설팅 기법 개발 등
- [특화 BM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및 新프로세스 적용으로 시장 창출형 BM개발
- [선행디자인] 프레임워크, BM모델을 통해 만들어진 툴킷을 활용하여 미래 예측 가능한 디자인의 개발(지재권출원 및 국내외 우수어워드 출품)
- [기술교류] 국내·외 선도기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자인 공동연구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양산기반의 제품 및 비즈니스 적용 가능 서비스디자인 개발

- ②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기술 및 BI를 바로 사업화하기 위한 디자인기술개발(16,320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신규과제 20개×340백만원, 계속 28개×340백만원
- ③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개발시 차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실험적인 미래 선행·융합 디자인기술개발(3,500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신규 4개×875백만원
- ④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여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제품*기반의 新서비스 생태계구축(2,000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신규 2개×1,000백만원
 * 자동차, TV, 냉장고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 필수 제품으로, 사용자별 다양한 활용 목적과 패턴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한 제품

□ 지원 필요성

- 창조경제*의 경쟁원천은 제품의 조립·가공공정이 아닌 R&D,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 가치사슬 상단의 활동이 좌우하는 구조
 - * 노동 및 시설투자 위주의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창의성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 디자인은 높은 부가가치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해 성장 잠재력 하락 및 저성장에 직면한 국내경제에 새로운 동력 제공
 - 디자인 투자의 매출 증대효과는 일반 R&D의 3배 수준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 비해 약 2배의 부가가치를 창출
 - * 투자대비 매출 증대 효과(디자인진흥원, '10) → (디자인) 14.4배, (기술 R&D) 5배
 - *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한국은행, '10) : (디자인) 67.5, (반도체) 30.8, (자동차) 24.5
 - 디자인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핵심두뇌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0 한국은행) : (디자인) 16.0, (자동차) 7.9, (반도체) 4.8

①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 육성

- 기업간 기술수준의 평준화로 기술차별화가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디자인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적 확대 필요
 - * 예산 추이(억원): ('11) 40 ⇒ ('12) 80 ⇒ ('13) 74 ⇒ ('14) 89
- 기업의 디자인 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 디자인기업의 역량이 중소 중견기업의 제품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증대
 - * 디자인기업 매출 : '06) 0.9조원→'08) 1.7조원→ '10) 1.96조원→'12) 2.5조원
- 협소한 시장에서 과잉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대다수 디자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新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 * 디자인기업의 매출액은 '12년 약 2.5조원으로 '10년 대비 27.5% 증가되었으나 평균매출액은 '12년 6.2억원으로 '10년 대비 3.1% 감소 (국내 디자인기업의 매출액(2.5조원)은 영국(11.7조원)의 1/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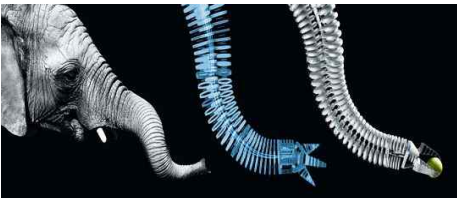
②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글로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자인 투자가 미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필요
 - * 중소기업 디자인 활용률('12) : (국내) 13.8% ↔ (영국) 33%, (프랑스) 36%
-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질적 성과도출을 위해 '14년부터 중대형 과제로 기획(1년→2~3년)함에 따라 계속사업 다수(28개 내외) 발생
 -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12년 3.3:1→'13년 4.9:1)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규지원을 위한 적정 규모 유지 필요('14년도 신규 47개 내외)

③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기능이 부재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Think tank 기능 지원이 절실
 - * 현재 디자인분야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부재
- 하나의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실험적·도전적 핵심 기술개발 신설 필요

< 해외 선행 · 융합 디자인기술개발 사례 >

<p>< Bionic Handling Assistant ></p> 	<p>코끼리 코를 형상화한 BHA는 기본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필요할 경우에만, 공압 제어를 통해 움직임을 구현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실제 코끼리 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음</p> <p>극도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며 의료·장애인 보조·농업·가정에서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음</p>
--	--

④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유망 요소기술과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에 맞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지못하는 반면,
 - 글로벌기업*은 Key product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경계가 모호한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제품서비스를 양산·판매중
- * Google의 크롬캐스트, 아마존의 킨드파이어·대쉬 등
-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제조업 혁신과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필요

< 주요 사례 >

- ① (자동차) 운전자의 Driving Journey 과정에서 운전자 경험을 분석하여 Pain Point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신 서비스 개발 ⇒ 스마트 드라이빙, 스마트 케어, 엔터테인먼트, 자가정비 서비스 등
- ② (냉장고) 냉장고의 본원적 서비스인 신선 식품 관리를 넘어 식생활의 통합적 경험을 창출하는 서비스 개발 ⇒ 유통기업과 연계된 배달서비스, 유통기한 표시 서비스, 냉장고 용도별 LED 서비스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18,547	24,877	36,570	11,693	47.0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7,400	8,895	14,750	5,855	65.8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1,147	15,982	16,320	338	2.1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	3,500	3,500	순증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	2,000	2,000	순증
☐ 비목	18,547	24,877	36,570	11,693	47.0
▪ 출연	18,547	24,877	36,570	11,693	47.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디자인전문기업군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디자인전문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구 분		창조기업	선도기업	글로벌기업
지원기준	매출액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신규채용	가점부여 (3점부여)	1명 의무 (추가 1명당 3점)	2명 의무 (추가 1명당 3점)
	지원금	2.5억원 이내	3.5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기업의 성장 노력유도를 위해 성장단계별 1회만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특화BM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BI의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기존 소규모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 기술 및 BI를 업선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48.77	▪ 디자인기업역량강화 88.95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59.82
'15	365.70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147.5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63.2 + 차세대 디자인핵심기술개발 35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20
'16	350.70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147.5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63.2 + 차세대 디자인핵심기술개발 20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20
'17	350.70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147.5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63.2 + 차세대 디자인핵심기술개발 20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20
'18	350.70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147.5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63.2 + 차세대 디자인핵심기술개발 20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출연)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7. 디자인·표준 관련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추진경위

- 1993 :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산업디자인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 1994 :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시작
- 1999 :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디자인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보고(2000년부터 5개년간 2,000억원을 투입기로 결정)
- 2005 : 제7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디자인 지향적 산업·사회기반 구축’ 시책 발표
- 2008 :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08 ~ ‘12) 수립
- 2010 : 국회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연간 200억 규모의 디자인기업 역량 강화사업 신설 발표)
- 2011 :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 ‘11.4월) 지경부 R&D사업 체계개편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으로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통합(‘11년~)
- 2012 : “디자인 산업융합 발전전략” 발표(‘12.11.29)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디자인혁신역량강화	145	188.47	185.47	248.77	365.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45	-	-	145	145	-	-
	(145)	(-)	(-)	(145)	(145)	(-)	(-)
'12년	188.47	-	-	188.47	188.47	-	-
	(188.47)	(-)	(-)	(188.47)	(188.47)	(-)	(-)
'13년	185.47	-	-	185.47	185.47	-	-
	(185.47)	(-)	(-)	(185.47)	(185.4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13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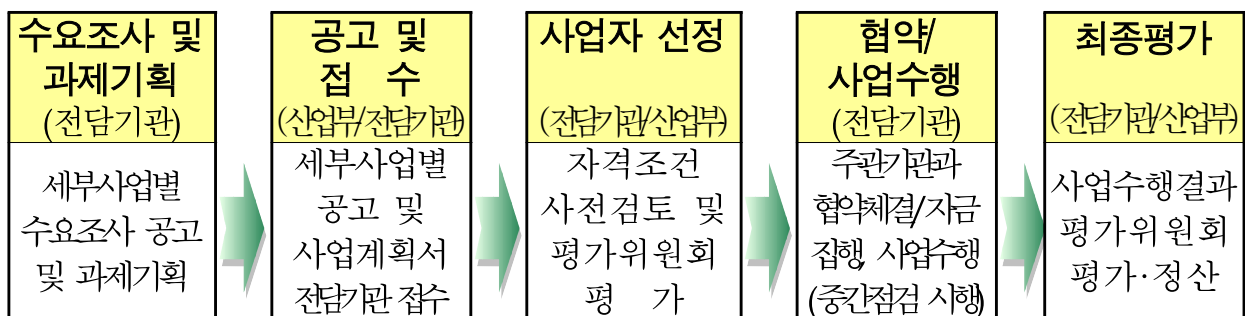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12년 사업비 49.5%(49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과제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 디자인센터, 대학교 등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과제로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음
- (후속조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13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사업을 전면개편*하고 모든 세부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도록 조치 완료

* 공공디자인컨설팅,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등 종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디자인 전문기업의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dustrial Design Technology Programme(TEK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개 기업 및 11개 연구기관 참여, 예산 : 27백만 Euro * 핀란드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을 진흥함과 함께 디자인 연구 기반 및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됨 - Research Programme for Industrial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 20개 프로젝트 진행, 예산 : 2백만 Euro * Academy of Finland 주관으로 추진된 디자인기술개발 연구사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통산성 디자인정책국과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JIDPO), 각 지방 디자인 센터 주도로 디자인육성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총 12조 엔의 디자인 시장과 40만명의 필요 디자이너 활용(추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지방정부 주도로 디자인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디자인센터(BIDC) 설립, 레드스타상 제정,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 별 디자인 클러스터 설립 등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216	74,386	86,471	12,085	16.2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83-302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테크놀로지(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박수정, 43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과제당 10~30억원, 3~7년
지원조건	출연(매칭, 총사업비의 75%이하)
사업시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2.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47,058백만원)

- (내용) 바이오의약, 바이오소재, 개인 맞춤형 바이오융합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
- (산출근거) 계속 30개 x 1,151백만원(≒34,558백만원) + 신규 12개 x 1,042백만원(≒12,500백만원)

② 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32,238백만원)

- (내용) 진단·치료용 의료기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기기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며, 병원-기업 상시연계 R&D 시스템 확대 지원

- (산출근거) 계속 18개 x 1,288백만원(≒23,179백만원) + 신규 7개 x 1,294백만원(≒9,059백만원)

③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 촉진

- (내용) 기술가치 괴리해소를 위한 사전기획 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
- (산출근거) 사전기획 6개 x 20백만원(=120백만원) + 기술개발 3개 x 960백만원(=2,880백만원)

④ 기획평가관리비(4,17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바이오의료산업은 건강, 환경, 식량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소득증대 등에 따른 건강 수요의 증가로 바이오 의료산업은 급성장할 전망
-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품목의 발굴 및 개발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216	74,386	86,471	12,085	16.2
▪ 바이오	59,206	46,026	47,058	1,032	2.2
▪ 의료기기	26,010	24,438	32,238	7,800	31.9
▪ 유망바이오 IP 사업화 촉진			3,000	3,000	신규
▪ 기획평가관리비	3,000	3,922	4,175	253	6.5
□ 비목	88,216	74,386	86,471	12,085	16.2
▪ 출연금	88,216	74,386	86,471	12,085	16.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바이오(의약, 화학, 융합)분야 및 의료기기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43.9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계속/신규 과제 지원액
'15	864.7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계속/신규 과제 지원액
'16	864.7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계속/신규 과제 지원액
'17	864.7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계속/신규 과제 지원액
'18	864.7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계속/신규 과제 지원액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08.5)

○ 추진경위

- 1990.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착수
- 1995.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착수
- 1999.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착수
- 2004.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착수
- 2008. 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2008. 바이오의료기기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2009.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2010.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전략」 반영('10.3.3)
- 2011. 바이오의료기기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변경
- 2013.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바이오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951	851	882	744	86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기획프로세스		수행주체 (전담기관)	내용
(Top-Down) R&D 추진방향 수립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실시	전략 기획단	전담기관 (KEIT)
↓			1. 산업부 R&D정책·중점 지원방향 제시 -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 100대 전략제품후보기술제시 2. 기술로드맵, 특허연계형 및 표준화기술 3.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과제기획 사전검토협의회 (KEIT)	- 단위사업별 R&D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명 (비전 2020, 100대 전략제품 후보기술 중심) - 구성: 산업부(국장), MD, PD, 기술 위원회 위원장
↓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기술위원회/PD (KEIT)	- R&D 과제기획 추진방향(비전 2020, 100대전략제품기술, 기술수요조사, 기 술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기획대상 과제 선정(신규예산의 2배수)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		과제기획전담팀 (KEIT)	- 기술성 분석, 특허동향조사 및 기술 경제성분석 등을 수행하여 과제별 세부기획 추진 - 과제기획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 공청회/인터넷공시를 통한 중간검증
↓			
과제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기술위원회/PD	- 과제기획 결과의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			
신규과제 확정 (1배수)		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위원회)	- 기획결과에 대한 중점 지원방향 반영 검토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100대 전략 제품기술 확정
↓			
과제기획결과 보고		전략기획단회의	- '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결과 보고
↓			
신규사업 공고		산업부(KEIT)	- '11년 신규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부, KEIT	- 사업계획서 접수 -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진도관리·중간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단계·최종평가		KEIT	-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or 경상기술료(2.5~5%) 징수
↓			
추적 평가		KEIT	- 성과평가위원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2,000	10,000	8,700	△1,300	△13.0

* 사업코드 : 21-11-0-110-114-4800-4803-301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박수정, 439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20(9년)
총사업비	1조 600억원(범정부 출연 5,300억원)
사업규모	연간 300~750억원 규모, 총 200개 규모의 과제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2. 사업목적

-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부·산업부·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약개발 연구 전단계(선도물질,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에 걸쳐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R&D 사업(8,000백만원)

- (내용) 후보물질 도출, 비임상, 임상 개발 등 지원
- (산출근거) 후보물질 4개 x 500백만원 + 비임상 2개 x 1,000백만원 + 임상 2개 x 2,000백만원

② 사업단 운영비(7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부처별, 단계별 단절 없는 지속적인 신약개발지원을 통하여 국내 제약 업계의 신약개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2,000	10,000	8,700	△1,300	△13
▪ R&D 사업비	11,067	9,066	8,000	△1,066	△11.76
▪ 사업단 운영비	933	934	700	△234	△25.1
□ 비목	12,000	10,000	8,700	△1,300	△13
▪ 출연금	12,000	10,000	8,700	△1,300	△1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글로벌 라이선싱 아웃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 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 엔진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0	▪ R&D사업비 및 사업단 운영비
'15	87	▪ R&D사업비 및 사업단 운영비
'16	87	▪ R&D사업비 및 사업단 운영비
'17	87	▪ R&D사업비 및 사업단 운영비
'18	87	▪ R&D사업비 및 사업단 운영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상위계획

- 제2차 국가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국과위, '08)
-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국과위, '08.7.8)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국과위, '09.1.13)
- 녹색성장 5개년계획('09.7) 중 6-1-14. 바이오의약품 개발
- 제약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위기관리대책회의, '10.2.3)

- 추진배경

- 신약개발은 성공시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많은 투자비(3~10억달러)와 오랜 투자기간(10~15년)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1/5,000~1/10,000) 고위험 사업
- 규모의 영세성에 따라 우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R&D 투자는 매우 저조하며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R&D는 회피
- 정부 R&D도 절대적 지원액이 부족하며 소규모 과제 위주로 실효성 미흡
 - * 전체 R&D 예산중 신약개발 R&D는 1.0% 수준(1,256억원)에 불과
 - ** 신약 후보물질도출 정부지원과제(317개) 중 95.3%가 10억원 미만
- 신약개발 단계별·부처별로 지원이 단절되어 우수한 연구결과가 대부분 사장되거나 초기 개발단계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이전

< 신약개발 부처 지원 단절에 관한 외부 지적사항 >

◆ 교과부에서 '06~'08년간 신약 관련 1,127억원을 지원했으나 동 연구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복지부에서 임상·비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식약청의 승인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전무('09 국회 예산정책처)
◆ 부처간·사업간 높은 장벽을 낮추고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정부 전체 R&D 정책의 정합성(coherence)을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09 기재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 추진경과

- 관계부처 협의 및 공동기획 : '09년 5월~'10년 상반기
-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 '10년도 상반기
 - ※ B/C 1.1361, AHP 0.696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인정
- 사업단 재단법인 설립('11.8) 및 사업단장(이동호(울산대)) 임명('11.9)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50	100	120	100	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0	0	0	50	22	28	0
	()	()	()	()	()	()	()
'12년	100	28	0	128	115	13	0
	()	()	()	()	()	()	()
'13년	120	13	0	133	79	54	0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신규과제 선정평가

- 격월(연 6회)로 과제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신규과제 선정
- 발표평가에서 각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신약개발 전문가(외부위촉전문위원) 그룹 활용
- 현장실사를 통한 자료 추가 검증 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과제 지원 여부 결정

※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 제약사 등 신약개발전문가, 투자자 중심 외부 전문가 11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선정평가]



* KDDF(Korea Drug Development Fund):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마일스톤 종료평가 및 과제종료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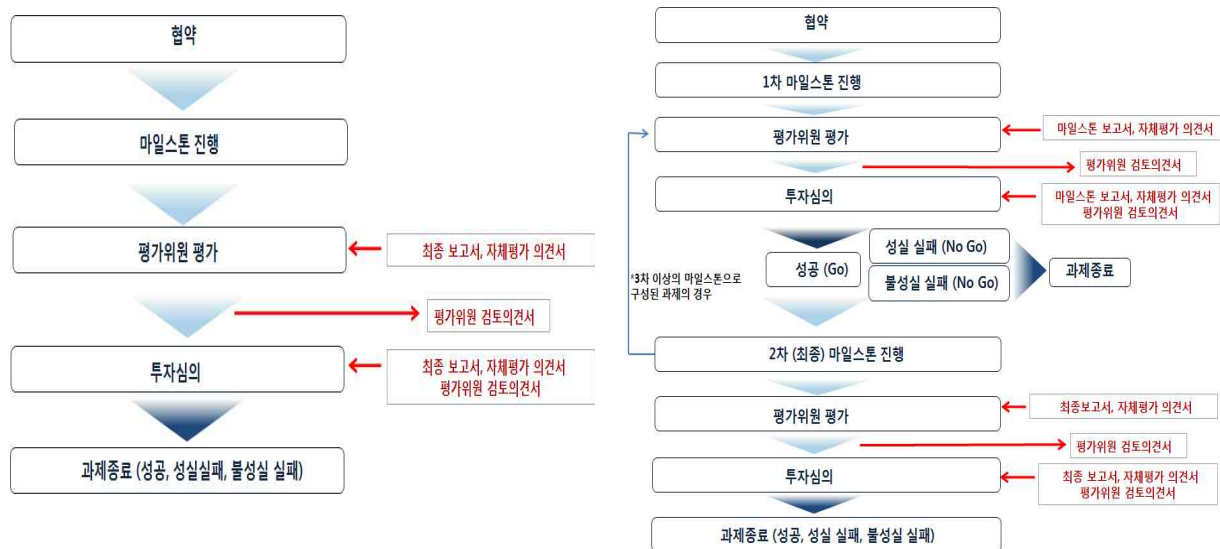
- 매월 과제별 마일스톤 진도 실적 현황 파악 및 수시 방문
- 매월 연구비 사용현황 모니터링

○ 마일스톤 종료 평가 시 Go / No-go 결정

성공 시	실패 시
○ 복수 마일스톤 과제: 차 마일스톤 진행 ○ 단일 마일스톤 과제: 과제 종료	○ 성실실패: 과제 종료 ○ 불성실실패: 과제 종료

※ 불성실 실패 시 공동연구관리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구비 환수 조치 및 3년 간 정부사업 참여제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종료평가]



<과제 종료평가 (단일 마일스톤)>

<과제 종료평가 (복수 마일스톤)>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 '10년도 상반기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보고서 제목 :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2010.8)
- 조사결과 : B/C 1.1361, AHP 0.696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인정
- 총사업비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 공동 10,600억원
 - 민간 매칭 50% 사업으로 국고 지원 5,300억원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	5,000	15,810	10,810	216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83-306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장(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김금미, 044-203-439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18(5년)
총사업비	2,155억원(국비 842, 지방비 200, 민간 1,113)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산·학·연

2. 사업목적

- 주력산업별(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로 바이오화학제품을 조기 산업화 하기 위해 바이오화학 원료 생산기술, 소재 개발, 산업융합기술 기반의 6개 전략과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바이오화학 원료(바이오슈가) 생산기술개발(2,000백만원)

-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화학 원료의 대량 생산기술 및 대량공급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구축

②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2,000백만원)

- (자동차 소재용 바이오폴리우레탄 개발) 자동차 내외장재 및 충격 흡수재 등에 이용되는 우레탄 소재를 대체
- (전기전자용 바이오아크릴 수지 개발) LCD 등의 전기전자 가전 제품의 하우징에 이용되는 기존 아크릴 수지를 대체
- (고기능성 및 고성능 바이오 섬유소재 개발) 바이오매스로부터 천연 고분자를 추출하여 친환경, 고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③ 바이오화학 산업융합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마련(11,810백만원)

- (바이오플라스틱) 발효기술과 화학제품화를 연계해 데모수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공정 구축을 통한 상업화 프로세스 개발
- (바이오컴비나트) 기능성 소재·주정·석유화학산업의 기술적 융합 공정인 바이오컴비나트기술을 이용한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 지원 필요성

- 바이오화학은 석유의존 탈피, 온실가스 규제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新성장산업으로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보완
- 글로벌 환경규제* 추세에 따라 EU 등 주요국 수출시 바이오소재, 공정개발 등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 필요

* REACH/RoHS(유해화학물질 관리), ELV Directive(자동차 일부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R&D)	-	5,000	15,810	10,810	216.2
▪ 바이오화학 원료 생산기술	-	1,000	2,000	1,000	100
▪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	1,000	2,000	1,000	100
▪ 바이오화학 산업융합기술 개발	-	3,000	11,810	8,810	294
□ 비목	-				
▪ 출연금(350)	-	5,000	15,810	10,810	216.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요·공급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기술 혁신과 주력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생산기술개발 : 10 ▪ 소재개발 : 10 ▪ 산업융합기술개발: 30
'15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생산기술개발 : 20 ▪ 소재개발 : 20 ▪ 산업융합기술개발: 118
'16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생산기술개발 : 30 ▪ 소재개발 : 30 ▪ 산업융합기술개발: 190
'17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생산기술개발 : 30 ▪ 소재개발 : 30 ▪ 산업융합기술개발: 170
'18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생산기술개발 : 30 ▪ 소재개발 : 30 ▪ 산업융합기술개발: 1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추진경위

(1) 바이오화학산업 연구기획 추진

- 산업 BT의 응용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05.9)
- 산업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전략기술 분석(07.6)
- 바이오화학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09.3)
- 바이오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전략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10.12)

(2) 바이오화학산업 육성관련 활동

- ‘바이오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연구’(10.12)를 통해 2020년 세계 5위권 바이오화학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바이오화학 발전과제 수립
 - 바이오화학산업의 본격적인 육성방향성 신규 정립
- “탈석유화를 위한 바이오화학산업 신성장동력화(BIOCHEM)”를 ‘11년도 상반기 예타(원천상용화기술개발 및 기반 R&D의 16개 세부추진전략)로 제출
 - “바이오화학 2.0 :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로 수정하여 ‘11년 하반기 예타(산업공통기술, 산업원천기술, 산업융합기술의 10대 전략과제)로 제출
- ‘1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융합과 녹색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와 성장 가속화 추진을 통해 바이오화학 신시장 창출을 보고
- 『바이오화학 육성전략』 발표(12.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 기술개발사업	-	-	-	50	15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주요국	바이오화학 관련 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매스 R&D법 제정(00년) : ‘30년까지 석유의 30%를 바이오매스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화학제품을 연방조달 대상제품으로 지정하는 등 우선구매제도 실시 중(05) *우선구매대상 확대를 통한 바이오화학산업 지원 지시(오바마대통령, ‘12.2) ○ 美 국가정보위원회는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6대 기술 중 하나로 바이오화학제품 선정(0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에너지부), USDA(농무부)등 정부, 민간협력 대대적 투자('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매스/화학 예산 2.4억 달러 * 총 27개 바이오화학 공정투자 : Pilot(12개), Demonstration(9개), Commercial(6개) 등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집행위원회는 '선도시장전략'을 발표, 6대 선도시장 중 하나로 바이오기반제품 시장 포함('08.1월) ○ EuropaBio(유럽바이오산업연합)를 중심으로 세계 바이오화학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개 기업과 기관을 포함(바스프, 헨켈, 비피케미칼, 솔베이, 토탈 등) ○ CIP(경쟁혁신프로그램), FP7(유럽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바이오기반제품 분야에 지속적 예산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화학(SusChem) 프로젝트를 통해 1.76억 유로 지원('07~'0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기술 전략대강 제정('02.12월), 바이오기술전략로드맵 발표('07.4월, 경제산업성) ○ 화학제품과 에너지 생산에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일본종합전략'을 수립('02) 및 개정('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기준 바이오화학관련 예산 22억엔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산업부/전담기관) ⇒ 사업 진행 ⇒ 평가(전담기관) ⇒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조사기간 : 2011.7 ~ 2013.2
- 조사결과 : B/C ratio 1.15이고, AHP 평점이 0.758로 '시행' 확정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6,000	6,409	409	6.8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83-307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국(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5520), 사무관(조우정, 439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21 (8년)
총사업비	910억원
사업규모	과제당 5~40억원 내외, 3~5년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맞춤형 의료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5개 부처 공동사업(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미래부·산업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유전체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1,909백만원)
 - 유전체 정보와 병원의 EMR 정보를 통합하여 질환별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계속과제 1건)
- ② 한국인 표준게놈 지도 작성 (800백만원)
 - 유전자 오조립 교정 및 확장, 염색체 배정, 겹 클로징 등의 정밀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 게놈지도를 99% 구현 (계속과제 1건)

③ 맞춤형 유전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3,700백만원)

- 클라우드 등 슈퍼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유전체 데이터 처리·분석·통합 기술 및 유전체 활용 서비스 개발 (계속과제 3건, 신규과제 3건)

(계속과제)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이관과제

(과제 1) 다양한 유전체 해독기능 극대화를 위한 GiSys 시스템 고도화

(과제 2) 세균 Metagenome 분석 파이프라인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과제 3) Multi-omics 기반 방광암 진단 및 모니터링용 유전적 변이체 발굴 및 검증

□ 지원 필요성

- (현황) 최근 유전체 분야 정부 R&D 투자 정체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
 - 국내 R&D 투자 정체, 인간유전체 연구 증가는 매우 낮은 수준
 - * 부처별 투자현황('08~'10) : 교과부(약 1,368억), 농진청(746억), 복지부(517억), 농식품부(433억), 국토부(123억), 식약청(75억)
 - 생명공학 예산 대비 유전체 정보 생산·분석에 대한 투자비중(0.9%)이 일본(5.8%), 미국(1.6%) 등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
 - * 분야별 투자현황('08~'10) : 정보생산 및 분석 분야(약 942억원), 기능분석 및 정보 활용 분야(약 1,787억원), 인프라 및 기타 분야(420억원)
- (시장 급성장) 미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시대에 대비 유전자 정보산업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시장 선점
 - 유전체(Next generation sequencing, 게놈해독) 시장은 연평균 28% 성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임
 - * 고령화 시대, 소득증대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 수요의 증가로 유전체시장 빠르게 성장 중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의 발전으로 개인 게놈 분석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이를 활용한 신시장 확대 기대
 -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05년부터 상용화
 - * 인간 1명 게놈 분석비용 : ('00)27억불 → ('08)30만불 → ('13)1천불
- (창조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유전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6,000	6,409	409	6.8
▪ 과제사업비(신규/계속)	-	5,880	6,289	409	7.0
▪ 기획평가관리비	-	120	120	0	0
☐ 비목	-	6,000	6,409	409	6.8
▪ 출연금(350-01)	-	6,000	6,409	409	6.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부처별 고유 사업 + 공동 연구 사업

- 부처별로 고유 영역에 합당한 독자적인 R&D 사업을 추진하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상시적 성과공유 및 역량 결집
-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전체 관련 R&D와 연계하여 조기 산업화 가능한 분야를 도출, 산업체 주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 추진
- 유전체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이 가능한 아이템을 집중 육성(top-down), 민간 수요조사를 통해 아이템도출(bottom-up)

○ 과제관리(진도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해당 결과물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사후관리(기술료, 문제과제 처리 등) 수행

○ 부처 고유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적극 공유하여 부처별, 사업 단계별로 원활한 성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유전체분석 응용프로그램 등 유전체 정보 산업적활용 프로세스 최적화, 한국인 표준게놈지도 작성 등을 통해 '20년 세계 5위권 연구역량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0	▪ 유전체 산업 기반 구축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
'15	64.09	▪ 유전체 산업 기반 구축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
'16	72.65	▪ 유전체 산업 기반 구축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
'17	79.20	▪ 유전체 산업 기반 구축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
'18	83.25	▪ 유전체 정보의 산업적 활용 프로세스 최적화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생명공학육성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14·16조(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자원 개발)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법률 7219호) 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 국과위 유전체투자전략('11.01) 다부처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 제기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2.3~'12.11)
- 국정과제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추진경위

- 유전체 연구 범부처 공동기획 추진을 위한 부처협의('10. 10~'10. 11)
-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0.12) : 미선정
- 국과위 주도 BT 5개 중점분야 투자전략 수립 추진('10. 11~'11. 02)
- 국과위 유전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10. 11~'11. 02)
- 국과위 유전체 정보·분석 연구 투자전략 확정('11.02)

- 국과위 투자전략에 따른 다부처 유전체사업 공동기획('11.05~'11.11)
-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1.8) : 미선정
-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1.11)
-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12.3.9)
-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주관: KISTEP) 대상 사업 설명('12.3.28)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12.11.2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	-	60	64.0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PD (KEIT)	수요조사→연구기획과제 선정→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C 0.96, AHP 0.676 (‘12.11월)로, ‘시행’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추진 확정(KISTEP, ‘12.3~11월)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구축(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B-A/A)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	1,000	1,975	975	97.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4800 - 4806 - 306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장(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오수만, 43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 ~ '16
총사업비	167억원 (국비 60억, 지방비 70억, 민자 37억)
사업규모	장비도입 (스파용 시제품제작 및 수치료 임상 장비), 장비운영시험성능평가 기술 개발,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조건	출연금,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2. 사업목적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파 관련 기업의 사업화 창출 및 스파 산업의 상용화 지원
- 스파의 예방치료효능 임상평가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및 스파 의료소재 시제품제작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스파 용품개발 및 수치료 임상 장비비 : 1,975백만원
 - 스파용품 개발 장비(4종) 425백만원
 - 수치료 임상 장비(5종) 450백만원
 - 피부임상 평가 장비(8종) 750백만원
 - 장비운영·시험성능평가 방법론 기술개발 3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1,975백만원 × 2.54% =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세계적인 웰빙 및 웰니스 붐에 따른 건강치유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착과 21세기 유망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스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 스파산업은 고령화사회에 의료비 절감효과 크고 안티에이징산업의 핵심 산업분야로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점하여 육성
- 국내는 온천의 질환치료 효능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미진하고 온천수의 치료효과에 대한 분석적 데이터가 부족함에 따라 온천의학 연구를 활용 산업화 모델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확대가 시급
- * SPA산업(Solus Par Aqua) : 물을 통해 건강 회복. 의료, 대체의학, 식품,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정신수양 등이 스파관련 산업군
- * 웰니스 스파산업 : 일반적인 온천(스파)산업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포함하는 메디컬스파의 중간적 개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	1,000	1,975	975	97.5
▪ 장비비	-	950	1,925	975	102.6
▪ 기획평가관리비	-	50	50	0	0
□ 비목					
▪ 출연금(350-01)	-	1,000	1,975	975	97.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스파 사업화 및 임상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합산업 창출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확보
- 웰니스 스파산업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한 스파소재 신제품 개발 사업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	▪ 장비비 9.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5억원
'15	19.75	▪ 장비비 19.2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5억원
'16	30.25	▪ 장비비 29.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75억원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의 기획 및 조사 포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14년
- 추진배경
 - 충남지식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 : 화장품과 헬스케어 융합서비스산업(충청남도, 2011. 12)
 - 코스메틱 & 스파 융합형 라이프케어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충청남도, 2012. 1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구축	-	-	-	10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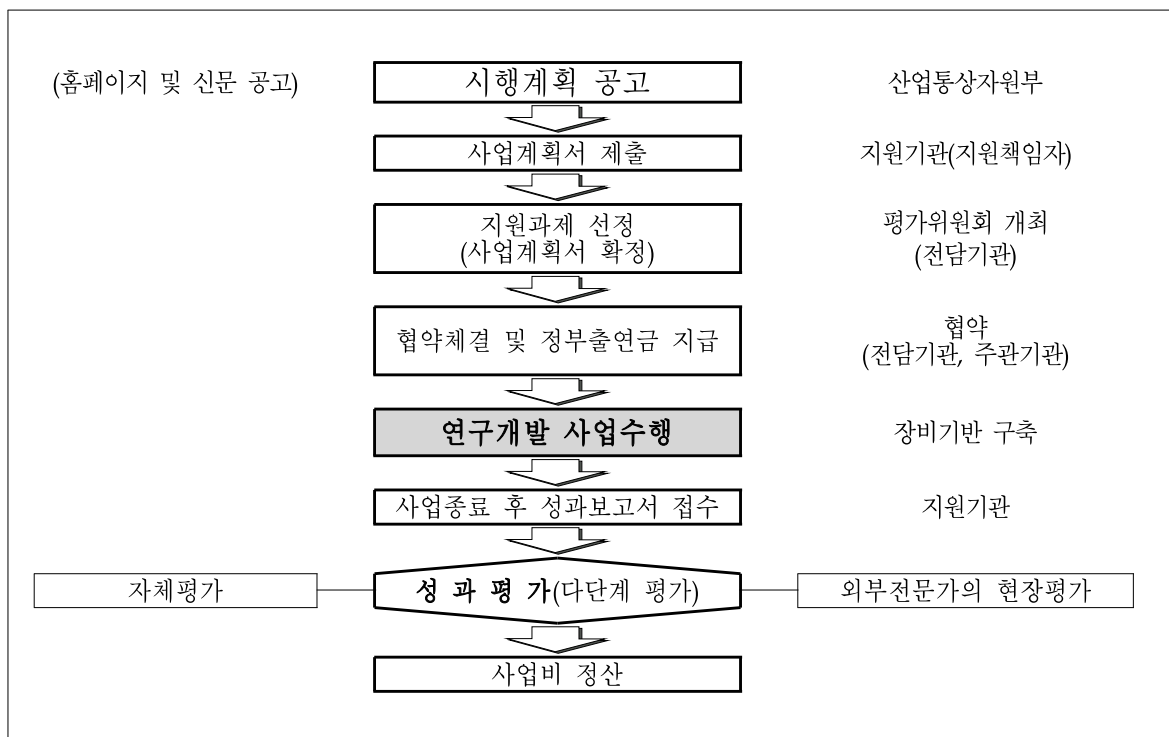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온천의 의료적 치료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다양한 질환치료(만성통증, 관절염, 아토피, 천식, 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스파와 연관산업간의 융·복합산업이 매우 활성화됨(Gesundheitsminister Philipp Rosler 2009 통계자료)
-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은 유명한 치료온천인 프랑스의 라로슈포제와 비쉬 온천을 소유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메디컬 스파와 코스메틱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전국 온천지구 현황(대한온천학회 2012.5)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울산	광주	합계
개수	32	29	15	28	5	14	30	41	6	6	10	3	6	1	1	1	228

□ 사업비 계획

재원별	합계(억원)	사업별(억원)			
		장비비	토지매입	건축비	기업지원
국비	60	60	-	-	-
지방비	70	-	13	30	27
민자	37.41	-	-	-	37.41
계	167.41	60	13	30	64.41

□ 연차별 사업비

구분	2014	2015	2016	총계
국비	10	19.75	30.25	60
지방비	19.875	20.25	29.875	70
민자	30.47	3.47	3.47	37.41
총계	60.345	43.47	63.595	167.41

□ 사업 공종별 소요예산

공종별	주요사업 내용	사업비 (억원)
토지매입	● 3,300㎡ 규모	13
건축	●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설계 및 구축 ● 본관사무동 ● 분석 및 인증 센터	30
장비	● 온천수 분석장비 ● 임상효능 분석 및 평가 인증장비 ● 시제품제작 기기장비 ● 장비운영·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60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웰니스 스파 시제품제작 및 특허 인증 지원 ● 원료 시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 ● 스파 연관기업 네트워크 지원 ●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64.41
합계		167.41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54,085.5	49,054	50,247	1,193	24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83-304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국(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유의택, 439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09~'14까지 517,293백만원)
사업규모	과제당 20~30억원/년, 개발기간 5~7년
지원조건	출연(총사업비의 3/4 이내 정부 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인 IT융합 및 나노융합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IT기반 융합분야

- 계속과제 : ('14) 24,070백만원(12개 과제) → ('15) 16,000백만원(9개 과제)
 - 차량, 조선해양, 항공, 섬유, 공정,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기반 융합분야 계속과제 지속지원
- 신규과제 : ('14) 0백만원(0개과제) → ('15) 7,312백만원(5개과제)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량, 조선해양, 항공, 섬유, 공정, 에너지 등 주력산업과의 IT융합을 위한 신규과제 기획 및 지원 추진

② 나노기반 융합분야

- 계속과제 : ('14) 19,597백만원(10개 과제) → ('15) 16,050백만원(8개 과제)
 - 100대 나노융합 전략제품, 기존 산업 제조혁신을 위한 나노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 나노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나노 안전성 등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나노기반 융합분야 계속과제 지속 지원
- 신규과제 : ('14) 2,600백만원(2개과제) → ('15) 8,511백만원(5개과제)
 -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나노 융합 플랫폼, 나노융합 제품화, 나노 안전성 분야에 대한 신규과제 기획 및 지원 추진

③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 기획·평가 및 관리 비용:('14) 2,787백만원 → ('15) 2,374백만원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기획 및 평가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성/특허 분석비, 평가운영비, RCMS 유지관리비, R&D해피콜센터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

□ 지원 필요성

<IT기반 융합분야>

- (글로벌 경쟁력 유지) IT융합에 의한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 자동차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해 글로벌 Top 3위 달성 및 조선 산업의 세계 1위 수성
- (고부가 가치 창출) IT와 전통산업 등 개별 산업의 단선적 혁신으로는 신시장 창출과 기술진화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 필요

<나노기반 융합분야>

- (생태계확보) 나노융합기술은 아직 시장진입 초기 단계라 기업이 스스로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나노융합 생태계 조성이 절실

- 나노기술은 자동차, 반도체 등 대부분의 국가주력산업에 공통기반으로 적용되며, 와해성*기술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술개발 성공시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수 있는 잠재력 보유

* Disruptive Technology,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나 속성을 가지면서 기존 기술 및 시장 진입장벽을 무력화시키는 급진적 혁신 기술체계

- (제품화촉진) 나노융합은 기존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 나노기술 제품화 촉진을 위해 우수한 나노기술 기초연구성과가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강화 및 정부R&D 지원확대 필요
- (나노제품 안전성 R&D) 나노제품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나노물질의 유해성이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면서 업계들의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방안 요구
- 나노제품에 많이 적용되는 나노소재 안전성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측정·평가, 유해물질 제거 등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필요
- * (美) 환경성(EPA)은 다층 탄소나노튜브에 대해 사전신고제도를 시행('11.6)
- * (EU) 나노물질 REACH 적용대상에 포함('08.12) 및 나노화장품 표지신고제 시행('13.1)
- * (캐나다) 환경법에 나노물질 안전성 정보 제출 의무화('09.2)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54,085.5	49,054	50,247	1,193	2.4
▪ IT융합	25,990	24,070	23,312	△758	△3.1
▪ 나노융합	25,370.5	22,197	24,561	2,364	10.6
▪ 기획평가관리비	2,725	2,787	2,374	△413	△14.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로드맵에 따른 핵심원천기술 개발과제 지원
- 5~10년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과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9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 : 240.7 * 계속과제 : 240.7억원(12개X과제 당 20.06억원), ▪ 나노융합 : 221.97 * 계속과제 : 195.97억원(10개X과제 당 19.60억원) * 신규과제 : 26.00억원(2개X과제 당 13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 27.87
'15	50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 : 233.12 * 계속과제 : 16,000억원(9개X과제 당 17.78억원), * 신규과제 : 73.12억원(5개X과제 당 14.62억원) ▪ 나노융합 : 245.61 * 계속과제 : 160.50억원(8개X과제 당 20.06억원) * 신규과제 : 85.11억원(5개X과제 당 17.02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 23.74
'16	50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 : 233.12 ▪ 나노융합 : 245.61 ▪ 기획평가관리비 : 23.74
'17	50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 : 233.12 ▪ 나노융합 : 245.61 ▪ 기획평가관리비 : 23.74
'18	50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 : 233.12 ▪ 나노융합 : 245.61 ▪ 기획평가관리비 : 23.7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08.5)
-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10.2)
- IT융합 확산 전략('10.7)
- 산업융합확산촉진법('11.3)

○ 추진경위

- 1990.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착수
- 1995.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착수
- 1999.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착수

- 2004.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착수
- 2008. 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2009.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現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 기술개발	944.98	873.50	543.64	490.54	502.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불용액 발생사유

- 계속과제(2건) 평가결과(적색)에 따른 사업비 삭감 불용액(278.5백만원)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944.98	-	-	944.98	944.98	-	-
	(944.98)	(-)	(-)	(944.98)	(944.98)	(-)	(-)
'12년	873.50	-	-	873.50	873.50	-	-
	(873.50)	(-)	(-)	(873.50)	(873.50)	(-)	(-)
'13년	543.64	-	-	543.64	540.855	-	2.785
	(543.64)	(-)	(-)	(543.64)	(540.855)	(-)	(2.78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결위 0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산업융합기술분야 논의 사항
 - (의견) IT기반 융복합 분야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부처간 협력방안 및 역할 분담도 구체화하여 중복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검토의견
 - 지식경제 통합청사진 수립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융합기술발전 시행계획에 부처간 협력 및 역할을 분담
 - 특히, IT기반 융복합분야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의 기획 및 관리를 통해 중복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IT기반 융합분야 >

- IT·SW융합 건강, 안전, 편리성 등의 기능을 토대로 신시장 창출 및 서비스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해외 선진국들도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융합 원천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육성, 생활밀착형 융합 확산을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 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IT융합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융합 SW, 고성능 컴퓨팅, 로봇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의료*, 교육, 물류, 보안 등에서 IT융합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R&D 영역 개발 및 확대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과 사회발전을 위한 IT융합 R&D 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대 중반 이후 지식사회 촉진을 위한 IT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범 EU 차원에서 추진 - 혁신 R&D 프로그램인 FP7을 통해 환경, 에너지, 의료, 복지, 제조업 등 IT융합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생활밀착형 기술개발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 기반의 시스템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6대 중점분야 선정(IT+에너지, 의료, 로봇, 자동차, 농업, 콘텐츠) 및 실행계획 추진 - 안전, 환경, 의료를 중심으로 인간생활 지원형 IT 융합기술 개발(27개 분야)을 정부차원에서 중점 추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융합기반 산업고도화 및 민생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전략적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제시

< 나노기반 융합분야 >

- 나노기술을 국가 중점 정책의 주요 기술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기초연구에서 상용화로 투자방향 확대 추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에서는 2006년부터 신기술의 상용화도 목적으로 하는 제2단계 신융합기술 사업('07년 예산 13억불)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현상과 공정에 관한 기초연구, 나노소재,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기술 관련 기기, 나노제조공업 등 7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 유럽 차원에서 추진하는 FP7(2007~2013)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학제간 연구개발 추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나노기술, 신소재 등의 분야에 116억 2,000만 유로 투입 계획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novation 2025』 전략을 통해 평생 건강한 사회 등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 제시(2007)하고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생산, 사회기반, 프런티어 등 8대 중점기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평생 건강한 사회,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④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⑤ 세계에 열린 사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의 7대 목표 중 하나인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선진 제조 산업을 중점 추진"의 일환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바이오·나노, 신재료, 신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산업을 대폭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 성장점 육성 계획

(5) 사업추진절차

산업기술 5개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5개년 계획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과제기획과제 선정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상세 과제기획
진도관리·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기획결과 평가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지원과제 공고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체결시 정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평가위원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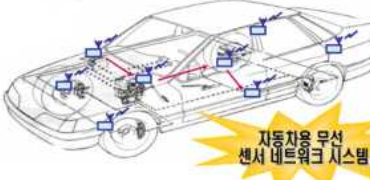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참고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주요 성과

IT융합

구 분	우수성과	주요내용
2009	자동차 센서노드 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OSEK 표준 준수 자동차 센서노드 OS 개발 ○ 자동차용 실시간 운영체제 국제 인증 획득, 000 기업에 기술이전 완료 및 (주)000와 실차 테스트 진행완료, 기타 Nano-Qplus 센서노드 SW 플랫폼 기술이전 완료
2010	IT기반 선박용 토탈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bro기반 YAN(Yard Area Network) 기술 및 IT기반 유무선 통합 SAN(Ship Area Network) 기술 개발 ○ 0000이 세계 최초로 조선 생산 현장에 WiBro를 적용한 디지털 조선소 조성 ○ 0000, 0000 등에서 SAN시스템을 탑재한 선박 110척 총 120억 달러를 덴마크, 그리스 등 8개국에 수출
2011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T-50)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핵심기술을 국산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임베디드 응용SW, 실시간 운영체제, 통합시험 환경, 임무 및 무장관리컴퓨터 개발 ○ 항공기 OS 국제표준(DO-178B) 인증, 실시간 운영체제 유도 무기체계 개발 사업 적용 계약, 임베디드 시스템 탑재 T-50의 시험비행 성공, 0000와 16대 수출 계약 완료, T50 전투용개조한 FA50 12대 0000 계약 ○ T-50 국산화 개발을 통한 기술지불비용 대체 및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2012	사이버 건강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심혈관계 질환관련 모바일 지능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및 주요 지재산(IPR) 확보 ○ 이중차량간 네트워크 연동 SW 컴포넌트 개발 및 22개 기업 기술이전
2013	3차원 투과 영상 기반 제품검사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된 제품을 절단하지 않고도 엑스선을 이용하여 내부를 단층 촬영하여 관찰하고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단층촬영기 국산화 및 소프트웨어 구축 ○ 단층촬영기 시스템 판매(00000 1건), 소프트웨어(VX3D) 판매(000 외 35건)

나노융합

구분	우수성과	주요내용
2009	<p>탄소나노튜브 대량합성장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한 ‘탄소나노튜브 대량합성장치’ 개발에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의 균질성을 가진 CNT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연속자동화 설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 구축
2010	<p>차세대 SPM(주사탐침현미경)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접촉식 초고속 원자현미경을 개발(기존 대비 측정 속도 3배 이상 향상)하여 세계 1위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세계 우수기업에 수출 ○ 범용 SPM 탐침과 tuning-fork 기술을 모두 사용 가능한 차세대 hybrid- SPM의 단일반사형 분광 플랫폼 개발
2011	<p>세계 최초 LED용 자외선 처리 양자점 복합체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껍질 양자점이 포함된 복합체에 UV(자외선)를 쬔어 양자점의 발광효율을 2배로 높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적은 양의 양자점만으로 고품질의 LED 발광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색의 70% 수준인 기존 LED의 색 선명도가 91%까지 향상
2012	<p>세계 최고수준의 고성능 티타니아 나노분말 제조 및 적용제품 개발</p>  <p><컬러인쇄 토너> <염료감응 태양전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고수준의 비염료계 원료를 이용한 고성능 티타니아 나노분말 양산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나노소재 기술의 산업화 모델(토너, 태양전지 등)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고품질 티타니아 나노분말은 일본, 독일 등 주요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였으나 개발 후 국산화 및 수입대체효과 기대
2013	<p>CNT이용 ESD용 도료 및 코팅시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전도성고분자보다 표면저항이 균일하고 高인장특성에 ESD성능이 구현되는 친환경 수계도료 2종 및 이를 이용한 코팅시트 상용화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료제조 양산설비 구축 - 국내 최초 CNT 도료 및 코팅제품에 대한 인증 후 매출 발생

나노융합2020(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나노융합2020(R&D)	12,000	14,530	15,272	742	5.1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88-301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유의택, 439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20 (9년간)
총사업비	5,130억원(예타기준, 국비 4,322억원, 민자 808억원)
사업규모	과제당 30억원 이내, 최대 3년 지원(단계별)
지원조건	출연(총 사업비의 3/4 이내 정부 매칭)
사업시행주체	재단법인 나노융합2020 사업단

2. 사업목적

-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조기 상용화하여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 추진(미래부·산업부 공동사업)

상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나노기술 2대 융합분야, 4대 핵심전략사업 및 공통기반기술에 대한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 * NT-IT 융합분야 (①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 ②나노유연소자),
NT-ET 융합분야 (③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④물환경/자원 처리기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NT-IT융합분야 : 8,671백만원

- Post-CMOS형 차세대반도체 사업화 지원 : 1,500백만원

* (계속)500백만원×1개=500백만원, (신규)1,000백만원×1개=1,000백만원

- 나노유연소자 사업화 지원 : 7,171백만원

* (계속)510백만원×9개=4,590백만원, (신규)516백만원×5개=2,581백만원

② NT-ET융합분야 : 5,986백만원

- 나노융합 고효율 에너지 변환기술 사업화 지원 : 2,700백만원

* (계속)540백만원×2개=1,080백만원, (신규)540백만원×3개=1,620백만원

- 나노융합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기술 사업화 지원 : 3,286백만원

* (계속)540백만원×3개=1,620백만원, (신규)555백만원×3개=1,666백만원

③ 기획·평가관리비 : 615백만원

- 평가관리비(15백만원), 사업기획 및 사업단 조직운영비(600백만원)

* 나노산업기술 동향 및 특허분석 소요비용, 과제평가 및 인건비 등

□ 지원 필요성

나노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시킴으로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동시에 IT/BT/ET 등 유망기술과 융합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을 제공할 신산업 창출의 주축이 될 것이므로 세계 신산업·신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성과의 조기상용화 R&BD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세계 나노기술 시장이 이미 2,500억불을 넘어섰음에도 우리는 세계 4위의 나노기술 경쟁력을 신제품·신시장 창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적인 나노기술 연구성과를 세계 1위의 산업화 능력(Lux research, 2010)과 융합하여 획기적인 신제품을 조기에 개발하여 나노기술 신시장 선점

* 「국가 R&D사업 성과관리 현황」(국과위 '09.4)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 예타통과사업 ('11.9)

○ 나노융합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제품화)까지 전주기 대응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정부지원 필요

* 현재 GDP 대비 R&D 투자 1위, 특허 수 3위, 논문 수 4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질적 사업화 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황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핵심기술 등 기투자한 연구로부터 나온 개발성과를 산업계 수요(제품 아이디어)와 직접 연결하여 조기에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전주기/선순환 연구 패러다임 완성(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 나노기술 신제품·신시장 선점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나노융합2020	12,000	14,530	15,272	742	5.1
▪ NT-IT융합	5,700	8,050	8,671	621	7.7
▪ NT-ET융합	5,500	5,680	5,986	306	5.4
▪ 기획평가관리비	800	800	615	△ 185	△ 23.1
□ 비목	12,000	14,530	15,272	742	5.1
▪ 출연금(350-01)	12,000	14,530	15,272	742	5.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조기 상용화하여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IT융합 : 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52.5 (12개X과제당 4.4) * 신규과제 : 28.0 (5개X과제당 5.6) ▪ NT-ET융합 : 5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30.3 (7개X과제당 4.4) * 신규과제 : 26.5 (5개X과제당 5.3) ▪ 기획평가관리비 : 8.0
'15	15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IT융합 : 8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50.90 (10개X과제당 5.09) * 신규과제 : 35.81 (6개X과제당 5.97) ▪ NT-ET융합 : 5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과제 : 27.00 (5개X과제당 5.4) * 신규과제 : 32.86 (6개X과제당 5.48) ▪ 기획평가관리비 : 6.15
'16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IT융합 : 144 ▪ NT-ET융합 : 96 ▪ 기획평가관리비 : 10.0
'17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IT융합 : 262 ▪ NT-ET융합 : 176 ▪ 기획평가관리비 : 12.0
'18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IT융합 : 442 ▪ NT-ET융합 : 296 ▪ 기획평가관리비 : 1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 활성화 등)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 나노융합산업발전전략 ('09.3월 국과위 심의·의결)
- 신성장동력(신소재·나노융합) 세부추진계획 확정('09.5월)
- 제3기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4월 국과위 본회의 심의·의결)

○ 추진경위

- '10.11.02 : 나노융합2020 기획위원회* 출범(산학연 전문가 150여명 참여)
* 위원장 : 김기남 삼성전자사장, 오세정 서울대교수 공동
- '10.11.29.~30 : 연구개발 방향설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기업 방문 인터뷰
- '10.11.~12. : 기획위원회 개최(5회)를 통해 동사업 기획안 마련
- '10.12.22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1.03.08 : 기재부(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 '11.03.~08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KISTEP)
- '11.09.08 :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BC=0.95, AHP=0.78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나노융합2020	-	50	120	145.3	152.7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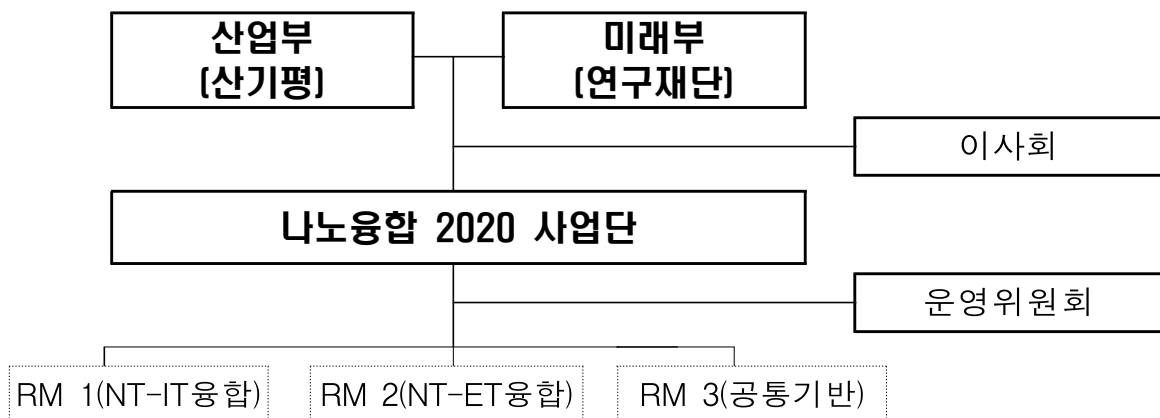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나노기술을 국가 중점 정책의 주요 기술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상용화 투자방향 확대 추진

	미국	* 나노분야 R&D 예산 지속 증가 · ('06)13.51억\$ → ('08)14.91억\$ → ('12)16.97억\$
	일본	* '10년 나노기술 응용 녹색분야 신규 40.5억¥, 계속사업 130억¥ 투자
	EU	* 제7차 FP(Framework Program)('07~'13)에서 6차에 비해 2배 증액한 34.67억€ 투자
	러시아	* '09년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6대 분야 36개 과제에 32억\$ 투자 승인
	중국	* '09년 나노제조 기초연구분야 및 중점 지원분야에 3,396만 위안 투자

(5) 사업추진절차

- 동 사업은 산업부·미래부 공동주관 사업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나노융합2020 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과 복수의 RM(R&D Manager)을 둬
- 안정적 사업 관리를 위해 양부처 공동운영관리규정 제정
- 나노융합2020 사업단의 거버넌스 구조는 양부처 공동주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11.3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KSITEP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11.3월~8월)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는 0.95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2대 융합·4대 핵심사업분야로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AHP 0.787)

《 총사업비 규모 및 사업 분야 》

(단위 : 억원)

2대 융합·4대 핵심전략사업		총사업비	국비
NT-IT	① 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	1,095	940
	② 나노유연소자	1,302	1,078
NT-ET	③ 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	1,488	1,263
	④ 물환경/자원 처리기술	1,245	1,041
합계		5,130*	4,322

* 산업부 3,197억원, 미래부 1,125억원, 민간 부담금 808억원

6. 참고자료

○ 연구수행주체 투자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대기업	-	-	1,030	15.4	950	6.2	600	3.4	2,580	6.5
중견기업	-	-	1,090	16.3	1,605	10.5	1,440	8.1	4,135	10.4
중소기업	-	-	2,063	30.8	7,107	46.4	9,219	51.6	18,389	46.1
대학	-	-	646	9.6	1,902	12.4	2,446	13.7	4,994	12.5
연구소	-	-	1,335	19.9	2,566	16.7	2,955	16.6	6,856	17.2
기타	-	-	536	8.0	1,190	7.8	1,190	6.6	2,916	7.3
계	-	-	6,700	100	15,320	100	17,850	100	39,870	100

○ 연구단계별 투자비중

(단위 : %)

구분	기초(A)	응용(B)	개발(C)	기타(D)
'12년	-	9.7	90.3	-
'13년	-	10	90	-
'14년	-	8	92	-

○ 사업목적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14년								
	융합 기술	인력 양성	국민행복 기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복지	기후 변화	신성장 동력	우주/ 거대
나노융합2020	√		√					√	

1. 사업 내용

- (개념)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상용화하여 조기에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는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대학·연구소의 IP를 산업계의 신제품 아이디어와 연결하여 사업화
 - IP(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파급효과,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 결정(3년 이내의 사업기간)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산업계가 나노제품 개발 중 부딪히는 현안의 조기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혹은 솔루션 제공 과제를 지원
 - * 1년 이내의 기간 내 현안해결을 지원
- (지원현황) 기초연구성과-상용화 연계사업 33개 과제 지원
 - * 총 315억원 지원 ('12년 50억원, '13년 120억원, '14년 145억원)

2. 추진 성과

- (경제적 성과) 사업 초기임에도 능동형 '스마트 윈도우' 등 사업화 성공 5건으로 200억원의 매출 창출
 - * '17년까지 투입 대비 최소 200% 이상 매출2,000억원 예상
- (고용창출) R&D인력 79명, 생산인력 32명 등 총 111명 고용창출
 - * '17년까지 2,000명 일자리 창출(기업이 제시한 고용예측자료의 과제성공률 30% 추정 시 기준)
- (기술적 성과) 특허 출원 87건/등록 7건, 기술이전 32건 및 기술이전료(선급료) 26억원* 발생
 - * 기업이 과제착수 시점에 공공부문의 연구성과(IP)를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연구성과(IP)의 사업화 달성으로 사업화 모델의 유효성 확인
 - * 例 : ITO 대체 소재 기술 보유(생산기술연구원) → IP 기술이전((주)큐시스)→ 스마트 창호 사업화(세계 최고 제품 달성, '14.2월 시생산) ; 해외 2위업체와 3~5년 기술격차 확보

그라핀소재 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그라핀 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4,000	11,000	11,627	627	5.7

* 사업코드 : 21-11-0-110-114-4800-4811-302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국(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4690), 사무관(유의택, 439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 ~ '18 (6년간)
총사업비	1,256 억원 (국비 471 억원, 민간 785억원)
사업규모	과제당 국비 100억원 내외, 6년 내외
지원조건	출연(총사업비의 37.5%이내 정부 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라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 함으로써 글로벌 그라핀 시장을 선점하고, 그라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그라핀 산업 육성

3. '15년 예산 내용

- ① (총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그라핀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200 백만원
- ② (1세부) 그라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 2,450백만원
- ③ (2세부) 그라핀 응용 OLED용 투명전극 및 대면적 유연 OLED 패널 개발 지원: 2,136백만원
- ④ (3세부) 그라핀 기반 하이배리어 복합필름: 2,530백만원
- ⑤ (4세부) 그라핀 기반 전자파차폐코팅재 : 1,791백만원
- ⑥ (5세부) 그라핀 기반 고내식 복합코팅: 2,32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본 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별 추진과제 중 하나로써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그래핀 소재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여,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글로벌 그래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 * 구리보다 100만배 많은 전류수송, 실리콘 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하전달,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한 특성으로 21세기 ‘꿈의 미래소재’로 ‘기초→응용→상용화’라는 전통적인 단계적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 단계 연구의 거의 동시적 진행이 가능하며, 세계적 추세도 유사함
 - ** 그래핀은 ‘08년 MIT가 선정한 세계 100대 미래기술로 선정,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및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의 삶을 뒤바꿀 10대 기술”로 선정, 그래핀 연구로 “2010년 노벨물리학상(노보셀로프 맨체스터大교수)”수상
- 기획 단계부터 그래핀 원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first mover로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한 사업
 - 그래핀은 기존 소재와 달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천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소재로 사업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기초 및 응용·상용화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first mover형 기술개발 및 시장선점이 가능
 - * (EU) 향후 10년간 총10억 유로에 달하는 Graphene Flagship 프로젝트를 유럽내 9개 주요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17개국 60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중.
 - * (영국)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약 600억원을 투자하여 그래핀 센터 구축 추진
 - * (싱가폴) 싱가포르국립대 그래핀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5년간 약 1000억원 투자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 및 노벨상급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그래핀 기초 및 응용 연구 집중 육성, ‘14년 이후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구자금을 투자함.
-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래핀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적 대형 R&D 지원이 필요
 - 기존의 소규모 개별 연구에서 대규모 협력연구로 그래핀 연구의 중심축을 이동하여 소재-부품-장비-시스템에 이르는 Value chain 전반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 R&D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사업	4,000	11,000	11,627	627	5.4
▪ 총괄사업비	100	200	200	0	0.0
▪ 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1세부)	1,000	1,950	2,450	500	20.4
▪ 그래핀 응용 OLED 패널 기술개발 (2세부)	810	2,950	2,136	△814	△38.1
▪ 그래핀 응용 하이배리어 복합 필름 기술개발 (3세부)	480	1,400	2,530	1,130	44.7
▪ 그래핀 응용 전자파차폐 코팅제 및 공정 기술개발 (4세부)	630	1,850	1,791	△59	△3.3
▪ 그래핀 응용 고내식 코팅제 및 공정기술 개발 (5세부)	880	2,450	2,320	△130	△5.6
▪ 기획평가관리비	100	200	200	0	0.0
☐ 비목					
▪ 출연금(350-01)	4,000	11,000	11,627	627	5.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 및 부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그래핀 시장 선점 및 미래성장동력 육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0	▪ 계속과제 : 108 ▪ 기획평가관리비 : 20
'15	116.27	▪ 계속과제 : 116.27 ▪ 기획평가관리비 : 20
'16	116.27	▪ 계속과제 : 116.27 ▪ 기획평가관리비 : 20
'17	116.27	▪ 계속과제 : 116.27 ▪ 기획평가관리비 : 20
'18	116.27	▪ 계속과제 : 116.27 ▪ 기획평가관리비 :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추진경위					
사업단선정평가	'사업단선정	'13.5.	- 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사업단 선정 (총괄, 5개 세부과제)		
'12년 국회 예산심의	'13년 예산 의결	'12.12.	- '13년도 그래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 확정 (40억원)		
'12년 기재부 정책성 및 경제성평가	결과보고	'12.9.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 및 최종선정 (기획재정부, KISTEP)		
	KISTEP 조사 수행	'12.3.~8.	- KISTEP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12.2.	- 지식경제부 3개 사업 대상사업 선정		
'12년 국과위 기술성평가	기술성평가 승인	'12.2.	-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 평가 적합 판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성평가 수행	'12.1.~2	- 지식경제부 14개 사업 기술성평가 수행		
'11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 및 신청	기획보고서 제출	'11.11.	- '12년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 제출		
	지정부 우선순위 결정	'11.11.	- 지식경제부 사업별 우선순위 심사		
	재추진 사업기획	'11.9.~11.	- 기획팀 구성 및 세부기획 추진		
	기획재정부 지원제외	'11.9.	- '11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제외		
	'11년 예비타당성 신청	'11.3.	- '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사업			40	110	1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현재 10년간 총10억 유로에 달하는 Graphene Flagship 프로젝트를 유럽내 9개 주요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17개국 60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중.
- (영국)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약 600억원을 투자하여 그래핀 센터 구축 추진
- (싱가폴) 싱가포르 국립대 그래핀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5년간 약 1000억원 투자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 및 노벨상급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그래핀 기초 및 응용 연구 집중 육성, '14년 이후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구자금을 투자함

(5) 사업추진절차

과제기획 공청회	전담기관	전략사업 공청회
사업공고	전담기관	5개 전략사업 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연차·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 그래핀이 갖는 뛰어난 물질적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핵심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 제외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원안과 검토안의 비교요약 >

구 분	요구안	사업검토안
총사업비(국비)	2,106 억원(834 억원)	1,452 억원 (544 억원)
사업기간	2013년 ~ 2018년 (6년)	2013년 ~ 2018년 (6년)
B/C 비율	0.869	1.035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경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사업 존재 - 일부 전략사업의 경제성 확보 가능성 낮음 - 대기업 위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가능성이 높거나 경제성이 낮은 전략사업을 제외함 (9대 전략사업 → 6대 전략사업) - 국비 비중을 축소함 (40%→37.5%)

-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금액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일 필요 있음
 - 또한, 대기업에 비해 기술개발 역량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신기술 및 연구역량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된 전략사업의 연도별 투입예산

< 2012년 예타조사결과 6개 전략과제 예산 >

(단위 : 억원)

과제명	사업년도						합계
	'13	'14	'15	'16	'17	'18	
터치패널	34.1 (23.1)	34.1 (23.1)	47.8 (7.8)	47.8 (7.8)	38.3 (7.3)	38.3 (6.3)	240.4 (75.4)
OLED패널	81.9 (55.9)	68.3 (47.3)	57.4 (9.4)	57.4 (9.4)	47.8 (7.8)	47.8 (7.8)	360.6 (137.6)
슈퍼커패시터	41.0 (28.0)	41.0 (28.0)	41.0 (28.0)	57.4 (9.4)	57.4 (9.4)	47.8 (7.8)	285.6 (110.6)
하이배리어복합필름	31.5 (21.6)	31.5 (21.6)	27.3 (18.7)	23.9 (3.9)	23.9 (3.9)	23.9 (3.9)	162.0 (73.6)
전자파차폐코팅재	41.0 (28.1)	41.0 (28.1)	38.2 (6.2)	28.7 (4.7)	28.7 (4.7)	28.7 (4.7)	206.3 (76.5)
고내식복합코팅	36.9 (25.3)	36.3 (24.7)	38.2 (6.2)	28.7 (4.7)	28.7 (4.7)	28.7 (4.7)	197.5 (70.3)
합계	266.4 (182.0)	252.2 (172.8)	249.9 (76.3)	243.9 (39.9)	224.8 (37.8)	215.2 (35.2)	1452.4 (544.0)

* KISTEP,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총사업비 1,452.4억원 중 정부출연금 544.0억원)

※ 중복 분야 사업구조 조정 및 과제별 지원 예산 조정

- 슈퍼커패시터 분야가 KETEP '12년 하반기 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 공고('12.9)되어 동 사업에서는 제외토록 함
 - 이에 따라 나노플레이틀릿 소재합성 분야를 관련된 3개 분야(전자파차폐, 고내식 코팅, 하이배리어 복합필름) 중에서 기술개발 추진 필요
- 그래핀 대면적 CVD 소재합성 및 나노플레이틀릿 소재합성 분야를 터치패널 및 고내식 코팅제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함
 - 성공적으로 그래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응용분야에서 각각 요구되는 소재 사양과 그에 따른 기술난이도를 고려하여 가장 High Level 분야에서 소재합성 기술개발 필요
 - * 고내식 코팅제(나노플레이틀릿 소재) 및 터치패널(대면적 CVD 소재)에서 요구되는 소재사양과 기술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판단되어 두 과제에서 소재합성 추진

- 슈퍼커패시터 응용분야 제외 및 소재합성 예산 변경에 따라 총 544억 원에서 471.8억 원으로 변경

<세부사업별 정부출연금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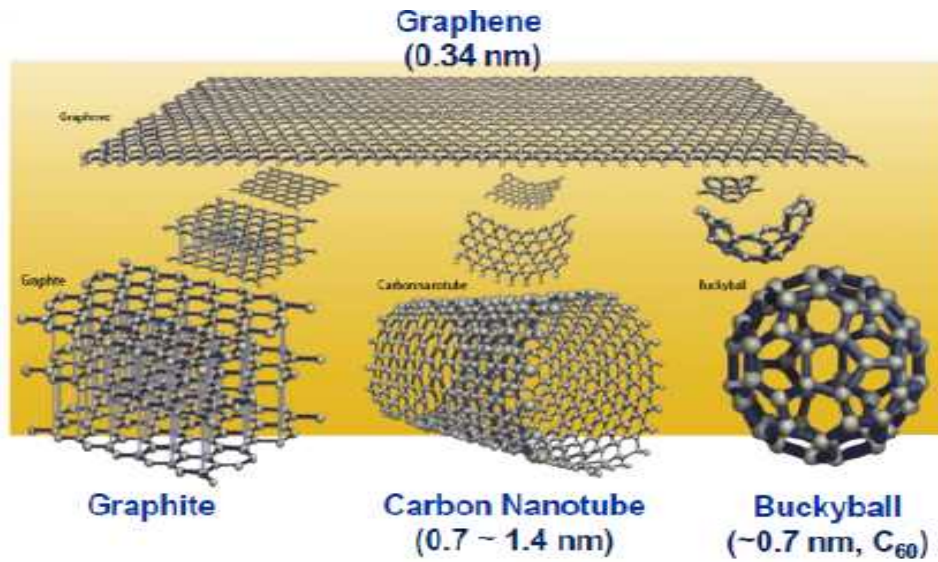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과제명	개발내용	출연금 예산	
		예타 결과	사업 추진
그래핀 응용 터치패널 기술개발	대면적 CVD 소재 합성 및 그래핀 투명전극을 이용한 유연터치패널 개발 및 신뢰성 기술 확보	75.4	110.5
그래핀 응용 OLED 패널 기술개발	그래핀 활용 OLED용 투명전극, 방지막 개발 및 대면적 유연 OLED 패널 개발	137.6	102.5
그래핀 응용 슈퍼커패시터 기술개발	그래핀 활용 슈퍼커패시터 개발	110.6	0
그래핀 응용 하이배리어 복합필름 기술개발	그래핀의 우수한 방지막 특성을 이용한 high-barrier 복합필름 개발	73.6	73.6
그래핀 응용 전자파차폐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그래핀 도전성 잉크 소재/공정기술 개발 및 대전방지(ESD)/전자파 차폐(EMI)용 코팅제 개발	76.5	76.5
그래핀 응용 고내식 코팅제 및 공정기술개발	그래핀의 두께, 비표면적, 표면구조를 제어한 맞춤형 그래핀 소재 개발 및 그래핀 균일 코팅제 개발	70.3	108.7
합 계		544.0	471.8

참고 그래핀이란?

□ (정의)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 두께의 이차원 소재로, 모든 차원의 탄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소재

* 2004년 영국 맨체스터대의 가임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단원자 층의 이차원 그래핀을 처음 분리하고 발견한 공로로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



출처) A. K. Gim and P. Kim, Scientific American (2008)

□ (성질) 그래핀은 물리적 특성이 우수(넓은 표면적, 높은 열·전기전도 등) 하여 산업적 응용 가능성 高

	그래핀	비교재료
크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얇은 물질	-
Young's modulus	1.0 TPa	강철의 5배, 다이아몬드나 탄소나노튜브와 유사
열전도율	5,300 W/mK	탄소나노튜브의 2배, 다이아몬드의 5배
허용전류밀도	10^9 A/cm^2	구리의 1000 배, 탄소나노튜브와 비슷
전자이동도	$200,000 \text{ cm}^2/\text{Vs}$	77,000 (InSb), 1,400 (Si)

- (응용)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열적, 광학적 특성으로 원소재 및 복합소재 기반의 부품 및 완제품 등의 분야에 적용 가능



출처) 그래핀소재 및 부품시장 예측 보고서(2011)

- (전망)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로 미래 소재 부품 시장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응용 분야		연 도	전 망				최종 점유율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투명 전극	금 액		47	147	356	690	58%
	점유율		80.80%	72.5%	65.0%	57.5%	
에너지용 전극	금 액		5	25	93	310	19%
	점유율		10.0%	13.0%	16.0%	19.0%	
차세대 반도체	금 액		4	20	91	371	48%
	점유율		40.0%	42.5%	45.0%	47.5%	
초경량/고강도 복합소재	금 액		8	25	63	138	21%
	점유율		10.0%	13.8%	17.5%	21.3%	
방열소재	금 액		14	59	202	618	40%
	점유율		20.0%	26.5%	33.0%	39.5%	
배리어/코팅소재	금 액		1	4	10	22	30%
	점유율		10.0%	16.5%	23.0%	29.5%	
인쇄전자용 소재	금 액		2	5	12	29	30%
	점유율		10.0%	16.5%	23.0%	29.5%	
금액 합계			81	285	828	2,178	36%
점 유 율			27.0%	31.7%	34.4%	36.3%	-

출처) KEIT 그래핀 응용기술 연구 개발 동향 및 사업화 전망 보고서 (2012)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500	2,750	250	10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88-304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국장님), 바이오나노과(정석진 과장님, 044-203-4390), 사무관(유의택, 439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 ~ '16(3년)
총사업비	9,714백만원(정부 8,000, 민간 1,714)
사업규모	과제당 5억원 이내/년, 1~2년
지원조건	출연금(총 사업비의 3/4이내 정부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나노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노소재 응용제품이 수요처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나노공급-수요기업 간 제품화 적용기술 개발을 수행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23.67억원)

- 완성도가 높은 탄소계, 금속계 나노소재/부품을 보유한 나노기업과 수요 기업과의 제품화 R&D를 통해 최종 융합제품 출시
- 탄소계-금속계 나노복합소재 제품분야 : 계속과제 3개, 신규과제 3개
 - (계속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1,275백만원 = 3개 세부과제 x 425백만원
 - (신규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1,092백만원 = 3개 세부과제 x 364백만원

② 사업기획(품목발굴) 및 신시장, 융합제품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지원(3억원)

-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지원과제 품목 발굴
- 나노소재의 지속적인 supply chain 형성을 위한 제품 적용분야 및 시장 동향 조사·분석, 제품화 애로기술 해결 및 성과확산 등 사업화 지원

③ 평가관리비(0.83억원)

□ 지원 필요성

- 나노제품은 하나의 제품이 다양한 산업분야 제품에 융·복합이 가능(GPT* 성격)하며,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
 - * GPT(General Purpoe Technology ; 다목적기술) : (예) TiO_2 (’07年 약 800M\$) $\Rightarrow$ 시멘트+ TiO_2 (’14年 약 1,600M\$ 전망)로 전 세계 광촉매 시장이 2배 이상 급성장
- 그간의 정부의 나노기술개발과 육성으로 산업기반을 형성해나가는 초기 단계로 나노융합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시점
- 現 나노제품은 기초소재 및 중간재가 주류로서 수요처 제품에 적용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제품 연계 및 적용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필수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500	2,750	250	10
▪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125	2,367	242	11
▪ 사업기획·운영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사업화지원	-	300	300	-	
▪ 평가관리비	-	75	83	8	11
☐ 비목	-	2,500	2,750	250	10
▪ 출연금(350)	-	2,500	2,750	250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본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완성도 높은 나노제품은 다양한 산업군·이업종에 융합되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창의·혁신적인 융합제품을 창출
 예) 성에가 끼지 않는 자동차 유리, 겨울에 따뜻하게 탈수 있는 유모차, 물속에서 항균력이 지속되는 필터,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초경량 부품 등
- 또한, 본 사업은 우수한 나노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이를 적용할 수요기업(대·중견기업)의 공동 참여로 추진되며, 과제 종료 시 융합제품 출시와 함께 나노기업의 매출발생
- 중소기업 위주(90%이상)인 나노분야(소재/부품)의 사업화 모델로 제시가 가능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회를 창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1.25억원 - (신규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2,125백만원 = 5개 세부과제 x 425백만원 ▪ 사업 기획·운영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사업화 지원 : 3억원(총괄과제) ▪ 평가관리비 : 0.75억원
'15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3.67억원 - (계속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1,275백만원 = 3개 세부과제 x 425백만원 - (신규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1,092백만원 = 3개 세부과제 x 364백만원 ▪ 사업 기획·운영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사업화 지원 : 3억원(총괄과제) ▪ 평가관리비 : 0.83억원
'16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23.67억원 - (계속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1,275백만원 = 3개 세부과제 x 425백만원 - (신규과제) 탄소계, 금속계 분야 1,092백만원 = 3개 세부과제 x 364백만원 ▪ 사업 기획·운영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사업화 지원 : 3억원(총괄과제) ▪ 평가관리비 : 0.8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산업융합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 활성화 등)
- 나노융합산업발전전략 ('09.3월 국과위 심의·의결)
- 제3기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4월 국과위 본회의 심의·의결)

○ 추진경위

- '12.03 : “나노융합기업 T2B 촉진사업*” 본격 추진, 융합제품화 애로 발굴
* 우수 나노융합제품을 발굴·시연·홍보하며 이를 적용 가능한 수요기업을 발굴·연계하는 나노제품 수요연계 지원 사업
- '12.08 : 나노융합제품 사업화 지원 설문조사(130개사)
- '12.10 : 나노융합제품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구기획 착수
- '12.11 : 기획위원회 개최 및 집체작업을 통한 기획안 마련
- '12.12 : “나노융합 T2B 포럼” 개최(12.4)를 통한 의견수렴
- '13.01.~05. : 동 사업 세부기획안 마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 적용기술개발	-	-	-	25	2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전수요조사/접수	총괄주관기관
공고대상 품목 기획	총괄주관기관
지원품목 공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ICT임상지원센터(신규,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ICT 임상지원센터	-	-	2,000	2,000	순증

* 사업코드 : 21-11-0-110-114-4800-4806-307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국(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조우정, 439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17
총사업비	100억원
사업규모	스마트임상시스템 및 장비구축, 시범사업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ICT 융합 임상시험센터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로 국내 임상시험산업의 발전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ICT임상지원센터 구축 (2,000백만원)

- 첨단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 1,350백만원

* 장비구축 : 100백만원 × 8개 = 800백만원

* 시스템 인프라(서버, 운영관리 시스템 등) 구축 : 36.6백만원 × 15개 ≒ 550백만원

- 스마트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 650백만원

*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등 시스템 설계, 질환별 DB구축·표준화 시스템 구축 등

※ 센터공간 임대비는 지방비 부담('15년 ~ '17년)

□ 지원 필요성

-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는 필수 과제로, 우리나라 강점인 ICT기술의 결합을 통한 첨단임상시험산업 개척
 - 임상시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ICT 기술 활용으로 임상시험의 과학적 신뢰성 제고, 비용 및 기간 절감을 모색**
 - * 2012년 美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의 해결과제 중 하나로 임상시험의 효율화를 제시
 - ** 1)지리적 제약 감소로 환자 모집이 용이, 2)통제되지 않는 실생활 속에서 직접 양질의 실시간 데이터 획득, 3)환자의 불편 감소와 순응도 증가를 통해 임상시험의 성공률 증대 가능
 - ICT 결합 첨단임상시험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임상시험 선도
 - * 해외에서는 2011년 Pfizer가 전자 모니터링 연구 수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ICT임상지원센터	-	-	2,000	2,000	순증
▪ 첨단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	-	1,350	1,350	순증
▪ 스마트임상시험 시스템 구축	-	-	350	350	순증
□ 비목	-	-	2,000	2,000	순증
▪ 출연금(350-01)	-	-	2,000	2,0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ICT기술을 활용한 재택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개발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임상시험의 타당성 검증 및 사업화 모델 발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20	▪ICT임상시험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16	50	▪ICT임상시험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
'17	50	▪시범사업
'18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

○ 추진경위

- 임상시험 종합발전계획(식약처, '11)에 있는 5대 추진전략 중에 포함된 임상시험 역량강화 전략의 과제 중, IT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체계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임상시험 설립지원이 포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ICT임상지원센터	-	-	-	-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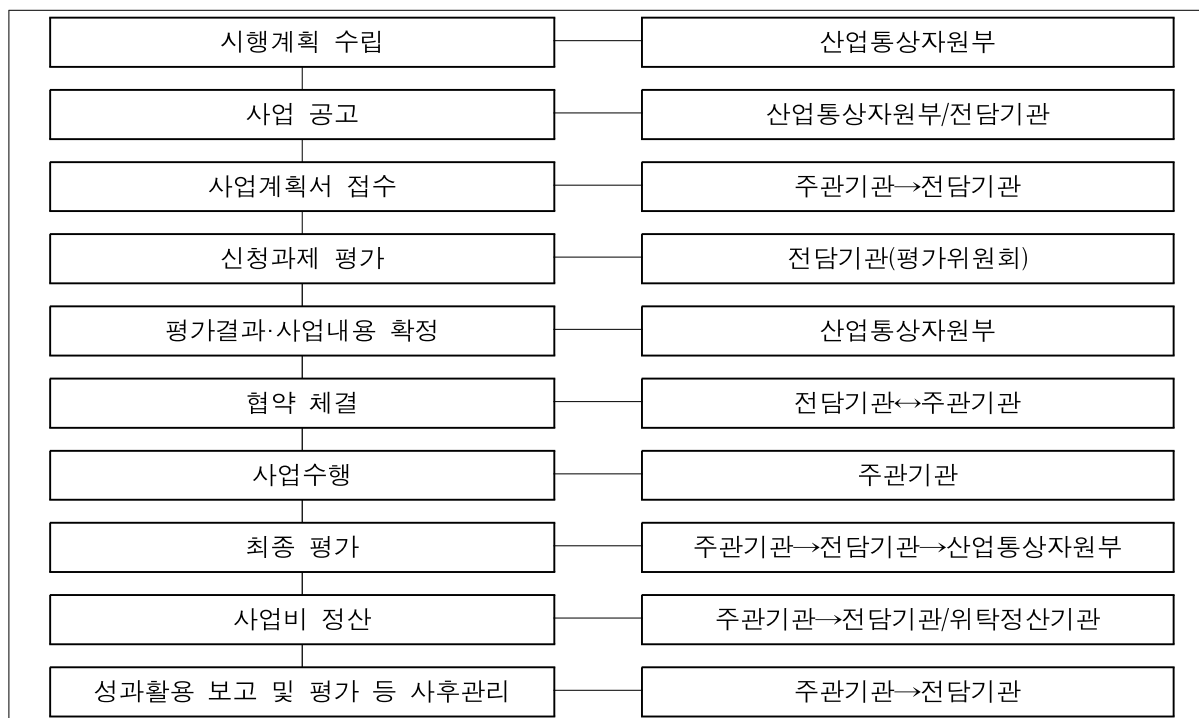
- 2011년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서 집에서 스마트 임상시험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 Pfizer사는 과민성 방광 치료 경험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연구 (REMOTE Project)를 FDA 승인을 받은 스마트임상시험으로 수행
- AMP사는 골관절염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 재택임상시험 수행

< 적용 사례 주요내용 >

- 임상시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재택 수행
 - 온라인을 통한 환자 모집, 환자 동의 프로세스, 환자 스크리닝
 - 휴대폰을 이용한 약물 유효성 평가(ePRO), 임상시험 약물의 직접 배송
 - 가상 사이트를 통한 Coordination,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센터 등
- * 2014년 REMOTE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한 Pfizer社와 Mytrus社는 Clinical Informatics News社로부터 최고 우수 사례(Best Practice)로 선정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신규,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	-	-	500	500	순증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600 - 3683 - 308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장(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오수만, 43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 ~ '18 (4년)
총사업비	350억원 * 지방비 매칭 (경상북도, 문경시) / 수시배정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규모	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 구축 : 8,280㎡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 25종 바이오테라피 제품 개발장비 : 68종
지원조건	출연금, 정책지원
사업시행주체	비영리기관(미정)

2. 사업목적

- 바이오테라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기반 확충, 기술 개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바이오테라피산업화 기반 구축 : 475백만원
 - 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 건립
 - 바이오테라피 산업기술 연구장비 구축
 - 천연물기반 핵심 바이오테라피 시제품 기술개발
- ② 기획평가관리비 : 2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백두대간권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제품 개발하고, 테라피-힐링-관광-레포츠가 연계되는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 백두대간권에 있는 문경시는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연간 4백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산업 활성화 연구
- 바이오테라피 연구기관·기업의 유치, 입주기업의 산업기술 및 제품 개발, 제품 마케팅 지원을 위해 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 건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한류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의료기술과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산업의 원동력 활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	-	-	500	500	순증	
▪ 기반구축	-	-	475	475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	-	25	25	순증	
□ 비목						
▪ 출연금(350-01)	-	-	500	5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백두대간권의 다양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융합산업(의약산업+식품산업+미용산업+음료산업+의료관광산업)으로 육성
- 바이오테라피 관련 지원센터 구축 및 산업화 기능 강화, 바이오테라피 기업유치 및 기술개발, 바이오제품개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5	▪ 기반구축 4.75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0.25억원
'16	-	-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의 기획 및 조사 포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추진경위
 - 경북 문경시 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 연구용역(2014. 9. 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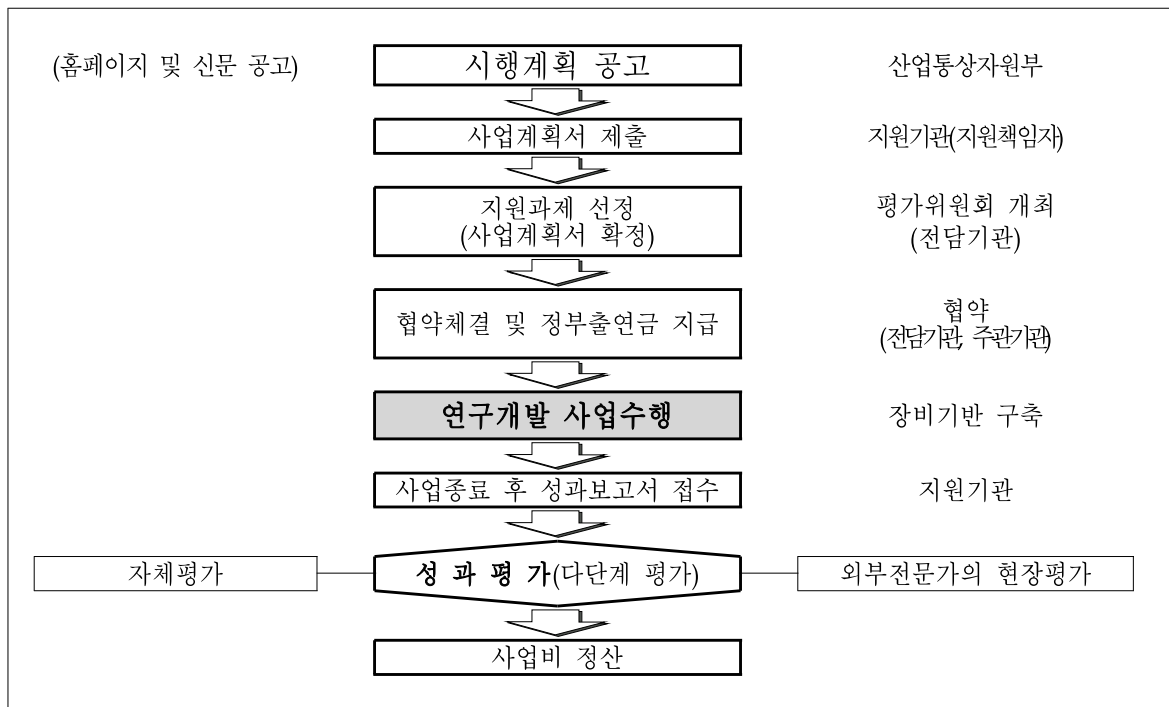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 구축	-	-	-	-	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사업 개요

○ 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

구분	주요기능 및 내용
바이오테라피 R&D지원	- 바이오테라피 관련 산업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시설
바이오테라피 기업지원	- 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제품화 및 마케팅 지원
기업입주동	- 기능성 식품, 제약업체 등 입주시설
행정지원시설	- 기업지원 및 시설물 관리 업무

○ 바이오테라피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및 기반 확충

- 천연물 기반 핵심 바이오테라피 제품 개발
- 테라피제품 국제인증 지원

○ 바이오테라피제품의 상용화 지원

- 제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및 공정기술 등

지식서비스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식서비스기반구축	360	726	653	△73	△10.1

* 사업코드 : 110-114-3600-3681-301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창의산업정책과장(조영신, 044-203-4360), 주무관(최균석, 044-203-435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스타트업포럼

2. 사업목적

-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혁신기반 확충
- 제조-서비스 융합 모델 확산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

- 지식서비스 컨설팅방법론 개발지원(213백만원)
 -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방법론을 개발, 보급하여 컨설팅 산업의 성장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개발된 방법론을 컨설팅 업계에 보급(산출물 및 교육 제공)

-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150백만원)
 - (산업창의융합포럼 운영) 다양한 산업 종사자가 국내·외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사례, 시장 트렌드 등 정보,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운영 및 분야별 민간주도형 토론회 개최
 -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일상생활분야 등 여러 분야별* 시장니즈를 반영한 유망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 * (예)국민생활 4대 융합신사업 시장 활성화 전략과 연계한 건강, 안전, 편리, 문화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지식서비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120백만원)
 - 지식서비스 국내·외 선도적인 서비스 혁신 사례 및 정책 소개
 -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 및 우수기업 시상

② 스타트업포럼 운영

- 스타트업 포럼 운영(170백만원)
 - 전국 단위 스타트업 모델 공모전 개최로 창업자 발굴 및 안정적 창업·취업 환경 조성
 - 산학연 커뮤니티 및 전문가 멘토링 그룹 운영

□ 지원 필요성

①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

-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제조·생산'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중
 - *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 나이키 플러스 : 조깅화에 칩을 부착, 운동량, 거리, 칼로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신발 판매량에 비해 30% 증가
- 국내 제조업은 생산·공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지식 서비스 투입을 통한 제조업 혁신이 미흡하여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

- 국내 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 지식서비스의 중간 투입이 낮음
 - *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 투입계수('09, OECD) : 미국(0.222), 영국(0.201), 일본(0.175), 우리나라(0.120)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혁신을 위한 방법론(노하우) 축적이 미흡하고,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모델 확산도 저조
- 국내 서비스 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 서비스 디자인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 국내의 우수한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제조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

② 스타트업포럼 운영

-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가 중요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식서비스기반구축	360	726	653	△73	△10.1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	360	526 ·지식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26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200 ·지식서비스 국제컨퍼런스 개최 100	483 ·지식서비스 컨설팅방법론 개발지원 213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150 ·지식서비스 국제컨퍼런스 개최 120	△43	△8.2
▪ 스타트업포럼운영	0	200 ·스타트업포럼운영 200	170 ·스타트업포럼운영 170	△30	17.6
□ 비목(합계)	360	726	653	△73	△10.1
▪ 민간이전	360	726	653	△73	△10.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조-지식서비스업 융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서비스 동반성장 추진
- 전국적인 스타트업 모델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지원 대상의 적극적 발굴 및 지속적 성장 환경을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26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5.26), 스타트업포럼(2)
'15	6.53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4.83), 스타트업포럼(1.7)
'16	7.26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5.26), 스타트업포럼(2)
'17	7.26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5.26), 스타트업포럼(2)
'18	7.26	▪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기반확충(5.26), 스타트업포럼(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추진경위

- 「서비스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06.12)
- 「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07.7)
- 「지식서비스 육성전략」 발표('07.8)
- 「3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마련('07.12)
-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I)」('08.4)
-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II)」('08.9)
-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III)」('09.1)
- 「제조업 동반성장형 新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12.11)
-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12.11)
- 「IT활용촉진」사업의 내역사업인 「스타트업포럼 운영」과 통합('13.6)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지식서비스 기반구축	4.5	4.5	4.0	3.6	7.26* (3.26)

* '14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기반구축(3.26억원)과 산업창의융합포럼 및 비즈니스 모델발굴(2억원), 스타트업포럼(2억원)이 통합됨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5(4.5)	()	()	4.5(4.5)	4.5(4.5)	()	()
'12년	4.0(4.0)	()	()	4.0(4.0)	4.0(4.0)	()	()
'13년	3.6(3.6)	()	()	3.6(3.6)	3.6(3.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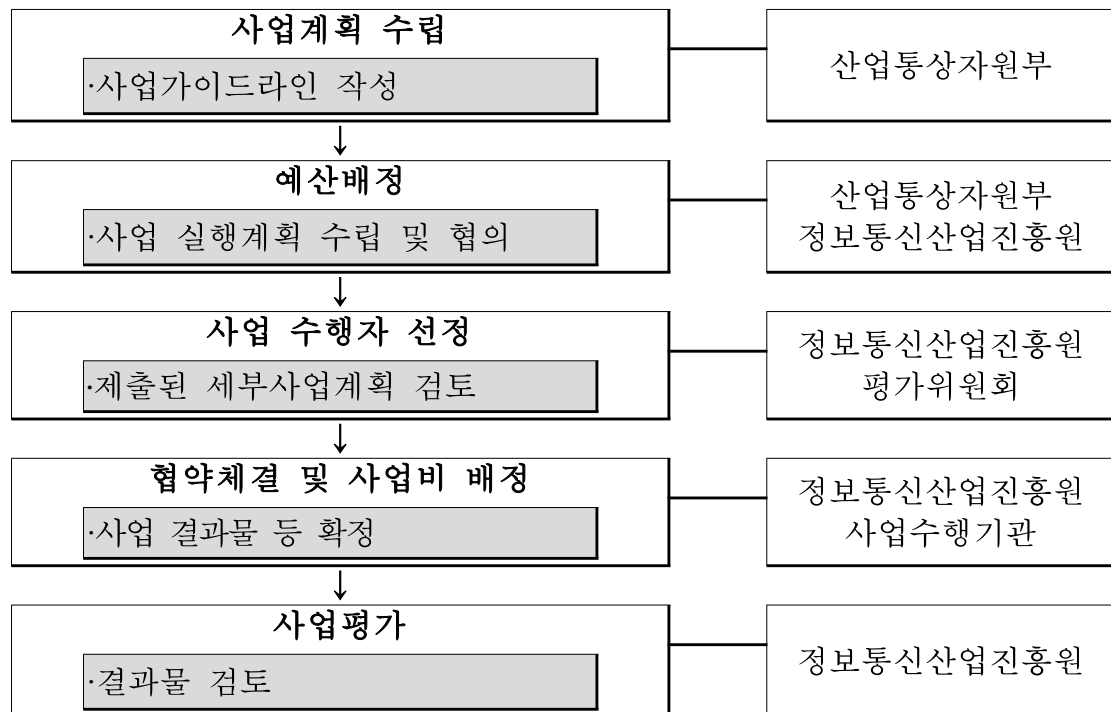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 국고 보조사업 운용평가(기획재정부) : 단계적 감축(건설팅 산업해외진출지원 40백만원을 2014년부터 삭감)
 -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4년부터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팅 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배제
-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종평가 결과(기획재정부) : 보통
-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종평가 결과(기획재정부) : 매우미흡
- '12.3. 감사원 재무감사(2011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 ☞ 사업 성과지표 중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이 사업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수행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한 점을 지적하여 '12년 만족도 조사시 사업성과 관련 항목 중심으로 설문조사 실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 경제산업성의 서비스산업혁신연구회 산하에 산·학·관에 의한 '서비스 산업생산성협의회'를 설치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 추진
- 독일 : 범정부 차원의 "하이테크 전략(The High-tech Strategy for German, '06년)"을 수립하고 12대 분야 중 서비스분야를 선정
 - * '06~'10년간 서비스혁신 연구프로그램(7,000만 유로 규모) 추진
- 영국 : 서비스혁신 네트워크 활동, 전통 서비스산업 혁신요인 분석, 서비스R&D 연구소 설립(AIM) 등 경쟁력 강화 지원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붙임 1

지식서비스 컨설팅방법론 개발 지원

① 필요성 및 목적

-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전략, 마케팅, IT 등) 노하우와 방법론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방법론이 미흡한 실정
- 국내 컨설팅 기업들은 대다수가 영세하여 선진화된 방법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제조의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영역 컨설팅방법론(노하우) 축적이 필요

※ 국내 제조업의 R&D투자는 OECD 국가중 최상위권에 속하나(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율이 1~2위) 지식서비스업의 R&D투자는 매우 저조

② 사업내용

- 중소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서비스디자인 등 전문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방법론 개발을 지원
- 사업비(213백만원) : 지원비 및 간접비
- 업계에 컨설팅방법론(가이드라인, 메뉴얼 등) 제공 및 컨설턴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컨설팅 인력을 양성

※ 교육비용(과정설계, 강의운영 등)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③ 기대효과

- 컨설팅 기업 역량 강화 :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등 신규 니즈에 부합하는 컨설팅 제공능력 확보
-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양질의 컨설팅서비스를 산업계에 제공하여 신사업 개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 후지제록스 : 복사기 제조·판매 → PMS(문서관리서비스) 전문 기업
 - ** 웅진 코웨이 : 정수기 생산·판매 → 공기청정기, 정수기, 연수기 등 토탈 홈케어 서비스
- 국내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수익채널 확보를 위해 제조-서비스 융합형 신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투자비 부담, 정보부족으로 추진이 미흡
 - *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제조-서비스 융합’의 가능성” : 높다(55%) vs 낮다(7%)
 - “ 제조-서비스 사업 추진 여부” : 관심은 있으나 추진하지 않고 있음(57%) vs 추진 중(26%)
(247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2 사업내용

- 지식서비스 기반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異種분야의 산·학·연·관이 모여 국내·외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사례 및 시장 트렌드 등 시장정보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
 - 국민생활분야 및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시장 니즈를 반영한 미래 유망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例) ‘국민생활 4대 융합신사업 시장 활성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13)’과 연계한 건강, 안전, 편리, 문화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산업창의융합포럼을 운영하여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의 업계 공유 및 제조-서비스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분야별 민간 참여형 토론회 개최

3 기대효과

-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을 통한 제조, 서비스업 혁신 촉진

1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외 선도 서비스혁신사례 소개, 우수기업 시상, 성과물 전시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및 가치 제고)
- 제조-서비스 융합의 성공사례를 발굴·확산, 관련 R&D성과물 전시, 우수기업 시상을 통한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분위기 조성

2 사업 내용

- 지식서비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지식서비스 우수사업, 성공기업, 정책 등 발표, 전시 콘텐츠 다양화
 - － 유명 기업인, 여론 지도층 등 우수 연사 섭외
-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
- 이러닝, 컨설팅, 이웃소싱 등 지식서비스 부문의 우수 기업 및 산업 발전 유공자 시상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시상(총 8개 시상 : 우수기업 6개, 유공자 2명)

3 기대 효과

- 지식서비스 혁신사례 전파를 통한 국내 서비스 기업 혁신 촉진
- 지식서비스 기업·유공자의 사기 진작과 사업 의욕을 고취시켜 지식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제고

1 필요성 및 목적

- 지식서비스 시장 확대, 청년의 실업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전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인프라 구축 및 지원시스템 확대 필요

2 사업내용

- 전국단위 스타트업 모델 공모전 개최로 창업지원 대상의 적극적인 발굴 및 안정적 창업·취업 환경 조성
 - 지역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단위의 스타트업 발굴
 - 스타트업 환경 및 정보(시장,기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창업과 취업 환경 조성
 - (세부내용) ① 스타트업 오디션/공모전 개최, ②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완 (실무멘토링 중심의 프로세스 등), ③ 스타트업 리포터 확대(사후 모니터링 역할 및 체계정립)
- 스타트업 기업, 멘토 등의 산학연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3 기대효과

-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활성화로 산업 혁신 및 신시장 창출
-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	613	600	△13	△2.1

* 사업코드 : 110-114-3600-3681-303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창의산업정책과(조영신, 044-203-4360), 주무관(손호정, 435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서비스 및 IT를 접목한 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고 확산하여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경험과 감에 의존했던 기존의 서비스를 IT·지식기반의 분석을 통해 新 서비스 프로세스로 전환하여 서비스업의 고도화 추진
 -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분석 등 컨설팅을 통한 지식서비스와 IT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기업에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수 있는 IT·지식 접목 모델을 개발·보급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식·IT 서비스 접목모델 개발 지원 (550백만원)

-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와 PC, 클라우드, 모바일 등 IT기술을 융합하여 중소 서비스기업 및 소상공인의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목모델을 개발
 -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서비스의 과학화를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신서비스 프로세스로 전환
- 일반공모를 실시하여 파급력이 높고 영세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IT 서비스 접목모델을 선정하고, 개발비용을 지원
 - 사전기획 단계를 거친 파급력 있는 전략과제 개발
 - 정부지원이 미약했던 영세 서비스업종 지원을 위한 자유과제 개발

② 신규과제 기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50백만원)

- 중소서비스 업종 기업 및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업종별/생애주기별 지식·IT서비스 접목모델 발굴 및 과제 기획
- 개발된 과제의 보급현황 조사, 보급·확산 지원방안 및 활성화 전략 등을 수립
 -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식화 및 IT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입상담, 매칭, 수요 발굴 및 개발, 컨설팅 등 영세 서비스업종의 창조혁신 종합 지원방안을 연구
-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과제관리 및 평가, 보급확산 계약체결까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지원 필요성

- 영세 서비스업종을 위한 지식·IT접목모델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서비스기업의 과학화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	613	600	△13	△2.1
▪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	613	600	△13	△2.1
□ 비목	-	613	600	△13	△2.1
▪ 출연(350-01)	-	613	600	△13	△2.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 서비스업종의 영세 업체들이 국내외 대형 서비스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수단과 제도적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13	▪ 지식IT서비스접목모델(5.5억), 신규과제 기획 및 활성화(0.63억)
'15	6	▪ 지식IT서비스접목모델(5.5억), 신규과제 기획 및 활성화(0.5억)
'16	6.18	▪ 지식IT서비스접목모델(5.5억), 신규과제 기획 및 활성화(0.68억)
'17	6.36	▪ 지식IT서비스접목모델(5.5억), 신규과제 기획 및 활성화(0.86억)
'18	6.55	▪ 지식IT서비스접목모델(6억), 신규과제 기획 및 활성화(0.55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추진경위

- ①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12.11.28)
 - 중소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IT접목사업 활성화 추진
- ②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13.7.4)
 -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 신규 개발
- ③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13.7.10)
 - 사회서비스 분야 소상공인의 고객 및 인력·회계 관리 지원을 위한 IT솔루션 개발·보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서비스기업경쟁력강화	-	-	-	6.13	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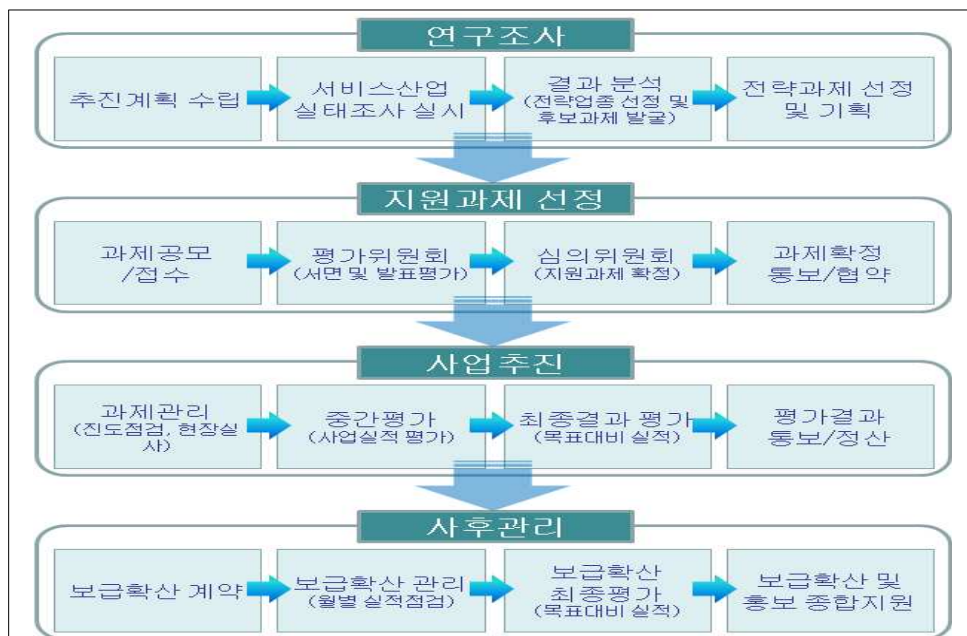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참고] 내용에 기재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참고1 관련정책 발표내용

- ①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12.11.28)
 - 중소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IT접목사업 활성화 추진
- ②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13.7.4)
 -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 신규 개발
- ③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13.7.10)
 - 사회서비스 분야 소상공인의 고객 및 인력·회계 관리 지원을 위한 IT솔루션 개발·보급

참고2 IT기반의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 ① 프랑스 아코르 호텔 : 예약률, 지역호텔 평균가 등을 분석, 1일 단위의 최적요금 도출
- ② 일본 호시노 리조트 : 고객 동선, 직원 근무방식 분석을 통해 파산 리조트를 회생
- ③ 일본 간코푸드 : 경험과 감에 의존했던 조리,接客 업무를 면밀한 관찰로 과학화하여 생산성 향상
- ④ 일본 구라스시 : 회전초밥에 바코드 부착, 폐기율 절감(30%→5%)
- ⑤ 한국 그린피스 : Smart Cold Chain 적용을 통해 상황버섯의 불량률 저감

참고3 해외 유사 프로그램 사례

스웨덴_서비스산업 IT 활용 증진 프로그램	핀란드_서비스 혁신 기술 프로그램	일본_서비스산업 육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 : 성장잠재력을 가진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 지원 및 IT 활용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증대 • 주요 서비스 부문 선정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재택 건강관리 정보기술 향상) 지원 - 공공서비스(공공행정 전자서비스화) 지원 - 지식서비스(지식플랫폼 확립) 지원 • 지원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 및 IT 활용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서비스 컨셉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통한 핀란드 산업구조 강화 • 프로그램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과 관련한 서비스, 지식 집약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과 보험, 자산 관리 서비스 • 지원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산업 부문 혁신은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수단과 과정(tools and processes)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IT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활용,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주요 서비스 업종을 전략업종으로 선정 및 육성 • 선정 전략 육성 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복지 기기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에너지 기기 서비스, 관광/집객교류 서비스 산업 • 지원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등 서비스 기술 개발/활용 - IT 지원 정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을 유도 • IT활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도입 • 수요 증가를 위한 측면 강조 • 단계별, 혁신 프로세스 별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수단을 프로그램 수준으로 구체화 • 서비스 산업의 우선순위 분야를 한정함으로써 정책효과의 극대화

이러닝산업활성화(계속)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이러닝산업활성화	1,800	1,800	1,810	10	0.6

* 사업코드 : 21 - 11 - 110 - 114 - 3600 - 3681 - 302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4350), 창의산업정책과장(조영신, 4360), 서기관(임화선, 43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이러닝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이러닝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이러닝산업 전문인력양성 : ('14) 200 → ('15) 200백만원

- 직무별 교육과정 운영 : 8개 과정 × 16백만원 = 128백만원
- 교육콘텐츠 보완 등 시스템운영 : 1식 × 52백만원 = 52백만원
- 지역 이러닝 세미나 개최 지원 : 20백만원

② 이러닝 해외진출지원 : ('14) 590 → ('15) 840백만원

-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350백만원
 - 수요조사 및 시장 분석을 통해 활성화시장(미국, 유럽 등) 및 신규시장(중남미, 동유럽 등) 대상 전시회 참가 : 3회 × 90백만원 = 270백만원
 - * 기업 공동관 구축을 통한 해외 바이어의 관심 및 방문 유도
 - 이러닝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정책입안자/바이어 초청 및 1:1 비즈매칭 지원(이러닝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 : 80백만원
- 전시회 미참가 업체 마케팅 대행 지원 : 10개사 × 8백만원 = 80백만원
 - * 자금 및 인력부족 등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기업 대상으로 이러닝 전문 마케터 활용을 통한 해외 세일즈 및 홍보기회 제공
- 이러닝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 50백만원
 - * 기업의 필요에 의한 독자적 마케팅활동(전시회 참가, 해외 쇼케이스 등) 지원
- 이러닝 해외 시장조사·분석 : 70백만원
 - * 미래교실의 중심이 될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책·시장·제품에 대한 분석·연구
- 이러닝 제품 글로벌화 지원 : 5개사 × 58백만원 = 290백만원
 - * 수출유망 이러닝 기업 제품의 현지화 지원(번역, 플랫폼 변환 등)

③ 이러닝 진흥 : ('14) 670 → ('15) 670백만원

- 이러닝 조사·통계 및 정책 홍보 : 390백만원
 - * 이러닝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528호), 스마트러닝 포럼, 3차 기본계획 수립 등
- 이러닝 사업자신고 제도 운영 : 30백만원
- 이러닝 국제박람회·컨퍼런스 개최 : 250백만원
 - * 산업부, 교육부 공동개최('15.9월 예정)

④ 이러닝 표준화 : ('14) 340 → ('15) 100백만원

- 표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러닝 표준제정 지원 : 100백만원
 - * 이러닝 관련 표준화 활동, 표준화 위원회 및 워킹그룹 운영 등 추진

구 분	'14예산	'15예산
□ 이러닝산업활성화	1,800백만원	1,810백만원
▪ 이러닝 해외 진출지원	이러닝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이러닝 기업 해외공동전시관 구축 및 맞춤형 홍보지원 지속적 확대 추진
▪ 이러닝 표준화	품질인증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품질인증 사업 삭제

□ 지원 필요성

- 이러닝산업은 법 제개정('04, '12), 2차 기본계획 수립('06, '11) 및 정부 정책 지원 등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
 - * 국내 이러닝시장 규모 : ('12) 2.75조원 → ('13) 2.95조원(전년 대비 7.3% 증가)
 - * 개인 이러닝 이용률 : ('11) 52.8% → ('12) 53.3% → ('13) 57.1%
- 이러닝산업의 양적확대를 넘어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국내 이러닝 산업은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체 이러닝 기업 중 해외 시장 진출한 기업은 1.8%에 불과
 - * 2.9조원 규모의 내수시장에서 1,649개 기업이 경쟁, 평균매출 17.8억원 수준('13)
 - 국내 이러닝기업의 국제표준 적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표준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강화와 국내표준 개발·국제화 미흡
 - * 국내 이러닝기업 중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3.0% 불과('13)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이러닝산업활성화	1,800	1,800	1,810	10	0.6
▪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양성	250	200 (교육과정 운영 및 신규과정도출 : 110, 지역 세미나 개최 : 20, CEO아카데미: 70)	200 (교육과정 운영 및 신규과정도출 : 110, 지역 세미나 개최 : 20, CEO아카데미: 70)	-	-
▪ 이러닝 해외진출지원	350	590 (해외마케팅지원 : 375, 기업 맞춤형 : 135, 해외시장조사 : 80)	840 (해외마케팅지원 : 430, 기업 맞춤형 : 50 해외시장조사 : 70, 글로벌화 : 290)	250	42.4
▪ 이러닝 진흥	760	670 (박람회 개최 : 250, 이러닝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 70, 산업 실태조사 및 백서 : 190, 스마트러닝포럼 : 40, 미래형콘텐츠 개발 : 70, 사업자 신고제도 : 50)	670 (박람회 개최 : 250, 이러닝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 : 160, 산업 실태 조사 및 백서 : 190, 스마트러닝포럼 : 40, 사업자 신고제도 : 30)	-	-
▪ 이러닝 표준화	440	340 (품질인증 및 우수 기업 시상 : 260, 이러닝 표준 개발 : 80)	100 (이러닝 표준 개발 : 100)	△240	△70.6
☐ 비목	1,800	1,800	1,810	10	0.6
▪ 출연금(350-01)	1,800	1,800	1,810	10	0.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공정시장 조성, 이러닝 품질향상 등)을 통해 양(量) → 질(質)로 산업패러다임 전환

- 내수 중심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8	○이러닝산업활성화(18) ▪이러닝산업인력 양성(2) ▪이러닝해외진출지원(5.9) ▪이러닝 진흥(6.7) ▪이러닝 표준·인증(3.4)
'15	18.1	○이러닝산업활성화(18.1) ▪이러닝산업인력 양성(2) ▪이러닝해외진출지원(8.4) ▪이러닝 진흥(6.7) ▪이러닝 표준화(1)
'16	15.93	○이러닝산업활성화(15.93) ▪이러닝산업인력 양성(2) ▪이러닝해외진출지원(6.23) ▪이러닝 진흥(6.7) ▪이러닝 표준화(1)
'17	17.20	○이러닝산업활성화(17.20) ▪이러닝산업인력 양성(2) ▪이러닝해외진출지원(7.5) ▪이러닝 진흥(6.7) ▪이러닝 표준화(1)
'18	14.62	○이러닝산업활성화(14.62) ▪이러닝산업인력 양성(2) ▪이러닝해외진출지원(4.92) ▪이러닝 진흥(6.7) ▪이러닝 표준화(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지원사업 수행기관 】

- 동법 제14조(이러닝산업 지원기관)

【 이러닝산업인력양성 】

- 동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이러닝해외진출지원 】

- 동법 제14조(이러닝산업 지원기관) 6항 이러닝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및 제24조(국제협력 등)

【 이러닝표준·인증 】

- 동법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및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 이러닝진흥 】

- 동법 제14조(이러닝산업 지원기관) 5항 이러닝산업관련 출판·홍보 및 진흥사업 및 제27조(통계 및 실태조사)

○ 추진경위

- 2004년 : 「이러닝산업발전법」 제정('04.1)
- 2005년 : 제1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06~'10) 수립
 -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9개 부처 참여) 심의·의결
- 2006년 : 이러닝산업기반구축사업,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 사업, 이러닝 품질인증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 2007년 : 상기 3개 사업을 단일사업(이러닝산업활성화)으로 통합 추진
- 2008년 : 이러닝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08.2)
- 2011년 :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11~'15) 수립('11.3)
- 2012년 :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12.1)
- 2013년 : 이러닝산업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13.6)
 -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고시
 - **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1호) 고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이러닝산업활성화	24	20	18	18	1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4			24	24		
	(24)	()	()	(24)	(24)	()	()
'12년	20			20	20		
	(20)	()	()	(20)	(20)	()	()
'13년	18			18	18		
	(18)	()	()	(18)	(1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참고 : 주요 국가별 동향】



미 국

시장규모 : ('12) 394억불 → ('18) 1,052억불

- 세계시장의 63% 이상 차지, 콘텐츠·솔루션·서비스 등 모든 분야 선도
 - *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예산 및 기업매출 감소로 이러닝 도입 증가
- 기업내 이러닝 시장 및 PreK-12 및 고등교육시장의 성장
 - * 기업부문은 168억원('12) → 472억불('18)로 예상되며, PreK-12 및 고등교육 시장은 '15년 전체 이러닝 시장의 44%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유 럽

시장규모 : ('12) 77억불 → ('18) 200억불

- 지역별 다양한 언어와 학습문화적 특성이 장애요인
 - * 영국이 가장 큰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유럽 및 CIS 국가들이 EU 및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급성하고 있음
- 기업내 이러닝 시장의 성장 및 오픈소스, SaaS, Cloud 기반의 이러닝 시스템으로 전환 증가
 - * 기업부문 23억불('12) → 67억불('18) 예상

- 「Education & Training 2010」 마련, Minerva Programme 등 이러닝 프로그램 추진

일본

시장규모 : ('12) 26억불 → ('18) 50억불

- 기존 및 새로운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 증가로 기업 내 이러닝 시장 증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 연수에 이러닝 적극 활용
 - * 기업부문 16억불('12) → 25억불('18) 예상
- 「중점 계획-2006」('06)을 수립, 차세대 인적기반 확보와 고급IT 인재 육성 등 이러닝 관련 세부시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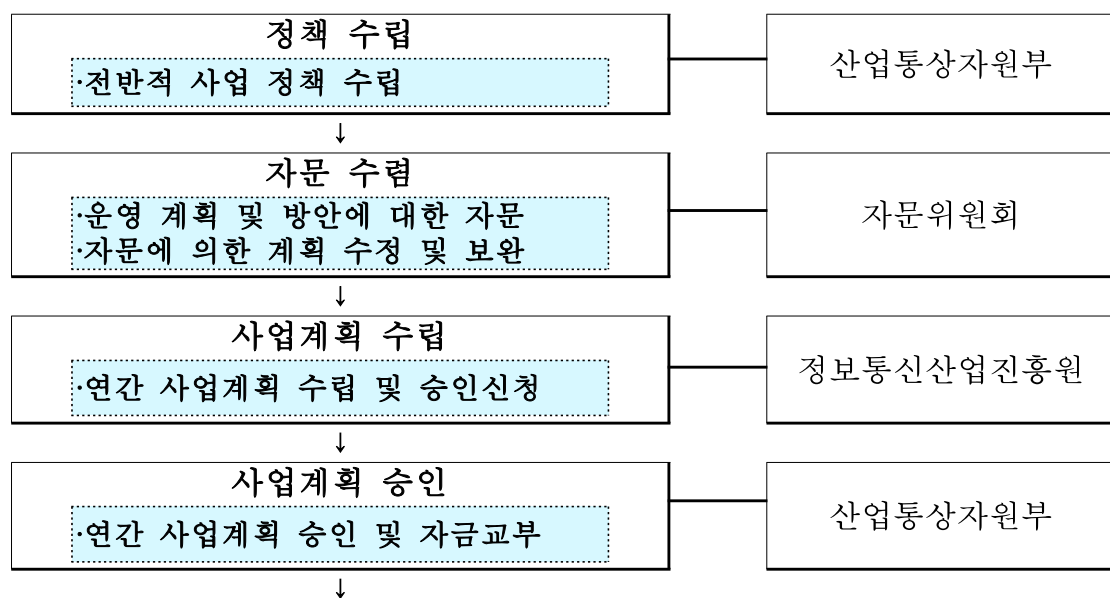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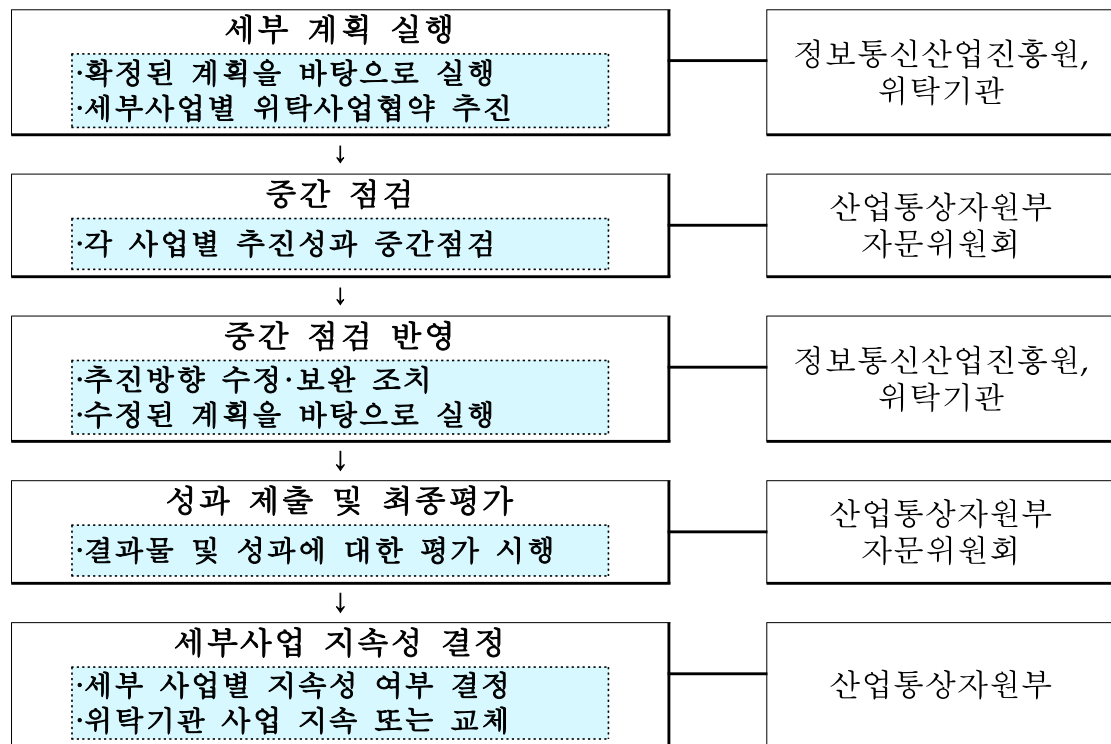
시장규모 : ('12) 170억불 → ('15) 340억불

- 학력취득교육, 언어교육, K-12, 기업이러닝 시장으로 구분되며 학력취득교육시장이 80%차지
 - * 인터넷 확대('00년 5% → '11년 41%)로 인한 이러닝 이용자 급증
- 교육시장에 대해 엄격한 관리통제 적용, 세부적인 법규·정책 미비

* GIA(2012) eLearning -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해외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KOCCA,2011)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 [참고] 이러닝 산업 주요 통계 자료

참고

이러닝 산업 주요 통계(최근 3개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매출액 (전년비증가율)		2조 4,513억원(9.2%)	2조7,478억원(12.1%)	2조 9,471억원(7.3%)
분야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16,778억원 ▪(콘텐츠) 5,383억원 ▪(솔루션) 2,35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19,956억원 ▪(콘텐츠) 5,155억원 ▪(솔루션) 2,36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20,902억원 ▪(콘텐츠) 5,865억원 ▪(솔루션) 2,704억원
사업자수		1,656 개	1,614 개	1,649 개
서비스(%)		- 1,114(67.3%)	- 1,052(65.2%)	- 1,073(65.0%)
콘텐츠(%)		- 368(22.2%)	- 375(23.2%)	- 382(23.2%)
솔루션(%)		- 174(10.5%)	- 187(11.6%)	- 194(11.8%)
사업자당 평균매출		14.8억	17.02억	17.87억
이러닝산업종사자수		25,182명	24,957명	25,843명
개 인 이 용 현 황	지출액(백만원)	1,093,016	1,102,586	1,256,430
	이러닝이용률	52.8%	53.3%	57.1%
	연령대별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세) 38.5%, ▪(8~19세) 74.5% ▪(20대) 67.9% ▪(30대) 44.9% ▪(40대) 41.6% ▪(50대 이상) 2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세) 43.2%, ▪(8~19세) 79.7% ▪(20대) 71.7% ▪(30대) 49.6% ▪(40대) 42.3% ▪(50대 이상) 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세) 44.3%, ▪(8~19세) 80.2% ▪(20대) 73.4% ▪(30대) 54.8% ▪(40대) 47.5% ▪(50대 이상) 32.7%
	3대이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학습 (39.5%) ▪교과과정 (33.1%) ▪자격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학습 (39.1%) ▪교과과정 (27.6%) ▪자격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학습 (25.3%) ▪자격 (14.2%) ▪교과과정 (14.2%)
	3대이용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사이트 (65.5%) ▪교육방송 (29.9%) ▪CD 등 저장매체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사이트 (61.4%) ▪교육방송 (32.4%) ▪CD 등 저장매체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사이트 (63.7%) ▪교육방송 (27.7%) ▪CD 등 저장매체 (4.5%)
사 업 체 이 용 현 황	지출액 (전년비증가율)	1,075,645백만원(11.7%)	1,189,963백만원(10.6%)	1,284,258백만원(7.9%)
	기업규모별 이러닝도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인 이상) 63.0% (300인 미만) 4.1% - 9명이하 : 3.0% - 10~49명 : 16.7% - 50~299명 : 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인 이상) 64.2% (300인 미만) 5.3% - 9명이하 : 4.1% - 10~49명 : 18.2% - 50~299명 : 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인 이상) 65.1% (300인 미만) 5.4% - 9명이하 : 4.3% - 10~49명 : 18.4% - 50~299명 : 37.8%
	3대이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51.4%) ▪ 외국어 (12.9%) ▪ 정보기술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45.3%) ▪ 외국어 (12.9%) ▪ 정보기술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56.6%) ▪ 자격 (10.3%) ▪ 외국어 (8.6%)
정규교육기관 지출액		127,540백만원	136,722백만원	144,328백만원
도입률		82.3%	85.9%	86.2%
정부공공기관 지출액		165,315백만원	175,062백만원	176,126백만원
도입률		78.9%	77.3%	77.8%

제 조 업 소 프 트 파 워 강 화 지 원 (신 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	1,000	1,000	순증

* 사업코드 : 3600-3688-305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창의산업정책과(조영신, 044-203-4360), 사무관(우성훈, 436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2. 사업목적

- 글로벌 제조업 경쟁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과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지원·강화

※ 제조업 소프트웨어 : 지식자본 中 제품 부가가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기획·설계(디자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등) 등 의미

- 산업 시대와 달리,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설계·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이 제조업 가치사슬을 지배(Smile Curve 이론)
- 제조기술과 품질이 평준화·표준화되면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창의적 기획·기능 등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부각

* 사례 : 애플 아이폰, 테슬라 전기차, 구글 자율주행차, Zipcar 카셰어링 등

-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확산

※ 공장없는 제조기업(Factoryless Goods Producers) : 부품, 완제품 조립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웨어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그러나 우리 주력업종의 경우에도, 선진국 대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뒤쳐져 있으며, 전문기업數, 투자규모, 고급 인력 등 대부분 영역에서 열위

* 해양·화학플랜트 분야 전체 공정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은 全無하고, 부분공정 기본설계가 가능한 기업도 중소기업의 10여개社에 불과(엔지니어링협회, '12년)

* 美·英·獨 등은 소프트웨어 투자가 하드웨어의 1.5-2배 수준인 반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투자는 하드웨어의 1/3 수준(OECD)

- 특히, 중소 제조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여력도 부족하여 자체 역량 강화가 힘든 것이 현실

<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력 수준 (성균관대 창의적설계연구소, '13.6) >

업 종	기획	설 계			생 산	유통
		개념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플랜트·건설	○	○	●	●	●	●
해양플랜트	○	○	○	●	●	●
기계·장비	●	●	●	●	●	●
자동차·조선	●	●	●	●	●	●
IT 제품	●	●	●	●	●	●

○ 이에 따라, 지식자본에 기반한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급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

○ 따라서, 同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 목적을 추구

- ① 주력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촉진하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우위를 강화
- ②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를 도모
- ③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공장 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400백만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사례 >

- 글로벌기업 사례 : 애플, 나이키, H&M, 유니클로 등
- 한국 기업 사례
 - (M社) 기존 디자인 컨설팅 시장에서 벗어나 자체 상품(USB 선풍기)을 기획하여 설계-사출-부품-조립(총 5개 기업 내외)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아웃소싱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 중
 - (T社) 차량용·산업용 엔진 설계·개발 용역전문업체, 버스 연료 절감 장치를 설계·개발하고, 부품제조를 아웃소싱하여 서울시에 납품

(세부내용)

-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생산·제조 시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및 전문 제조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Test-bed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개요)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 Test-Bed 플랫폼'은 전문제조기업 매칭, 생산·제조 컨설팅, 요구 스펙 구현을 위한 Pilot 생산, 애로해결 지원 등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생산·제조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 (구축) 전문 제조기업 현황 및 제조공정 전문가 DB구축을 통해 제조 아웃소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 전문기업 매칭 프로그램 기획·운영
- (운용) 전문가를 활용하여 생산·제조 시 애로사항 컨설팅 및 요구 스펙 검증, 필요시 최초 아웃소싱 비용 등을 지원

(산출근거)

-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 Test-bed 플랫폼 구축: 200백만원
- 제조 전문기업 현황(예: 가동률, 제조영역(주조, 단조 등)) 및 제조 공정별 전문가 등에 대한 DB 구축 : 150백만원
- 제조전문기업 매칭 지원(지원기업 선정, 평가, 매칭 등) : 50백만원

- 제조 애로기술 컨설팅을 위한 Test-bed 플랫폼 운용 : 200백만원
- 제조 애로사항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0백만원(4개 기업 X 10백만원,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제품 요구 스펙 구현 Pilot test-bed 운영 및 필요시 최초 아웃소싱 비용 지원 등 : 160백만원(4개 기업 X 40백만원,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② 중소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 600백만원

(세부내용)

-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요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매칭 및 활용,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조-소프트웨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산출근거)

-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활용 지원 : 500백만원
-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우수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매칭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서비스 구입비용 보조 : 400백만원 (10개 기업 X 평균 40백만원,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제조기업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전문가 매칭 컨설팅 : 100백만원(10개 기업 X 평균 10백만원,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웃소싱 지원 대상 예시 >

- ①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서 체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특화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 ② 제품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CAE, Simulation 등 디지털 디자인 SW 활용을 위한 아웃소싱
- ③ 제품 컨셉 및 서비스 디자인 아웃소싱
- ④ 제품 스마트화(電裝化)에 대응하기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 아웃소싱

- 중소제조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100백만원
-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포트폴리오 구축 및 제조기업 니즈 조사·분석: 70백만원
- 제조-소프트웨어 협력 네트워크 운영(우수사례 발굴·확산, 소프트웨어 세미나 개최 등) :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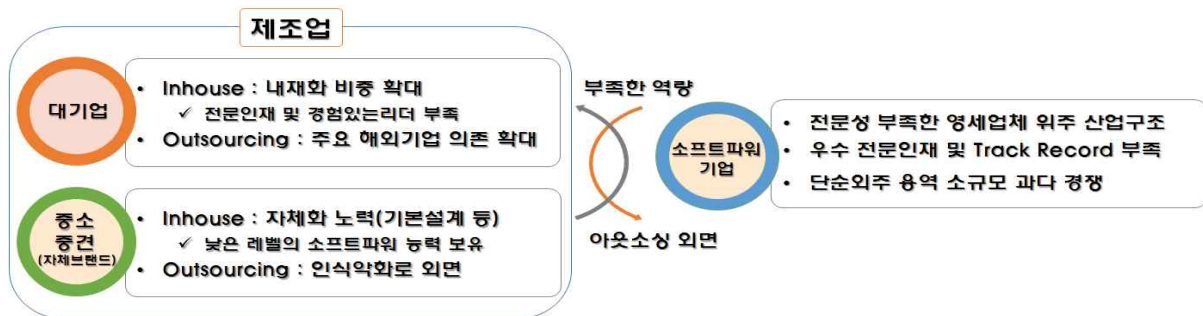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 ‘공장없는 제조기업’은 선진국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
 - 애플, 퀄컴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없는 제조기업은 미국내 GDP 9,000억불, 고용 193만명을 담당(NBER, 2013)
 - 영국은 자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지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영국과학청, 2013)
- ‘공장없는 제조기업’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
 - R&D, 사업화 등 전통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은 구비되어 있으나, 제조 아웃소싱을 위한 단계별 기업 정보(특징)와 매칭 서비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초기비용 지원 등이 부재

(중소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일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들(2, 3차 협력업체)은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이 취약
- * (예) 중소기업 S社の 경우,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을 활용(외주), 고가의 독일산 장비(10억원)를 대신할 국산 장비(1억원)를 개발하여 원가절감 및 매출 급성장을 실현

- 제조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내재화하거나 해외 아웃소싱에 주력
- 중소 제조기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부족, 투자 여력의 한계로 아웃소싱에 소극적*이며, 우수한 소프트웨어 역량 보유자 확보에도 애로 호소
- * 수요 제조기업의 자금 부족 → 저가 발주 및 저가 수주(과다 경쟁) → 결과물의 질적 저하 →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인식 악화
- 제조 기업과의 갑을 관계 속에서 영세한 소프트웨어 전문 서비스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성장 기반도 취약



- 제조기업의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
-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값주기,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과 매칭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	-	1,000	1,000	순증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	400	400	순증
▪ 중소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상생협력 기반구축			600	600	순증
☐ 비목			1,000	1,000	순증
▪ 출연금(350-01)	-	-	1,000	1,0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조업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소방위적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소프트웨어 활용 신산업 육성
- '15년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지원 기업 확대를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10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4억원 ▪ 중소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상생협력 기반구축 : 6억원
'16	8.8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3.5억원 ▪ 중소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상생협력 기반구축 : 5.3억원
'17	9.5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3.8억원 ▪ 중소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상생협력 기반구축 : 5.7억원
'18	8.08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3억원 ▪ 중소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상생협력 기반구축 : 5.02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신산업의 지원),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등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5조(엔지니어링 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등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출연) 등

○ 추진경위

-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발표 ('13.7월, 경제장관회의)
- 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 발표 ('13.12월, 경제장관회의)
- VIP, 우리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제안 ('14.6월)
-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대책 등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발표 ('14.6월)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의 창조경제 구현 과제에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 포함 ('14.7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 지원	-	-	-	-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리스본 조약 체결
 - 2007년 EU 공동 R&D 펀드인 <ERA-net>과 <ETP : European Technology Platform>를 통한 화학, 자동차 등 전 제조업 및 ICT 산업 영역의 대형연구 추진

- 특히, 지식재산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화 등 주요 소프트웨어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ARTEMIS>를 설립
- 모든 제조산업에 걸쳐 생산 과정상 비용절감이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독일) Industry 4.0

- 독일 산업 부흥 정책인 'High-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 End-to-End 엔지니어링을 위해 대·중·소 협력업체간의 파트너십 및 상생모델을 구축
- 독일 정부는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7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 7대 과제: 혁신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창업·융자 지원, 해외시장 진출, 자금조달 기회 개선, 에너지 자원 확보, 행정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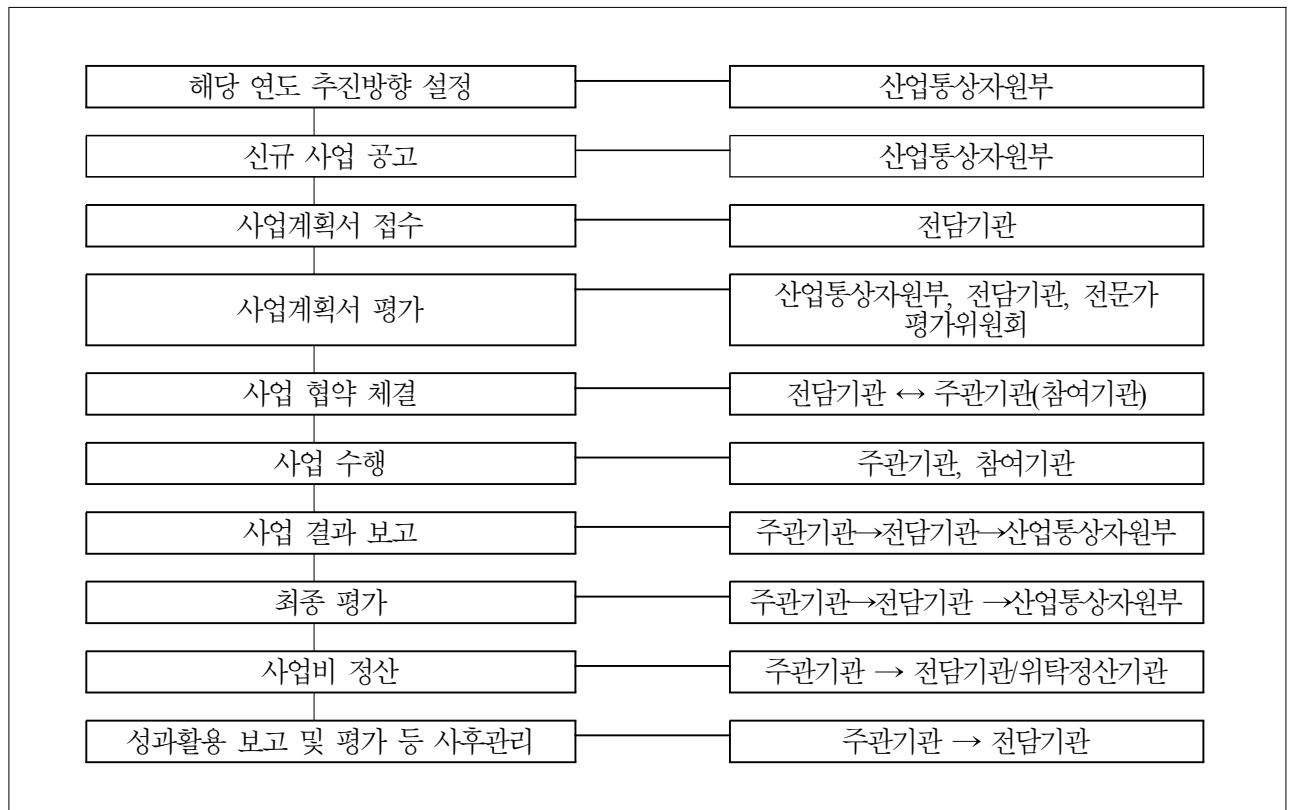
○ (일본) 모노즈쿠리 고도화 정책

- 2006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조업 실물의 움직임에 반영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부품 및 가공기술(기획·설계 포함) 보유의 모노즈쿠리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 (영국) Make it in Great Britain

- 제조분야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적재산권 등의 확보를 추진 (2008년)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며, '15년 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님

6. 참고자료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제조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하여 제조 경쟁력을 고도화

○ 제조업과 IT·SW,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간 융·복합이 확산 중이고, 3D프린팅, 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생산방식이 등장

○ 또한, 소프트웨어 역량(기획·설계, R&D, 디자인 등)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장없는 기업’이 등장

* 예) 애플, 나이키, H&M : 기획·설계·디자인과 판매·마케팅은 자사에서 수행하며, 전문제조기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

(제조업→IT화) 지멘스는 전자화(Electrification)·자동화(Automation)·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모토 하에 ‘Digital Factory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

(IT→제조업화) 구글(무인자동차 개발), 페이스북(드론 제조업체 인수), 애플(고급헤드폰 제조업체 인수)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제조업으로 영역 확장

(혁신형 창업) 美 실리콘벨리에서 창업한 테슬라는 ‘포르쉐보다 빠르고 한번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하여 자동차 산업 변혁을 주도

□ 하지만,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은 소프트웨어 인식부족, 기업규모 한계 및 전문인력 취약 등으로 소프트웨어 내재화에 한계

○ 지식·경험을 축적한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 부족하며, 전문기업들은 단순 외주용역에만 집중하는 내수형 중소기업이 난립

○ 제품 기획·설계에 기업의 혁신역량을 투사하기 위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인재 부족

- 청년 고급 인력은 중소기업을 기피,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있는 인재도 대기업, 해외기업으로 이직을 희망

* 대기업의 고급 소프트웨어 퇴직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2) 현황 및 추진 방향

□ 국내 산업 현황

< 주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현황 >

구분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시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30억 달러 ○ 국내시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0억 달러 ○ 국내시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52억 달러 ○ 국내시장('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8억 달러
대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英) AM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40개국에 지사를 설치, 2만8천명의 인력 보유 및 엔지니어링 분야 매출 규모는 약 700억불 ○ (韓) 삼성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2백명 인력 보유 및 매출은 약 10억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ID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명의 인력 보유 매출규모는 약 1억불 ○ (韓) 뮈샤 (Muc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명 인력 보유 및 매출은 약 700백만불 (100% 제품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Qualco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6천명의 인력 보유 매출규모는 약 191억불 ○ (韓) (주)실리콘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4명 인력 보유 및 매출은 약 5억불
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들은 低수익 高리스크 영역에서는 강세인 반면, 고부가가치 영역은 매우 취약 * 더불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후발국의 도약으로 기존 강점분야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장은 단순 스타일링에서 벗어나 제품의 컨셉 설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제품·서비스의 기획 중심으로 변화 중 * 하지만,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은 대부분 영세 기업으로 여전히 단순 스타일링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 역량이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약 400여개 기업이 활동중이나 대부분 일반 SW 개발·판매도 병행 중으로 핵심 분야 기술력 축적은 부족하여 핵심 임베디드 SW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기술수준 :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

○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영세성 및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미약하여 국내 시장 대부분을 해외기업이 독점

- 주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기업대비 기술수준이 취약

*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수준 : 엔지니어링 (70~85%), 디자인 (87.1%), 임베디드SW (77%)

- * (엔지니어링) '12년 3,635개, 전체 기업중 매출 30억원 이상, 1인당 매출액 1억 이상인 기업은 367개사에 불과
- * (디자인) '12년 3,982개, 대부분 전문기업 인력이 3~5인 수준
- * (임베디드 SW) 국내 약 500여개 기업이 활동중이나 대부분 일반 SW 개발·판매도 병행중으로 핵심 분야 기술력 축적은 부족

○ 同분야는 전문지식·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등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전통 제조업과는 달리 단기간 추격이 어려운 업종

-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 구축 및 지속적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경쟁력 확보에 노력이 필요

3)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구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두뇌전문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목적	·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경쟁력 및 중소제조 기업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지원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두뇌산업의 전문기업을 선정·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고급 일자리 창출	· 중소, 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
지원 분야/대상	· 중소제조기업 (2·3차 제조 협력업체, 최종재 생산·제조업체)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 고급두뇌 산업 분야 (R&D 지원)	· 전 산업분야
특징	·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시장 중심 소프트파워 수요-공급 기업 지원	· 우수 기업 선정을 통한 집중 육성 지원	·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및 기술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4) 추진 경위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14.7.24일 발표)의 창조경제 구현 과제(3. 경제혁신 內)의 세부과제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 포함
-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 추진 전략 및 VIP 간담회 등 현 정부추진 정책의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 보고(발표)일시 및 대상 : 2013. 7월 , 경제관계장관회의
 - 주요 연관 내용
 - '고급두뇌 역량의 전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제조업의 스마트화(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 강화) 촉진
 - '고급두뇌 역량 강화'
 - * 고급두뇌 인력 및 기업 역량 제고를 통한 고급두뇌 역량 강화 추진
 - '고급두뇌 기업 육성 방안(산업통상자원부)'
 - 보고(발표)일시 및 대상 : 2013. 12월 , 경제관계장관회의
 - 주요 연관 내용
 -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
 - * 고급두뇌 기업의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VIP 발표)
 - 보고(발표)일시 및 대상 : 2014. 6월 ,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 주요 연관 내용
 - '우리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조지원 서비스업과 소재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프트파워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통상자원부)'

- 보고(발표)일시 및 대상 : 2014. 6월 ,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 주요 연관 내용

·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의 소프트 파워 강화 전략 발표

○ '제조혁신 드림팀 발족'(산업통상자원부)'

- 보고(발표)일시 및 대상 : 2014. 7월 ,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 발족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민관 관계자 26명으로구성

- 주요 연관 내용

· '8대 과제 -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 '선제적 미래투자 추진'

*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달성을 위한 8대 과제 중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 산업계는 3대 핵심 분야 중 '혁신'에서디자인 등 소프트파워 영역의 선제적 미래 투자 추진을 제시

디자인산업진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디자인산업진흥	16,035	14,540	11,295	△3,245	△22.3

* 사업코드 : 110-114-3600-3647-301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디자인생활산업과장(이종석, 044-203-4370), 사무관(류재형, 044-203-437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디자인진흥원

2. 사업목적

- 디자인산업의 제도적 육성기반 마련 및 전략연구 등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개발을 통해 디자인산업의 선진화 촉진
- 디자인 문화의 확산 및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역량강화 및 디자인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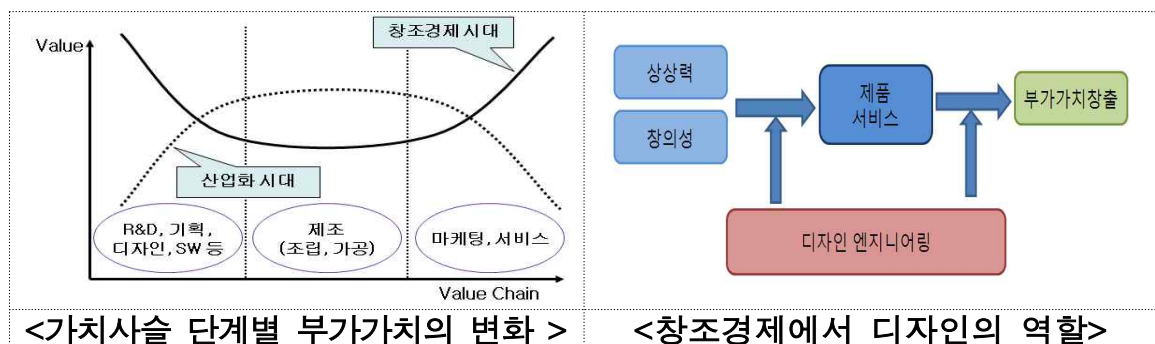
- ① **디자인혁신기반구축(1,540백만원)** : 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통계조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비
 - 산출내역
 - 디자인정책연구 190백만원 + 디자인산업통계조사 200백만원 + 디자인융합포럼 50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영 800백만원 + 디자인 전략연구소 운영 300백만원

- ② **K-DESIGN 진흥(2,295백만원)** :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등 우수디자인 개발·활용촉진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전시·홍보 사업비
- 산출내역
 - 디자인코리아 1,700백만원 + 디자인전시 및 홍보 400백만원 + 우수디자인상품선정 95백만원 + K-DESIGN Archive 구축 100백만원
- ③ **신시장창출(990백만원)** : 장래 유망분야인 서비스디자인 육성을 위한 초기 시장 구축 및 해외 네트워크 협력 등 국제교류 사업비
- 산출내역
 - 서비스디자인혁신 800백만원 + 국제협력 190백만원
- ④ **창의기업디자인전주기지원(2,945백만원)** :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사업비
- 산출내역
 - 디자인 공정거래 기반구축 630백만원 +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 지원 800백만원 + 우수디자인 해외진출 1,515백만원
- ⑤ **지역디자인 활성화(3,525백만원)** : 디자인 산업의 수도권 편중해소를 위해 지역디자인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지역산업단지 등에 디자인 컨설팅 제공
- 산출내역
 - 광역권디자인 지원 1,625백만원 + 지역디자인 기반구축 1,9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창조경제*의 경쟁원천은 제품의 조립·가공공정이 아닌 R&D,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 가치사슬 상단의 활동이 좌우하는 구조

* 노동 및 시설투자 위주의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창의성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 디자인은 높은 부가가치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해 성장 잠재력 하락 및 저성장에 직면한 국내경제에 새로운 동력 제공
 - 디자인 투자의 매출 증대효과는 일반 R&D의 3배 수준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 비해 약 2배의 부가가치를 창출
 - * 투자대비 매출 증대 효과(디자인진흥원, '10) → (디자인) 14.4배, (기술 R&D) 5배
 - *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한국은행, '10) : (디자인) 67.5, (반도체) 30.8, (자동차) 24.5
 - 디자인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핵심두뇌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0 한국은행) : (디자인) 16.0, (자동차) 7.9, (반도체) 4.8
- 디자인산업은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직접적·가시적 성과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 인프라로서의 접근 및 지원이 필요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디자인산업진흥	16,035	14,540	11,295	△3,245	△22.3
▪ 디자인혁신기반구축	1,320	1,270 ·디자인정책연구 200 ·디자인산업통계조사 200 ·디자인융합포럼 50 ·정보시스템운영 820	1,540 ·디자인정책연구 190 ·디자인산업통계조사 200 ·디자인융합포럼 50 ·정보시스템운영 800 ·디자인전략연구소 운영 300	270	21.3
▪ K-DESIGN 진흥	1,700	2,320 ·디자인코리아 1,800 ·디자인전시 및 홍보 320 ·우수디자인상품선정 100 ·미래패키징전람회 100	2,295 ·디자인코리아 1,700 ·디자인전시 및 홍보 400 ·우수디자인상품선정 95 ·K-DESIGN Archive 구축 100	△25	△1.1
▪ 신시장창출	1,000	700 ·서비스디자인혁신 500 ·국제협력 200	990 ·서비스디자인혁신 800 ·국제협력 190	290	41.4
▪ 창의기업디자인 전주기지원	2,215	2,250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350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500 ·우수디자인해외진출 1,400	2,945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630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800 ·우수디자인해외진출 1,515	695	30.9
▪ 지역디자인활성화	1,500	3,500 ·광역권디자인지원 1,500 ·지역디자인기반구축 2,000	3,525 ·광역권디자인지원 1,625 ·지역디자인기반구축 1,900	25	0.7
▪ 디자인전략연구소 구축	8,300	4,500	-	△4,500	△100
□ 비목(합계)	16,035	14,540	11,295	△3,245	△22.3
▪ 출연	16,035	14,540	11,295	△3,245	△22.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중장기 전략목표	실천 과제
○ 디자인주도의 산업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융합 R&D시스템 확산 • 중소기업 디자인혁신 2020 프로젝트 • 전문 엔지니어링디자인 인력 양성
○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 디자인 신시장 창출 • 권리보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체제정비 및 위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고도화 •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 디자인 인식제고 및 국내외 수요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5.4	▪ 디자인혁신기반구축(12.7) + K-DESIGN 진흥(23.2) + 신시장창출(7) + 창의기업 디자인전주기지원(22.5) + 지역디자인활성화(35) + 디자인전략연구소구축(45)
'15	112.9	▪ 디자인혁신기반구축(15.4) + K-DESIGN 진흥(22.9) + 신시장창출(9.9) + 창의기업 디자인전주기지원(29.4) + 지역디자인활성화(35.3)
'16	99.4	▪ 디자인혁신기반구축(15.5) + K-DESIGN 진흥(20) + 신시장창출(11.5) + 창의기업 디자인전주기지원(22.4) + 지역디자인활성화(30)
'17	107.3	▪ 디자인혁신기반구축(23.5) + K-DESIGN 진흥(25) + 신시장창출(12.7) + 창의기업 디자인전주기지원(26.1) + 지역디자인활성화(20)
'18	91.2	▪ 디자인혁신기반구축(19.5) + K-DESIGN 진흥(21.5) + 신시장창출(10.7) + 창의기업 디자인전주기지원(23.5) + 지역디자인활성화(1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2조 등

* (제12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 시상·전람회, (제6조) GD, (제8조 및 제10조의2) 통계, (제9조) 전문회사

○ 추진경위

- 1998년 :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자인산업 육성” 발표

- 2002년 : 제4회 디자인진흥대회 “디자인코리아 2010” 선포
- 2005년 : 산자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보고(경제정책조정회의)
- 2008년 : 신정부 중점추진 국정과제(세계적인 국가브랜드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2009년 : “(주)기술대한민국 브랜드 마케팅방안” VIP 보고(국가브랜드위원회 3차 보고 회의)
- 2011년 : 경제정책조정회의시 “디자인산업발전방안” 발표
- 2012년 : “디자인 산업융합 발전전략” 발표(‘12.11.29)
- 2013년 : “디자인 산업융합전략 추진계획” 발표(‘13.11.26)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디자인산업진흥	52.2	109.3	162.4	145.4	11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재정절감 차원의 '13년 2억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2.2	-	-	52.2	52.2		
	(52.2)	()	()	(52.2)	(52.2)	()	()
'12년	109.3	-	-	109.3	109.3		
	(109.3)	()	()	(109.3)	(109.3)	()	()
'13년	162.4	-	-	162.4	160.4		2
	(162.4)	()	()	(162.4)	(160.4)	()	(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2013년 회계연도 산업위 결산 보고서) 지적
 - (AT&D Korea) 중소기업 대상 직접적인 지원 및 성과제고 방안 강구 필요
 - (디자인전략연구소 구축)집행실적 제고 및 예산집행 관리·감독강화 필요
 - (광역권디자인 지원)사업집행구조 개선필요
 - (성과관리)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 2013년도 평가결과(종합점수) 49.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	주요 디자인 정책
<p>영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을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le Britannia(전통과 보수) → Cool Britannia(혁신과 창조) · 디자인 교육(Design & Technology) 의무화(5~16세) ·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Red('04)와 Dott('07) 프로젝트 실시 · 항공·전자 등 하이테크산업에 디자인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창출
<p>핀란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디자인 활용 증대에 2,700만 유로 디자인프로그램 시행 · 디자인을 기업의 전략적 기획활동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토대학(Aalto University) 內 디자인팩토리, 스타트업 사우나 운영
<p>덴마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정책수립, 집행기관 다원화를 통해 전문성·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ign Research Center : 국제 최고 수준의 디자인 지식창출연구 * Danish Design Center : 디자인 전문가와 디자인 사용기업 연계 * Knowledge Center for Design : 디자인 지식, 정보 제공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인식제고(G마크), 키즈디자인 협의회 설립('06.4) · 감성가치 제고 이니셔티브('07.5, 경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기능, 신뢰도, 가격의 가치외 감성가치를 강조 · 디자인 공학 로드맵을 통한 기술-디자인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관점을 연계하는 인간 중심의 토탈디자인 강조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어워드, 해외 유학프로그램, 차이나 디자인마켓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市 디자인 예산은 한국(430억원, '12년 기준)의 2배 이상 · 베이징, 상하이 등 5개 도시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DRC 50,000m², 상하이 SIDC 20,000m² * 참고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10,705m²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중 지원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1977. 12. 31
법률 제3,070호]

개정 1991. 1. 14 법률 제4,321호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1호
전문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14호
개정 1999. 2. 5 법률 제5,773호
일부개정 2001. 2. 3 법률 제6,415호
일부개정 2005. 5. 26 법률 제7,506호
일부개정 2006. 4. 28 법률 제7,949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9. 5. 21 법률 제9,688호
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38호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608호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생활산업경쟁력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5,800	11,695	4,940	△6,755	△57.8

* 사업코드 : 110-114-3500-3535-305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디자인생활산업과장(이종석, 044-203-4370), 사무관(홍경태, 437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계속
총사업비	해 당없음
사업규모	해 당없음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50:50, 정액), 출연
사업시행주체	자자체[대구광역시(북구), 전라북도(익산시), 경기도(포천시, 고양시)], 한국디자인진흥원

2. 사업목적

- 생활산업은 IT·컨텐츠·디자인 등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고도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획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고부가가치 창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안경, 주얼리, 가구 등에 대한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산업 지식기반 구축 및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육성

* 부가가치율 : 생활산업 40.6%, 제조업 평균 32.0%(13년, 산업연구원)

- 또한 전자·자동차 등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특정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으로도 활용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아파트형표준공장, 디자인기술지원센터) 건축공사비 3,000백만원

※ 설계용역 완료('14.7), 착공('14.12), 준공('16.6)

< 익산시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

□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2~'16(5년)
- 사업규모 : 부지 12,734㎡ / 건물 8,600㎡
- 사업내용 : 아파트형 표준공장(3,538㎡), 디자인 기술지원센터(5,062㎡)
* 2동 모두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193억원(국비 137, 지방비 56)
- 추진계획 : 설계용역완료('14.7), 착공('14.12), 준공('16.6)

② 안경토탈비즈니스센터구축

- 안경토탈비즈니스센터 기업지원 선진화 장비구축(시제품제작, 시생산, 시험검사, 공동연구장비) 1,000백만원(17중17대)

※ 전국 안경제조업 사업체 84.7%, 종사자 76.5%가 대구시 집적('12년 통계청)

< 대구 안경토탈 비즈니스센터 >

- 사업기간: '12~'15(4년)
-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 건물 연면적 10,200㎡
- 사업내용: 안경가공센터(기업지원), 아파트형공장 구축
-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99, 지방비 99)
- 추진계획: 착공('14.1), 준공('14.12), 장비구축('15.6)
* '15년 기업지원 선진화 장비구축(국비10억, 지방비10억) 추진으로 총사업비(178억→198억), 사업기간('12~'14 → '12~'15) 변경

③ 가구유통판매시설 지원

- 국내 가구산업의 중심인 경기도 지역내 가구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경기도 가구센터 건립 지원 : 200백만원

* 경기도는 우리나라 가구제조업 생산의 70%, 사업체수의 42%, 종사자수의 47% 차지

- 경기도 가구센터(공동전시판매장/물류센터) 건립 지원 : 200백만원

④ 생활산업지식기반구축

- 정책수립의 근간인 주요 업종별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통계조사·분석, 정책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협력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생활산업 명품 발굴·육성 등 : 240백만원

* 생산 및 시장개요, 세계 생활산업 업종별 동향, 우리나라 생활산업 공급업체(생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현황, 수입·소비 동향 및 교역 추세, 주요 경쟁국 시장현황, 우리나라와 경쟁대상국의 경쟁력분석, 정부 및 업계의 대응방안 등 통계 구축

- 업종별 통계조사 : 160백만원(2개업종×80백만원)
 - * 6대전락업종(가구, 완구, 안경, 시계·주얼리, 레저용품, 가방)중 시급성·중요도·산업파급 효과 등을 고려 2개업종/년 통계조사
 - ※ (통계조사 사례) 중소기업실태조사 8.1억, 1인창업기업실태조사 1.2억, 로봇산업실태조사 0.5억
- 생활산업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운영 등을 통한 경쟁력 개선과제 도출 및 협력거버넌스 구축 : 30백만원 (생활산업 업종별 6개분과 × 5백만원)
- 글로벌 생활산업 명품 공모, 전문가 심사·평가·선정 사후관리 홍보 등 운영 : 50백만원

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안전 및 기능개선

-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경산업 “허브기관” 위상 제고
 - 전기설비공사, 건축보수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시설개선 : 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고급제품 수요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생활산업 시장규모는 확대중이나, 급격한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는 악화,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
 - * ‘12년 국내시장규모 49조원(’03년 대비 1.8배 증가, 10년간 연평균증가율 7%)
 - * 연평균증가율(00~12년) : 수입 13.5%, 수출 0.7%
 - * 05년 무역수지 적자전환 후 적자 폭 확대(’05년 6억\$→’12년 41억\$)
 -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96 → ’11) : (한국) 7.0 → 1.8 vs (중국) 10.8 → 28.7
- 내수·수출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저가제품 위주의 생산·수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고도화가 절실
- 생활산업은 IT·컨텐츠·디자인 등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고도화가 가능하며, 획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 * 부가가치율 : 생활산업 40.6%, 제조업 평균 32.0%(13년, 산업연구원)
-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시대의 창의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 생활산업 10인 미만 업체 88%, 종사자수 16만명
 - * 고용창출효과 : 생활산업 14.3명 vs 제조업 평균 5.6명(산업연구원, 13년)

- 또한 전자·자동차 등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특정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으로도 활용가능
-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생활산업 기업들은 영세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디자인·R&D 투자와 고도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 저조
- 정부 역시 그간 성숙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체계적 정책지원이 부족했고,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 실태자료 등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 미흡
- ⇒ 생활산업 비전 부여와 융합을 위한 협력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며, 집중·종합 지원을 통한 글로벌 명품 Best Practice 육성·확산도 시급
- ⇒ 생활산업 집적화 유도 및 기업의 공동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생활산업경쟁력강화	15,800	11,695	4,940	△6,755	△57.8
▪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12,200	7,395	3,000	△4,395	△59.4
▪ 안경토탈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	3,600	4,300	1,000	△3,300	△76.7
▪ 가구유통판매시설 지원	0	0	200	200	순증
▪ 생활산업지식기반 구축	0	0	240	240	순증
▪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안전 및 기능개선	0	0	500	500	순증
☐ 비목	15,800	11,695	4,940	△6,755	△57.8
▪ 지지체자본보조(330-03)	15,800	11,695	4,700	△6,995	△59.8
▪ 출연(350-01)	0	0	240	24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협업·성장 생태계 구축)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되거나 기존기업의 혁신 소스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기업 및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미래생활 디자인 지원센터) 생활산업 협업·성장 생태계內 기업 및 지원기관간 코디네이션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미래생활 디자인 지원센터”를 구축

- (생활산업 재인식 기반 마련) 민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혁신 캠페인을 추진
- (체계적 통계 조사) 생활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업종별 DB를 구축
- (글로벌 생활명품 발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및 수요변화에 부합하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 있는 글로벌 생활명품 집중 육성 ('18년까지 100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6.9	▪ 안경토탈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43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 73.9
'15	49.4	▪ 안경토탈비즈니스지원센터 구축 10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 30 가구유통판매시설지원 2 생활산업지식기반구축 2.4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안전 및 기능개선 5
'16	43.4	▪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 41 생활산업지식기반구축 2.4
'17	46.9	▪ 생활산업지식기반구축 10 글로벌생활명품기업 발굴육성 36.9
'18	39.9	▪ 생활산업지식기반구축 10 글로벌생활명품기업 발굴육성 29.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140대 국정과제의 일환 (6. 협력적 기업생태계조성 - 투자유치·U턴기업 지원)
- 추진경위
 - '10. 9월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0. 12월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장관간담회 및 발표
 - '13. 1월 : '전통수공업의 신산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3. 11월 : 디자인 등을 활용한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연구 정책 연구용역(산업연구원)

- '13. 12월~ :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총 670개 공모제품중 4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제품 선정('14.4)·지원중
- '14. 1월~ : 생활산업 업종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14. 10월 : 생활산업고도화 대책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섬유패션산업활성화 기반마련 (숙련집약형패션산업육성)		20	163	116.95	
생활산업경쟁력강화					49.4*

* '15년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숙련집약형패션산업육성'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생활산업경쟁력강화"로 명칭 변경하고 신규 내역사업 추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전북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귀금속클러스터조성) 5억 불용
 - 익산시의 지방비 미확보('13년 12월, 14억중 5억 확보)로 집행금액 5억으로 하향 조정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12년	()	()	()	()	()	()	()
'13년	163			163	158		5
	(163)	()	()	(163)	(3.42)	()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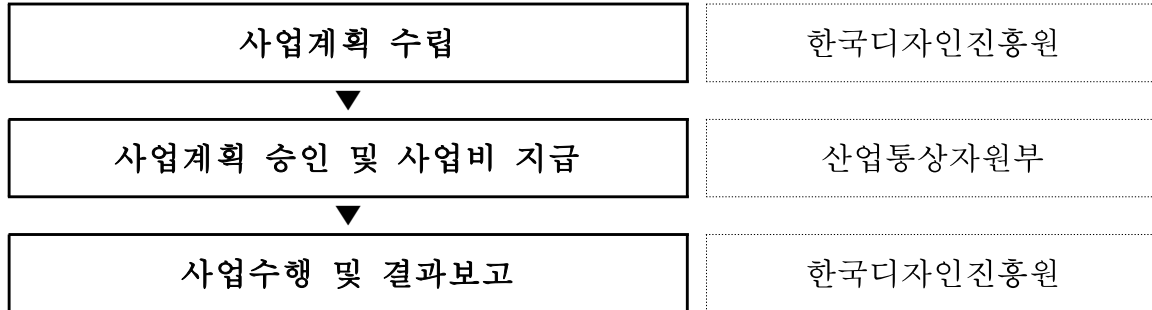
국가	사 례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거버넌스를 바탕으로한 ‘유연 전문화’ 생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70년대 경제적 요동이 증가하고 수요의 가변성이 확대 - 목적 :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연성 있는 전문화 생산(Flexible Specialization)” 추구 - 특징 :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전체 공정과정을 묶어 제품을 기획하고 최종 생산까지 담당하는 ‘오가나이저(organizer)’ 기업 중심으로 촘촘한 네트워크 형성·협력체계 구축 - 성과 :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생활산업(가방, 안경, 의류 등) 등 명품 생산에 특화 되어, Made in Italy 브랜드 가치 급상승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산업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90년 초 인건비 상승, 용지 및 기술자 부족, 운영비 증가 등으로 위기 - 목적 : 가구 수출 인프라 확대 - 특징 : '07년 가구테마공원(IFP) 조성, 단지 내에 가구수출지원센터(IFC)를 설립하여 가구전시, 문의 및 상담, 계약 등이 ‘one-stop’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에 성공 - 성과 : '14 싱가포르 국제가구박람회 33개국 418업체 참여, 방문객 22,496명 기록, 현장 판매계약 약 4억8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4,000억원) 및 약 59억 싱가포르 달러(약 5조원) 후속 거래 체결 예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특화단지 조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내수수요 감소와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가구시장 침체 - 목적 : 일본무역진흥기구 주도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으로 세계에 알려진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가구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유관 분야 네트워킹 서비스와 전문가 지원 - 특징 : 브랜드 신규개발 후속 조치의 부재*로 의도한 목표 달성 실패 <p>* Akio Imamura는 팀 오카와 중심의 산·민·관·학 협력 프로젝트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인한 제품 이미지 구축 실패로 규정</p>

(5) 사업추진절차

-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안경토텔비즈니스센터구축, 가구유통판매시설지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안전 및 기능 개선

예산교부절차	일반적 사업수행절차
<div>예산교부신청 : 지자체</div> <div>↓</div> <div>예산교부신청,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div> <div>↓</div> <div>예산교부결정 : 산업통상자원부</div> <div>↓</div> <div>예산교부 : 산업통상자원부</div> <div>↓</div> <div>예산집행 : 지자체</div> <div>↓</div> <div>예산집행보고 : 지자체</div>	<div>사업추진 : 지자체</div> <div>↓</div> <div>사업추진실적보고 : 지자체</div> <div>↓</div> <div>사업일정보고/검토 : 산업통상자원부</div>
	<p>※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시 협의</p>

- 생활산업 지식기반구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생활산업고도화대책 주요내용

1. 현황 및 추진배경

- 가구, 주얼리, 완구, 주방용품 등 생활산업은 '12년 기준 생산 46조원, 수출 72억달러, 수입 106억달러, 종사자 20만명 수준으로 영세한 편

* 연평균 증가율('03→'12년, %) : (생산) 5.4, (수출) 3.3, (수입) 11.2, (종사자수) △1.4

-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변화 중이며, 창업이 용이하여 창조경제에 부합

⇒ 창조적 융합을 통한 획기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활산업의 재도약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

* 中企 성장, 창조경제, 산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고도화 추진방향 및 과제

- **(추진방향)** 現 생활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분야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 (7대 전략 분야) 가구, 시계·주얼리, 안경, 가방, 완구, 운동레저용품, 신발

☞ (17개 업종군) 수요변화 동인과 고도화 수단을 분석하여 업종군 선정

[가구] 인텔리전트 가구, 첨단 디스플레이 융합 가구

[완구] 스마트 토이, 다기능(교육·치료) 완구, 신소재접목 완구

[안경] 다기능 안경(웨어러블), 신소재 접목 안경, 디자인강화 안경

[시계·주얼리] 모듈형 주얼리, 문화 접목 주얼리, 다기능 시계(웨어러블)

[레저용품] 증강현실 운동기구, 아웃도어 생활용품

[가방] 신소재접목 가방, 에너지세이빙 가방

[신발] 사물인터넷기반 헬스케어 신발, 신소재 접목 신발

- **(세부과제)** 생활산업 강국 도약과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3대 전략과제 추진

- ①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되거나 기존기업의 혁신 소스로 활용되는 협업·성장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화 촉진
- ②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및 수요변화에 부합하고 세계시장에서 성공 가능성 있는 글로벌 생활명품 집중 발굴·육성('18년까지 100개)
- ③ 생활산업 혁신 캠페인을 통해 생활산업 재인식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 통계조사, 업종별 애로사항 해소 등 고도화 기반구축

유통물류기반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유통물류기반조성	1,720	1,300	1,330	30	23

* 사업코드 : 21 - 110 - 00 - 110 - 114 - 3100 -3143 - 302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유통물류과장(신성필, 044-203-4380), 사무관(박주현, 4382/ 권순만, 438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기반 조성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50~100%),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모

2. 사업목적

- 유통·물류 및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
 - 유통산업 프레임을 ‘대립·갈등→상생·협력’으로 전환하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 *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방안 연구,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및 유통·제조업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추진 기반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유통산업 상생발전 기반조성 : 330백만원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및 유통·제조업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330백만원)
 - (상생·협력 포럼 운영 및 상생협력 관련 연구 등 : 280백만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한 포럼 운영 및 상생협력 관련 연구 등
 - * 상생협력 포럼 운영(상생협력 사례조사, 지자체 대상 WS, 포럼·토론회 등) : 80백만원
 - * 내수활성화를 통한 상생문화 확산 등 상생협력 관련 연구 : 200백만원
 - (유통업체 연계 중소기업체 판로개척 지원 : 50백만원) 유통업체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 유통·제조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② 유통산업 실태조사 : 200백만원

- 유통산업 실태조사(200백만원)
 - (실태조사 : 200백만원)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신업체 및 외국계 유통업체 진출현황 조사 등
 - *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신업체 및 외국계 유통업체 진출 현황조사 및 시사점 연구 등

③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기반조성 : 800백만원

- 프랜차이즈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600백만원)
 - (해외시장 정보제공 : 120백만원) 해외진출 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현지 제도·문화 등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시장조사 100백만원 = 유망해외진출 1개국 × 93백만원 + 사업운영비 4백만원 + 전문가활용비 3백만원
 - * 콘텐츠 제작 및 정보제공사이트 운영 20백만원 = 조사 정보 및 업데이트 12개국 × 1.5백만원 + 운영경비 2백만원

- (해외진출 타당성·컨설팅 조사 지원 : 150백만원) 해외진출 수요기업을 선정, 기업별로 진출희망국에 대한 시장분석과 고객분석 등 타당성 평가(F/S) 비용 지원
 - * 해외진출 타당성·컨설팅조사 지원 150백만원 = 5개社×타당성평가비 60백만원×0.5(50% 지원)
- (상표권·지재권 등 등록지원 : 100백만원)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에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록 지원
 - * 상표권·지재권 등 등록지원 100백만원 = 30백만원×6개社×0.5(50%지원) + 사업운영비 5백만원 + 전문가활용비 5백만원
- (해외파트너 투자네트워크 구축 : 230백만원)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현지 투자자와의 파트너계약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해외박람회 등 참가 지원
 - * 박람회 2회 참가 지원: 230백만원 = 부스비용 160백만원 + 컨설턴트 20백만원 + 공동 홍보물·설비 20백만원 + 통역 지원 10백만원 + 사전·사후교육 20백만원
-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기반조성(200백만원)
 -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 150백만원) 프랜차이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지원기반 마련
 - *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정책연구 110백만원
 - * 프랜차이즈 주요 업종별 경기동향지수 개발 40백만원
 - (해외진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50백만원) 국가별 상이한 제도·문화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표준계약서 개발
 - * 마스터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50백만원 = 표준계약서 개발 (현지 법·제도·시장 조사분석 포함) 45백만원 + 회의비 등 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유통산업 패러다임을 대립·갈등 → 상생·협력으로 전환하고,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유통산업의 순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지원 필요

* 유통산업은 GDP(전체의 7.8%)와 고용 측면(전체의 14.6%)에서 우리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갈등이 부각되며 발전시키려는 정책노력은 소홀

○ 프랜차이즈 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내 지원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필요

- 프랜차이즈산업은 창업촉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경쟁 격화, 규제강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프랜차이즈산업 경제적 비중('12년 기준) : 매출 91조원, 점포수 19만개

- 약 30년간 국내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개척 경험, 현지정보 및 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

-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 정책지원 필요

- 한류 확산, 한상 네트워크 등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활용,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체계적 정책지원 필요

* 프랜차이즈는 상품·서비스 표준화, 경영 매뉴얼화 등을 통해 글로벌화가 용이하며, 인력·원부자재의 병행 수출로 채산성 극대화 가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유통물류기반조성	1,720	1,300	1,330	30	2.3
▪ 산업물류인프라구축	220	-	-	-	-
▪ 유통산업 상생발전 기반 조성	-	150	330	180	120.0
▪ 유통산업 실태조사	-	150	200	50	33.3
▪ 프랜차이즈 정책지원	-	-	-	-	-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	1,500	-	-	-	-
▪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기반조성	-	1,000	800	△200	△20.0
☐ 비목	1,720	1,300	1,330	30	2.3
▪ 민간경상보조(320-01)	1,720	1,050	1,130	80	7.2
▪ 연구개발비(260)	-	250	200	△50	△2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민간 자율적으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및 유통·제조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조성
- 「프랜차이즈 세계화 지원방안('13.5월)」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글로벌화가 용이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외식·도소매·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업종의 수출기업화 촉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300	▪ 유통상생발전기반조성(1.5), 실태조사(1.5), 프랜차이즈산업기반조성(10)
'15	1,330	▪ 유통상생발전기반조성(3.3), 실태조사(2), 프랜차이즈산업기반조성(8)
'16	1,170	▪ 유통상생발전기반조성(3.7), 실태조사(2), 프랜차이즈산업기반조성(6)
'17	1,264	▪ 유통상생발전기반조성(4.64), 실태조사(2), 프랜차이즈산업기반조성(6)
'18	1,074	▪ 유통상생발전기반조성(4.24), 실태조사(1.5), 프랜차이즈산업기반조성(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유통산업 상생·발전 기반조성 및 실태조사

- 지원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추진경위

- '10.11월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출점규제 도입(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 '11. 6월 : 출점규제 강화(전통상업보존구역 1km)
- '11.12월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도입(0시~8시)
- '12.11월 :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합의(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13. 1월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강화(0시~10시)
- '13. 3월 : 유통산업연합회 창립총회
- '13.11월 : 제1회 유통산업 주간행사 개최
- '14. 8월 :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14~'18)」 마련

②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기반 조성

○ 지원근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조(실태조사),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제13조(창업 지원),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제17조(자금의 지원)

○ 추진경위

- '09. 1월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 '09. 9월 :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국경위)
- '13. 5월 : 「프랜차이즈 세계화 지원방안」 발표(산업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유통물류기반조성	8	6.25	222	13	13.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월 : 500백만원) '프랜차이즈 정책지원(500백만원)'의 예산배정('13.11.18일)이 늦어져, 관련 사업의 용역 계약 체결 및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	-	-	8	8	-	-
	(8)	(-)	(-)	(8)	(8)	(-)	(-)
'12년	6.25	-	-	6.25	6.25	-	-
	(6.25)	(-)	(-)	(6.25)	(6.25)	(-)	(-)
'13년	22.2	-	-	22.2	17.2	5	-
	(22.2)	(-)	(-)	(22.2)	(17.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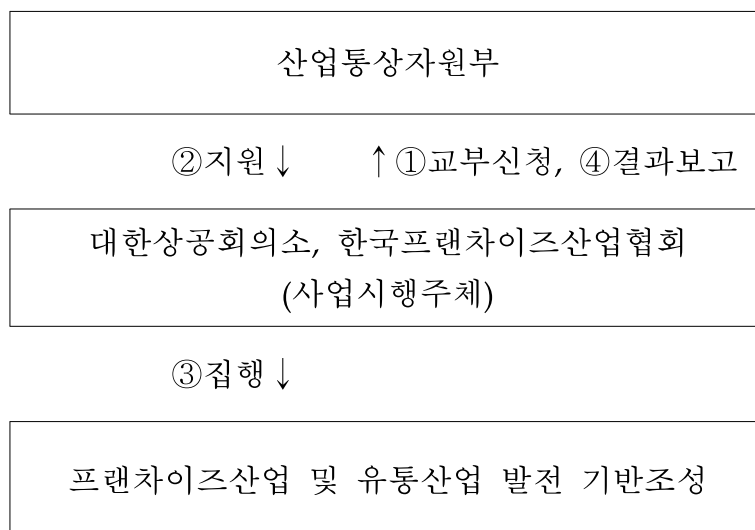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및확산(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85	266	148	△118	44.4

* 사업코드 : 21 - 110 - 00 - 110 - 114 - 3100 -3143 - 307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유통물류과장(신성필, 044-203-4380), 사무관(정해봉, 4384), 주무관(장진호, 43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100%)
사업시행주체	대한상공회의소

2. 사업목적

-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해상품과 위해의약품이 발견되는 즉시 유통 매장에 통보되어 판매 차단되는 시스템의 구축·확산을 통해 소비자 건강 및 상품 안전성 검사 효과 극대화
- (소비자)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필요 없이 안전한 쇼핑이 가능
- (정부) 상품 위해성 검사결과를 유통업체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안전성 검사 효과 극대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중·소유통매장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확산 : 96백만원

- 중소유통사 위해상품차단시스템 확산 지원 : 86백만원
 - 중소유통업체 대상 판매차단시스템 연계 구축(50만원×172개사)
 - * 대상 : 전국에 위치한 165m²(50평) 미만의 기타 종합소매업 매장
 - * 기준 : 인터넷, 윈도우기반의 POS 단말기 구축된 매장에 동 차단시스템 S/W설치
- 운영 및 지원 : 10백만원
 - 중소 미 구축유통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인증 지원
 - * 설명회 개최 및 인증마크 현판제작 : 10백만원

②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52백만원

- 상비약 판매를 위한 교육 등을 이수한 매장에 대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관리자 원격통제기능 개발 : 32백만원
 - 전국 1천여 개 매장 S/W에 대한 관리자 원격통제 기능 개발을 통해 증가하는 안전상비약 판매매장에 대한 시스템 관리 효율화 제고
- 시스템 운영교육(인증서 발급) 및 Help Desk 운영 등 : 20백만원
 - 상비약판매에 따른 부처(복지부) 전달사항, 민원응대, 사후관리 등

□ 지원 필요성

① 중·소매장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필요성

- 멜라민 파동, 폐질환 유발 가습기 살균제 등 빈번한 위해상품 판매사고 발생으로 상품 안전성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 그러나,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위해상품 정보가 별도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유통업체에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상품안전성 점검효과 감소

- 유통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유통매장은 시스템 확산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안심 쇼핑의 기반을 마련

* 위해상품 전담조직 有無 백화점(70%), 대형마트(80%), 편의점(97%), 일반소매점 (0%)

②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필요성

- 약국의 상비의약품 판매가 실시됨('12.11.15~)에 따라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시스템**상 등의 문제로 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 기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지원 대상은 165㎡ 이하의 체인화 편의점 등을 제외한 중소 영세매장에 한하고 있으나, 상비의약품 취급 매장은 매장의 위치, 성격 및 면적 등에 제약 없이 의약품 교육 이수한 24시 운영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해의약품의 판매매장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관리 시스템 및 판매매장 승인 처리 업무, 리콜 회수 시스템 부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85	266	148	△118	△44.4
▪ 중소유통매장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	85	76	96	20	26.3
- 중소매장 시스템 구축	75	66	86	20	30.3
- 설명회 개최 및 확산 지원	10	10	10	-	-
▪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	-	190	52	△138	△72.6
- 관리시스템 개발	-	50	32	△18	36.0
- 시스템 확산 지원 및 관리	-	140	20	△120	△85.7
□ 비목	85	266	148	△118	△44.4
▪ 민간경상보조(320-01)	85	266	148	△118	△44.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 시스템을 더 많은 중소유통매장에 확산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고,
- 이와 관련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식품 및 공산품에도 국제 표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사항이 필요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66	▪ 중소유통매장 시스템 구축·확산(76), 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190)
'15	148	▪ 중소유통매장 시스템 구축·확산(96), 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52)
'16	150	▪ 중소유통매장 시스템 구축·확산(130), 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20)
'17	152	▪ 중소유통매장 시스템 구축·확산(132), 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20)
'18	150	▪ 중소유통매장 시스템 구축·확산(80), 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확산(7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유통산업 상생·발전 기반조성 및 실태조사

○ 지원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 추진경위

- “국민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조치 강구하겠다.” (‘08. 5.22, 대통령님 대국민 담화)
-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더 빨리 조치해야 한다. 유통을 중단하고 검사를 빨리해 결과를 밝혀라.” (‘08. 9.26, 멜라민사태로 대통령님 식약청 방문시)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09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10년)
 -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탑마트를 비롯하여 스타슈퍼, 해가온 등 중소유통매장 등 전국 13천여개 매장에서 매일 763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쇼핑하는 효과 구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정보화)	1	0.85	0.85	2.66	1.4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불용 실적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	-	-	1	1	-	-
	(1)	(-)	(-)	(1)	(1)	(-)	(-)
'12년	0.85	-	-	0.85	0.85	-	-
	(0.85)	(-)	(-)	(0.85)	(0.85)	(-)	(-)
'13년	0.85	-	-	0.85	0.85	-	-
	(0.85)	(-)	(-)	(0.85)	(0.8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67.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위해상품 파동은 국내 시장의 글로벌화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명칭	발생국가	내용	결과 및 조치
멜라민 파동 (2008)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 ■ 중국산 분유에 멜라민을 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 우유 등 멜라민 함유식품 216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조치 ■ 2008년 9월 22일에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멜라민이 포함된 제품들로 인해 신장결석이나 신부전증 환자가 53,000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2,800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4명의 유아 사망
어린이용품 중 환경호르몬검출 (2008)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 완구에서 환경호르몬 및 중금속 함유제품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이런 물질이 발견되면 정부가 강제 리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 인식하게 됨
살모넬라 땅콩버터 (2009)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A사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한 땅콩버터 및 페이스트에서 살모넬라균 발견 ■ 켈로그사의 어스틴 퀄리티 푸드 토스티 크래커 위드 피넛버터(Austin Quality Foods Toasty Crackers with Peanut Butter)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콩버터 함유제품의 자발적 리콜 시행 ■ 한국 : PCA가 생산한 피넛버터와 피넛 페이스트가 한국에 수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식약청은 미국산 땅콩버터 함유 과자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고 수거검사를 실시
환경호르몬 검출 화장품 (2008)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화장품에서 환경호르몬 검출:향수·헤어무스·스프레이·매니큐어서 프탈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관리방안을 검토 ■ 식약청에서 관리방안 마련중
석면파동 (2009)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화장품에서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에서 석면 오염 우려화장품 및 석면함유 탈크업체 공개

(5) 사업추진절차

<사업 집행절차>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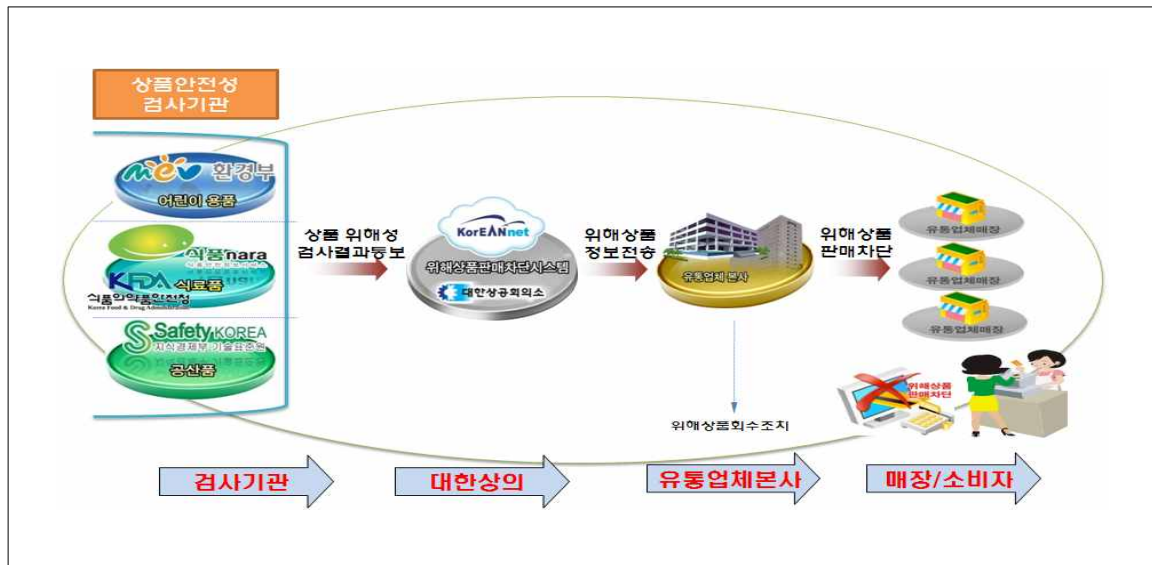
지원 ↓ ↑ 교부신청
결과보고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시행주체)

설치 지원 ↓ ↑ 시스템 운영 결과 송부

관련 기업(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참고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업무 처리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2010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비자 인지 및 만족도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이후 동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및 선호도 등에 대하여 온/오프 라인의 질의응답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리 및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주관부처 및 기관 : 지식경제부, 대한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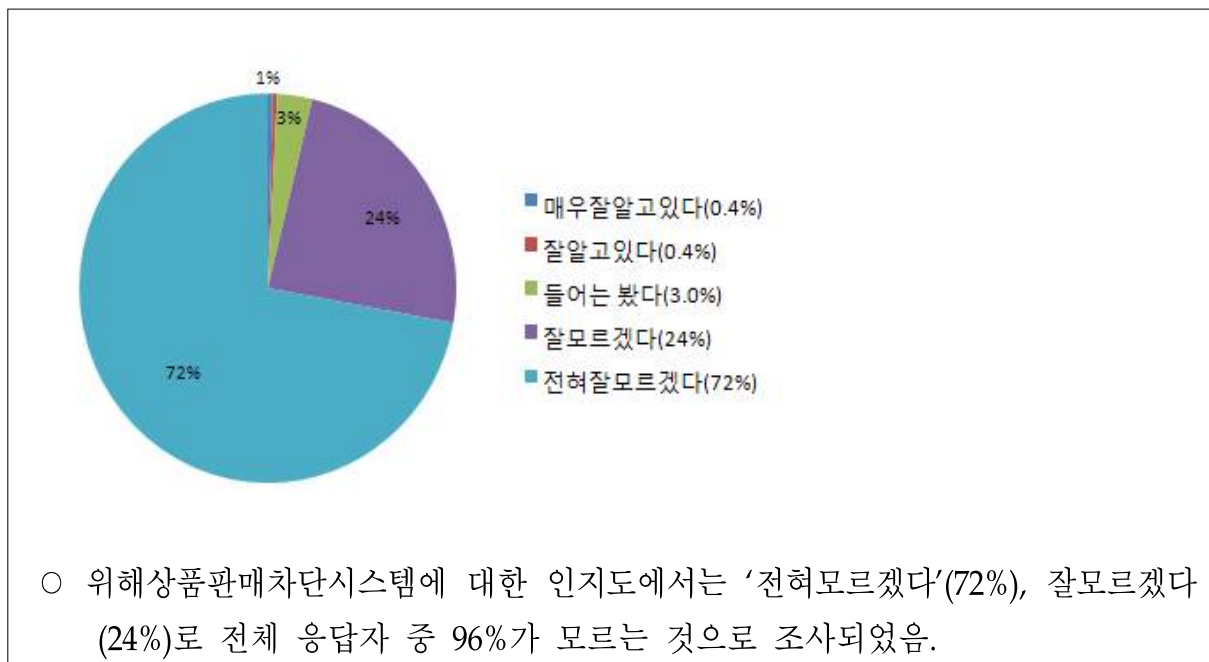
○ 조사수행기관 : (주)에이치엔케이컨설팅

○ 조사기간 : 2010년 11월 8일 ~ 11월 12일 (5일 간)

-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경기 거주, 만20세 이상 70세미만 소비자 500명
- 전화조사 및 대인면접조사

□ 조사결과 요약 소비자 (서울/경기지역 500명)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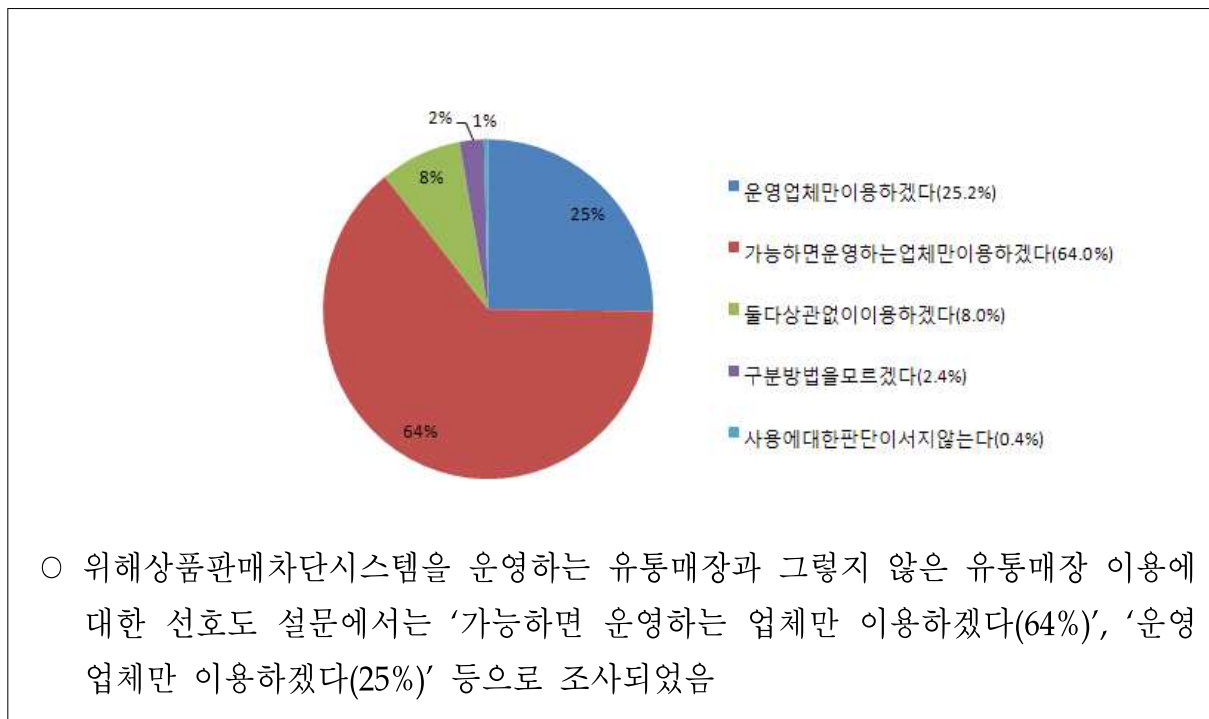
〈 표. 응답자의 주로 이용하는 유통업체 〉

총 응답자수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체인	동네대형슈퍼마켓	동네소형슈퍼마켓	기타
500명(100.0%)	224명(44.8%)	114명(22.8%)	96명(19.2%)	66명(13.2%)	0명(0%)

● 특별성 분석 ●

- ☞ 응답자의 96%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체인은 현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상황임에도,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유통업체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 또한 본 시스템의 주관 및 시행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확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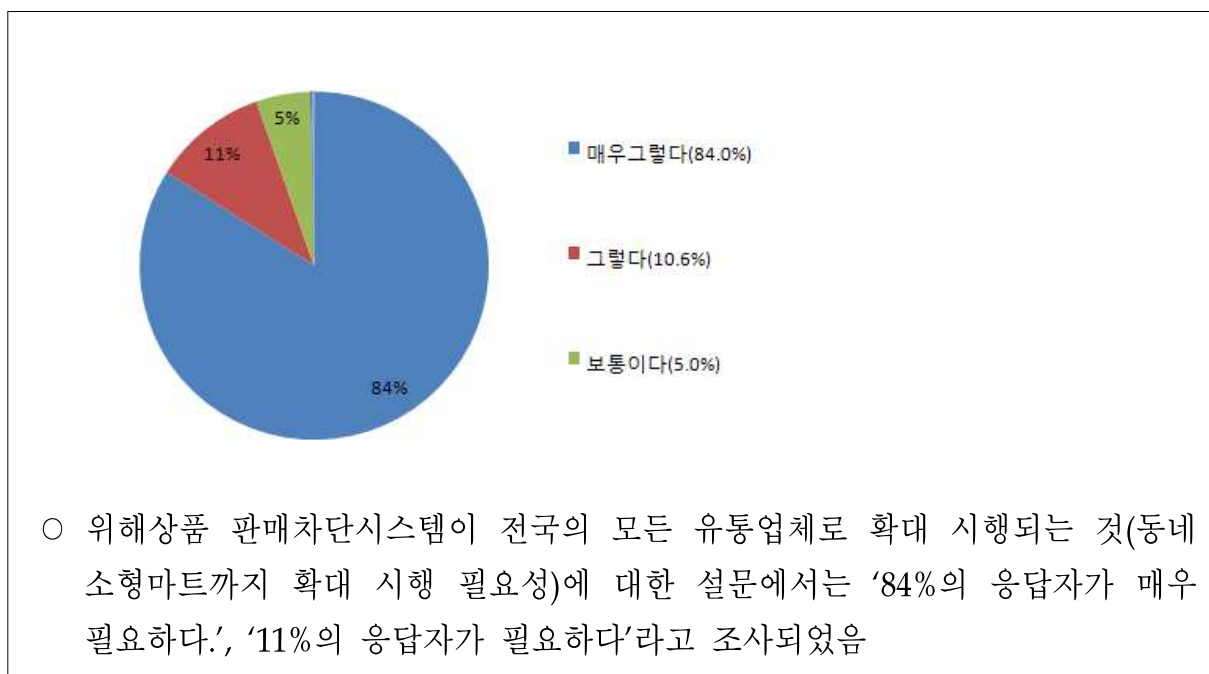
〈 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매장이용 선호도 〉

총 응답자	운영업체만 이용하겠다	가능하면 운영하는 업체만 이용하겠다	둘다상관없이 이용하겠다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사용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500명(100%)	126명(25.2%)	320명(64.0%)	40명(8.0%)	12명(2.4%)	2명(0.4%)

● 특별성 분석 ●

- ☞ 이는 전체 응답자 중 89%의 응답자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과 효용성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문결과는 향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의 홍보과 확산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한 확산시행 필요성 여부>



〈 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전 유통업체로의 확산시행 필요성 〉

총 응답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00명(100%)	420명(84.0%)	53명(10.6%)	25명(5.0%)	1명(0.2%)	1명(0.2%)

● 특별성 분석 ●

- ☞ 전 유통업체로의 확산(동네 소형마트까지 확산)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서도 전체응답자 중 95%가 동네 소형마트까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확대시행 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음
- ☞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들이 매우 유용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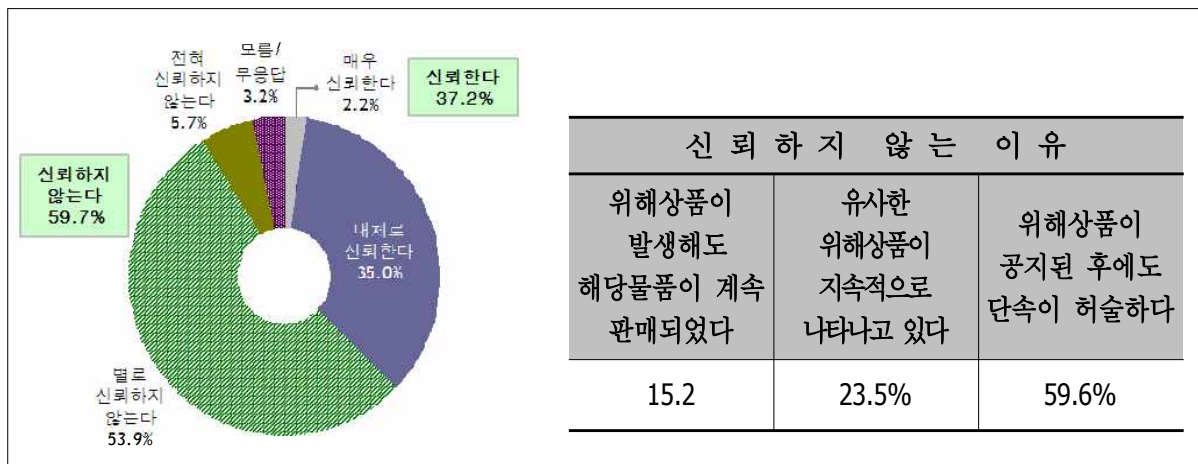
참고2 2008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주관부처 및 기관 : 지식경제부, 대한상의
- 조사수행기관 : 한국갤럽
- 조사기간
 - 소비자 : 2008년 1월 13일 ~ 1월 15일 (3일 간)
 - 유통업체 : 2009년 1월 12일 ~ 1월 20일 (9일 간)
- 조사대상 및 방법
 - 서울 및 경기 지역 거주, 만19세 이상 주부 (506명), 전화조사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일반소매점 (170개), 대인면접조사

□ 조사결과 요약 소비자 (서울/경기지역 주부 5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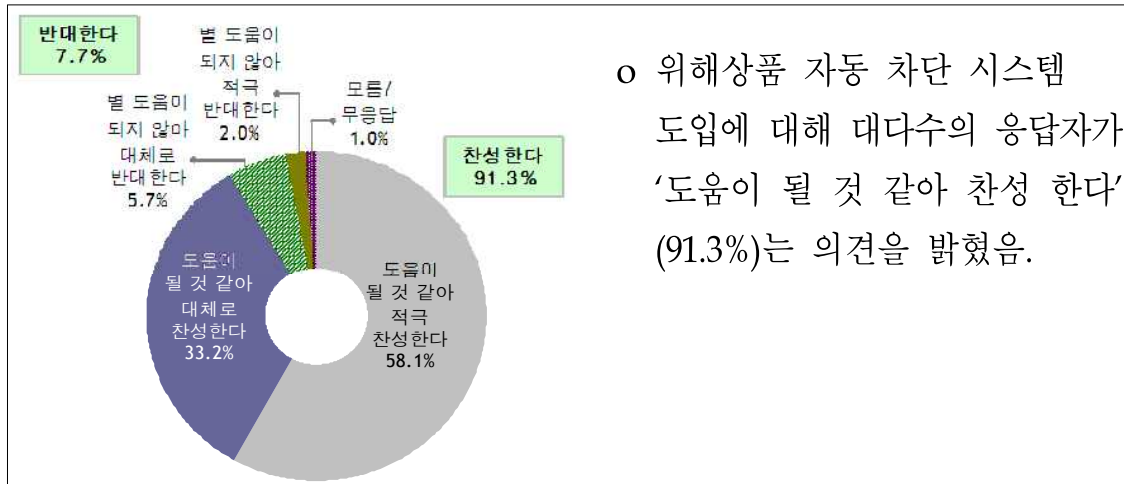
< 위해상품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정부시스템 신뢰여부 / 신뢰하지 않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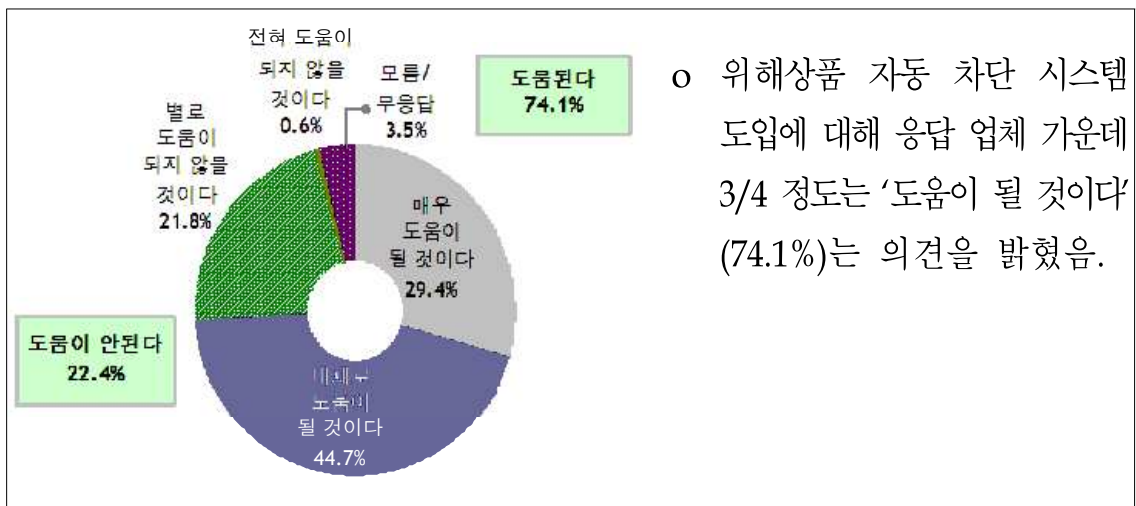
- 정부의 위해상품 관리 및 처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응답이 37.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7%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위해상품이 공지된 후에도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유사한 위해상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가 23.5%, ‘위해상품이 발생해도 해당물품이 계속 판매되었다’가 15.2%였음

< 위해상품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반 결과 >



< 위해상품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의 도움 정도 >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2,220	2,464	2,464	0	0

* 사업코드 : 21-11-0-110-114-3600-3649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테크놀로지과장(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김금미, 044-203-439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2. 사업목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바이오분야 국제협약의 이행, 국내 이행법(LMO법, 생물무기금지법)의 시행 및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LMO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출연금) : 2,014백만원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의무사항 이행 및 LMO법에 따른 정보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 484백만원

* LMO국가통합정보망 및 포털 운영 등, LMO법 운영·개선 및 대국민인식조사, 커뮤니케이션 자료(백서, 계간지 등) 발간 및 행사(토론대회, 설명회, LMO포럼 등) 개최

- 산업용 LMO 안전관리 체계 구축 : 90백만원

*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위원회 운영, 산업용 LMO안전관리교육, 산업용 LMO이용현황 조사

- LMO 책임·구제 의정서 대응 체계 구축 : 50백만원

* 책임·구제 전문가포럼 운영, 책임·구제 의정서 국내이행법 제정(공청회 등), 책임·구제 피해 관련 DB 구축

- ABS 나고야의정서 대응 체계 구축 : 90백만원

* 생물유전자원 이용 관련 기업 인식제고(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국내외 조사·연구, 기업 컨설팅/자문위원회 운영, 국제회의 대응 및 자원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 제7차 당사국회의(COP-MOP 7) 한국 개최 후속조치: 400백만원 (신규)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125백만원)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능력형성 워크숍 프로그램(125백만원)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사무국 시행 능력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150백만원)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기관운영비 : 900백만원

②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분담금(자체) : 90백만원

③ 생물무기금지협약운영(민간보조) : 360백만원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이행 및 국제회의 대응, 정기(수시) 검사,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 등

□ 지원 필요성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출연)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의무사항 준수, LMO법의 운영·개선을 통해 LMO 및 바이오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필요

- 산업용 LMO(생산공정 중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의 국내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필요

-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에 관한 국내외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국내입법 대응 및 관련 국내외 피해 사례 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 및 대응 필요
-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에서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제고 필요
-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MOP7, '14. 9)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 등 당사국회의 주요 결과를 향후 주도적으로 이행할 필요

○ 생물무기금지협약 운영(민간보조)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생물무기의 개발·생산 금지 등을 위한 국내 이행법인 「생물무기금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협약 의무사항 이행 및 바이오산업계 대응능력 제고 필요
- UN 안보리에서 생물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결의문 1540호를 채택('04.4월)하고 각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함에 따라 생물무기금지를 위한 국내이행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2,220	2,464	2,464	0	0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	1,680	1,818	2,014	196	10.8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	95	260	90	△170	△65
▪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445	386	360	△26	△6.7
☐ 비목					
○출연(350)	1,680	1,818	2,014	196	10.8
○국제분담금(340)	95	260	90	△170	△65
○민간경상보조(320)	445	386	360	△26	△6.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운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LMO법의 운영·개선을 통해 LMO 및 바이오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생물무기금지협약운영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생물무기의 개발·생산 금지 등을 위한 국내 이행법인 「생물무기금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협약 의무사항 이행 및 바이오산업계 대응능력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 : 18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 : 2.6 ▪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3.9
'15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 : 20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 : 0.9 ▪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3.6
'16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 : 17.8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 : 0.9 ▪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3.0
'17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 : 19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 : 0.9 ▪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3.5
'18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 : 16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 : 0.9 ▪ 생물무기금지협약이행: 3.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출연)】

-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20조*

* 정보 및 경험 교류 촉진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 국가책임기관(산업통상자원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소비자 인식 제고,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 분담금(직접수행)】

-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1조*
- *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국 비용은 당사국들에 의해 충당

【생물무기금지협약 운영 (보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추진경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정보센터운영(출연)】

- 1999. 6. : 생물산업국제협력사업(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사업)
- 2000. 1.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캐나다 몬트리올)
- 2000. 9. : 범정부적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가이행체제구축방안 마련
- 2001. 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
- 2001. 4. : CBD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시범사업(pilot phase) 착수
- 2002. 1~ 현재 :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사업 추진
- 2007.10.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서 유엔사무국 기탁
- 2008. 1.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 발효·시행
- 2010.10. :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의정서 채택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 2012.10. :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14년) 한국 개최 결정
사회·경제적 고려 특별전문가그룹회의(14년) 한국 개최 결정

- 2012.12. : LMO법 개정 및 공포(2013년 12월 시행)
- 2014. 2. : 사회·경제적 고려 특별전문가그룹회의 개최(서울)
- 2014. 9. :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 개최(한국 평창)

【생물무기금지협약 운영 (보조)】

- 1971.12. : 생물무기금지협약 UN 채택
- 1975. 3. : 생물무기금지협약 발효
- 1980. 3.~ 현재 : 생물무기금지협약 연례회의/평가회의 개최
- 1987. 6. : 생물무기금지협약 한국 가입
- 2004. 4. : UN 안보리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결의 및 UN 회원국의 생물무기 비확산 관련법 마련 의무화
- 2006. 4. : 생물무기금지법 제정
- 2006.12. : 생물무기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2007. 1. : 생물무기금지법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20.2	20.2	22.25	24.6	2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국제분담금 집행 잔액(환차에 따른 세출 감소) : '11년(4백만원), '13년(5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0.2			20.2	20.16		0.04
	()	()	()	()	()	()	()
'12년	20.2			20.2	20.2		
	()	()	()	()	()	()	()
'13년	22.25			22.25	22.2		0.05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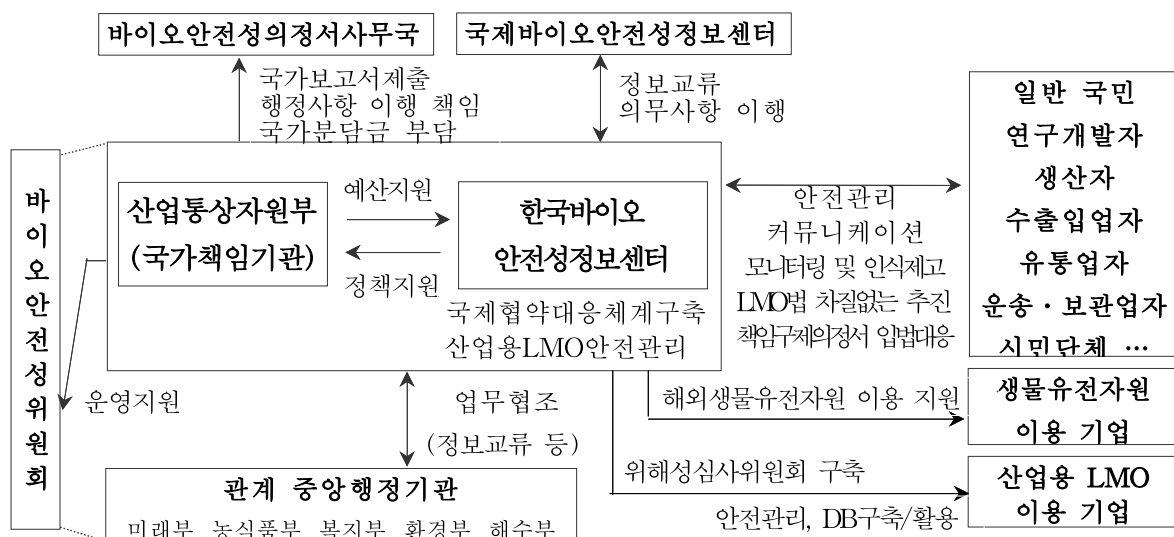
- 2013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1차) : 시행(2013년), 평가 등급(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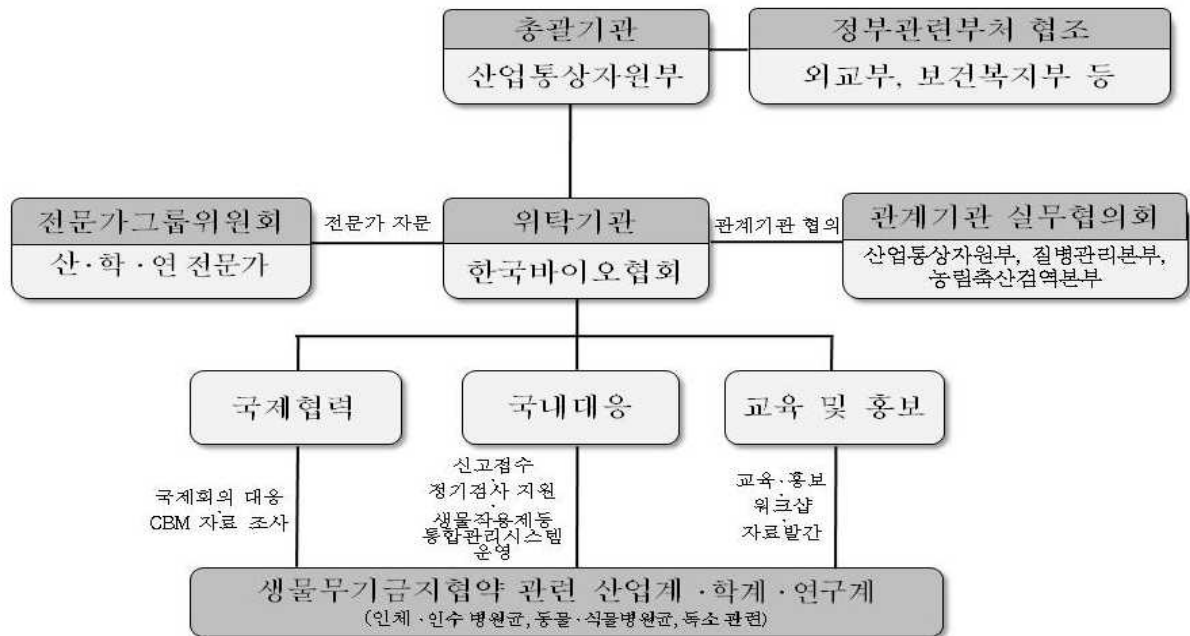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14년 5월 현재 167개국)이 각각 운영 중인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비당사국들도 바이오안전성정보시스템 운영 중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해 EU는 「EU ABS 규정(Regulation)」을 최종 승인('14.4.14)
 - 영국은 나고야의정서 책임기관으로 기업혁신기술부(BIS) 산하 NMO(National Measurement Office)를 지정 운영
 -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발효('93) 이후부터 경제산업성과 일본 바이오협회(JBA)가 중심이 되어 산업계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
- * 바이오산업계 지원 목적으로 경제산업성 예산 투입(연 5천만엔)

(5) 사업추진절차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운영, 국제분담금>



<생물무기금지협약 운영>



6. 참고자료

- 【참고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 개요
- 【참고 2】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개요
- 【참고 3】 ABS(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개요
- 【참고 4】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프로그램(안) 개요
- 【참고 5】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요

참고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 개요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국내이행법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이행법(LMO법)
명칭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위해 및 환경위해를 방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수입, 생산, 유통, 보관, 운송 등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 경과	○ 채택: 00. 1. 30 ○ 발효: 03. 9. 11(국제 발효) 08. 1. 1(국내 발효) - 당사국: 167개국 ('14. 5월 기준) (한국 07.10 가입, 08. 1 발효)	○ 제정: 01. 3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6) - 통합고시 제정(07) ○ 시행: 08. 1. 1 ~ ○ 일부개정: 12. 12월
주요 내용	○ 사전통보합의절차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 책임 및 구제 ○ 수출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려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공공인식 및 참여 증진	○ 용도별 소관 관계부처 - 시험·연구용: 미래창조과학부 - 농림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 환경정화용: 환경부 -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연락기관: 외교부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산업부장관)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재 조치	○ 당사국 의무준수	○ 벌칙(형벌 및 과태료)

(*) 바이오안전성(Biosafety)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정책, 절차 등의 모든 제도 및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개요

- 목적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위해 및 환경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

- 적용범위 :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LMO의 국가간 이동, 통과, 취급 및 이용에 대해 적용(단, 인체 의약품 제외)
- 수출입 절차
 - ① 의도적 환경방출용 LMO 수출입시 수출국과 수입국 간 사전통보합의절차(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 필요
 - * 환경방출용 LMO: 의도적으로 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LMO(농산물 종자, 미생물 농약, 환경정화용 미생물 등)
 - ② 식품·사료·가공 목적 LMO(콩, 옥수수 등)의 수출입시 수입국 국내법에 따라 수입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LMO 정보는 BCH에 통보
 - ③ 밀폐사용 LMO의 수출입시 수입국 국내법에 따르며, 해당 LMO 정보는 BCH에 통보
 - * 밀폐사용용 LMO: 특별히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기타 물리적 구조물 내에서 사용되는 LMO(동물·식물 의약품 LMO, 생물화학·공정 등 산업용 LMO)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수입 결정시 '의정서 부속서 III' 규정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관리에 따라 특정된 위해성을 규제, 관리, 감독
-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 당사국은 LMO의 안전한 취급 등을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필요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공공인식 및 참여 : LMO와 관련된 위해성 평가, 수출입 등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바이오안전성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 수출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려 등 : 수입 결정시 위해성평가 결과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근거
- 책임 및 구제(제27조) : LMO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 및 구제의 적절한 국제 규정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정을 의정서 발효 4년 이내에 채택하도록 명시

참고2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개요

□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책임과 구제에 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 바이오안전성의정서('00.01 채택, '03.09 발효)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인한 피해의 책임과 구제와 관련한 국제 규칙이 채택됨으로써('10.10)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국제 체계 완성
 - * 4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정식으로 발효(추가의정서 제37조)되며, '14년 5월 기준 총 23개국 비준(한국은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 초기 단계)

□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 사전주의 원칙 적용(**Precautionary principle**) : 명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충분한 피해가능성(sufficient likelihood of damage)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
- 적용 범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사료·가공 목적, 환경방출 목적, 밀폐 이용 목적)의 국가간 이동 및 비의도적, 불법적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적용
- 인과 관계 :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피해간 인과관계는 국내법에 따라 확정
- 대응 조치(**Response measures**)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책임기관이 대응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함
- 민사 책임(**Civil liability**) : 당사국은 책임의 기준(엄격책임, 과실책임), 책임의 집중, 소송권 등을 고려하여 민사책임법을 개발할 수 있음
 - 기존 국내법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 규칙과 절차 적용 가능
- 재정 보증 : 당사국은 재정 보증과 관련한 사항을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음

□ ABS 나고야의정서 개요

-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Access)시 자원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Benefit Sharing) 하도록 하는 국제협약(발효: '14.10.12)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로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의정서 채택('10, 나고야)

□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

-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의 법규에 따른 접근 승인

* 자국 유전자원에 대해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할지 여부는 자원제공국의 재량사항

-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이용자 간 이익 공유에 대해 상호합의조건을 체결

* 이익 공유 대상은 로열티 등 금전적 이익, 기술이전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 (의무준수) 자원이용국은 해외 유전자원 등의 이용자에게 PIC 취득 및 MAT 체결 관련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요기관) 국가연락기관(국내 접근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무국과 연락 담당), 국가책임기관(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PIC 이행 기관), 국가점검기관(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한 점검)을 지정

참고4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프로그램 개요

□ 추진 필요성

-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14.9.29 ~ 10.3, 평창) 개최 후 총회 주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전에 기여 필요

□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1.25억/년)
 - 대상 :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 개발도상국
 - 방식 : 국가 대표단(10명 내외) 한국 방문, 교육 이수(2회/년)
-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워크숍 프로그램(1.25억/년)
 - 대상 :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 개발도상국
 - 방식 : 20개국 내외 대표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2회/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사무국 차원에서 시행하는 능력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국가 분담금 일부 기여(1.5억/년)

※ (참고) 이전 개최국 기여 사례

일본 : 제5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10.10.11~15) 및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0.10.18~29)

-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설정
-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채택
- “일본 생물다양성 펀드” 조성(20억 달러 규모)

인도 : 제6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12.10.1~5) 및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2.10.8~19)

- 하이데라바드 요구(Hyderabad Call for Biodiversity Champions) 채택
- 인도 정부는 생물다양성보전 등에 5천만 달러 투자 약속

참고5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요

□ BWC(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발효) 개요

- 근거법령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6. 4. 28)

* '04.4.28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제조·운반 및 수출통제에 관해 UN회원국들이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결의(UN안보리 결의문 1540호)

□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사업

구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생물무기금지법
명칭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생물작용제(인체·동물·식물병원균), 독소 등이 전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생물무기의 금지(BWC), 국제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추진 경과	○ 협약 발효 : 1975년 3월 - 가입국 : 163개국 (우리국: '87.6월 가입) - 이행지원기구(ISU) 설치('06.12월)	○ BWC 국내이행법 제정('06년 4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6.12월) - 시행 : '07.1월 1일 - 위탁기관 : 한국바이오협회
주요 내용	① 생물무기 가능 생물작용제·독소의 개발등의 금지(제1조) ② 자국별 헌법절차에 따라 협약 이행조치 규정(제4조)	① 규제 대상물질을 국내의 현실에 적합하게 법령으로 규정(제2조) ② 생물무기 가능 생물작용제·독소의 개발등의 금지(제4조의 2) ③ 질병예방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의 신고 - 제조(제5조의 2), 보유(제13조의 2) ④ 수출·입 허가 (제11조 및 제12조) ⑤ 정기 및 수시검사(제18조의 2) ⑥ 장부 비치 및 자료제출(제21조)
제재 조치	○ 협약 위반시 UN안보리 제소	○ 벌칙(형벌 및 과태료) ○ 행정조치 (시설 제조정지 처분 등)

동물약품허브조성(계속, R&D)

< 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동물약품 허브조성	1,500	1,285	6,215	4,930	383.7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4 - 4200 - 4234 - 316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테크노과장(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오수만, 43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 ~ '15
총사업비	266억원 (국비 90억, 지방비 100억, 민자 76억)
사업규모	동물약품 시험생산용 장비기반구축(천연품, 합성), 동물약품 원료 기술개발
지원조건	출연금,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기반조성), 중소기업(기술개발)

2. 사업목적

- 동물약품 원료물질 시험생산용 및 원료생산용 장비 및 국제수준 bGMP*시설 구축, 동물약품 원료물질 R&D 지원

* 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원료물질 우수제조기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 장비 구축 : 5,345백만원

- 원료 시생산장비 49대 = 4,192백만원
- 유틸리티 3대 4식 = 1,153백만원

② 합성 및 발효천연물 소재 동물약품 원료물질 기술개발 2건 : 750백만원

③ 기획평가관리비 : 120백만원(국비 1.9%)

□ 지원 필요성

- 동물약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개발도상국 생활 향상에 따라 육류소비 증대, 시장 확대에 각국 기업의 시장선점 경쟁 가속화
 - 세계시장은 2010년 201억달러(약 23조원)로 2006년 160억달러에서 26% 증가
 - * 세계 원료시장('11) : 4.35조원
 - 국내시장은 규모('11년 기준)는 5,80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연평균 4.2%로 성장
 - * 국내 원료시장('11) : 1,755억원, 자급율 8.7%
- 충청권역 및 수도권 지역에 산재되어 위치하는 동물약품 기업들의 공동 시생산시설 구축, R&D지원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 제고필요
 - * 국내 동물약품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므로, 신약원료 연구개발지원 및 국제수준의 시험생산 시설구축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동물약품 허브조성	1,500	1,285	6,215	4,930	383.7
▪ 장비구축	925	730	5,345	4,615	632.2
▪ 기술개발	500	500	750	250	50.0
▪ 기획평가관리비	75	55	120	65	118.2
□ 비목					
▪ 출연금(350-01)	1,500	1,285	6,215	4,930	383.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물약품원료 R&D 지원을 통한 동물약품 신제품 개발
- 국제수준의 bGMP에 부합된 동물약품 원료생산을 통한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 신장 등 경쟁력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비 7.3억원 기술개발 5억원 기획평가관리비 0.55억원
'15	6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비 53.45억원 기술개발 7.5억원 기획평가관리비 1.2억원
'16	-	-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의 기획 및 조사 포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촉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0호)

○ 추진경위

- '09. 3 : 동물약품 기반구축 사업기본계획 수립(충청남도, 예산군)
- '09. 10 : 동물약품 기반구축사업 기획보고서 수립(예산군, 공주대)
- '11. 12 :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수정기획보고서(충청남도, 공주대)
- '12. 2 : 지역발전위 주관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시도경제 협의회에 충남도 중점 육성사업으로 건의
- '13. 5 : 동물약품 허브 조성 사업 기획보고서 수립
- '13. 8 : 동물약품 허브 조성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13. 12 : 사업부지확보(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479번지(16,555㎡))
- '14. 3 : 동물약품 허브 원료 GMP 설계 및 건축설계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동물약품 허브조성	-	-	15	12.85	62.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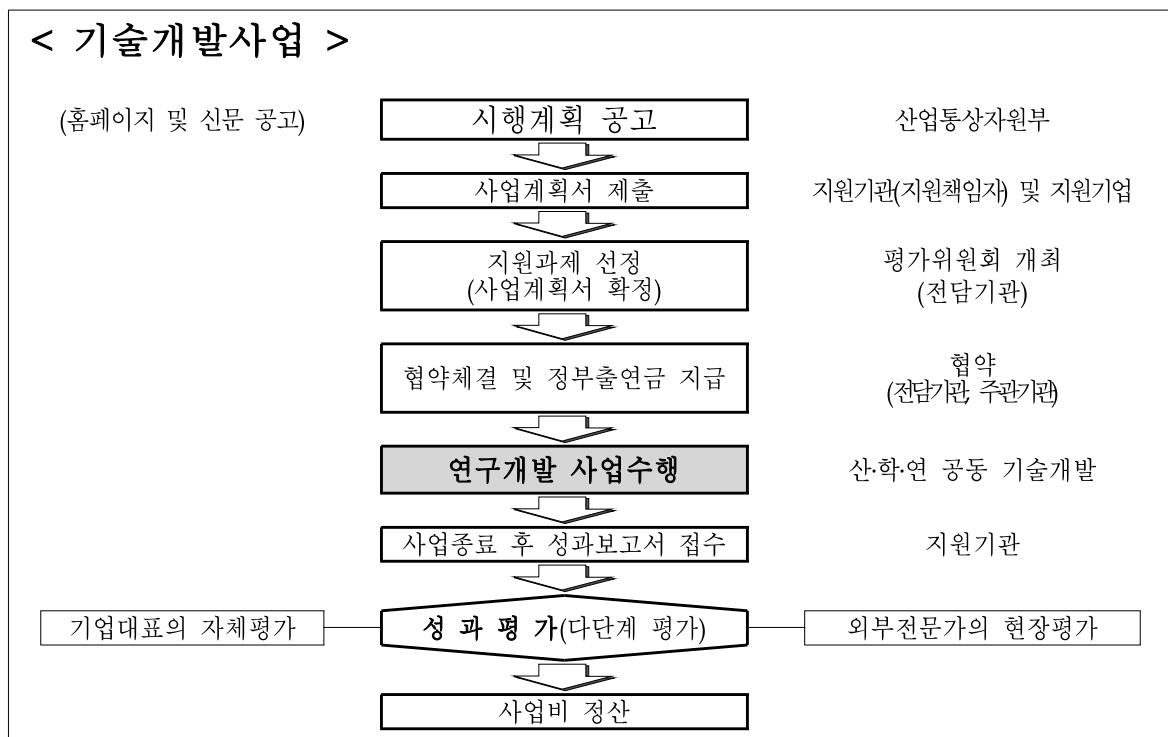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500	-	-	1,500	1,500	-	-
	(1,500)	(-)	(-)	(1,500)	(1,500)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클러스터 역할	San Diego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일본 고베 바이오 클러스터	싱가포르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Vision Provi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UCSD 지역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rvard Univ. MIT 지역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베 대학 첨단의료진흥재단 RIKEN발생재생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S 싱가포르 게놈 연구소 등 국책연구소
Market Cre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Pfizer Johnson & Johnson Genen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Merck Novartis Bio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립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vartis GSK Wyeth
Supporting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nture capital 변호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nture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nture ca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O consulting Law firms

(5) 사업추진절차



< 기반조성사업 >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주관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험생산 장비구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농축산바이오산업 현황

분 류	전 국		충청남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축산바이오산업	32,184	172,827	2,627	20,567
동물자원산업(동물약품 등)	2,778	49,292	263	5,528
기능성식품산업	27,892	102,379	2,278	12,302
화장품산업	1,276	17,565	67	2,220
의약바이오산업(인체약품)	238	3,591	19	517

* 한국통계진흥원 전국사업체조사('09년)

☐ 사업비 계획

재원별	합계 (억원)	사업별(억원)				
		장비구축	R&D	토지매입	건축비	기업지원
국비	90	72.5	17.5	-	-	-
지방비	100	18	-	-	69.77	12.23
민자	76	-	6	29	41	-
계	266	90.5	23.5	29	110.77	12.23

* 장비구축 국비 2.5억원(보급확산 지원 포함)

* 토지 및 건설 : 지방비 및 충남TP

* 민자 : R&D(참여기업 6억), 토지 및 건축(충남테크노파크)

☐ 재원별 예산 연차계획

구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총사업비(백만원)	26,600 (100%)	5,873	7,708	13,019
국 비	9,000 (33.8%)	1,500	1,285	6,215
지 자 체	10,000 (37.6%)	800	4,450	4,750
민 자	7,600 (28.6%)	3,573	1,973	2,054

< 항목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국고	9,000	1,500	1,285	6,215
장비구축	7,000	925	730	5,345
기술개발	1,750	500	500	750
기획평가관리비	250	75(5.0%)	55(4.3%)	120(1.6%)

□ 장비구축 계획

구분	규격	수량	금액(백만원)		
동물약품원료 제형 개발시스템	5Ton REACTOR 기준	10종 22대	국비	925	1,160
			지방	235	
	STS REACTOR 기준	7종 9대	국비	730	920
			지방	190	
	3Ton REACTOR 기준	9종 24대	국비	1,054	1,330
			지방	276	
Utility 장비, Utility Piping Plan	유틸리티 장비	6종 9대	국비	1,621	2,040
			지방	419	
천연물 소재 개발 시스템	5Ton 발효/추출 라인 기준	14종 21대	국비	2,670	3,350
			지방	680	
합 계	35종 85대 8,800백만원				

* 재원 : 국비 및 지방비

□ 건축계획 : 충남 예산군 예산일반산업단지(5,000평, 3개동 9,900㎡)

구분	규모
① 제1시험생산동 (동물약품원료 제형 개발)	지하1층, 지상2층 1,650㎡(500평)
② 본관동	지하1층, 지상4층 6,600㎡(2,000평)
③ 제2시험생산동(발효/천연물 소재 개발)	지하1층, 지상2층 1,650㎡(500평)

※ ①~③ 순차 구축 (재원 : 지방비 및 민자)

□ 세부과제별 수행기관 구성

구분	과제명	사업단 구성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술 개발 과제 (R&D)	약품전달시스템(DDS)를 이용한 동물용 서방형 주 사제 원료 합성 및 제품 개발	(기관명) (주)고려비엔피	(기관명) 한국화학연구원, 호서대학교
		(역할) DDS 기반 동물약품 합성원료 개발	(역할) 제제 합성, (전)임상 시험
	반려견의 면역 및 항염증활 성 증강을 위한 천연허브 발 효물 사료첨가제 개발	(기관명) (주)코시스바이오	(기관명) 건국대학교
		(역할) 발효/천연물 기반 사 료첨가제 개발	(역할) 동물실험 및 효능 평가
기반 조성 과제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동물약품 허브 조성	(기관명) (재)충남테크노파크	-
		(역할) 합성, 발효/천연물 원 료 시험생산동 구축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계속, R&D)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60,389	71,379	108,859	37,480	52.5

* 사업코드 : 4234-315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정석진, 044-203-4390), 주무관(소명희, 439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보조
사업시행주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사업목적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업기술거점기관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거점기관의 기술혁신 역량·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사업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세라믹종합지원센터 : 2,952백만원

-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 : 2,952백만원
 - 초임계 원료합성장비 1,050
 - 초음파분무 열분해장비 240
 - 테입성형기 110
 - 단결정 XRD 550
 - 고온 곡강도 측정기 480

- HIP용 몰리 히터시스템 340
- 아르곤 고압용기 94
- 시제품 이송장치 88

② 나노제품안전성기반구축 : 1,609백만원

-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 R&D : 944백만원
 - 대표 나노물질(Ag, CNT, TiO₂)에 대한 안전성평가 데이터 구축
 -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안전성 관련 평가방법(항목)이 국제 및 국내 규격에 없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험법 개발
 - 제품 내 함유된 나노물체(Nano-object) 크기 및 형상에 따른 위해성 상관관계 연구 등
- 나노제품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 350백만원
 - 나노제품(소재)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DB 구축을 통한 나노제품 안전성 판단기준 마련
- 국제협력 체계 구축 : 100백만원
 - 나노제품 안전성 국제 규제 동향 연구 및 대응을 위한 활동 지원 및 나노 안전성 국제공동연구(NanoREG 등) 지원
- 기술조사 : 200백만원
 - 나노기업 통계조사 : 통계조사, 1회x200백만원=2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40백만원

③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 2,400백만원

- 바이오화학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관련기업 인력양성을 통한 바이오기업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바이오화학실용화 센터 건립(2,400백만원)
 - 친환경바이오화학제품 상용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pilot규모의 기반장비 및 설비 구축

④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구축 : 2,554백만원

-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220백만원
- 스마트러닝 산업기반 구축 : 1,344백만원
 - 스마트러닝 창업·중소기업 성장지원 : 300백만원
 - 스마트러닝 시험환경 구축·운영 : 84백만원
 - 중소기업의 스마트러닝 활용 확산 지원 : 960백만원

- 스마트러닝 핵심기술 개발 및 이트레이닝 포럼운영: 990백만원
 - 이트레이닝 핵심요소 기술개발 : 650백만원
 - 이트레이닝 서비스모델 개발 : 140백만원
 - 이트레이닝 포럼운영 : 200백만원

- ⑤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5,988백만원
 - (장비 구축) 디스크 레이저(16kW), 공냉식 2킬로와트 파이버 레이저 등의 11종 장비 구축을 통한 고출력 레이저 분야의 다목적 Pilot Test Bed 구축 (4,808백만원)
 - '15년 레이저 센터 신규 건물(지자체 출자)구축 완공에 따른 본격적인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한 '14년 대비 238.3% 증액 요구
 - (인력양성)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한 현장 기술지원 및 신제품 개발 능력 체질 강화(300백만원)
 - (표준활동) 레이저 가공 기술이 접목된 제품에 대한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방법 도출 및 분석 지원을 통한 표준화 수요 기업 지원(180백만원)
 - (R&D 보급 및 확산) 경량소재접합 및 레이저절단 열처리기술 개발지원 등 기 구축 Test Bed에서의 지속적이고 전문화·차별화 된 레이저 가공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련기업의 정보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6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100백만원)

- ⑥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 2,300백만원
 - 차세대 중·대형 이차전지 기술개발 : 1,250백만원
 - 5kWh급 공기아연전지 및 관련 기술개발
 - 중·대형 이차전지 평가기반 구축 및 산업체 기술지원 : 980백만원
 -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 70백만원

- ⑦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 6,760백만원
 - 다상유동 안정성 시험 및 성능평가 시설·장비 구축(3,471백만원)
 - 다상유동 시험설비용 유틸리티 설비(전기·가스·통신 등) 구축(950백만원)
 - Large scale(120M) 다상유동 시험장비·기반설비 구축(펌프, 분리기, 압축기 등) 구축(2,072백만원)
 - Large Scale 다상유동 시험설비용 모니터링 장비(실시간 입도 분석기, 원유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 구축(449백만원)

- 다상유동 안정성 평가 및 이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1,050백만원)
 - 다상유동 안정성 해석 및 평가기술개발(350백만원)
 - 다상유동 이송시스템 기술개발(350백만원)
 - 해양플랜트 부품소재용 요소기술개발(350백만원)
 - 기업밀착지원, PQ문서생성·벤더등록지원시스템 개발(2,070백만원)
 - 벤더등록 교육 및 Track record 확보 지원(60백만원)
 - PQ문서 생성시스템 보급확산 및 기업적용(70백만원)
 - 국산화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현장 밀착지원(950백만원)
 - API, NORSOK 등 해양플랜트 code 분석 및 교육(70백만원)
 - 해외 프로젝트 분석 및 마케팅 지원 (70백만원)
 - PQ문서 생성 및 벤더등록 지원시스템 개발(85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169백만원)
- ⑧ 첨단하이브리드 가공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 3,950백만원
- 장비 구축 : 7종×248백만원 = 1,737백만원
 - 기술 개발 : 39건×54백만원 = 2,115백만원
 - 평가 관리 : 과제평가 = 98백만원
- 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 : 4,300백만원
- (경상보조) 섬유, 신발, 광, 로봇 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8개)의 對중소 기업 지원활동(신기술·제품개발, 시험분석지원, 애로기술 해결, 기술정보 제공,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4,192백만원)
 - 사업성과평가, 수요자평가, 지방비연계, 자립화도, 공개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기본보조 30%, 성과보조 70%)
 - (평가관리비) 과제 평가(108백만원)
- ⑩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 : 7,500백만원
-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소재 개발 : 2,800백만원
 -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전지소재 기술개발
 - 이차전지 소재개발 관련 장비구축 : 4,500백만원
 -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 200백만원
- ⑪ 메디칼몰드 R&BD 구축 : 3,200백만원
- 핵심부품기술개발(4개) : 1,200백만원

- 고분자 사출성형, 압출성형, 금속성형, 무오염생산기술 등 4개 기술개발 과제의 계속 지원
- 연구기반구축 : 2,000백만원
 - 전자선멸균시설 중도금 일부
- ⑫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 : 3,000백만원
 - 장비구축(1종) : 1,100백만원
 - 치과기공 자동화 생산장비 구축(Metal Laser RP System 구축, 1종 1대)
 - 기술개발(9개 과제) : 1,800백만원
 - 치과기공 소재 및 기기장치 상용화 기술개발(치과기공용 CAD/CAM, 3D프린트, 심미보철분야)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⑬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 4,000백만원
 - 고감성 내장부품, 실내환경 부품개발 : 3,366백만원
 - 고감성부품개발 실험장비 : 534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⑭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 6,500백만원
 - 공용 연구·생산 장비 지원 : 60억원
 - 표면처리시설 구축비 : 133억원(총 표면처리시설 인프라 구축비) × 45%(연차별 투자 비중)
 - 항공인력 교육 및 육성(평가관리비 포함) : 2억원
 - 항공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 및 기존 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체 항공 R&D 지원 : 3억원
 - ('15년) 계속/신규과제 1.5억원 × 2개 = 3억원
- ⑮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 1,300백만원
 - (기반조성) 승강기 관련 생산지원 장비구축 400백만원
 - (기술개발) 승강기 관련 핵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825백만원
 - (신규) 2개 내외 × 138백만원 = 275백만원
 - (계속) 3개 내외 × 183백만원 = 550백만원
 - (평가관리비) 75백만원

- ①⑥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 4,000백만원
- 핵심부품기술개발 : 1,200백만원
 - 골조직 재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 , 보철용 소재부품 기술개발
 - 공동활용장비구축(14대) : 2,620백만원
 - 소재제조, 부품가공, 표면처리, 인증평가지원장비 구축
 - 평가관리비 : 180백만원
- ①⑦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 3,120백만원
- 천연물 원료제조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기반 구축 (2,720백만원)
 - 천연물 의약품 원료제조 장비 18종 20대
 - 천연물 의약품원료제조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300백만원)
 - 시설 및 장비 Validation, 장비적격성심사
 - 기획평가관리비 (100백만원)
- ①⑧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7,000백만원
- 튜닝부품 시험·평가 장비 구축 : 5,990백만원
 - 튜닝부품 시험·평가법 개발 : 8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210백만원
- ①⑨ 대구 튜닝 전문지원센터 : 5,500백만원
- (기술개발) 튜닝 카바타 서비스용 차량모델 개발 : 2,800백만원
 - (기반구축) 튜닝제품 DB 및 카바타서비스 구축용 장비 : 2,500백만원
 - 기획평가 관리비 : 200백만원
- ②⑩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 설비 구축 : 1,500백만원
- (기반조성) 토공기계 관련 시험설비구축(살수 및 강우시험 설비)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 지원(1,500백만원)
- ②⑪ T2B 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 : 1,90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 1000백만원
 - 시제품제작 지원 : 30백만원 × 20개사 = 600백만원
 - 성능검증 지원 : 20백만원 × 20개사 = 400백만원
 - T2B 수요연계 플랫폼 기업지원 : 443백만원
 - 나노기업 발굴(200백만원), 상설시연장 구축·운영(50백만원), 특별관 조성(150백만원), 거래상담회(43백만원) 등

- 시장창출/성과창출 지원 : 400백만원
 - 국내외 바이어 발굴(150백만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100백만원), 사업화 애로지원(100백만원), 성과추적조사(50백만원) 등
- 평가관리비 : 57백만원

②②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 1,650백만원

- 기술개발 : 1,350백만원 (총 25개 과제x54백만원=1,350백만원)
 - 식의약 플랫폼 개발 : 간염 외 11개 기술개발, 12건x60백만원=720백만원
 - 뷰티화장품 플랫폼 개발 : 미백 외 6개 기술개발, 7건x40백만원=280백만원
 - 건강기능성원료 플랫폼 개발 : 피로개선 외 3개 기술개발, 4건x60백만원=240백만원
 - 청정친환경소재 플랫폼 개발 : 바이오건축소재 외 1개 기술개발, 2건x25백만원=60백만원
 - 임상시험동향분석 및 디자인 : 임상시험 분석자문 및 임상인자 설정, 1건x50백만원=50백만원
- 분석장비기자재구축 : 100백만원 (상용기술개발 및 생산지원 분석기장비 구축 2종x50백만원=100백만원)
 - 바이오상용기술개발 분석장치기자재장비 구축 : 생리활성분석장치, 1종x25백만원
 - 수출용 제품 생산지원 장비 구축 : 동결건조기(tubular type), 1종x75백만원
- 기술조사 : 150백만원
 - 바이오기업 통계조사 : 통계조사, 1회x150백만원=15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0백만원

②③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 : 1,000백만원

- 고기능 세라믹원료산업 Post-R&D 상용화 지원 : 300백만원
- 세라믹 원료산업 공급신뢰성 검증 : 100백만원
- 세라믹소재 제품 사전평가검증 : 300백만원
- 국산소재 활용 응용기술 개방형 DB 구축 : 100백만원
- 제조장비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 100백만원
- 상용화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 100백만원

②④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 : 1,576백만원

- (기반구축) 안광학렌즈 소재·가공·검사장비 17종 구축 : 576백만원

- (소재합성·성형장비 : 7종, 320백만원) 트윈압출기, 니이터, 핫프레스, 몰드성형기, 중합기, 몰드분리기, Auto Clave
 - (정밀가공·표면처리장비 : 5종, 120백만원) UV Curing M/C, 컬러문양 인쇄기, 멀티코팅기, 옥습기, 광택기
 - (소재분석·시험검사장비 : 5종, 136백만원) 딥코더, 렌즈코팅 경도측정기, 각막곡률계, 흐림도 측정기, 접촉각 측정기
 - (기술개발) 안광학렌즈 신소재 개발 2개과제 추진 : 1,000백만원
 - ①초고굴절 유효광 차단 모노머 개발 (500백만원), ②생체친화형 고기능성 인공수정체 소재 개발 (500백만원)
- ②⑤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 : 2,000백만원
- (기반조성)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을 위한 GMP*급 전문시설 구축 및 관련 장비 구축(1,800백만원)
 -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용 치료물 제작 품질관리 기준
 - (기술지원)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지원서비스, 新치료물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의료종사자 대상 기술확산 교육 실시(200백만원)
- ②⑥ 3D프린팅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 : 2,000백만원
- (기반조성) 산업용 금속 및 복합재료 정밀 3D프린터 구축, 장비활용 지원체계 마련 (2,000백만원)
- ②⑦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 개발 : 1,500백만원
- (기반구축) 고효율 차량경량화 성형·가공장비 5종* 구축 : 1,500백만원
 - 고온 압축성형용 프레스(400백만원), 자동 섬유재단기(250백만원), 3차원 다이나믹 워터젯 절단기(350백만원), 적외선 가열장비(300백만원), 고속 섬유방사시스템(200백만원)
- ②⑧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 : 3,500백만원
- (인프라구축) 기술센터 설립·운영, 테스트베드 구축 : 400백만원
 - (장비구축) 개발지원/신뢰성 장비 구축 : 1,200백만원
 - (기술개발) 틸트형 멀티콥터 기술 : 400백만원
 - (기업지원) 핵심기술 지원, 제품화 지원, 시장개척지원, 인력양성, 아이디어 랩 운영,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1,500백만원

- ②⑨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 2,000백만원
- 동력전달 핵심부품 기술개발 : 1,95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0백만원
- ③⑩ 한국형 유용균주(K-GRAS) 산업화 기반구축 : 1,000백만원
- 기술개발 : 700백만원
 - 전국 발효식품 자원 별 차세대 한국형 유용균주(K-GRAS) 발굴 개발(한국 미생물 자원발굴, 산업 생태계 조성) : 300백만원
 - 한국형 유용균주 건강장수 미생물 MAP 개발 : 100백만원
 - 한국형 유용균주(K-GRAS) 新 평가기술 개발 : 300백만원
 - 분석장비기자재구축 : 250백만원
 - 유용미생물 유전체(독소 유전자 유무) 분석장비기자재 : 25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0백만원
- ③⑪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 개발 : 2,500백만원
- (기술개발)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부품관련 기술개발 3건 : 1,900백만원
 - (장비구축) 고속인장시험기, 설계해석 장비 등 3종 구축 : 500백만원
 - 기획평가 관리비 : 100백만원
- ③⑫ 스마트 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 1,500백만원
- (기반구축) 스마트 변속 시스템 개발 및 평가 장비 구축 : 500백만원
 - (기술개발) 스마트 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개발 : 9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③⑬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협력 기술개발 기반구축 : 1,000백만원
- (기술개발) 도어, 후드 등 메카니즘부품 기술개발 : 350백만원
 - (기반구축) 고저온 환경 실차 가속시험 장비 구축 : 6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50백만원
- ③⑭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 1,000백만원
- (장비구축) 건강노화 진단기기 개발 장비 기반구축 : 200백만원
 - 질병조직 분석용 첨단영상장비 구축
 - 생체내부에서 환부를 측정 장비 등 구축

- (기술개발) 건강노화질환의 생체변화지표 발굴 및 기술개발 : 750백만원
 - 노화 주요질환(치매, 암, 퇴행성관절염 등) 연령별 임상자료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200백만원)
 - 의료통계 Big-data 기반 바이오마커 유병률 검증(200백만원)
 - 노화진행단계 생체변화지표 검증·예방 치료기술, 건강노화 진단기기 개발 (350백만원)
 - 건강노화 체외진단을 위한 항체 및 시약개발, 예방 및 치료 기기개발
 - 건강노화 단계 진단을 위한 체외진단기기 개발, 연구개발 사업화
 - 기획평가관리비 : 50백만원
- ③⑤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 기반조성 : 3,000백만원
- 사용자편의서비스 기반 구축 및 운영 : 1,400백만원
 - 사용자편의서비스 핵심제품의 기술 개발, 지원 : 700백만원
 - 기업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900백만원
- ③⑥ 나노융합산업화 기반 확산 : 300백만원
- 울산 나노융합산업 자료조사 및 기획보완 : 120백만원
 - 나노융합소재 분석·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 16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20백만원
- ③⑦ 의생명R&D센터 구축 : 1,000백만원
- (장비구축) 임상시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장비구축(950백만원)
 - 나노입자 크기 분석 분자량 분석, 인공조직 제조, 유전체 분석 등 장비
 - 기획평가관리비(50백만원)
- ③⑧ 지식기반제조업 지원센터 : 1,000백만원
- 지원센터 관리·운영, 기반 구축, 기업 성장 지원(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산업기술거점기관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60,389	71,379	108,859	37,480	52.5
▪ 세라믹종합지원센터	3,030	2,169	2,952	783	36.1
▪ 나노융합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	4,434	4,434	0	△4,434	△100.0
▪ 나노융합기업 T2B촉진	750	850	0	△850	△100.0
▪ 나노제품안전성기반구축	1,204	934	1,609	675	72.3
▪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4,000	6,500	2,400	△4,100	△63.1
▪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 구축	2,740	2,354	2,554	200	8.5
▪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960	2,648	5,988	3,340	126.1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2,450	2,500	2,300	△200	△8.0
▪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구축	7,000	6,721	6,760	39	5.8
▪ 첨단하이브리드 가공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2,968	3,950	3,950	-	-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	3,615	4,305	4,300	△5	△0.1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20,738	17,814	0	△17,814	△100.0
▪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	1,500	3,500	7,500	4,000	114.3
▪ 메디칼몰드 R&BD 구축	2,000	1,500	3,200	1,700	113.3
▪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	2,000	3,000	3,000	-	-
▪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	-	1,000	4,000	3,000	300.0
▪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	-	2,000	6,500	4,500	225.0
▪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	1,000	1,300	300	30.0
▪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	1,000	4,000	3,000	300.0
▪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	1,000	3,120	2,120	212.0
▪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1,200	7,000	5,800	483.3
▪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	1,000	5,500	4,500	450.0
▪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	-	1,500	1,500	순증
▪ T2B활용 나노융합 R&BD 촉진	-	-	1,900	1,900	순증
▪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	-	1,650	1,650	순증
▪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	-	-	1,000	1,000	순증
▪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	-	-	1,576	1,576	순증
▪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	-	-	2,000	2,000	순증
▪ 3D프린팅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	-	-	2,000	2,000	순증
▪ 고효율차량경량화 부품소재개발	-	-	1,500	1,500	순증
▪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	-	-	3,500	3,500	순증
▪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	-	2,000	2,000	순증
▪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	-	1,000	1,000	순증

▪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사시 부품 기술개발	-	-	2,500	2,500	순증
▪ 스마트 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	-	1,500	1,500	순증
▪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협력 기술개발 기반구축	-	-	1,000	1,000	순증
▪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	-	1,000	1,000	순증
▪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 기반조성	-	-	3,000	3,000	순증
▪ 나노융합산업화 기반 확산	-	-	300	300	순증
▪ 의생명R&D센터 구축	-	-	1,000	1,000	순증
▪ 지식기반제조업 지원센터	-	-	1,000	1,000	순증
□ 비목	60,389	71,379	108,859	37,480	52.5
▪ 민간경상보조(320-01)	3,615	4,305	4,300	△5	△0.1
▪ 민간자본보조(320-07)	3,030	2,169	2,952	783	36.1
▪ 출연금(350-01)	53,744	64,905	101,607	36,702	56.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 및 국가 산업 발전 전략에 기반한 사업 지원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1,379	▪ 계속사업 63,179백만원, 신규사업 8,200백만원
'15	108,859	▪ 계속사업 77,933백만원, 신규사업 30,926백만원
'16	90,000	▪ 계속사업 88,000백만원, 신규사업 2,000백만원
'17	100,000	▪ 계속사업 96,000백만원, 신규사업 4,000백만원
'18	110,000	▪ 계속사업 105,000백만원, 신규사업 5,0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24조(국제협력 등)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 추진경위

- '10년 「지식경제 R&D사업체계 개편」
- '10년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 '11년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안전성 종합계획
- '11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11년 고기능 세라믹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
- '11년 레이저 산업 발전전략
- '12년 미래부-산업부 나노융합확산 협력전략 과제
- '12년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보고
- '12년 제조업 동반성장형 新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
- '13년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 '14년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381.47	497.82	603.89	713.79	1,088.5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8,147	-	-	38,147	38,147	-	-
	(38,147)	(-)	(-)	(38,147)	(38,147)	(-)	(-)
'12년	49,782	-	-	49,782	49,782	-	-
	(49,782)	(-)	(-)	(49,782)	(49,782)	(-)	(-)
'13년	60,389	-	-	60,389	60,389	-	-
	(60,389)	(-)	(-)	(60,389)	(60,38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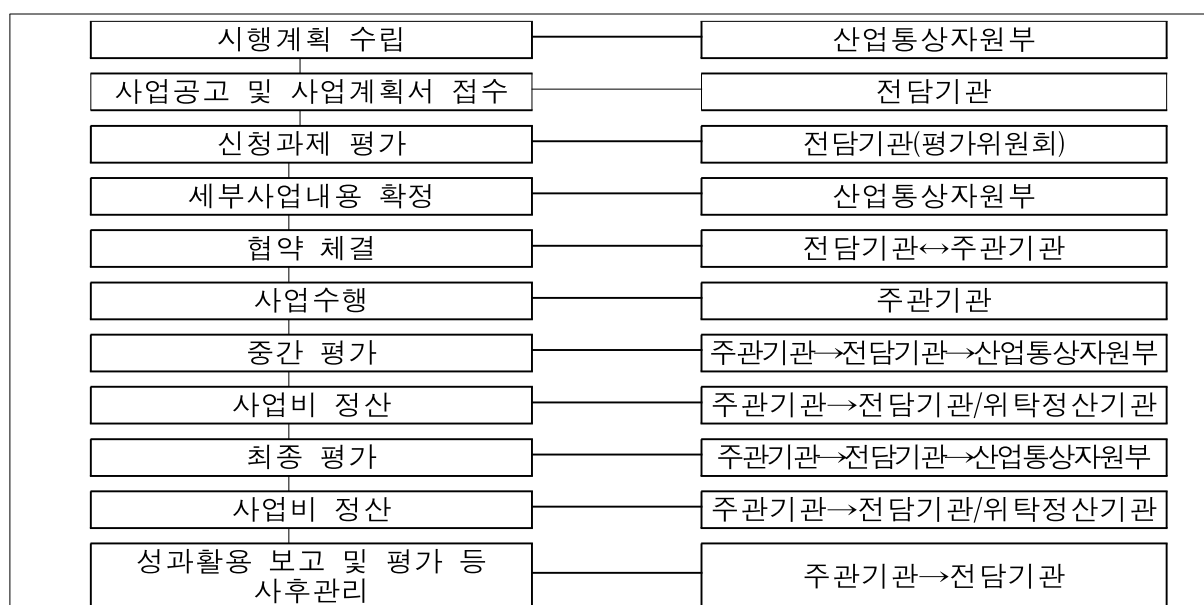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재부)
 - 평가결과 : 보통
-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지역위)
 - 평가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경우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중기청이 연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및 첨단기기공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지역의 산업기술거점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장비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용암수용합산업육성(신규, R&D)

< 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용암수용합산업육성	-	-	3,000	3,000	순증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4 - 4200 - 4234 - 332

* 담당자 : 창의산업정책관(이인호), 바이오나노과장(정석진, 044-203-4390), 사무관(오수만, 43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 ~ '18
총사업비	352억원 (국비 250억, 지방비 102억)
사업규모	- 용암수 분석 및 탈염장비 등 20종 - 산업화 소재 및 시제품 개발장비 등 60종 - 수처리 연구 및 교육장비 등 20종
지원조건	출연금, 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2. 사업목적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개발 장비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용암수 특성 분석, 미네랄 탈염 및 분리 장비 구축(3,000백만원)
 - 용암수 분리장비(담수화시스템) (2,000백만원)
 - Seawater Desalination System(Product Capacity : 1,000 ton/day)
 - 유틸리티 시스템(Electric System, 배관, 트레이, 저장탱크 등)
 - 미네랄분리용 전기투석장치 (1,000백만원)
- ② 기획평가관리비 : 100백만원(국비 3.3%)

□ 지원 필요성

- 물 관련 산업은 연 평균 성장률이 6.5%로 매우 높아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음
 - 해외 시장: 2011년 기준 5천300억 달러
 - 국내 시장: 2011년 기준 12조원 규모(세계시장의 2.1%)
- 제주도는 빗물이 지하에 스며들어 생성되는 담수지하수와 바닷물이 화산암반 사이로 스며드는 염지하수(용암수)가 있음
- 용암수는 미네랄이 풍부하여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2차산업과 수경재배, 천연 비료 등의 1차산업, 그리고 수치료 및 스파 등의 관광서비스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산업간 융합을 통한 발전 잠재력이 높음
- 용암수 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초기 투자비용 절감,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용암수 특성 분석 및 모니터링, 미네랄 탈염 및 분리, 산업화 소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장비 구축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용암수융합산업육성	-	-	3,000	3,000	순증
▪ 장비구축	-	-	2,900	2,900	순증
▪ 기획평가관리비	-	-	100	100	순증
☐ 비목					
▪ 출연금(350-01)	-	-	3,000	3,0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용암수의 특성 및 수처리 기술개발, 기능성 미네랄 분리 및 산업화 소재 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축
- 제주용암수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을 통해 창조경제형 용암수 융합산업(식품산업+화장품산업+음료산업+헬스케어산업 등)으로 육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30	▪ 장비비 29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억원
'16	20	▪ 장비비 29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억원
'17	60	▪ 장비비 59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억원
'18	30	▪ 장비비 29억원 ▪ 기획평가관리비 1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발전법」 제3조 산업발전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의 기획 및 조사 포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촉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용암수를 활용한 산업화 소재 및 제품개발 연구’(제주TP, ‘05.12~‘08.11)
 - * 제주의 독특한 수자원인 용암수는 청정성, 기능성, 안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 잠재력이 높게 평가됨.
 - 용암수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제주특별자치도, 2008)
 - 용암수산업 경제성 분석(제주특별자치도, 2009)
 - * 세계 물관련 산업 성장률이 6.5%로 타 산업에 비해 높아 ‘블로오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어, 제주 청정수자원인 용암수를 활용한 산업화는 신산업으로 발전성이 높음
- 그간 주요추진사업
 - 기업지원 종합 거점기관 구축완료 ‘용암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제주테크노파크, ‘13. 3)
 - 용암수산업 육성을 위한 ‘용암수 일반산업단지조성’(제주특별자치도 ‘13.4)
 - * 산업단지 분양완료(‘14.7)/ 용암수제품 첫 출시(‘13.9, 미네랄 워터)

-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14. 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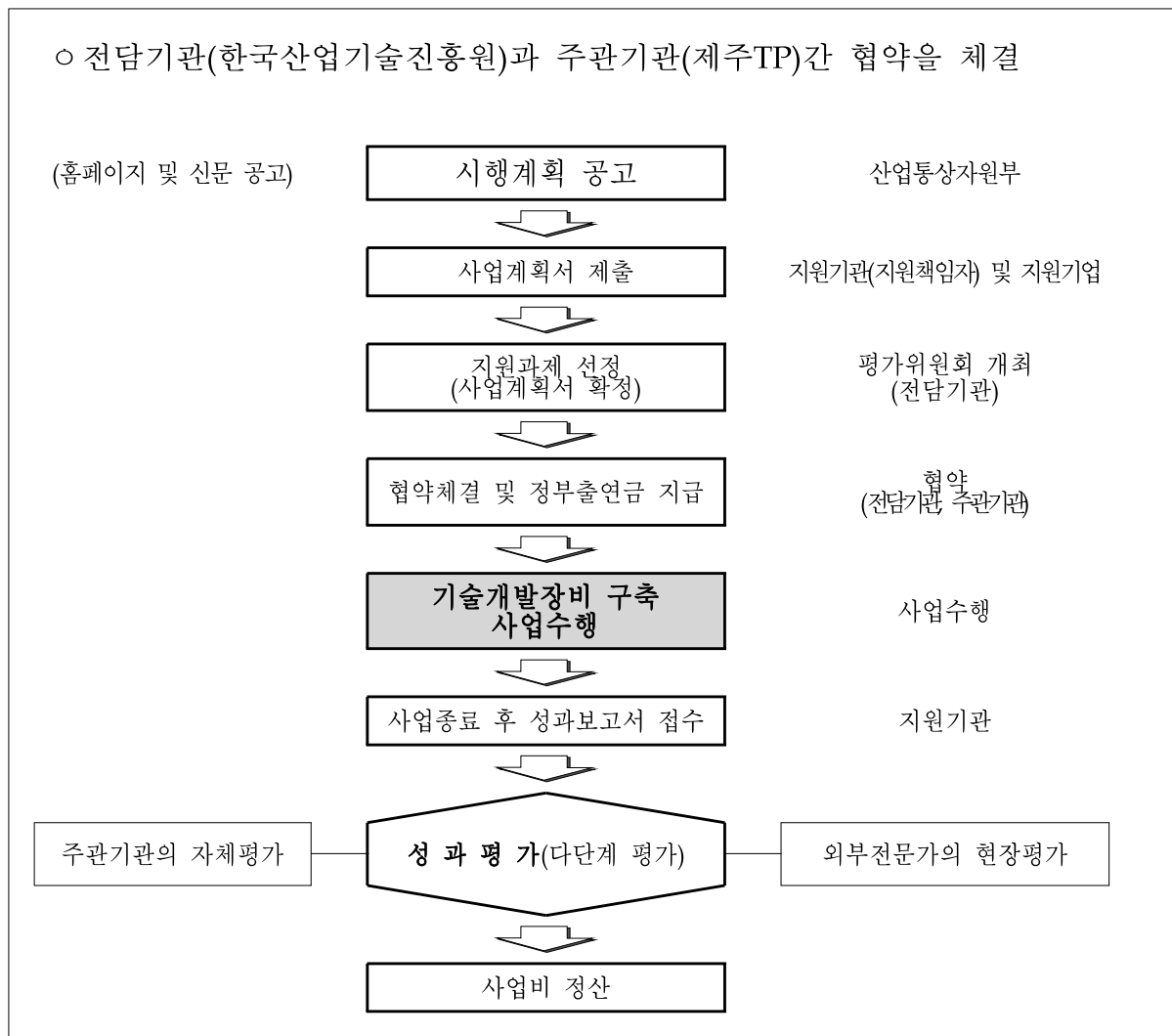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용암수융합산업육성	-	-	-	-	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p><용암수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수는 제주 동부지역에 부존하는 염지하수로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되어 항상 청정하고 유용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제주의 독특한 수자원임 <p>※ 2010년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염지하수의 산업적 이용 근거 마련</p> <p><용암수의 산업적 활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소재 : 해양 및 육상생물 유래 바이오소재 • 제조 : 기능성음료, 식품, 화장품, 주류, 소금 등 • 건강미용·서비스 : 스파, 수치료, 워터파크 	<p><용암수 분포도 : 파란색></p>  <p>• 용암수는 약 40만년전 제주해안지대가 형성되면서 생성된 염지하수로서 약 70~90억톤 매장되어 있으며 사용한 만큼 바닷물이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자원고갈이 없는 순환자원임</p> <p>• 일반 해수와 달리 화산암에서 유래한 기능성 희귀 미네랄(바나듐, 셀레늄, 게르마늄 등)이 함유되어 있음</p>
--	--

□ 연차별 재원 계획

	합계	2015	2016	2017	2018
계	352	40	100	125	87
국 비	250	30	70	85	65
지방비	102	10	30	40	22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수 시제품 개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가공 및 시제품 개발 장비 - 음료, 식품, 화장품 소재 개발 장비 ○ 용암수 미네랄탈염 및 분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수 담수화 장비(역삼투압장치, 1,000톤/1일) - 미네랄 분리장비(전기투석장치, 50톤/1일, 다단 분리장비 등) ○ 용암수 분석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수 모니터링 장비 구축(자동모니터링 제어 및 관측 장비) - 용암수 분석장비(ICP-MS 등 분석 장비 10종) ○ 바이오소재 개발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수 활용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 바이오소재 생산을 위한 장비(순환여과장비 등)
--

- 해양바이오 소재 추출 및 분석 장비 등(미세조류, 해조류 등)
- 해양생물 사육 환경 제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바이오소재 캡라 장비(스마트팜)
 - 미생물배양 및 분석장비 등 10종
 - 식물공장 환경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
- 용암수 농축염수 처리장비
 - 용암수 농축염수 처리관 설치(2.5km)
 - 농축염수 수중 분사용 방사탑 설치(수중 30m)
 -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장비 구축
- 용암수 수치료 기술개발 및 교육장비 구축
 - 스파 및 수치료 기술개발 장비
 - 용암수 체험 및 과학교육 장비
 - 용암수 활용 신재생 에너지 체험 및 장비 구축

지역경제정책관

세 입

□ 지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지역발전특별회계	45,273	23,358	48,077	24,719	105.8

관	항	목	2013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45,273	23,358	48,077	24,719	105.8
재산수입			6,682	4,268	7,575	3,307	77.5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82	4,268	7,575	3,307	77.5
▪ 기타재산수입			6,682	4,268	7,575	3,307	77.5
경상이전수입			38,591	19,090	40,502	21,412	112.2
기타경상이전수입			38,591	19,090	40,502	21,412	112.2
▪ 기타경상이전수입			38,591	19,090	40,502	21,412	112.2

기타재산수입(지특회계)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타재산수입	4,065	4,268	7,575	3,307	77.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사업비 예치 이자 수입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제45조

제35조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1,651	3,882	1,429	2,883	3,511	5,360	3,687	3,106	4,065	6,682	25.3	14.5
(전년대비증가율)	23.5	106.9	△13.4	△25.7	145.7	85.9	5.0	△42.1	10.2	115.1	-	-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4,268	○2013 대비 5% 증가
'15년	7,575	○'13결산(추정치) × (1+'08~'12연평균증가율) ² = 6,065백만원 × 1.11752 = 7,575백만원
'16년	8,105	○전년도 대비 7% 증가
'17년	8,673	○전년도 대비 7% 증가
'18년	9,280	○전년도 대비 7% 증가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 본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사업비 예치 이자 수입으로, 정부는 예산의 시의적절한 배정을 통해 이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므로 수입 증대방안 해당없음

기타경상이전수입(지특회계)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18,181	19,090	40,502	21,412	112.2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제45조

제35조 (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①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7,924	9,812	7,477	11,238	8,061	25,121	8,464	39,868	18,181	38,591	23.1	40.8
(전년대비증가율)	171.6	△26.7	△5.6	14.5	7.8	123.5	5.0	58.7	114.9	-3.2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18,181	○2013년도 대비 5% 증가
'15년	19,090	○'13결산(추정치) 대비 매년 7% 증가 = $35,376 \times (1.07)^2$
'16년	40,502	○전년도 대비 7% 증가
'17년	43,337	○전년도 대비 7% 증가
'18년	46,371	○전년도 대비 7% 증가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 없음

- 본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정부는 예산 집행시 사업자의 사업비 소요의 정확한 파악 및 예산의 적절한 배정을 통해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여야 함

세 출

지역경제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23,386	36,243	51,050	14,807	40.9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497	470	449	△21	△4.5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	0	3,929	7,438	3,509	89.3
○산업단지안전관리지원	5,000	0	0	0	
○산업단지환경조성	11,000	23,000	37,500	14,500	63.0
○새만금투자유치활성화	243			0	
○종합비즈니스센터	4,650	6,200	2,900	△3,300	△53.2
○지역발전위원회인건비	361	298	392	94	31.5
○지역발전위원회지원	1,635	2,346	2,371	25	1.1
<지특회계>	775,931	804,115	744,115	△60,000	△7.5
○경제협력권산업육성	0	0	45,668	45,668	순증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0	0	123,400	123,400	순증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지원	3,140	0	0	0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77,475	57,068	0	△57,068	순감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R&D)	282,525	242,505	0	△242,505	순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54,400	57,730	59,730	2,000	3.5
○산학융합지구조성(R&D)	30,445	21,444	23,000	1,556	7.3
○제2차지역발전5개년계획수립	800	0		0	-
○지역산업육성지원	9,829	8,490	9,164	674	7.9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3,139	3,232	3,070	△162	△5.0
○지역투자촉진	40,693	102,599	117,765	15,166	14.8
○지역투자촉진(세종)	0		8,000	8,000	순증
○지역특성화산업육성	68,337	53,486	87,091	33,605	62.8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0		200	200	순증
○지역특화산업육성	99,700	90,171	92,927	2,756	3.1
○지역특화산업육성(R&D)	105,448	167,390	174,100	6,710	4.0
총계	799,317	840,358	795,165	△45,193	△5.4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497	470	449	△21	△4.5

* 사업코드 : 3333 - 303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입지총괄과장(박영삼, 044-203-4430), 주무관(임성균, 44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공장설립 승인신청, 인·허가, 등록 등 공장관련 제반업무를 처리·관리하는 정부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운영/유지보수) : **449**백만원
(적정유지 보수비용(850백만원)의 53%)

- 개발유지보수비 : **432**백만원

- '09년 개발비 : 1,796백만원 × 10% = 180백만원
- '10년 개발비 : 2,007백만원 × 10% = 200백만원
- '11년 개발비 : 556백만원 × 10% = 52백만원

- 상용 H/W, S/W 유지보수비 : **328백만원**
 - H/W : 2,150백만원×(등급별산정기준)=184백만원
 - S/W : 1,751백만원×(등급별산정기준)=144백만원
- 운영비(헬프데스크) : 30백만원 × 3인 = **9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업단지공단은 정부 위탁사업으로 공장설립 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지자체(시·군·구 등) 및 관리기관(산단공 등)에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50여 가지 민원신청은 물론 접수된 공장관련 민원처리에 활용
- 안정된 시스템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

< 세부 내역 >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백만원)
					%
□ 사업명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497	470	449	△21	△4.5
□ 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	497	470	449	△21	△4.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및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7	▪ 공장설립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4.70
'15	4.49	▪ 공장설립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4.49
'16	4.55	▪ 공장설립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4.55
'17	4.61	▪ 공장설립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4.61
'18	4.55	▪ 공장설립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4.5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1조의2

○ 추진경위

- '08. 4.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필요성 제기(국경위)
- '08. 11 : 조달업무 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 '09. 5. : 시범구축사업 개시
- '10. 6. : 전국 확산사업 개시
- '11. 8 : 고도화 및 이중화 사업 착수
- '12.1월 : 구축사업 완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	21.5	-	4.97	4.7	4.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도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예산 반영 내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1.5	-	-	21.5	21	-	-
	(21.5)	(-)	(-)	(21.5)	(21)	(-)	(-)
'12년	-	-	-	-	-	-	-
	(-)	(-)	(-)	(-)	(-)	(-)	(-)
'13년	4.97	-	-	4.97	4.97	-	-
	(4.97)	(-)	(-)	(4.97)	(4.9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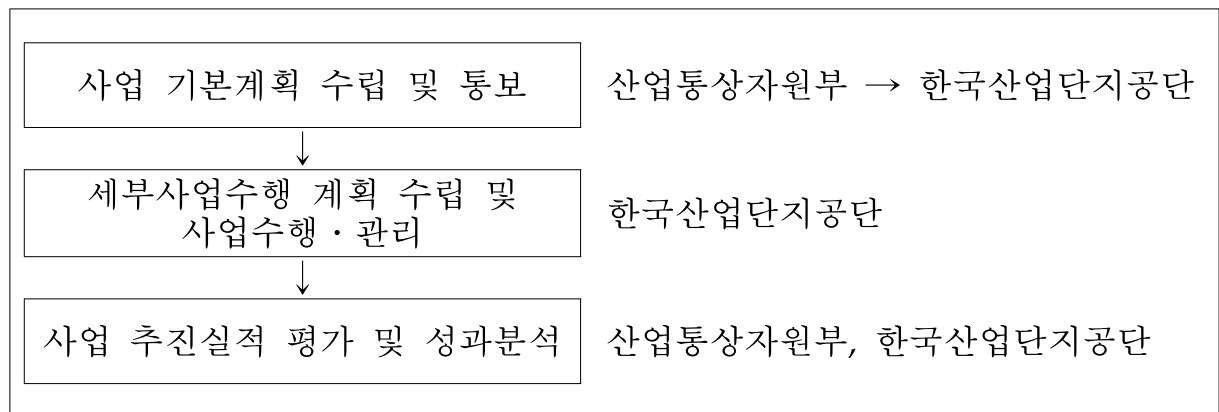
- 온라인지원시스템(대한민국)

국가명	기 관 명	수 행 업 무
한국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	행정업무 처리, 도면 검색, 용도지역 정책지원, 인터넷 토지포탈서비스 제공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신청 등록정보가 연계대상으로, 단일화된 행정업무 통합창구
	기업지원단일 창구시스템(G4B)	기업지원 포털로써 기업의 시각에서 '하나의 정부'로 인식되도록 정부기관 간 협업과 조정으로 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종합적인 대기업 서비스 제공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LURIS)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활용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	건축행정업무(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와 주택행정업무(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의 전 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

○ 공장설립지원센터

국가명	기 관 명	수 행 업 무
일본	일본입지센터	전국의 입지정보를 제공, 입지선정에서의 지원(보조금 비교표 작성, 토지소유주와의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는 하고 있지 않으며, 인·허가 절차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미국	주정부·카운티 정부	현지 인력활용 정보 및 세제 지원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 주정부 기금을 사용,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 경제개발실(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과 버지니아 주정부 경제개발 파트너십(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등의 기관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독일	에이전시·컨설팅 회사	공장설립시 여러 관청에 인·허가 사항이 필요하므로 에이전시 및 컨설팅의 협력을 무료로 지원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한마인 비즈니스 센터(HMBC)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경영 지도 에이전시이며, 유럽진출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건축, 네트워크, 국제무역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산업단지 환경 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단지환경조성	11,000	23,000	37,500	14,500	63

* 사업코드 : 3333 - 305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김성진), 입지총괄과(박영삼, 044-203-4430), 사무관(노진만, 440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자, 출연(국비 최대 50%)
사업시행주체	민간(자산운용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기업 집중육성 및 청년층 취업유도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거점인 창 의 · 혁신 복합공간으로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 운영 : 4,000백만원(출연)

- 혁신산단 내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의 핵심시설로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업체의 업종고도화를 지원
-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는 지역 내 산재된 혁신시설을 산단 내로 집적화, 제조업과 창의산업간 융 · 복합화 촉진, 혁신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산단의 업종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기존 **비즈니스센터**(기업지원기관 집적화 시설) + **기술특화센터**(창의아이디어 사업화 시설)
+ **지식산업센터**(제조시설) 3가지 기능을 동일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용도 센터**

< 융복합집적지구 표준 조성계획(안) >



- (기본구상) 유희부지를 산단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근로자복지 및 문화 판매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 (면적) 부지 23,999㎡, 건축 73,034㎡
- (재원) 사업비 1,154억원 중 국가 38%, 지자체 15%, 산단공·민간 47% 부담
 - ※ 국가재원은 기존예산 최대 활용, 혁신지원센터만 신규 예산지원
- (기대효과) 신규 126개사 기업 유치 및 3,400명 신규 고용창출



- 산출내역 : 4개 단지 × 2,000백만원(설계·건축비) × 50%* = 4,000백만원
- * 1개 혁신지원센터 구축: 국비 4,000백만원 + 민간(산단공)·지자체 4,000백만원 등 총 8,000백만원 소요

② 산단 편의시설 확충(근로자복지센터) : 5,000백만원(출연)

-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 내에 사회 초년생인 청년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안정적 정주기반 구축 및 복지·편의시설 확충
- 산출내역 : 4개 단지 × 2,50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 * 국비 50%, 지방·민간비(신청주체: 지자체,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50%

③ 산단 편의시설 확충(노후기반시설개선) : 1,500백만원(출연)

- 산단 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환경개선 및 산단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 교통신호기 개선 지원
- 산출내역 : 1개 단지 x 3,000백만원 x 50%
- * '14년 2개년 지원 확정된 반월·시화 산단의 주차장 확충사업의 잔여 예산지원

④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 27,000백만원(출자)

- 산업단지 내 뿌리산업 등의 환경업종 집적화 및 지식산업센터 건축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의 업종 고도화를 위한 민·관 합동의 성공모델 창출
- 동 사업은 투자대상사업을 확정한 이후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관 협약체결시 구체적 사업 모델 및 추진방안 결정

□ 지원 필요성

- 산단은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산업패러다임 변화 및 노후화로 핵심인프라 기능이 저하
 - 산단의 산업생태계 조성 역량 부족으로 기업들의 개별입지가 증가한 결과, 업종 간 융·복합, 산학연계 등 시너지 효과 미미
 -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의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교육·문화·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기업들의 구인난 심화*
 - * 대학 졸업대상자 2/3가 산단 취업을 기피, 그 사유로 편의시설 부족·안전문제 등 환경요인(45.6%)으로 지적, 저임금은 12.6%에 불과(산단공 '13.6월)
- 산단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3차 무투회의('13.9월)에서 노후산단을 청년층과 첨단 기업에게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 조성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 * 제3차 무투회의 시('13.9월)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 방안 VIP 보고후 혁신산단을 선정하여 융복합집적지 조성, 혁신기관 집적화 등의 사업 추진
 - 중장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단혁신을 추진하고, 융복합집적지* 등을 순차개발하여 산단 공간재편 유도
 - * 산단공이 유휴부지 활용하여 블록단위(1만㎡) 복합개발 및 뿌리산업 집적지 등을 조성
 - 또한, 산단 외 혁신기관을 산단 내로 집적화하여 산단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산단 환경개선에 정부역량을 집중 지원*
 - * 관계부처 공동으로 '산단 환경개선 유관사업' 합동공모를 통해 산단 환경개선 추진
-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과 사람·기술·기업·문화가 모이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산단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투입이 필요

- 노후 산단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업종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산단혁신지원센터’ 등의 신규 예산 반영 필요
- 또한, 산단 내 부족한 복지·편의시설, 산업집적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기존 예산(산단환경개선 펀드) 증액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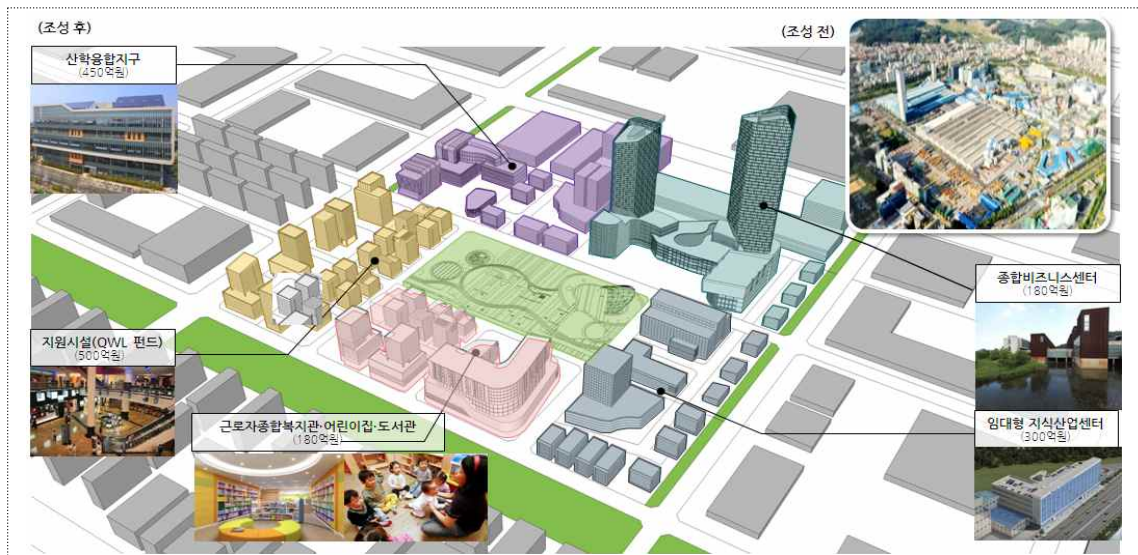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단지 환경조성	11,000	23,000	37,500	14,500	63.0
▪ 산단 혁신지원센터	-	-	4,000	4,000	신규
▪ 산단 편의시설 확충	-	10,000	6,500	△3,500	△35.0
▪ 산단 환경개선펀드	10,000	13,000	27,000	14,000	107.7
▪ 산단 교통체계 개편	1,000	-	-	-	-
☐ 비목	11,000	23,000	37,500	14,500	63.0
▪ 출자금	10,000	13,000	27,000	14,000	107.7
▪ 출연금	1,000	10,000	10,500	500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발표한 ‘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17년 까지 17개 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하여 리모델링 추진
 - ‘14년에 7개 산단(上4, 下3), ‘15년~17년까지 추가 10개 산단을 혁신산단을 지정하여 공간재편, 업종고도화, 혁신역량 강화 등의 사업 추진
-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단별 종합발전 계획(M/P) 수립, 혁신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
 - 노후 산단 중장기 종합발전전략 수립, 혁신기관 집적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정책 운영, 산단내 혁신자원의 집적·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추진전략 수립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별 다양한 지원정책 및 사업의 산단 내 집중 지원 협업체계 구축 등
- 또한, 노후 산단의 공간 재편, 첨단기업 유치, 청년층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산단 내 휴·폐업부지를 대상으로 융·복합집적지 조성 추진

< 융복합집적지 구상(안)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30	▪ (산단편의시설 확충) 100억원 ▪ (산단환경개선펀드) 130억원
'15	375	▪ (산단편의시설 확충) 65억원 ▪ (산단환경개선펀드) 270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40억원
'16	330	▪ (산단편의시설 확충) 50억원 ▪ (산단환경개선펀드) 220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60억원
'17	356.4	▪ (산단편의시설 확충) 50억원 ▪ (산단환경개선펀드) 246.4억원, ▪ (산단혁신지원센터) 60억원
'18	302.94	▪ (산단편의시설 확충) 50억원 ▪ (산단환경개선펀드) 192.92억원 , ▪ (산단혁신지원센터) 6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9 및 제45조의13

- 관련 공약
 - VIP께서는 노후화된 창원국가산단을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공약
 - 산업단지가 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을 밝힘('13.6.5 대구국가산단 기공식, VIP말씀)

○ 추진경위

- '09.4.29: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제12차 국경위)
 - *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실시, 국가재정지원
- '10.4.21: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 보고(제7차 지역위)
 - * 주요내용: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10.10.27: 「QWL 밸리조성계획」 보고(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 * 주요내용: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으로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산업단지 구축
- '12.6 : 「QWL 밸리조성 로드맵 구축 방안」 보고
 - * 주요내용: 노후단지 대상 QWL 밸리 확산단지 추가 확대
- '13.9.25 :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
 - * 주요내용: '17년까지 19개 산단 리모델링, 산단 내 관계부처 지원사업 집중지원 등
- '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업
- '14.3.12: 혁신산업단지 선정(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국정과제(Ⅱ-7-107-2) 해당 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산업단지환경조성	150	160	110	230	3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단혁신지원센터, 산단편의시설 확충) 사업계획 수립 → 공모(지자체 등) → 평가·선정 → 공사착공 → 준공
- (산단환경개선 펀드) 펀드 조성 세부계획 수립 → 펀드 운용사 선정 → 민간투자자 모집 → 금융위 펀드 등록 → 펀드 투자 개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별도 첨부

참고1

'14년 기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세부내용

①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14년 130억원)

- (사업개요) QWL밸리 사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조성
- (투자분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집법 제45조의2)
- (펀드종류) 투자신탁형사모펀드(계약형 펀드)
- (투자방식)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또는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equity) 또는 대출 형태로 투자

〈 QWL 밸리 펀드 투자사업 현황 및 계획 〉

구 분	1차펀드('11년)	2차('12년)	3차('13년)	4차('14년)
총투자액 (국비)	총606억원 (150억원)	총390억 (160억원)	총340억원 (100억원)	총 580억원 (130억원)
투자대상	반월단지내 호텔 및 오피스텔	반월단지내 환경업종 집적화 공장개발(7개동)	창원단지내 근로자임대주택	구미단지내 근로자임대주택
사업기간	'12.12~'21.12 (2년 개발 후 임대)	'13.7~'17.4 (1년 개발 후 임대)	'14.4~'25.4 (2년 개발 후 임대)	'15.1~'18.6 (분양)

②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14년 100억원)

- (사업개요) 노후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부족한 정주시설 및 주차장 확충, 노후 교통신호장비 개선
- (지원대상)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9개 산단 지자체
* 서울디지털, 주안·부평, 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 대불, 군산, 창원
- (지원내용) 근로자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교통신호장비 개선 등에 총 100억원 지원

〈 '14년도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예산(백만원)
근로자복지센터		기숙사 건축	지자체, 입주기업	7,500
교통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확충	주차타워 건립	지자체	1,500
	교통신호장비 개선	노후 신호장비 교체	지자체	1,000

- (추진절차) 지원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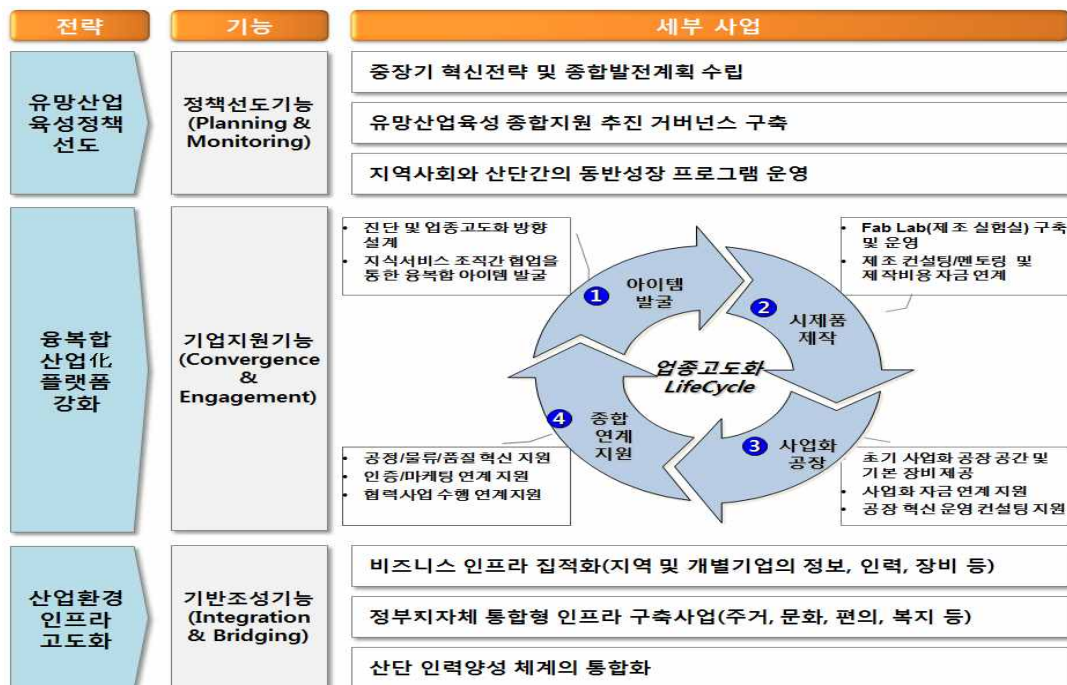
참고 2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구축계획(안)

1. 기본방향

- 산단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산단 내 혁신시설(Infra)의 집적화, 기업지원사업(Program)의 통합화, 혁신주체(Governance) 간 연계·협력화를 통해 산단별 산단혁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산단혁신지원센터 추진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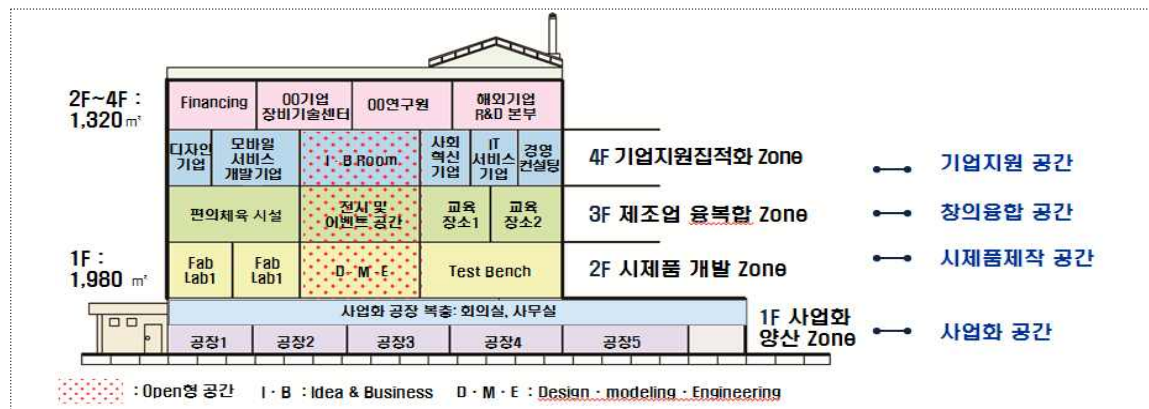
2. 구축 계획(안)

- (구축방식) 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각종 시설, 주체, 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레고(Lego)형 센터 구축
- (운영형태) 산단 관리기관, 지자체, 연구소,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산단별 “구조혁신 추진본부”를 구성·운영
- (주요기능) 입주기업의 업종 고도화 및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단 및 성장 컨설팅, 시제품 제작, 양산 테스트, 사업화 공장 등 One Stop Full Service 형태로 지원

- (창의·혁신시설 집적화) 단지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성장 유망산업에 부합된 기업, 연구소, 교육센터, 지원기관 등 혁신시설을 산단 센터 내로 유치 및 이전하여 집적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업종 고도화 지원) 지역 내 다양한 창의·혁신형 사업 아이템과 산단 내 제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新사업으로 업종 고도화를 지원
- (유망기업 육성) 단지별 성장유망산업에 부합하고 혁신성과 창의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한 후 일정기간(3~5년간) 집중 지원하여 단지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Core)기업으로 육성

□ (공간계획) 혁신산단 융복합집적지 내 약 3,600m² 부지에 건축연면적 5,940m²(건축면적 1,980m²), 4층 구조로 건축 예정

〈 산업혁신지원센터 표준 구축모델(안) 〉



□ (소요예산) 1개 혁신센터 당 총 100*억원 재원 소요

* 센터 당 국비 총 40억원 이내 지원*하고 기타 비용은 지방비 또는 민간비로 부담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75억원, 설계비 5억원, 장비도입 10억, 운영비(2년간) 10억원 소요 예상

항목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 바	지 방 민 간	합 계	국 바	지 방 민 간	합 계	국 바	지 방 민 간	합 계	국 바	지 방 민 간	합 계	국 바	지 방 민 간	합 계		국 바	지 방 민 간	합 계
부지매입비	-			-			-			-			-			-			지방·민간부담
설계 감리비	5	-	5	5	-	5				-	-								건축비(부가세 제외)의 7.4%
건축비	25	50	75	5	10	15	10	20	30	10	20	30							416/3.3m ²
장비도입비	5	5	10							5	5	10							
운영비	5	5	10										2.5	2.5	5	2.5	2.5	5	
합계	40	60	100	10	10	20	10	20	30	15	25	40	2.5	2.5	5	2.5	2.5	5	

종합비즈니스센터(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종합비즈니스센터	4,650	6,200	2,900	△3,300	△53.2

* 사업코드 : 3333 - 302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입지총괄과(박영삼, 044-203-4430), 사무관(이중엽, 445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7~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지자체별 상이하나 평균 200억 규모의 센터 건립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지방비 매칭, 국비 40억 정액 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 기능과 편익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산단의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쾌적한 산업 환경을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전북 익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13~17년)을 위한 국비 100백만원
 - 15년 설계 및 공사착공을 위한 사업비 일부
 - 지하 1층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9,577㎡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 주요시설 : 다목적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전시 컨벤션 센터, 기타 편의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② (울산지역)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울산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13~16년)을 위한 국비 1,500백만원

- '15년도 공사추진을 위한 비용 일부 보조
-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000m²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 주요시설 : 업무시설, 행정·금융 지원시설, 세미나실, 상담장, 근로자복지시설 등

③ (제주지역)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내의 제주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14~16년)을 위한 국비 700백만원

- '15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비용 일부 보조
-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6,612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 주요시설 : 중소기업 홍보관, 행정·금융 지원시설, 세미나실, 상담장, 문화 복지시설 등

④ (광주지역) 평동일반산업단지 내의 광주평동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14~16년)을 위한 국비 600백만원

- '15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비용 일부 보조
-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 주요시설 : 중소기업 지원시설, 세미나실, 상담장, 문화 등 근로자 복지시설

□ 지원 필요성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설계 진행중이거나 공사중으로 공정별 예산지원 필요
- 공사중인 센터(울산), 설계중인 센터(광주, 제주, 익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4,650	6,200	2,900	△3,300	△53.2
▪ 군산	150	0	0	0	0
▪ 김해	2,000	0	0	0	0
▪ 청주	500	2,500	0	△2,500	순감
▪ 익산	1,000	700	100	△600	△85.7
▪ 울산	1,000	1,500	1,500	0	0
▪ 제주	0	500	700	200	40
▪ 양산	0	500	0	△500	순감
▪ 광주	0	500	600	100	20
☐ 비목		6,200	2,900	△3,300	△53.2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200	2,900	△3,300	△53.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사 중인 김해, 청주 사업 추진경과 모니터링 및 신규 착수한 광주, 제주의 지방비 매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보조금 집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62	▪ 청주(25, 익산(7), 울산(15), 제주(5), 양산(5), 광주(5)
'15	29	▪ 익산(1), 울산(15), 제주(7), 광주(6)
'16	25.52	▪ 익산(11), 제주(7), 광주(7.52)
'17	27.56	▪ 익산(11), 제주(6), 광주(10.56)
'18	23.43	▪ 제주(5), 광주(7), 신규(11.43)

* 지자체의 공사 진척률에 따라 변동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 및 제47조(자금지원)

■ 『산집법』 제2조 제19항

-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산집법』 제47조(자금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6년도 인천, 시흥, 대구지역 요구를 반영, '07년 예산 편성(국회)
- '07년도 구미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08년 예산 편성(국회)
- '08년도 청주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09년 예산 편성(국회)
- '09년에 청주지역의 '10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주시의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09년 예산 10억원이 불용됨에 따라 '10년 예산 10억원은 군산·새만금으로 전환(국회)
- 당초 '12년 종료를 목적으로 '12년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청주 및 김해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반영
- '12년도 울산, 익산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하여 '13 예산 편성(국회)
- '14년도 제주, 광주, 양산지역 신규 요구를 반영, '13년말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반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종합비즈니스센터	15	43.5	46.5	62	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500	0	0	1,500	1,500	0	0
	(1,500)	(0)	(0)	(1,500)	(1,500)	(0)	(0)
'12년	4,350	0	0	4,350	4,350	0	0
	(1,500)	(0)	(0)	(1,500)	(1,500)	(0)	(0)
'13년	4,650	0	0	4,650	4,650	0	0
	(1,500)	(0)	(0)	(1,500)	(1,50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주(10억) 및 김해(20억)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반영
 - 국가산단에 설립되는 센터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필요('09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감사원 지적
 - 익산비즈니스센터 대상 부지를 익산KTX역사에서 산업단지내로 재검토(2013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업부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사업 추진 → 준공 → 정산보고
제출(지자체 → 산업부)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371	298	392	94	31.5

* 사업코드 : 3334 - 151

* 담당자 : 지역발전위원회 국장(유정열), 과장(고광필), 주무관(하지현, 02-2100-11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지역발전위원회

2. 사업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직원 인건비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15년 예산은 전년대비 94백만원 증가된 392백만원

* 인건비 사업은 금년대비 7% 일괄 증액 요구(산업부 지침)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산출근거
○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392	
- 인건비(110)	270	소속직원 인건비
- 직무수행경비(250)	122	소속직원 직급보조비

○ 기타직보수 : 270백만원

-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2명 보수 지급 : 135백만원

가급(1명) : 79백만원 (연봉 66 + 수당 13) × 1

나급(1명) : 56백만원 (연봉 46 + 수당 10) × 1

- 상근계약직 직원 5명 보수 지급 : 135백만원

나급(1명) : 33백만원 (기본급30 + 수당 3) × 1

다급(1명) : 31백만원 (기본급28 + 수당 3) × 1

라급(1명) : 25백만원 (기본급23 + 수당 2) × 1

마급(2명) : 46백만원 (기본급21 + 수당 2) × 2

○ 직급보조비 : 122백만원

- 전문계약직 가급 : 0.4백만원/월 × 12월 × 1명 = 4.8백만원

- 전문계약직 나급 : 0.25백만원/월 × 12월 × 1명 = 3.0백만원

- 지자체파견공무원(5급) : 0.3백만원/월 × 12월 × 13명 = 46.8백만원

- 부처파견공무원(4~5급) : 0.2백만원/월 × 12월 × 27명 = 64.8백만원

- 부처파견공무원(6~7급) : 0.1백만원/월 × 12월 × 2명 = 2.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속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지 지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371	298	392	94	31.5
▪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371	298	392	94	31.5
□ 세출예산 비목(합계)	371	298	392	94	31.5
▪ 인건비(110)	312	241	270	29	12
▪ 직무수행경비(250)	59	57	122	65	11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발전위원회 소속 직원 인건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98	▪ 물가상승률 적용
'15	3.92	▪ 지역위원회 직원 규모 고려
'16	4.19	▪ 물가상승률 적용
'17	4.49	▪ 물가상승률 적용
'18	4.80	▪ 물가상승률 적용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4-18 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제 26조 등

* 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 법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3년 이후 계속,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03.12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 '04.4.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지역발전위원회 인건비	4	3	3	3	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소속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50백만원을 전용

○ 2012년

- 파견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43백만원을 전용

○ 2013년

- 파견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48백만원을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	0	0.5	4	4	0	0.8
	()	()	()	()	()	()	()
'12년	3	0	0.4	4	3	0	0.4
	()	()	()	()	()	()	()
'13년	3	0	0.5	4	4	0	0.1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지역발전위원회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490	2,346	2,371	25	1.1

* 사업코드 : 3334 - 301

* 담당자 : 지역발전위원회 국장(유정열), 과장(고광필), 주무관(하지현, 02-2100-11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지역발전위원회

2. 사업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15년 예산은 전년대비 25백만원 증가된 2,371백만원

* 인력증원(11명) 및 핵심사업 추가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반영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산 출 근 거
○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371	
- 인건비(110)	55	소속직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운영비(210)	924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사무실 유지비 등
- 여비(220)	201	국내외 업무출장관련 여비
- 업무추진비(240)	210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회의 및 행사 경비
- 직무수행경비(250)	111	과장급 이상 월정직책급
- 연구개발비(260)	760	지역발전관련 연구용역 사업비
- 민간이전(320)	20	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 건설비(420)	20	시설물 및 동 부대시설에 따른 경비
- 유형자산(430)	70	자산 구입비

□ 지원 필요성

-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490	2,346	2,371	25	1
▪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490	2,346	2,371	25	1
□ 세출예산 비목(합계)	2,490	2,346	2,371	25	1
▪ 인건비(110)	0	30	55	25	83
▪ 운영비(210)	1,099	926	924	△ 2	△ 0.2
▪ 여비(220)	201	189	201	12	6
▪ 업무추진비(240)	239	210	210	-	-
▪ 직책수행경비(250)	111	111	111	-	-
▪ 연구개발비(260)	730	800	760	△ 40	△ 5
▪ 민간이전(320)	20	20	20	-	-
▪ 건설비(420)	30	20	20	-	-
▪ 유형자산(430)	60	40	70	30	7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3.5	▪ 전년대비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감액
'15	23.7	▪ 기획단 인원증가
'16	20.9	▪ 경상경비 감액
'17	22.5	▪ 물가상승률 적용
'18	19.1	▪ 경상경비 감액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 한 14-18 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제 26조 등
 - * 법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 * 법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3년 이후 계속,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03.12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 '04.4.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5	25	25	23	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소속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50백만원을 전용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22백만원 이월
- 위원회 행사취소, 운영비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469백만원 불용

○ 2012년

- 소속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43백만원을 전용
- 국내 행사개최를 위한 국내여비 지급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35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 운영비 및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300백만원 불용

○ 2013년

- 소속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직급보조비로 48백만원을 전용
- 위원회가 7월 출범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추진이 상반기에 불가능하여 371백만원 불용
- 운영비 및 국외여비 등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437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5	0	-0.5	25	20	0.22	5
	()	()	()	()	()	()	()
'12년	25	0.22	-0.43	25	22	0	3
	()	()	()	()	()	()	()
'13년	25	0	-0.48	25	16	0.46	8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경제협력권산업육성(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	45,668	45,668	순증

* 사업코드 : 4231 - 321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산업과(신희동, 044-203-4420), 사무관(유재호, 44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20 (6년간)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사업수행) 지역기업, 대학, TP, 연구원 등 지역혁신기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원

2. 사업목적

-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경제협력권 지원

* 협력권 선정기준 : ①집적도·특화도·성장성 등 지역 내 산업여건 및 기업수요
② 시도별 육성보다 시도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산업,
③ 지역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협력 대상 산업 자율 선정

-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시제품제작·디자인·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병행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경제협력권사업 기술개발수행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의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45,668백만원 요구

산출내역 : 45,668백만원

= (목적사업) 36개 지역별 협력산업 × 1,102백만원 +
(지역특화프로젝트) 3개 지역별 협력산업 × 2,000백만원)

- 지역특화프로젝트에 따라 지원하는 3개 세부 시·도 별 협력산업(울산 나노융합소재, 강원 로하스헬스케어, 의료기기)은 산업 당 각각 20억원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경제협력권산업 16개, 세부 시·도 별 협력산업 39개)>

경제협력권산업	협력권		경제협력권산업	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경남 부산	전남 울산	④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② 화장품	충북	제주	⑤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③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⑥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⑧ 로하스헬스케어	제주	강원	⑦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⑬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⑩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⑭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⑪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⑮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⑫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⑯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 지원 필요성

-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간 협력산업을 지원할 필요
- 박근혜정부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기로 결정('13.7월)

< HOPE 프로젝트의 지역산업정책 전환방향 >

- ▶ (정책공간) 광역경제권 → 시·도 자율, 경제협력권
- ▶ (정책목표)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 ▶ (육성전략) 지역 기반 제조업·서비스업, IT 등 첨단기술 융·복합
- ▶ (지원방식)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연계협력형

- 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역사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 역량강화방안」을 3차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13.10월)

* 시·도를 중심으로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 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시·군·구(행복생활권)에서는 전통(연고)산업 육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14.1월)

- 동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항(경제협력권산업 선정), 제2항(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 등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근거 확보

< 균특법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기 준	개 정 (현행)
목 표	▪ 지역경쟁력 강화	⇒ ▪ 지역경쟁력 강화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 체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법정기구)	⇒ ▪ <u>시·도</u> * <u>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임의기구)</u>
정책공간	▪ 기초생활권 ▪ 광역경제권	⇒ ▪ <u>지역생활권</u> ⇒ ▪ <u>경제협력권</u>
계획체계	▪ 지역발전5개년계획 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 ▪ 지역발전5개년계획 내 시·도별 발전계획

○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추진 결정('14.2월)

* '세부과제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14.3.) :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경제(산업)협력권사업 추진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경제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지역발전위원회(7차, '14.5.16.) 및 국무회의(29차, '14.7.8.)는 산업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재정비 계획*」 심의·의결

* 시·도 중심으로 산업의 특화도, 집적도,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시·도별 주력산업(총 63개)과 시·도 간 협력산업(총 16개) 확정,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지원키로 결정

○ 지역발전5개년계획(균특법 제4조) : '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1.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에 반영

- 기업경쟁 양상이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산업·기술생태계간 경쟁으로 이행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협력형 R&D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업 혁신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동종업계 기업 간, 산·학·연 간 열린 혁신이 더욱 중요
- 정부 R&D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산 협력 과제는 약 6.6% 수준('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KISTEP)

- 지역의 중소기업은 개별기업 단위로 고립되어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선도형 기업으로의 전환이 지체

* 중소기업 기술개발 추진방법(중기청, '11): 자체(단독) 82%, 외부공동 13%, 외부위탁 3.1%, 국내 기술도입 1.0%, 해외기술도입 0.9%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	45,668	45,668	순증
▪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	45,668	45,668	순증
☐ 비목	-	-	45,668	45,668	순증
▪ 출연금(350-01)	-	-	45,668	45,668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별로 같은 Supply-Chain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을 공동 지원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과제 확대
-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인력양성·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을 병행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457	▪ (목적사업) 36개 시·도 별 협력산업 × 11억원 + (특화프로젝트) 3개 협력산업 × 20억원
'16	457	▪ (목적사업) 36개 시·도 별 협력산업 × 11억원 + (특화프로젝트) 3개 협력산업 × 20억원
'17	457	▪ (목적사업) 36개 시·도 별 협력산업 × 11억원 + (특화프로젝트) 3개 협력산업 × 20억원
'18	457	▪ (목적사업) 36개 시·도 별 협력산업 × 11억원 + (특화프로젝트) 3개 협력산업 × 2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2. ...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
3. ...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
4. ...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 추진경위

- '13년 7월	: 박근혜 정부, 'HOPE 프로젝트'에서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한 지역산업 육성기로 결정
- '13년 10월	: 'HOPE 프로젝트'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강화방안」 보고(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1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
- '14년 2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기로 결정
- '14년 3월	: 협력산업권을 확정·발표하고, 산업부 - 시·도 간 '경제협력권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 '14년 5월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국정과제 107-3)
- '14년 5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방안」을 심의·의결(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7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재정비 계획(안)」 심의·의결(제29차 국무회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	-	-	45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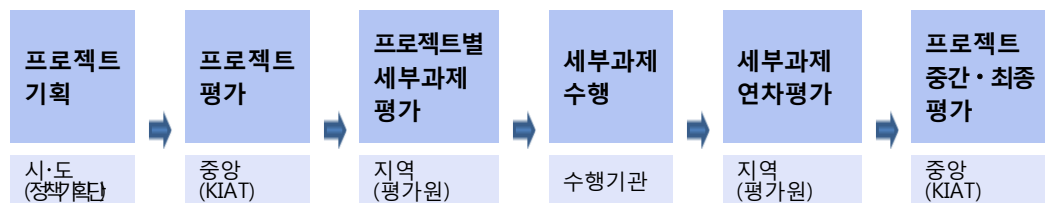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지역정책의 선진국인 유럽은 '00년부터, 일본은 '05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시행 중
- (유럽) 지역 간 협력이 균형발전, 경쟁력·고용과 함께 유럽통합 정책의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됨에 따라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보조율을 75~85%로 상향 조정

- (일본)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 행정단위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혁신창출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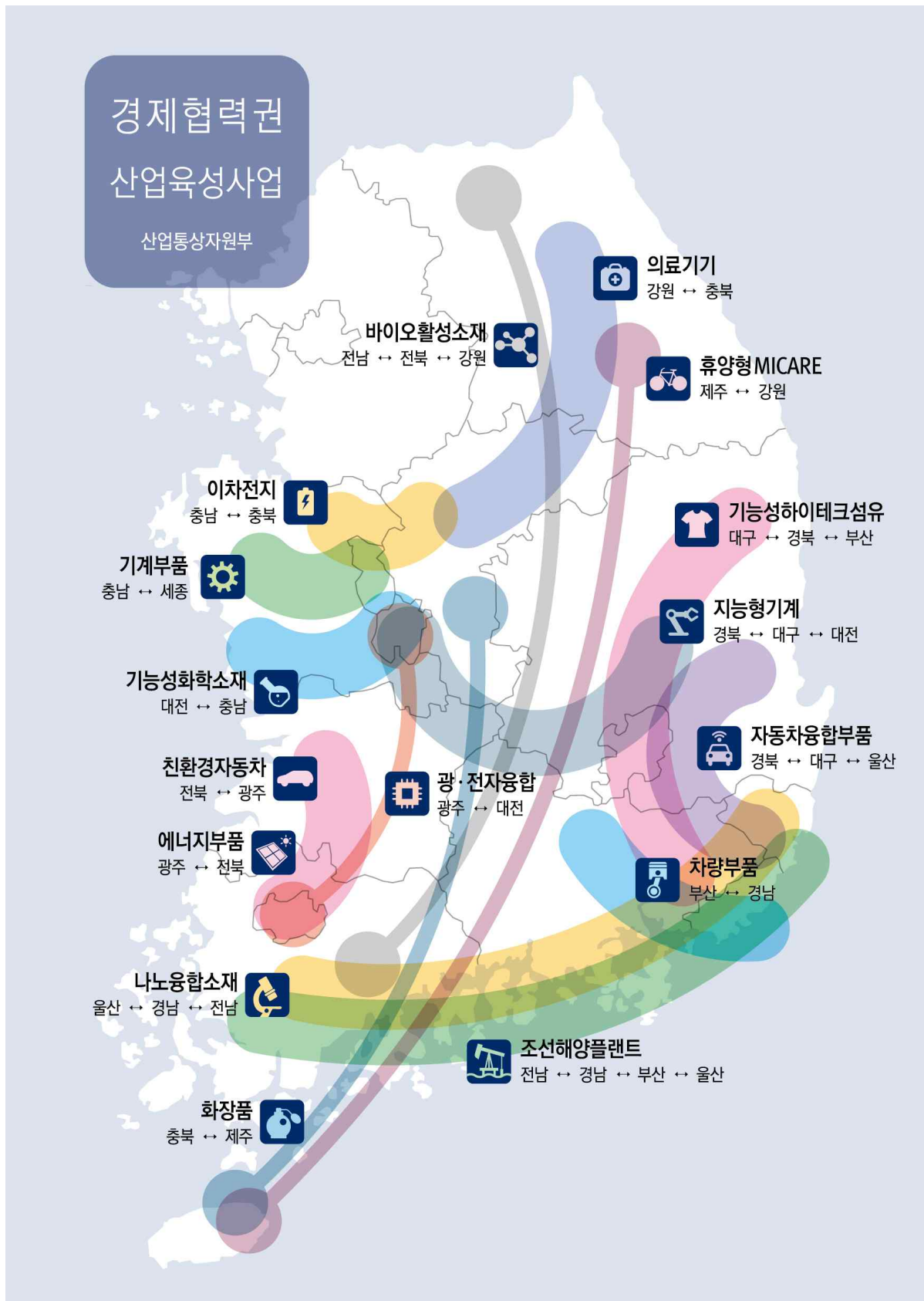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 ① (협력산업프로젝트 세부기획) 지역은 지역산업발전계획을 통해 수립한 지역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 지역 주도로 TP, 지역사업평가원 등 산업기술혁신기관의 지원 하에 산업생태계 조사, 기업특성(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에 반영
 - (프로젝트 기획안의 검토·컨설팅) 산업·기술·지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 ② (프로젝트 기획안 평가) 프로젝트 기획안 제고 및 예산 차등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선정평가 실시
- ③ (세부과제 추진) 지역 주도로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선정평가→과제수행→연차평가 추진
- ④ 프로젝트 추진성과에 대한 중앙의 연차별 중간·최종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타 면제

6. 참고자료



경제협력권산업육성(신규, R&D)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	-	123,400	123,400	순증

* 사업코드 : 4231 - 321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산업과(신희동, 044-203-4420), 사무관(유재호, 44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20 (6년간)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사업수행) 지역기업, 대학, TP, 연구원 등 지역혁신기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원

2. 사업목적

-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한 경제협력권 지원

* 협력권 선정기준 : ①집적도·특화도·성장성 등 지역 내 산업여건 및 기업수요
 ②시도별 육성보다 시도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산업,
 ③지역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협력 대상 산업 자율 선정

-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병행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 16개 협력산업 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3,400백만원** 지원

산출내역 : **123,400백만원**

= (목적사업) 37개 지역별 협력산업 × 3,173백만원 +
(지역특화프로젝트) 2개 지역별 협력산업 × 3,000백만원)

- 경제협력권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16개 경제협력권산업에 총 123,400백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

* 지역특화프로젝트에 따라 지원하는 2개 지역별 협력산업(강원 로하스헬스케어, 의료기기)은 산업 당 각각 30억원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경제협력권산업 16개, 세부 시·도 별 협력산업 39개)>

경제협력권산업	협력권		경제협력권산업	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경남 부산	전남 울산	④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② 화장품	충북	제주	⑤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③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⑥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⑧ 로하스헬스케어	제주	강원	⑦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⑬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⑩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⑭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⑪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⑮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⑫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⑯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 지원 필요성

-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간 협력산업을 지원할 필요
- 박근혜정부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키로 결정('13.7월)

< HOPE 프로젝트의 지역산업정책 전환방향 >

- ▶ (정책공간) 광역경제권 → 시·도 자율, 경제협력권
- ▶ (정책목표)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 ▶ (육성전략) 지역 기반 제조업·서비스업, IT 등 첨단기술 융·복합
- ▶ (지원방식)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연계협력형

- 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역사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 역량강화방안」을 3차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13.10월)

* 시·도를 중심으로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 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시·군·구(행복생활권)에서는 전통(연고)산업 육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14.1월)

- 동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항(경제협력권산업 선정), 제2항(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 등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근거 확보

< 균특법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기 준	개 정 (현행)
목 표	▪ 지역경쟁력 강화	⇒ ▪ 지역경쟁력 강화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 체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법정기구)	⇒ ▪ <u>시·도</u> * <u>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임의기구)</u>
정책공간	▪ 기초생활권 ▪ 광역경제권	⇒ ▪ <u>지역생활권</u> ⇒ ▪ <u>경제협력권</u>
계획체계	▪ 지역발전5개년계획 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 ▪ 지역발전5개년계획 내 시·도별 발전계획

○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추진 결정('14.2월)

* '세부과제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14.3.) :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경제(산업)협력권사업 추진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경제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지역발전위원회(7차, '14.5.16.) 및 국무회의(29차, '14.7.8.)는 산업부의 「지역산업육성사업 재정비 계획*」 심의·의결

* 시·도 중심으로 산업의 특화도, 집적도,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시·도별 주력산업(총 63개)과 시·도 간 협력산업(총 16개) 확정,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지원키로 결정

○ 지역발전5개년계획(균특법 제4조) : '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1.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에 반영

- 기업경쟁 양상이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산업·기술생태계간 경쟁으로 이행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협력형 R&D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업 혁신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동종업계 기업 간, 산·학·연 간 열린 혁신이 더욱 중요
 - 정부 R&D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산 협력 과제는 약 6.6% 수준('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KISTEP)
- 지역의 중소기업은 개별기업 단위로 고립되어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선도형 기업으로의 전환이 지체
- * 중소기업 기술개발 추진방법(중기청, '11): 자체(단독) 82%, 외부공동 13%, 외부위탁 3.1%, 국내 기술도입 1.0%, 해외기술도입 0.9%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	123,400	123,400	순증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	-	123,400	123,400	순증
☐ 비목	-	-	123,400	123,400	순증
▪ 출연금(350-01)	-	-	123,400	123,4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별로 같은 Supply-Chain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을 공동 지원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 과제 확대
-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인력양성·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을 병행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1,234	▪ (목적사업) 37개 시·도 별 협력산업 × 32억원 + (특화프로젝트) 2개 협력산업 × 30억원
'16	1,039	▪ (목적사업) 37개 시·도 별 협력산업 × 26억원 + (특화프로젝트) 2개 협력산업 × 30억원
'17	1,044	▪ (목적사업) 37개 시·도 별 협력산업 × 27억원 + (특화프로젝트) 2개 협력산업 × 30억원
'18	1,049	▪ (목적사업) 37개 시·도 별 협력산업 × 27억원 + (특화프로젝트) 2개 협력산업 × 3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2. ...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
3. ...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
4. ...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 추진경위

- '13년 7월	: 박근혜 정부, 'HOPE 프로젝트'에서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한 지역산업 육성기로 결정
- '13년 10월	: 'HOPE 프로젝트'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강화방안」 보고(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1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
- '14년 2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추진기로 결정
- '14년 3월	: 협력산업권을 확정·발표하고, 산업부 - 시·도 간 '경제협력권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체결(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 '14년 5월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국정과제 107-3)
- '14년 5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방안」을 심의·의결(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 '14년 7월	: 주력·협력·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포함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재정비 계획(안)」 심의·의결(제29차 국무회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	-	-	-	1,23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지역정책의 선진국인 유럽은 '00년부터, 일본은 '05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시행 중
- (유럽) 지역 간 협력이 균형발전, 경쟁력·고용과 함께 유럽통합 정책의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됨에 따라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보조율을 75~85%로 상향 조정

- (일본)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 행정단위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혁신창출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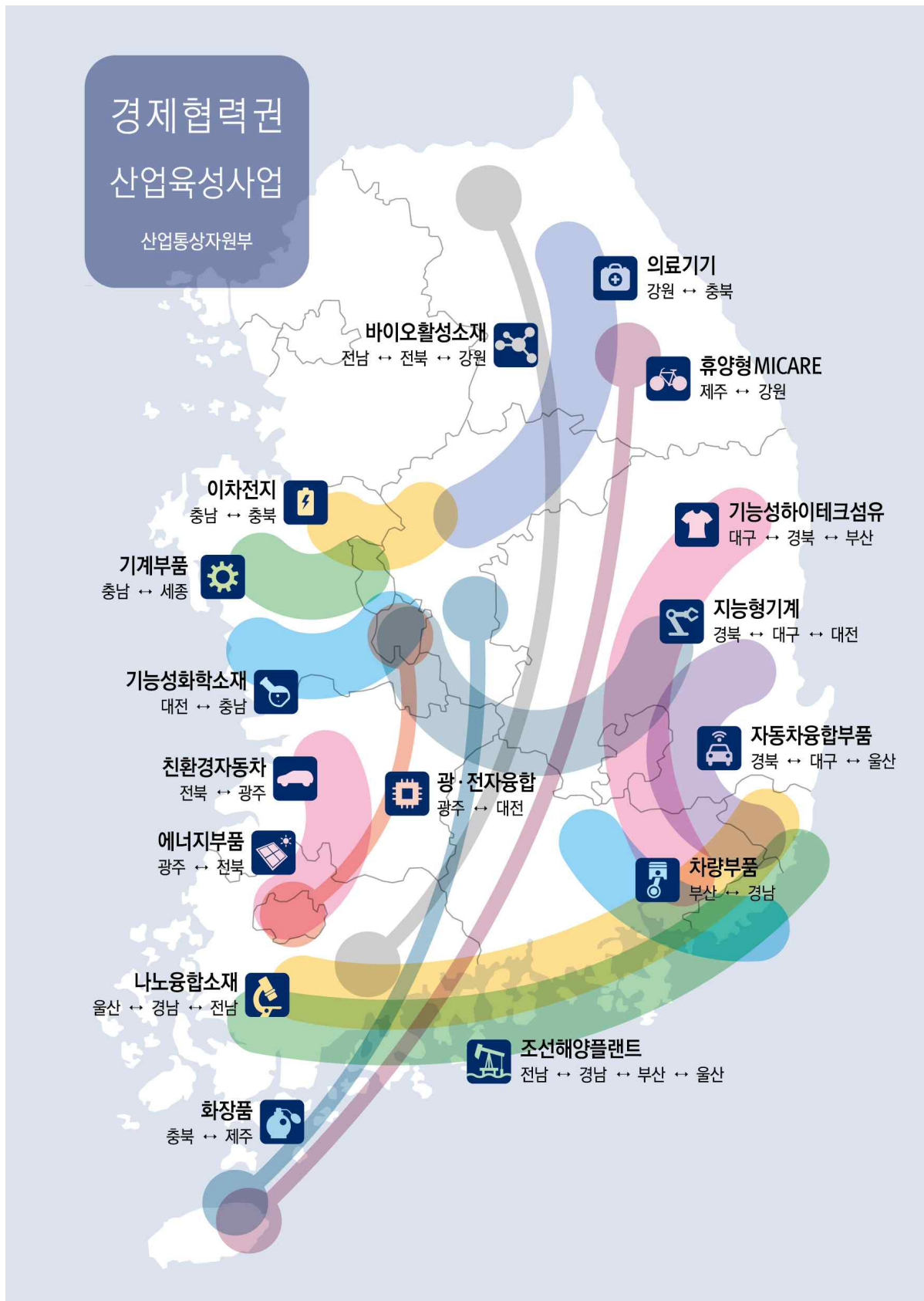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 ① (협력산업프로젝트 세부기획) 지역은 지역산업발전계획을 통해 수립한 지역 기술로드맵에 근거하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 지역 주도로 TP, 지역사업평가원 등 산업기술혁신기관의 지원 하에 산업생태계조사, 기업특성(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에 반영
 - (프로젝트 기획안의 검토·컨설팅) 산업·기술·지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 ② (프로젝트 기획안 평가) 프로젝트 기획안 제고 및 예산 차등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선정평가 실시
- ③ (세부과제 추진) 지역 주도로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선정평가→과제수행→연차평가 추진
- ④ 프로젝트 추진성과에 대한 중앙의 연차별 중간·최종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타 면제

6. 참고자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계속, R&D)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세부사업명	54,400	57,730	59,730	2,000	3.4

* 사업코드 : 4231 - 308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입지총괄과(박영삼, 044-203-4430), 주무관(유재욱, 44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사업목적

- 산업단지가 창조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 46,230백만원, 74개 MC운영

- 창조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산학연협의체(MC)를 단계적으로 확대 (71→100개, 제3차 무투회의 보고)
- 現 71개 MC를 2015년 신규 4개 추가를 통해 총 74개로 확대하고, 상향식 공동 R&BD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다양한 MC 활동 지원
- 그 동안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적 활성화*와 산학연 간 공동 R&D과제 수행을 통해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 * ('09년) 7,511건 → ('11년) 9,210건 → ('13년) 10,354건
- ** 사업 참여기업의 평균('12/'11년) 생산(7.7%), 수출(9.7%), 고용(3.8%) 등 높은 경제성 성과와 '08~'11년까지 총 1,092건의 R&D과제를 지원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 338건, 등록 198건, 사업화 498건, 과제당 2.02명의 고용창출 등 기술적 성과 달성
- 산단 관련 업종의 다양성, 분화 등을 감안, 산업단지 중심의 산학연 협의체의 추가 구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15년 계획) 산학연협의체*를 71개에서 74개로 4개 확대 계획이며, 참여기업 증가에 따른 공동협력 발굴과제 지원** 확대
 - * 현재 참여 중인 기업·대학·연구소는 7,781명이며, 협의체 1개당 평균 3천만원 지원
 - ** 해외교류협력사업은 기술개발 기업의 수요를 받아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추진
-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2,220백만원=30백만원×74개MC)
 - 산업단지별 특화된 산업과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제발굴 토론회 기술세미나 및 교류회 등 공동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지원 (R&BD발굴 기초 강화)
- R&BD 발굴 및 수행 (41,870백만원=197백만원×213과제)
 - 산학연협의체 및 참여기업 증가에 따라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에서 도출된 과제지원비 확대
- 온라인 산학연통합정보망 운영 및 클러스터 교류협력 (2,140백만원)
 - 산학연협의체 커뮤니티 운영, 네트워크 활동 및 과제지원 현황 등 온라인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국내외 클러스터 교류 및 공동협력 사업 추진

② 테마클러스터 운영 : 7,500백만원, 12개 과제 수행

- 산업단지 내외 기업가치사슬에 따른 특정 테마(주제)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자율적 구성·운영*함으로써 산학연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자생적 산업생태계** 형성 촉진
- * '13년 기준 16개 테마에서 총 260회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27건의 R&D 과제 등 총 63건의 공동협력과제 발굴
- ** 타 R&D사업과 달리, 테마클러스터 목표 내에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추가지원 (년 중 수시과제)하며, 지원기간(2년) 종료 후에도 지속지원 필요성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15년 계획) '13년 지원된 10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6개 과제를

추가 지원하고, '14년 신규 선정 예정인 8개 과제를 대상으로 2차년도 지원 추진 (7,500백만원 = 625백만원 × 12개 과제)

- * 가시화되는 사업성과 검토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5년도 신규 과제 추가는 보류

③ 산단 성장지원센터 구축·운영 : 6,000백만원

- 민간컨설팅社를 산업단지 현장에 배치하여 중소기업들의 R&BD기획, 기술사업화, 기업성장 로드맵 수립 등 체계적 기업의 R&BD 성장발전 지원*

- * 산업단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집중 육성기업 발굴 및 성장코칭(404개 과제), 산학연합의체 활동에서 발굴된 기업애로의 심층진단 및 해결지원(2,615건) 수행('13. 12월 누적)

- 단기적 기업애로해소 중심의 타 컨설팅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별 전담 주치의의를 배치하여 최대 3년간 기업성장발전 종합지원

- ('15년 계획) R&D 과제발굴·기획과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마케팅까지 밀착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주치의센터 추가 설치

- * 창조경제 집적시설로 조성 예정인 판교내 창조경제벨리센터 등에 산단성장지원 센터를 추가하여 타권역 대비 6.9배로 집적화된 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벨리센터에 창업·혁신 기관을 집적화하여 창조경제 가시적 성과 도출

□ 지원 필요성

- 지역 내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글로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인근 산업집적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대두

- * 전국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국민경제 비중('13) : 생산 66%, 수출 76%, 고용 48%

- 단순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혁신역량 공유를 통해 공동R&D 등 협업체계를 활성화 하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제6차('14~'18년) 산업기술혁신계획)

- * 현재 전국 산업단지내 71개 기술·업종별 산학연합의체(미니클러스터) 구성·운영 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산업클러스터의 확산이 필요 ('13.9월, 제3차 무역투자회의)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54,400	57,730	59,730	2,000	3.4
▪ R&D 네트워크 구축 운영	43,400	43,730	46,230	2,500	5.7
▪ 테마클러스터운영	7,000	10,000	7,500	△2,500	△25
▪ 성장지원센터구축운영	4,000	4,000	6,000	2,000	50
☐ 비목	54,400	57,730	59,730	2,000	3.4
▪ 출연금	54,400	57,730	59,730	2,000	3.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써 산학연간 협력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단지 성장발전 촉진
 - 지역별 특화업종·기술 중심에서 집적산업의 전·후방 연계 및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여 전국 산업단지에 산학연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산업생태계 조성
 - 자율적 테마클러스터 및 현장 밀착형 상시 성장지원시스템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 437억원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100억원 ▪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40억원
'15	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 462억원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75억원 ▪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60억원
'16	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 462억원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75억원 ▪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50억원
'17	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 462억원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75억원 ▪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50억원
'18	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 462억원 ▪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 75억원 ▪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 5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상기 법률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5호)

○ 추진경위

- ‘04. 1. 신국토구상 선포식(대통령보고)에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을 신 국토 구상 7대과제로 선정
- ‘04. 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보고(제45회 국정과제 보고)
 - * 혁신클러스터 추진방안 확정 및 7개 시범단지 지정(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05. 1.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혁신클러스터사업 실행계획” 수립
- ‘05. 4. 혁신클러스터사업 본격 착수
- ‘06. 1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성과 대통령 보고
- ‘07. 1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전략” 대통령보고
 - * 시범단지 추가 지정 : 인천 남동, 부산 녹산, 전남 대불, 대구 성서, 충북 오창
- ‘08. 2. 클러스터 추가 5개 대상단지 사업 추진계획 확정
- ‘09. 4.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를 통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방안 개선안” 대통령 보고
 - * 산업단지 클러스터 광역화,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클러스터에 맞는 사업개편 및 자생운영방안 등
- ‘10. 2.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세부실행계획” 고시
 - * 사업대상단지 : 193개 산업단지(거점 25개단지, 연계단지 168개단지)
- ‘12. 1. 전국 경쟁방식의 기업주도의 테마클러스터 시범 도입(지경부 고시)
 - * 기업의 가치사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의체 구성
- ‘13. 9. ‘산업단지 경쟁력제고 방안’ 대통령 보고 (제3차 무투회의)
 - *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산단 혁신역량강화 위해 ‘18년까지 산학연 협의체 100개로 확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614.5	580.5	544.0	577.3	597.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614.5 (614.5)	- ()	- ()	615.5 (615.5)	614.5 (614.5)	- ()	- ()
'12년	580.5 (580.5)	- ()	- ()	580.5 (580.5)	580.5 (580.5)	- ()	- ()
'13년	544.0 (544.0)	- ()	- ()	544.0 (544.0)	544.0 (544.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예결위('13년도 예산)

- (지적사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중심의 사업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연간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12년 8,281건 → '13년 10,354건)하고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 공동애로 과제를 발굴·지원 강화
- 클러스터사업을 통한 직접 과제지원 이외 타 정부 사업을 활용한 연계지원 확대 ('12년도 1,036건 → '13년도 1,109건)

○ 산업위('14년도 예산)

- (지적사항) 기업주치의센터사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두 사업 간에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산업부와 중기청간 연계협력('14.2월)을 통해 기업주치의센터의 단기코칭 기업중 종합적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 중기청으로 추천하여 치유사업연계지원, 건강관리시스템의 현장애로가 발견된 경우 단기코칭 대상기업으로 기업주치의센터에 추천하여 현장맞춤지원(반월시화, 창원, 구미, 광주 등 4개 지역에 한함)

○ 예결위('14년도 예산)

- (지적사항) 마케팅지원은 비 R&D 사업으로 R&D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KOTRA, 중소기업청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 및 예산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조치사항) '1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시, 마케팅 분야 예산을 이미 축소하고 공동(3개이상 기업) 참가시에 한정지원('13년 43억 → '14년 31억원)

2) 상위평가('12년도)

- (지적사항) 본 산업의 지원을 통한 최종적인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지표 설정이 필요
- (조치사항) 사업 성과지표를 사업 대상단지 생산, 수출 증가율에서 경제성장을 대비 사업 참여기업 생산, 수출 증가율로 변경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이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클러스터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산업클러스터육성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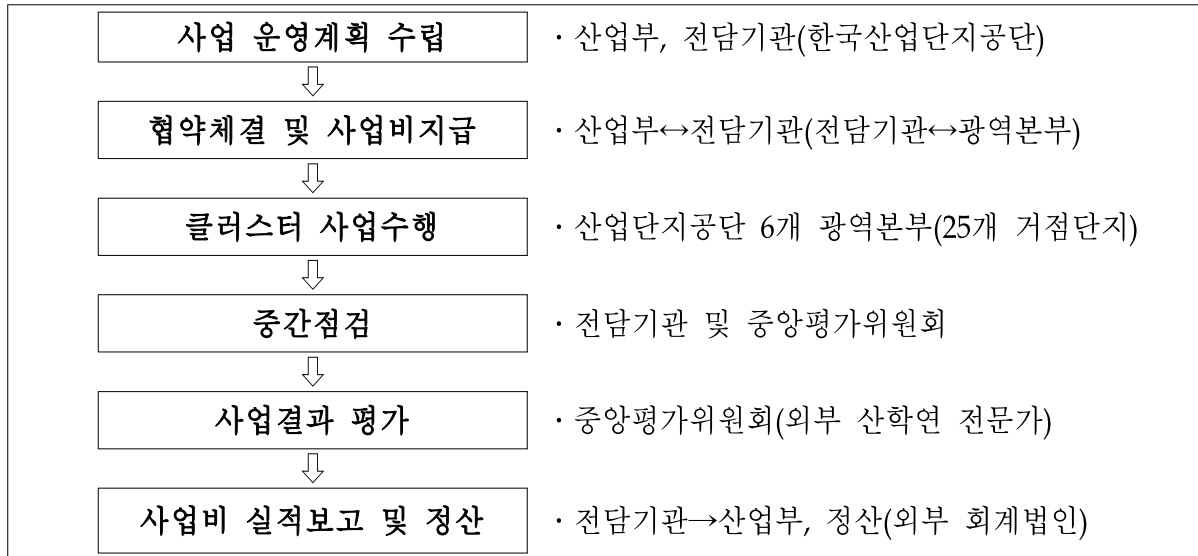
*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는 운영이 잘되는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일이다.” (Michel E. Porter)

< 주요 국가별 산업클러스터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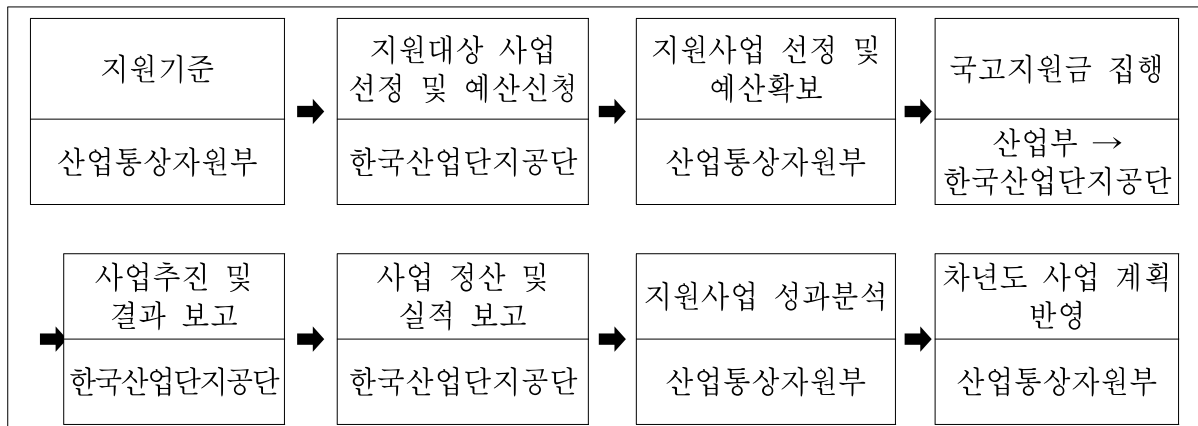
- (미 국) '01년 5개 지역혁신클러스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혁신주도형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 (실리콘밸리는 대표적 사례)
- (영 국) '01년 산업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9개 지역개발기구(RDA)를 통해 광역권 산업클러스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 (일 본) '01년 19개 광역권별 산업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 (홋가이도 IT, 바이오 클러스터 등 19개 클러스터 육성)
- (핀란드) 국가 또는 민간 주도로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 (오울루 IT산업 클러스터가 대표적 사례)
- (기 타) 신죽과학공업원구(대만), 소프트웨어파크(인도), 중관춘과기원구(중국), 실리콘 와디(이스라엘)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수행 절차



○ 사업비 집행 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현 황) '15년도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사업(39개 사업)에 포함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14. 4월, 미래부)
- (의 견) '05~'08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계속사업이며, 법령*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계속, R&D)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0,445	21,444	23,000	1,556	7.3%

* 사업코드 : 4231 - 302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김성진 국장), 입지총괄과(박영삼 과장, 044-203-5520), 김성명 사무관(445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1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국비 50%, 민간 50%)
사업시행주체	컨소시엄(대학, 기업 등)

2. 사업목적

-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하여 산업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교육-R&D-취업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학융합 촉진지원 : 14,000백만원(2,000백만원 × 7개지구*)

- 산학융합촉진 프로그램 : ①(학생) 선취업-후진학 등 일·학습병행사업,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프로젝트 lab, R&D lab, 산학공동R&D 정규 교과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육·취업연계 ②(근로자) 근로자 특별전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③(기업) 중소기업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주도형 R&D지원, 공용장비센터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7개지구 : '11년(시화, 구미, 군산), '12년(대불, 오송, 울산), '13년(당진)

② 산학융합 기반시설* 조성 9,000백만원(계속 3,000 + 신규 6,000)

- '14년 지정(계속) 1개 ×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 '15년 지정(신규) 2개 × 3,000백만원 = 6,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17년까지 17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산업 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산학융합의 선도모델 확대 조성 필요

- (일·학습 병행사업 확산)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인력 양성 및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지원사업(기재부·고용부 등)의 지역확산 거점*

* 산학융합지구를 듀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고, 기업연구관 입주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지역기술·연구인력 유출방지) 혁신산단 내 융복합집적지에 융합지구를 조성하고 문화·복지시설을 집적*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정착 유도(부처 협업*, '14.3월 제5차 무투회의)

* 문화부(문화재생, 도서관), 고용부(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 (지역 R&D 인력양성의 메카로 역할) 기업연구관 우수기업유치, 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공동 R&D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기술·연구인력 양성

* '14년 현재 7개 산학융합지구 조성·운영 중(7개 대학 17개 학과에서 학생 4,350명 이전완료, 기업연구소 151개 입주완료, 산학공동R&D·프로젝트 LAB 등 추진 중)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학융합지구 조성	30,445	21,444	23,000	1,556	7.2%
▪ 산학융합기반시설 조성*	24,000	9,000	9,000	0	
▪ 산학융합촉진사업	6,445	12,444	14,000	1,556	7.2%
□ 비목(출연금 합계)	30,445	21,444	23,000	1,556	
○ 출연금(350-01)	30,445	21,444	23,000	1,556	

* 산학융합기반시설 조성 : 9,000백만원(계속 1개 × 3,000, 신규 2개 × 3,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단지내에 산학융합 기반시설 구축과 산학융합 촉진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산학이 일체화된 체계 구축
 - *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조성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 '11.11)
 - *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조성시 시설확보 기준 등 대학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 완화('11.2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11년 선정된 반월시화, 군산, 구미는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 중
- '12년 선정된 대불, 오송, 울산과 '13년 선정된 충남당진 지구는 각각 '15년초와 '16년초에 준공목표로 기반조성 진행 중
- '14년 선정된 창원지구는 '16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기반 조성추진
- '15년 2분기까지 추가 2개지구 공모 선정 및 '17년까지 17개 확대 선정 목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촉진 124.44억원(계속 6개 × 20.74억원) ▪ 기반시설조성 90억원(계속 1개 × 60억 + 신규 1개 × 30억원)
'15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촉진 140억원(계속 7개 × 20억원) ▪ 기반시설조성 90억원(계속 1개 × 60억 + 신규 1개 × 30억원)
'16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촉진 110억원(계속 5개 × 22억원) ▪ 기반시설조성 150억원(계속 2개 × 30억 + 신규 3개 × 30억원)
'17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촉진 50억원(계속 4개 × 12.5억원) ▪ 기반시설조성 210억원(계속 3개 × 30억, 신규 4개 × 30억원)
'18	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촉진 140억원(계속 6개 × 23.3억원) ▪ 기반시설조성 120억원(계속 4개 × 3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0조의2)

<제19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0. 1월 지경부 2010년 업무계획(산학융합단지)
- '10.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추진과제(산학융합단지)
- '10. 6월 국가고용전략회의 TF회의(산학융합클러스터 조성)
- '10.10월 국민경제대책회의(QWL 밸리 조성계획)
- '11. 3~6월 '11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1. 5월 국민경제대책회의(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 '12. 3~5월 '12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3. 5~12월 '13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13.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 '14.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
- '14. 9~12월 '14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40	420	304.45	214.44	2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40			240	240		
	(240)	(-)	(-)	(240)	(240)	(-)	(-)
'12년	420			420	420		
	(420)	(-)	(-)	(420)	(420)	(-)	(-)
'13년	304			304	304		
	(304)	(-)	(-)	(304)	(30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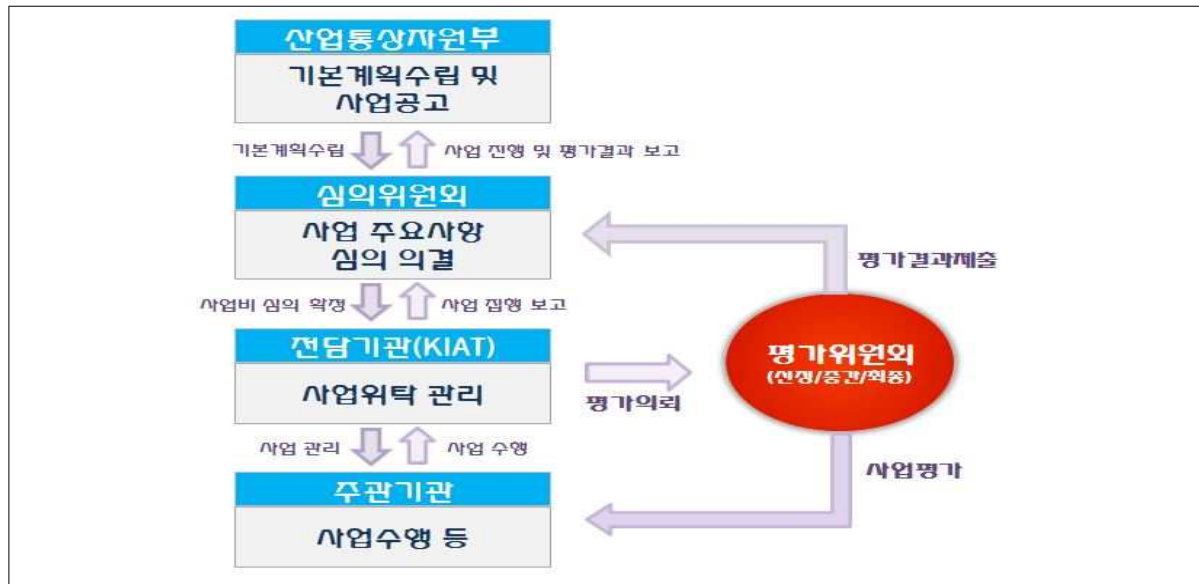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14.3.11) : 우수 등급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핀란드는 대학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 도마다 1개의 공과대학을 세우고,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건설
 - *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업들도 테크노폴리스 내로 입주, 각종 연구소에 연구개발 재정을 지원하면서 산학협동 공동연구개발
- 대학을 연구개발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어 기업 경쟁력 강화
- 미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이 일체화된 Research Triangle Park(RTP)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 산업기반이 취약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제발전을 위해 州 상무부와 13개 카운티가 RTP 지역 파트너십(RTRP)을 설립
- 듀크 대학 등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정보통신 분야의 다국적 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소 집적
 - * 대학 : 듀크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 기업 : IBM, 시스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SAS, 레드햇, 엘리릴리 등
 - 연구소 :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환경청 등
- 지역 대학의 우수 인력이 지역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
- 대만은 생산, R&D와 교육이 상호 연계되고 집적된 신주(新竹) 과학산업단지 조성
 - 신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지아오통대학, 칭화대학, ITRI(국가출연연구소), 전기전자 기업이 집적
 - 교수가 기업체의 부사장이 되고, 연구원이 대학에 출강하는 등 개방형 연구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와 생산을 연계
 - * 대학원생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ITRI는 기업, 대학, 출연연간 공동 연구 및 벤처 창업의 중심역할 수행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 노후 산업단지 혁신, 산학융합지구 확대('13년 6개 → '18년 25개)
- *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패키지 지원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

◆ '17년까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기반·문화·보육시설 등 확충
(※ 이에 따라 '18년까지 25개 산학융합지구 조성추진)

○ 정부부처 패키지 지원

- (교 육) 산학융합지구조성(산업부), 산단 캠퍼스(교육부) 등
- (산 업) 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산업부) 등
- (주 거) 기숙사(산업부), 미니복합타운(국토부) 등
- (문 화) 문화재생, 도서관(문화부) 등
- (보 육) 어린이집(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 (복 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고용부) 등
- (교 통) 통근버스(국토부), 공용주차장(산업부) 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 관계부처 합동)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

- ◆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일·학습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 필요
 - 산업단지 내 대학(산학융합지구)에 진학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산필요(56. 청년고용활성화부문)

- 「공과대학 혁신 방안」('14.4, 관계부처 합동)

- * 산학융합지구 확대('14년 7개→'17년 17개), 인력양성-R&D-맞춤형 고용 유도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및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 혁신모델 발굴·확산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14.4, 관계부처 합동)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산업단지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참고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11~'14)

□ 사업 내용

- (개념)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력양성-R&D-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기반시설 조성) 산업단지에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공동으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대학 및 기업연구소 입주



- (산학융합 촉진) 현장에서 융합인재 양성, 기업연구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와 산학공동 R&D 등 창업·사업화 지원
- (지원현황) '11~'17년까지 3,735억원을 투입하여 7개 산학융합지구 조성하고, 17개 대학 39개 학과에서 7천여명의 학생 이전 예정
 - * ('11) 시화, 군산, 구미, ('12) 대불, 오송, 울산, ('13) 당진, ('14) 1개 지구 선정 중
 - * 시설 2,435억원,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등 산학융합 촉진에 1,282억원 투자

□ 주요 성과

- (인프라 성과) 교육·문화·복지 사각지대인 산업단지를 개선하여 학생,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산업단지 전환 촉진
- (사회적 성과) 산업단지의 교육·연구 및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인력의 유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산단캠퍼스 이전) 3개 지구에 7개 대학 17개 학과, 4,708명 이전 완료
 - * (기업연구소 유치) 산학융합지구내 151개 기업연구소 입주 완료
 - * (엔지니어 양성) 고교생 직무교육 1,999명, 학부생 현장(융합)교육 1,649명
 - * (연구인력 양성) 산학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 150명 양성
 - * (기업지원센터 운영) 산학융합R&D 61건 및 기업애로 340건 해결 지원
- (고용 창출 및 창업) 117명이 참여기업에 취업, 9개 기업이 창업
- (제도개선) 교육부 및 국토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가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완료

□朴대통령 "제조업 대도약 위한 혁신 3.0 만들자"('14.6.27,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제조업 혁신 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입지, R&D 등 제조업 혁신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가 집적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서 맞춤형 연구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산업육성지원(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산업육성지원	9,829	8,490	9,164	674	7.9

* 사업코드 : 4231 - 305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국장(김성진), 지역경제총괄과장(임기성, 044-203-4410), 주무관(문대진, 441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 ~ 계속
총사업비	해 당 없음
사업규모	해 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정부의 지역정책수립, 지역발전 정책 교육·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성과공유, 지역사업 평가 및 환류 등 지역산업발전 기반 강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예산	산출근거
□ 지역산업육성지원	9,164	
① 지역발전정책교육 및 홍보	797	- 지역발전정책교육: 497(산업부 297, 지역위 200) - 지역발전정책홍보: 300(지역위)
② 지역희망박람회	1,635	- 개 막 식 : 160백만원 - 전 시 회, 체험관 : 680백만원 - 컨퍼런스, BI경진대회 : 330백만원 - 일자리박람회 : 230백만원 -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 55백만원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80백만원
③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230	-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발간 : 115 - 지역발전 시행계획 수립 : 115

④ 지역사업조사·분석·평가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 : 675 - 지역발전사업 심층평가 : 575 - 지역발전사업 조사분석 : 243 - 지역발전정책성과평가 : 112 - 지자체 컨설팅 및 교육 : 112 - 평가자문단 교육 및 워크숍 : 66 - 평가자문단 평가연구회 : 64 - 우수사례발굴·보급 : 112 - 지역계정 성과계량지표 개발 : 50 - 평가전담기관 실무협의회 : 91
⑤ 지역발전포털 구축·운영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사업통합DB시스템고도화 : 740 - 지역통계DB구축 : 100 - 국내외 지역발전지원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DB구축 : 50 - 지역포털콘텐츠 구축 : 130 - 지역발전아카데미 : 170 - REDIS블로그기자단운영 : 50 - REDIS 홍보 : 50 - 지역발전정보협력컨퍼런스 : 30 - 지역발전사업 편람제작 : 50 - 지역계정 국비지원 사업 조사분석 : 50 - 서버 등 기자재 구축 : 180
⑥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1,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모집 및 관리 : 404 - 기업모집 및 DB구축·유통 : 300 - 기업탐방 운영 : 300 - 사업홍보 및 행사 : 200 - 일자리매칭 지원 : 200
⑦ 고교기술인재지원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실습 지원: 550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50
⑧ 지역행복생활권지원	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생활권(56개) 협의회 중 상위 20개 지원 : 200 - 희망박람회 전시 우수지체 지원(5개) : 100 - 지역생활권 용역 및 컨설팅 : 498

□ 지원 필요성

○ 지역발전정책 교육 및 홍보

- 매년 개선·보완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외 홍보, 관계자 교육, 지역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지역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지방투자아카데미, 공장설립 과정 등 8개 과제×100백만 ≒ 797백만원

○ 지역희망박람회

- '13년부터 지역희망박람회는 정부의 지역정책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교육·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범부처, 17개시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04년 이후 VIP께서 해마다 참여하고 있는 행사로, 새로운 행사 추가에 따른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
- *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7개×205백만≒1,435백만원」 + 「17개 지자체 전시관 지원×12백만 ≒ 200백만」 ≒1,635백만원

○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 제7조, 제21조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의무를 규정
- * (부문별, 시도별) 지역발전연차보고서, 지역발전시행계획수립 등 2개과제 ×115백만 =230백만
- 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의 뒷받침 필요

○ 지역사업조사·분석·평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 * 지특회계 (1,279개사업(9.2조원)+시행계획 평가 등 112개)×1.5백만 ≒ 2,100백만
- 지역발전사업 조사·분석·평가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

○ 지역발전포털(REDIS) 구축 및 운영

- 지역발전정책과 사업의 소통창구 및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콘텐츠의 고도화 필요
- * 국가균형특별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 기존 지특회계, 일반회계, 기금 등 전반적인 DB구축을 위해서도 전년수준 예산 확보 필요
- * 지역발전DB 등 18개 과제 × 90.3백만 ≒ 1,600백만원

○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사업

- 지역우수 기업과 지역인재(대학생·고교생)와 교류(탐방)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인력 미스매칭 현상 완화

* ('15) 지역청년 10,130명 × 0.14백만원 = 1,418백만원

○ 고교 기술인재 지원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고교기술인재들이 지역혁신기관(TP, RIC)에 구축된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맞춤형 실습교육 후 취업 탐색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우수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

* ('15) 고교인재(마이스터고, 특성화고) 1,765명 × 0.34백만원 = 600백만원

○ 지역행복생활권지원사업

-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발표된 현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방향의 첫째 전략으로,

- 기존 '지역발전정책 교육·홍보' 및 '지역발전계획 등 지원'부문에 반영되었던 498백만원은 전액 이관받아 기존 '14개 과제 수행하고,

* 컨설팅, 정책간담회 등 14개 과제 × 26백만 ≒ 498백만원

- 191개 시·군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중 사업의 발굴·조정, 우선순위 선정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20개 우수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지원

* 20개 지역행복생활권 × 10백만(여비 2백만, 회의비 5백만, 전문가 수당 3백만) = 200백만원

- 더불어, 지역희망람회 전시 우수지자체 5개에 100백만원(5개*20백만원)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산업육성지원	9,829	8,490	9,164	674	7.9
▪ 지역발전정책 교육 및 홍보	1,250	1,125	797	△328	△29.2
▪ 지역희망박람회	1,479	1,435	1,635	200	13.9
▪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700	400	230	△170	△42.5
▪ 지역사업조사·분석·평가	1,750	1,900	2,100	200	10.5
▪ 지역발전포털구축·운영	1,850	1,626	1,600	△26	△1.6
▪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2,000	1,404	1,404	-	-
▪ 고교기술인재 지원	800	600	600	-	-
▪ 지역행복생활권지원사업	-	-	798	798	순증
☐ 비목					
▪ 출연금(350-01)	9,829	8,490	9,164	674	7.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발전계획수립 및 지역별로 특화된 시책개발, 매년 개선·보완된 지역발전 정책 교육·홍보, 성과공유, 지역사업평가 및 환류 등 지역산업발전 지원기반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5	교육·홍보: 11, 박람회: 14, 지역사업평가: 19, 지역발전계획수립: 4, 지역발전포털구축운영: 16,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 14, 고교기술인재 6
'15	92	교육·홍보: 8, 박람회: 16, 지역사업평가: 21, 지역발전계획수립: 2, 지역발전포털구축운영: 16,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 14, 고교기술인재 6, 지역행복생활권지원 8
'16	92	교육·홍보: 8, 박람회: 16, 지역사업평가: 21, 지역발전계획수립: 2, 지역발전포털구축운영: 16,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 14, 고교기술인재 6, 지역행복생활권지원 8
'17	92	교육·홍보: 8, 박람회: 16, 지역사업평가: 21, 지역발전계획수립: 2, 지역발전포털구축운영: 16,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 14, 고교기술인재 6, 지역행복생활권지원 8
'18	92	교육·홍보: 8, 박람회: 16, 지역사업평가: 21, 지역발전계획수립: 2, 지역발전포털구축운영: 16,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 14, 고교기술인재 6, 지역행복생활권지원 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 “3대원칙”(지역혁신체계구축과 지방경제 혁신)과 7대과제(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추진)중 하나로 선정('03.6)
- '03. 6 : 자립형지방화의 핵심과제로 지역혁신신평형사업 선정
- '03. 7 : 시도, 중·장기 지방과학기술혁신 계획 수립·제출
- '04.10 : 특성화사업운영요령 제정 및 시행계획 수립·공고
- '07. 2 : '지역혁신신평형사업'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명칭 변경
- '09. 1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 '13.1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지역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산업육성지원	108	101	98	85	9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도 : 용역수요 감소에 따라 3억원 불용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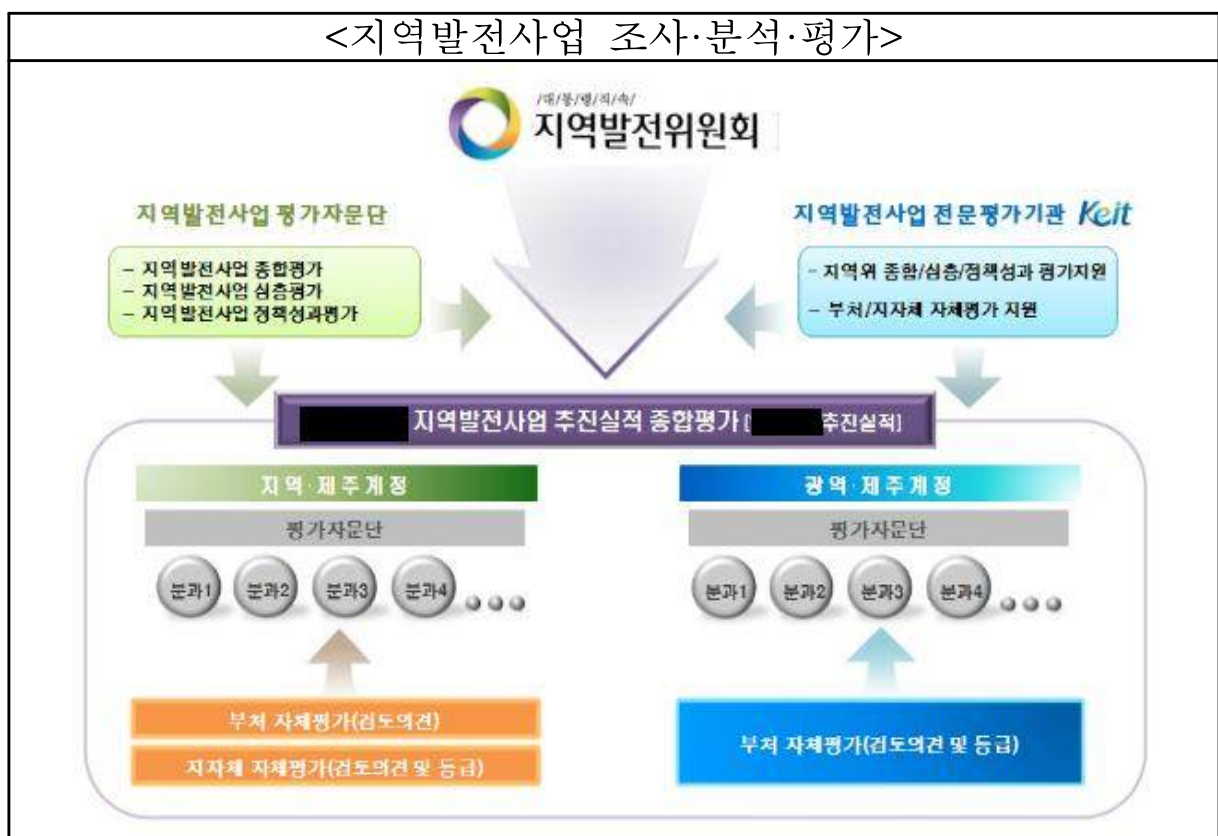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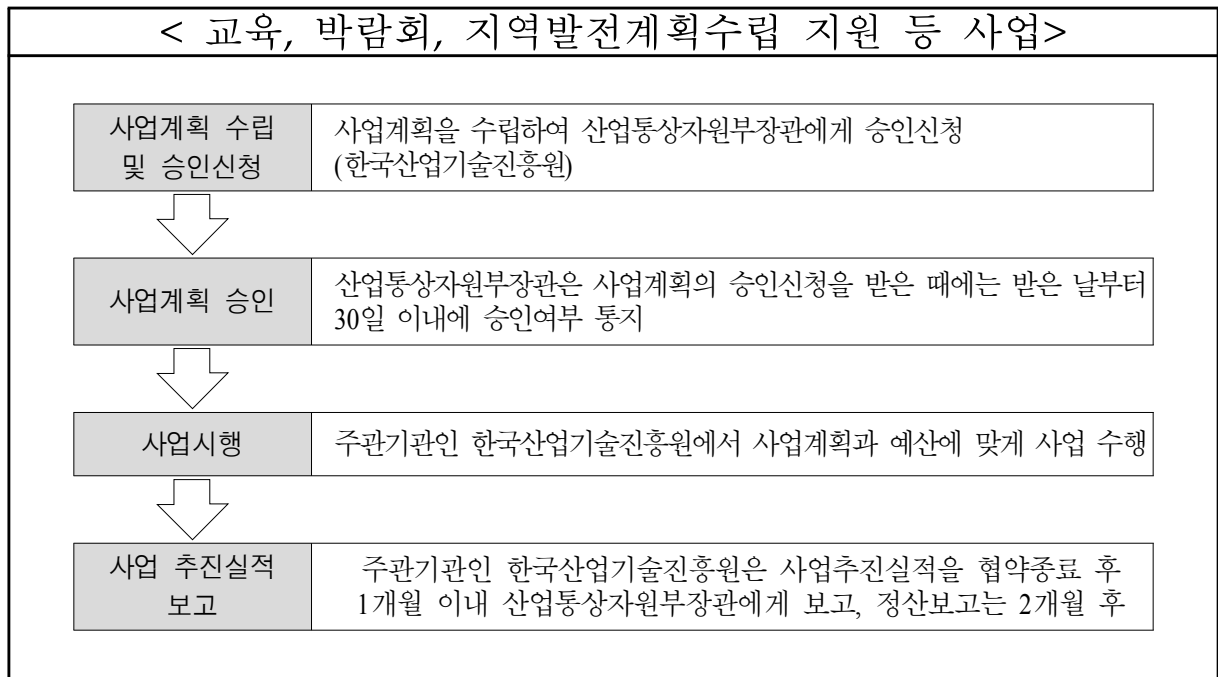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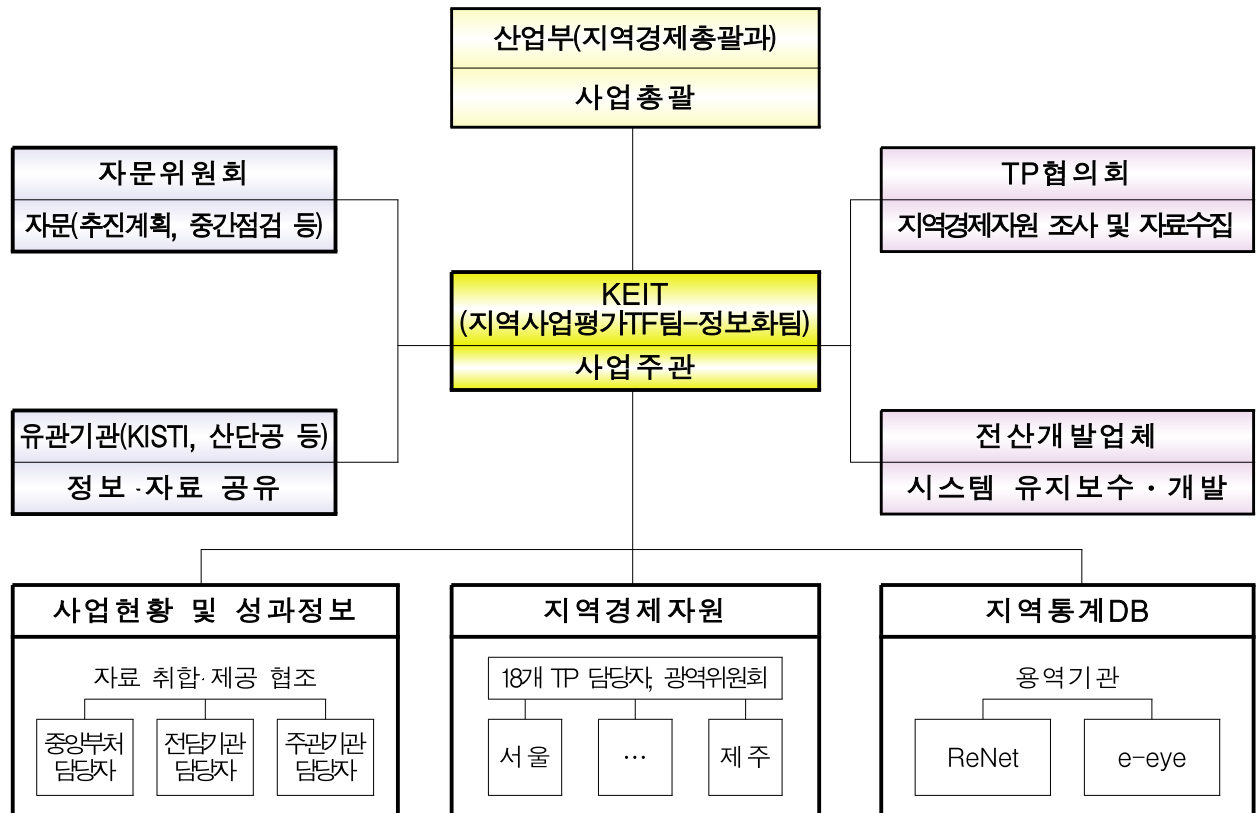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8	-	-	108	105	-	3
	()	()	()	(108)	(105)	()	()
'12년	100	-	-	100	100	-	-
	()	()	()	(101)	(101)	()	()
'13년	983			98	98		
	()	()	()	(98)	(9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2013년도)

▪ 교육 및 홍보	○ 정책관계자들에 대한 교육(3,400명), 정책홍보(지역신문 37개), 지역순회토론회(12회), 지역발전관련 책자발간 등
▪ 지역희망박람회	○ 2013 지역발전희망박람회 개최(부산BEXCO 11.27~30일) 부대행사인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총 268명이 최종채용 확정 ○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41개사 53명이 참여하여 104건의 상담을 진행
▪ 지역발전계획수립 지원	○ 지역발전시행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 조사분석·평가	○ 광특회계 총 1,276개 사업(8조 5,837억원) 조사·분석·평가
▪ 지역발전포털구축	○ 지역발전 DB구축·운영(712개 지표) ○ 지역발전포털콘텐츠 구축·운영(지역소식 제공 466건, 자료제공 1,339건, 블로그 기찬단 30명 선발 등)
▪ 지역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 청년인재 9,983명이 450개 지역 우수기업 탐방에 참여
▪ 고교기술인재	○ 장비실습 39개 과정(학생 742명, 교사 14명 교육) ○ 협의회 24건(185개 기업, 대학, 지자체, 60여 학교 참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	3,232	3,070	△162	5

* 사업코드 : 4233-301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위협력팀(양광석, 044-203-4418), 사무관(박신렬, 441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국비 100%보조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2. 사업목적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기존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도별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한 시·도 상생발전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인건비 : 계약직 연구원·사무원 인건비 1,534백만원

- 산출내역 : 8개 특별·광역시*[(연구원 1명*42백만원) + (사무원 1명*26백만원)]
9개 도*[(연구원 2명*42백만원) + (사무원 1명*26백만원)]

* 특별광역시 보다 도의 산하 시·군·구가 많아 지역행복생활권이 더 많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광역시와 도를 차별화

② 운영경비 : 17개 시도 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856백만원

- 산출내역 : 7개 특별·광역시*48백만원 + 8개 도*53 + 세종(46) + 제주(50)

- ③ 연구개발비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80백만원
 - 산출내역 : 17시·도 *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통해 지역상생발전 체계 구축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3,232	3,070	△ 162	△ 5
▪ 인건비	-	1,491	1,534	43	2.9
▪ 운영비	-	891	856	△ 35	△ 3.9
▪ 연구개발비	-	850	680	△ 170	△ 20
☐ 비목		3,232	3,070	△ 162	△ 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232	3,070	△ 162	△ 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위에서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의 기획·조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위 지침에 따라 산업부에서 사무 예산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232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3,232
'15	3,070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3,070
'16	2,917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917
'17	2,917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917
'18	2,771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 2,77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군특법 제29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 추진경위

- '13. 7.18.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 프로젝트' 발표(지역위)
* 지역행복생활권 등 6대분야 17개 실천과제 제시
- '13.11. 1.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발표(지역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추진
- '13.12.2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 지역행복생활권 반영,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근거 마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	-	-	32	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 개 요

- 現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 ‘5+2 광역경제권’을 ‘행복생활권’으로 전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폐지
- 시·도 내 복수 시·군·구가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함에 따른 시·도의 기능강화를 위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설치

□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 2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 시·도지사
 - (위 원) 위원장이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 * 시·도 발전계획 주요내용 및 행복생활권 관련 전문가를 위촉
- (실무지원) 17개 시·도 내 ‘시·도 생활권발전기획단’ 설치,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군특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 (생활권발전기획단장) 기획관리실장 겸임, (생활권총괄팀장) 기획관 겸임,
(생활권연구센터) 시·도발전연구원에 설치

□ 주요기능

-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심의
- 시·군·구의 행복생활권 관련 지원
- 시·도 발전 및 행복생활권 관련 연구·조사·분석·지표관리
- 시·도 발전 및 행복생활권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소통
-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 대외 업무협의
- 기타 시·도 발전 및 행복생활권 관련 제반사항

지역투자촉진(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투자촉진	64,957	102,599	117,765	15,166	14.8

* 사업코드 : 4232 - 306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위협력팀(양광석, 044-203-4418), 사무관(이화옥, 445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4~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해당없음
지원조건	- 자본보조 : 국비·지방비 매칭 (45~75%), 민간보조 : 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자본보조), 한국산업단지공단(민간보조)

2. 사업목적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투자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 설비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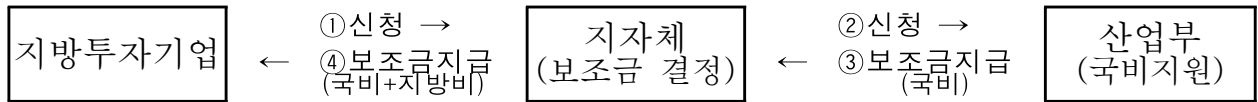
- ① (지역투자촉진보조자금)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 투자금액(입지·설비투자)의 일부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 (지원내용)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지원

* 일반지역의 중소기업 기준('14년)으로 기업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설비 12%)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65:35 비율로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



산 출 근 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6,565백만원

◇ (지방이전, 신·증설) 97,715백만원

- 입지보조금 : 23,175백만원

= 32개사 × 1,050백만원(평균 지원액) × 65%(일반지역 국비 매칭비율)

- 설비투자보조금 : 74,540백만원

= 62개사 × 1,800백만원(평균 지원액) × 65%(일반지역 국비 매칭비율)

◇ (U턴기업지원) 18,850백만원

- 입지보조금 : 6,500백만원

= 20개사 × 500백만원(최대 지원액) × 65%(일반지역 국비 매칭비율)

- 설비투자보조금 : 11,700백만원

= 20개사 × 950백만원(평균 지원액) × 65%(일반지역 국비 매칭비율)

② (지방투자지원)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아카데미,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평가팀 운영 및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등

- (투자지원) 공동 상담회 및 아카데미 개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수요 조사 등

- (평가팀 운영) 보조금 현장실사, 타당성 평가 사전검토, 사후관리 등 보조금 심의·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 (시스템 구축)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산 출 근 거 >

□ (지방투자지원) 1,200백만원

◇ (투자지원 및 평가팀 운영) 600백만원

- 수도권기업 지방투자 공동 상담회 개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수요조사,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이하 연1회), 지방투자 아카데미(연2회) 개최 및 기업 지방이전·투자지원제도 홍보물 발간 등

◇ (시스템 구축) 600백만원

- 시스템 개발(200) + DBMS 및 암호화솔루션*(150) + 전자문서 관리(250)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및 각종 증빙자료 암호화 관리 도구 필요

□ 지원 필요성

-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투자촉진	64,957	102,599	117,765	15,166	14.8
▪ 지역투자촉진	64,217	101,986	116,565	14,579	14.2
▪ 지방투자지원	740	613	1,200	587	95.7
□ 비목	64,957	102,599	117,765	15,166	14.8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4,217	101,986	116,565	14,579	14.2
▪ 민간경상보조(330-01)	740	613	1,200	587	95.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
-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국내 복귀기업에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26	▪ 지방투자촉진 : 1,020 ▪ 지방투자지원 : 6
'15	1,178	▪ 지방투자촉진 : 1,166 ▪ 지방투자지원 : 12
'16	1,060	▪ 지방투자촉진 : 1,050 ▪ 지방투자지원 : 10
'17	954	▪ 지방투자촉진 : 854 ▪ 지방투자지원 : 10
'18	859	▪ 지방투자촉진 : 849 ▪ 지방투자지원 : 1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2013-84호, 2013. 7.25)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3)
-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 발표(지역발전위, '10.4.21)
 -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공장 신설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12년부터는 해외복귀기업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지방투자를 유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투자촉진	1,220	1,219	1,178	1,026	1,17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도 이월 사유

- 지자체가 기 유치한 기업이 경기둔화에 의해 투자계획의 연기 및 투자규모를 축소하여 업체의 보조금 신청 및 지자체의 보조금 평가가 지연

○ '12년도 불용·이월 사유

- 불용 :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계획 연기 및 철회로 인해 발생
- 이월 : 9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이월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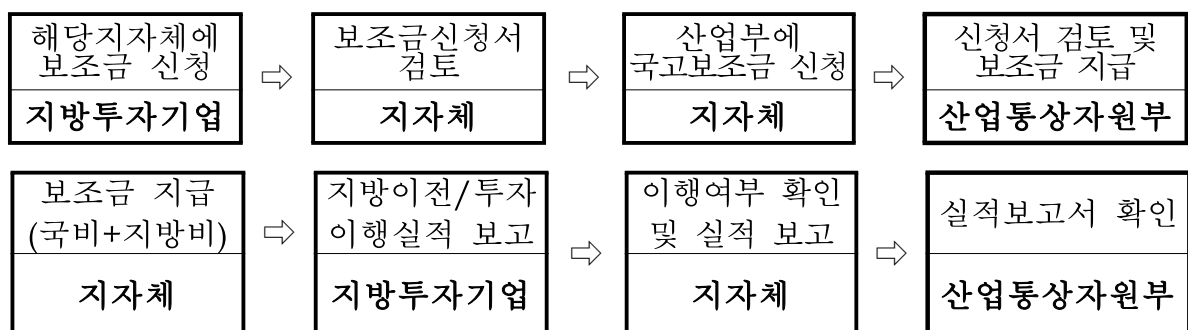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220			1,220	1,077	143	
	(1,220)	()	()	(1,220)	(1,077)	(143)	()
'12년	1,219	143	△1*	1,355	1,020	243	91
	(1,219)	(143)	(△1*)	(1,355)	(1,020)	(243)	(91)
'13년	1,178	243		1,421	649	483	286
	(1,178)	(243)	()	(1,421)	(649)	(483)	(286)

* 구미 불산 피해기업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구미불산피해지원 사업으로 115백만원 이용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참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1.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필요

* (추진근거) 균특법 제11조(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및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2. 주요내용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금액(입지,설비)의 일부를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14년 1,02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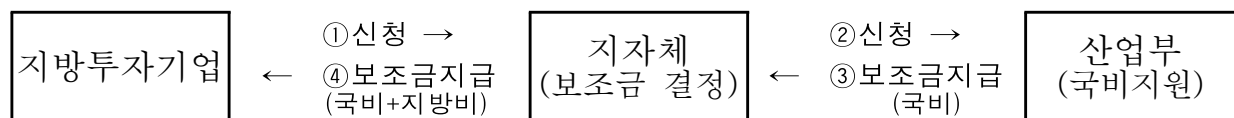
○ (지원대상)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04~), 지방 신·증설투자('11~), 국내 복귀기업('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14~)

○ (지원내용)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차등 지원(최대 60억원, 대규모 투자 70억원)

*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30%, 설비 12%)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지방비 65:35로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

* (위원장) 국장님, (위원) 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회계사 등



3. 추진성과

- 사업시행('04~'13) 후, 628개 기업(772건)에 6,183억원을 지원하여 12.8조원의 투자와 42,469명의 신규 고용창출 유도(세부내역 참고1~3 참조)

(단위 : 억원)

구분	국비지원금액(A)	기업투자금액(B)	투자유발비율(B/A)	지원건수
수도권기업이전지원*	4,882.5	105,918.4	21.6	585
신·증설기업 지원	1,213.2	21,965.5	18.1	161
U턴기업 지원	87.6	803.7	9.1	26
합 계	6,183.3	128,687.6	20.8	772

지역투자촉진(세종)(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투자촉진(세종)	-	-	8,000	8,000	순증

* 사업코드 : 4232 - 307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위협력팀(양광석, 044-203-4418), 사무관(이화옥, 445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국비·지방비 매칭 75%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2. 사업목적

- 세종시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신·증설투자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설비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투자기업의 지방투자금액(입지·설비투자)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 세종시의 중소기업 기준('14년)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입지 40%, 설비 22%)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75:25 매칭비율로 지원

< 산 출 근 거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000백만원

◇ (지방이전, 신·증설) 6,850백만원

▪ 입지보조금 : 1,450백만원

= 2개사 × 1,050백만원(평균 지원액) × 75%(국비 매칭비율)

▪ 설비투자보조금 : 5,400백만원

= 4개사 × 1,800백만원(평균 지원액) × 75%(국비 매칭비율)

◇ (U턴기업지원) 1,150백만원

▪ 입지보조금 : 375백만원

= 1개사 × 500백만원(최대 지원액) × 75%(국비 매칭비율)

▪ 설비투자보조금 : 775백만원

= 1개사 × 950백만원(평균 지원액) × 75%(국비 매칭비율)

□ 지원 필요성

-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투자촉진(세종)	-	-	8,000	-	순증
▪ 지역투자촉진(세종)	-	-	8,000	-	순증
□ 비목	-	-	8,000	-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8,000	-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을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80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세종) 80억원
'16	76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세종) 76억원
'17	76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세종) 76억원
'18	72.2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세종) 72.2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2013-84호, 2013. 7.25)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3)
- 세종시 대상 기업의 이전, 신·증설투자지원을 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1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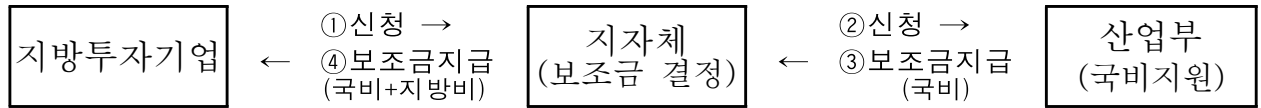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투자촉진(세종)	-	-	-	-	8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지역특성화산업육성(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68,337	53,486	87,091	33,605	62.8

* 사업코드 : 3361 - 301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산업과(임기성, 044-203-4411), 사무관(김상곤, 441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제한없음(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를 통한 사업목적에 부합한 모든사업)
지원조건	자치단체 보조(보조율 5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2. 사업목적

-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 투자유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성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적 산업 발전기반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지자체 요구액 중 87,091백만원 반영

내역사업명	'15년 예산	산출근거
<합 계>	87,091	
(서울)	9,813	
▪ 창조전문인력양성	4,494	- 인력양성사업(4,494백만원)
▪ 서울 R&D지원	5,319	- 서울 R&D지원(5,319백만원)
(부산)	2,3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900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 1,550백만원× 40% -중국 진출기업 지원사업비 : 600백만원× 40% -수출역량강화사업 : 100백만원× 40%

내역사업명	'15년 예산	산출근거
▪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400	-미래성장동력사업지원 : 400백만원
▪ 부품소재종합기술근접지원	150	-부품소재종합기술근접지원 : 150백만원
▪ 해양플랜트기자재기업 글로벌경쟁력강화	150	-해양플랜트기자재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150백만원
▪ 그린조선해양플랜트해외인 증기업지원사업	200	-그린조선해양플랜트해양인증기업지원사업 : 200백만원
▪ 기계부품소재선도기업녹색기술	250	-기계부품소재선도기업녹색기술지원 : 250백만원
▪ 부산섬유패션전시회	100	-부산섬유패션전시회 : 100백만원
▪ 하이테크부품 소재 중소기업 연구기반구축	150	-기업멘토링, 표면분석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장비분석 전문가 양성 및 운영 : 150백만원
(대구)	10,106	
▪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200	-직접사업비 200백만원 · 부스임차비 · 홍보물 제작비 · 물류비 등
▪ 대구 Fashion Fair	350	-의류패션(Trade Show) -토탈패션(Public Show) 전시회 : 9월중(3일간) -패션쇼, 세미나 등
▪ 섬유산업 국내 관로개척	390	-직접사업비 350백만원 · 마케팅지원, 정보제공 등
▪ 공동브랜드(쉬메릭) 육성 사업	100	-브랜드 홍보, 제품개발지원, 마케팅 지원 등 : 600백만 원
▪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100	-직접사업비 100백만원 · 패션쇼 경비지원, 리셉션 등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3,016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500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280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 36 -지역산업온라인마케팅지원 : 200
▪ 우수기업성장 동력화사업	1,300	-기업별 맞춤지원: 직접사업비 1,300백만원(21.7백만원 ×60개사)
▪ 종합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700	-종합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 700백만원
▪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산 업 육성	1,200	-제품 디자인개발 및 양산화 지원 · 직접사업비 700백만원(35개 기업 × 20백만원 정도)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등 · 직접사업비 100백만원
▪ 창조초기기업sw제품상 용화지원	150	-창조초기기업sw제품상용화 지원 : 150백만원
▪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육성	300	-100개 프로젝트 R&BD사업화 지원 및 운영비 : 300백만원
▪ 이업종융합 비즈니스 기반조성	300	-이업종융합 비즈니스 기반조성 : 300백만원 · 생산 및 기술지원, 융합 섬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수요산 업의 마케팅 환경 분석 등 비즈니스 정보 제공
▪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 템 육성	400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육성 : 400백만원 · 시제품제작 지원, 혁신 아이디어 제품 지원, 제작기술지원 시험인증지원, 인력양성 등
▪ 로봇산업 시장 창출 및	1,600	-로봇틱 스마트화 제작지원 : 6억원×50%

내역사업명	'15년 예산	산출근거
부품경쟁력 강화		- 국산제품 적용 리엔지니어링 지원 : 2억원×50% - 로봇 핵심부품 융복합 기술고도화 : 6억원×50% - 필드테스트베드시스템구축 등 8억원×50% - 장비유지비 및 인건비 등 9억원×50%
(인천)	1,121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456	-해외전시회참가지원(단체): 270 -해외전시회참가지원(개별): 50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80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6 -해외바이어 네트워킹 지원사업: 30
▪ 디자인산업육성	665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500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 100 -원형디자인개발 프로세스구축지원: 65
(광주)	5,945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4,655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 1,100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 : 1,000 -하늘비람땅에너지전 : 200 -2015빛고을로봇박람회경진대회 : 200 -광주국제식품전시회 : 170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 150 -우수농산물국내외마케팅지원 : 250 -광주봄꽃박람회 : 240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 : 1,000 - 컨벤션뷰로연계MICE산업지원 : 145 -2015광주국제실버박람회개최 : 200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0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500
▪ 광주뿌리산업전시회	230	-광주 뿌리산업전시회 : 230
▪ 컨벤션뷰로 연계 MICE 산업지원	160	-컨벤션뷰로 연계 MICE산업지원 : 160 . 타켓국제회의 유치, MICE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대전)	5,569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540	-해외상품전시장 운영: 50 -해외지사화사업: 1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140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지원: 25 -해외박람회(전시회) 지원: 125 -개별 전문전시회 지원: 50 -수출보험료 지원: 50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50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25 -인터넷 무역거래사이트 운영: 10
▪ 기술장벽대응맞춤형기술 유통 및 보호지원	250	-기업지원비등 : 250백만원
▪ 시제품제작지원	450	-기업지원비등 : 450백만원
▪ 기술사업화종합지원	474	-기술사업화종합지원 ; 474백만원
▪ 뿌리산업활성화지원	250	-기술개발과제(과제/100백만원 × 85개기업) -기술사업화지원과제(과제/50백만원 × 12개기업) -공정개선지원과제(과제/50백만원 × 8개기업)

내역사업명	'15년 예산	산출근거
▪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900	-전통산업첨단화지원사업 : 900백만원
▪ 기업성장주기별3-up지원사업	2,300	-기업성장주기별 3-up지원사업 : 2,300백만원
▪ 유망중소기업글로벌업 지원사업	405	-유망중소기업글로벌업지원사업 : 405백만원
(울산)	1,1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150	-해외시장 개척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수출인프라 구축 분야 -E-비즈니스 기반 확충 -중소수출기업 육성
(경기)	1,07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920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 지역특화산업전문인력 양성	150	-지역특화전문인력양성 150
(강원)	4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450	-무역사절단 운영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의료기기 토털마케팅 지원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등 -수출보험료 지원 등
(충북)	5,1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90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 1,900
▪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300	-과빌리온시설(텐트 7동) 설치 -무대설치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조경 및 부대시설 설치 -각종 전시시설 설치 -광고, 홍보, 리플렛, 포스터 제작 등 -공연 및 이벤트, 제반 경비 등
▪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 오산업육성사업	450	-한방바이오산업 R&D기반 구축: 50 -한방바이오 고기능제품 개발지원 50 -한방바이오산업 홍보 마케팅: 200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 100 -한방의료관광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 40 -제품 및 포장디자인 고급화 추진 : 10
▪ 2015청주국제공예비엔 날레	1,500	- 201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최 지원 : 1,500
▪ 고기능한약재생산 LED식물공장 구축	450	- 고기능한약재생산LED식물공장 구축 :500
▪ 한방바이오 타운 구축	500	-한방바이오 타운 구축 : 500
(충남)	1,797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797	-해외마케팅지원: 1,200 -국내마케팅지원: 597

내역사업명	'15년 예산	산출근거
(전북)	14,6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300	-무역사절단 파견 200 -박람회 참가지원 300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55 -다문화가족 해외시장개척 50 -토탈마케팅지원 50 -전문가활용 마케팅지원 50 -해외거점구축사업 50 -FTA활용지원센터운영 50 -수출보험가입비 지원 100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100 -지역상품 마케팅 지원 5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추진 45 -해외 현지화 컨설팅 지원사업 100
▪ 중소기업성장사다리 구축사업	1,5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중소기업 생산기반 공정개선 지원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홍보지원 -중소기업 경영애로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	2,500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1,600 -수요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지원 600 -글로벌 인재 혁신역량 강화 및 기업맞춤형 경영품질향상 250 -육성협의회, 연구소교류 50
▪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	2,400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비(6억원) -장비구입 및 실험실습비(3.9억원) -국제화교육 및 기술정보교류(5.9억원) -장학금 (8.2억원)
▪ 산학연연계기술사업화 종합지원	2,650	-우수기술상용화지원 600 -기술인프라연계 첨단기술사업화 1,000 -지역신성장산업연구개발 400
▪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지원 사업	700	-기술경쟁력강화지원 300 -애로기술해소지원 100 -현장기술인력양성 80 -네트워킹 및 성과발표회 20
▪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500	-우수기술보유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 : 500백만원
▪ 기업현장기술애로원스 톱지원	700	-기업현장기술애로원스톱지원 : 700백만원
▪ 상용차부품업체 R&D 지원기술개발	300	-상용차부품업체R&D지원기술개발
▪ 탄소기업R&D경쟁력강화	100	-탄소기업R&D경쟁력강화 : 100백만원
▪ 중국U턴기업맞춤형인 력양성	300	-중국유턴기업맞춤형인력양성 : 300백만원
▪ 산학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200	-산학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 200백만원
▪ 군산세만금산업전시관 보수공사	500	-군산세만금산업전시관 보수공사 : 500백만원
▪ 익산광물자원전시센터 건립	1,000	-익산광물자원전시센터 건립 : 1,000백만원

내역사업명	'15년 예산	산출근거
(전남)	6,8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1,700	-수출상품해외경쟁력강화 ·해외종합마케팅지원사업 등 8개 사업 -농수산물해외마케팅지원 ·박람회참가 지원등 8개 사업
▪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1,600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 1,600백만원
▪ 한국대나무공예센터조성	750	-대나무공예센터조성 : 75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500	-친환경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 500백만원
▪ 초임계천연추출장비 고도화	750	-초임계천연추출장비 고도화 : 750백만원
▪ 뿌리산업선도기업 육성	1,500	-뿌리산업선도기업 육성 : 1,500백만원
(경북)	1,30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	1,300	-무역사절단 파견 550 -국제무역전시박람회참가지원 500 -빅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10 -수출기업해외규격인증지원 25 -국제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 100 -해외지사회공동물류지원 50 -해외바이어레드카펫 15 -해외세일즈개별출장지원 25 -해외시장조사대행지원 25
(경남)	19,92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	1,130	-국내 전시회지원 -기계산업지원 -농수산물해외마케팅
▪ 창원컨벤션센터증축	12,300	-창원컨벤션센터증축 : 12,300백만원
▪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계속)	5,340	- 진주,1개소 - 공장동 건립, 장비구축
▪ 중국농공수산물마케팅	150	- 중국농공수산물마케팅 : 150백만원
▪ 양산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1,000	- 양산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 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 특성화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역량 강화
 - 전시장 · 컨벤션센터 건립,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특성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혁신 인프라 구축지원이 필요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68,337	53,486	87,091	33,605	62.8
▪ 지역산업마케팅 등 지역산업 육성	37,898	41,626	65,101	23,475	56.4
▪ 지역산업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30,459	11,860	21,990	10,130	85.4
☐ 비목	68,337	53,486	87,091	33,605	62.8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7,898	41,626	65,101	23,475	56.4
▪ 자치단체자본보조(303-03)	30,459	11,860	21,990	10,130	85.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사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체제 실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34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534
'15	871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871
'16	907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907
'17	935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935
'18	960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96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동법 제40조(포괄보조금 지원)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 및 전 부처에서 회계 내 200여개의 개별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10)하고, 200여개 개별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합
 - * 산업부는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개별사업을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
- '15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신설되어 세종시 사업을 분리
 - * 지특회계는 경제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 이 중 생활기반계정과 제주 및 세종(일부)에 포괄보조금 도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018	798	593	534	8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도 이월 :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
- '13년도 불용 :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한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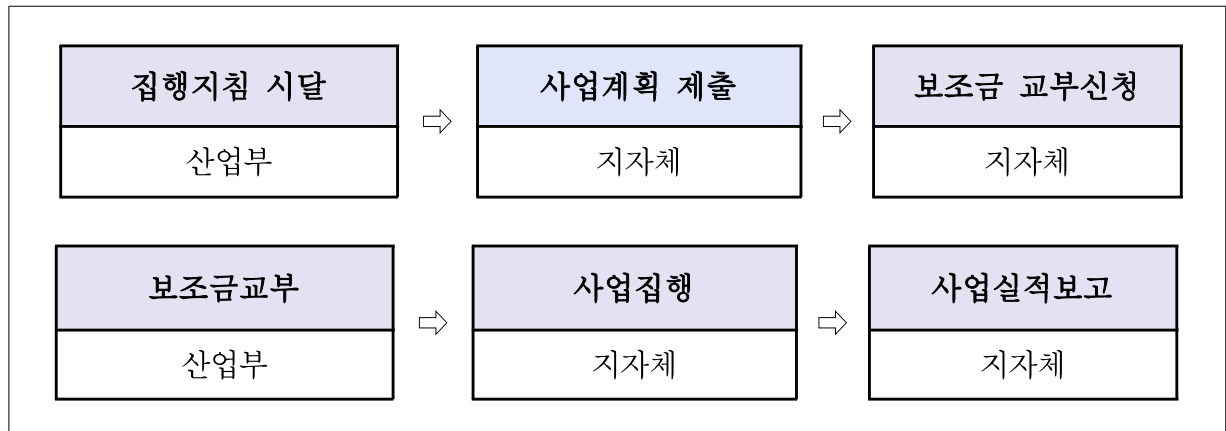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18	-	-	1,018	1,018	-	-
	(1,018)	()	()	(1,018)	(1,018)	()	()
'12년	798	-	-	798	683	115	-
	(798)	()	()	(798)	(683)	(115)	()
'13년	593	115	-	708	683	-	25
	(593)	(115)	()	(708)	(683)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0	0	200	200	순증

* 사업코드 : 3361 - 304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경제총괄과(임기성, 044-203-4410), 사무관(김상곤, 441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5~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국비 50%)
사업시행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2. 사업목적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 투자 유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성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적 산업 발전 기반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 무역사절단 운영(110백만원) = 22백만원/회 × 10회 × 50%
- 수출초보기업육성(25백만원) = 5백만원/기업 × 10개기업 × 50%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25백만원) = 25백만원/회 × 2회 × 50%
- 해외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40백만원) = 8백만원/회 × 10회 × 50%

□ 지원 필요성

- 지역 특성화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기술지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촉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0	0	200	200	순증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0	0	200	200	순증
□ 비목	0	0	200	200	순증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0	0	200	2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0	▪
'15	2	▪ 지역산업마케팅지원(2)
'16	2.06	▪ 지역산업마케팅지원(2.06)
'17	2.12	▪ 지역산업마케팅지원(2.12)
'18	2.2	▪ 지역산업마케팅지원(2.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균형발전법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4.1월)에 따라 '15 회계연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신설에 따라 경제발전계정(舊 광역발전계정)으로 지원하던 세종시의 자율편성사업을 이관하여 '15 회계연도부터 본 사업 신규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특성화산업육성(세종)	0	0	0	0	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15년 신규사업)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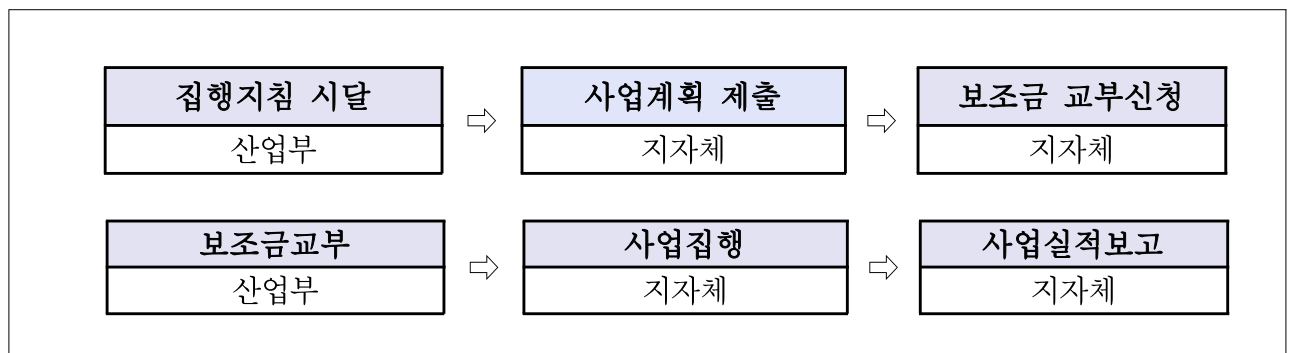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지역특화산업육성(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화산업육성	99,700	90,171	92,927	2,756	3.1

* 사업코드 : 4231 - 319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산업과(신희동), 사무관/주무관(이철한/김은영, 4423/44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과제별 2~7억원 국비지원, 지방비 매칭 30% 수준
지원조건	출연(총 사업비의 40%~10%, 지자체, 기업 등 매칭)
사업시행주체	지역기업(컨소시엄),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등

2. 사업목적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주력 산업분야 기업에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시도 특화대표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 77,982백만원
 - (패키지 기업지원) 14개 시도별 63개 주력산업분야 기업, 산업기술
단지 입주기업 등에 기술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등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
사업화지원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역량강화	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교육
성장지원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애로사항 지원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획·평가·관리

○ 시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역량 지원 : 14,945백만원

- (시도별 정책·기획 총괄지원) 시·도별 지역산업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지역산업 총괄 업무 지원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시·도별 지역산업육성 위한 비즈니스 중개, 네트워킹, 플랫폼 기능 강화 업무 지원

□ 지원 필요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개 시도별* 특화산업(5개)분야 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등을 패키지로 계속지원 필요

* 현재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헬스,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경북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기차서비스

○ 지역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패키지 지원하는 지역정책 국정철학*에 부합된 패키지형 과제 지원 필요

* VIP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14.3.12)

- 패키지형 과제지원이 안 될 경우, 국정과제(16-3 : 지자체의 자율성·연계성 확대)와 자율적인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기업지원이 불가하여 지역기업 체감도 저하 우려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서도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 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 ('14.2월)
- 산업부와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을 선정 하였으며('14.3.31.),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력산업 지원방안* 확정('14.5.16.)
- * 시·도별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개편(재정비)(안)' 심의·의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특화산업육성	99,700	90,171	92,927	2,756	3.1
▪ 시도별 특화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85,550	75,676	77,982	2,306	3.0
- 패키지 기업지원	78,650 (기술지원) 42,250	73,116 (기술지원) 42,240	75,422 (기업지원) 51,422 (특화발전프로젝트) 24,000		
	(사업화지원) 13,000	(사업화지원) 13,891			
	(역량강화) 23,400	(역량강화) 16,985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6,500	2,560	2,560	450	3.1
▪ 시도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역량 지원	14,550	14,495	14,945		
- 시도 정책기획 총괄지원	5,200	5,850	6,300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9,350	8,645	8,645		
☐ 비목	99,700	90,171	92,927	2,756	3.1
▪ 출연(350-01)	99,700	90,171	92,927	2,756	3.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애로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집중지원 하고, 기구축 인프라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역기반 확충
- * 지역내 부가가치·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14개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주력산업 선정('14.3.31.)

-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프로그램 중심으로 세부 과제들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42,240백만원 ▪ (사업화지원) 13,891백만원 ▪ (역량강화) 16,985백만원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2,560백만원 ▪ (시도 정책기획 총괄지원) 5,850백만원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8,645백만원
'15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51,422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24,000백만원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2,560백만원 ▪ (시도 정책기획 총괄지원) 6,300백만원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8,645백만원
'16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51,422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24,000백만원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2,560백만원 ▪ (시도 정책기획 총괄지원) 6,300백만원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8,645백만원
'17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51,422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24,000백만원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2,560백만원 ▪ (시도 정책기획 총괄지원) 6,300백만원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8,645백만원
'18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51,422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24,000백만원 ▪ (특화사업 기획·평가·관리) 2,560백만원 ▪ (시도 정책기획 총괄지원) 6,300백만원 ▪ (시도별 지역기업 조사·분석·연계 지원) 8,645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1조
- 추진경위
 - 박근혜정부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기로 결정(‘13.7월)
 - 산업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역사업 개편방향을 포함한 「지역혁신역량강화방안」을 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보고(‘13.10월)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사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재정비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행복생활권, 경제협력권(산업협력권) 등 지역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완료 (‘14.1월)
 -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기로 결정 (‘14.2월)
 -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산업부와 시·도는 63개 주력산업과 16개 협력산업 선정(‘14.3월)
 - 「제5차 무투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행복생활권 및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VIP 보고(‘14.3월)
 -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산업육성 개편방향” 심의 의결(‘14.5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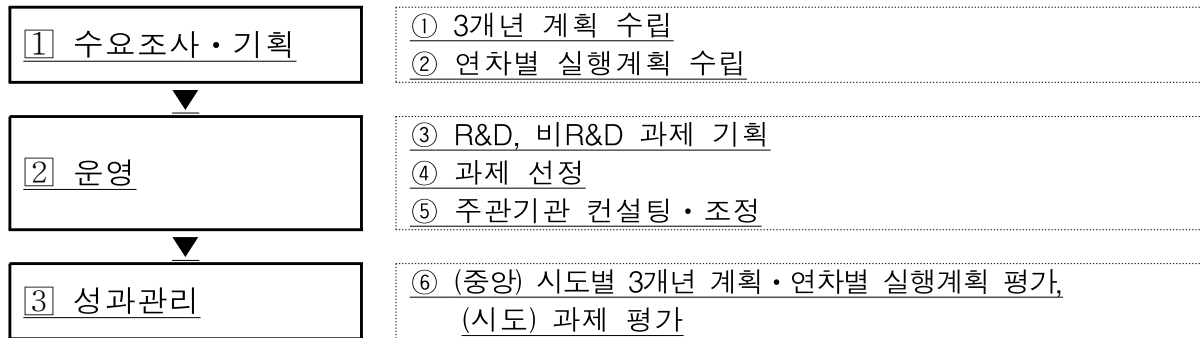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특화산업육성	-	-	997	902	9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지역특화산업육성(계속, R&D)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30,288	167,390	174,100	6,710	4.0

* 사업코드 : 4231 - 309

* 담당자 : 지역경제정책관(김성진), 지역산업과(신희동), 사무관/주무관(이철한/김은영, 4423/44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과제별 2~7억원 국비지원
지원조건	출연(총 사업비의 30%~10%, 지자체, 기업 등 매칭)
사업시행주체	지역기업(컨소시엄),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등

2. 사업목적

- 시·도단위 주력산업 및 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 단위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주력산업육성 : 97,800백만원
 - 시·도 단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시·도별 대표산업으로 선정된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추진
-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 : 67,300백만원
 - 시·도 및 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 단위 지역연고(전통)산업 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패키지 지원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 : 9,000백만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지원기관 등)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안)
□ 지역특화산업육성	167,390	174,100
▪ 지역주력산업육성	시도단위 고용창출형산업 육성	시도단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지원 및 지역특화프로젝트 추진
▪ 지역연구(전통) 산업육성	시군구 및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지역 연구(전통)산업분야 지원	시군구 및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지역연구 (전통)산업분야 지속 추진
▪ 혁신도시이전 공공 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	일부 혁신도시(5개)에 대해 기술개발 과제 등 선정	모든 혁신도시(10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요·공급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지원 필요성

- ① 지역내 부가가치 ·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 · 도별 5개 이내 총63개 주력산업 지원 필요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헬스,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광주	스마트가전,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생체 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소재섬유,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경북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구조용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기차서비스

- (국정과제 107-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자율·협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지역주력산업, 지역연구사업, 산업협력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

○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서도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 간 협력산업을 선정·지원키로 결정 (‘14.2월)

○ 산업부와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을 선정 하였으며(‘14.3.31.),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력산업 지원방안* 확정(‘14.5.16.)

* 시·도별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개편(재정비)(안)’ 심의·의결

② 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 단위에서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연고(전통)산업 분야 총39개 특화품목 지원

시·도	특화품목	시·도	특화품목
부 산	고령친화기기, 스킨케어화장품, 해양바이오헬스	충 북	슈퍼푸드, 밤
대 구	패션의류, 안경테/선글라스, 주얼리	충 남	자카드 직물, 오메가 리놀렌산, 금산인삼
광 주	웰니스 CoBe, 휴먼케어산업, 인쇄출판	전 북	주얼리, 오미자/천매/홍삼, 전통절임류
대 전	안경렌즈, 대장금 프로젝트, 구죽도토리묵	전 남	고품질 타월, 산수유, 다시마
울 산	하이브리드 카시트, 품질분석 시스템, 3D 프린팅용 소재	경 북	국화차, 청도반시, 붉은대게
세 종	조치원 복숭아	경 남	실크소재 전통의상, 전통목공예/가구, 전통차
강 원	목공예품, 해양심층수, 강릉커피	제 주	제주 무, 수산전통발효식품, 제주 전통주

○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 하고, 지역이 발굴한 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VIP 보고 (14.3.12)

- R&D 위주로 지원하되, 시험·인증, 공정개선, 특허, 창업, 마케팅·유통, 컨설팅, 수출 등을 패키지화 하여 종합 지원

③ 지역별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등 핵심주체의 수요, 공급능력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유형 발굴 지원

*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50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 중

< 공공기관 수요·공급 기반 사업유형 >

정책 유형	공공기관 수요기반형 (지역 →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급기반형 (공공기관 → 지역)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R&D 공공기관·기업 공동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기술 이전·실용화 R&D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구매(MRO)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기반 클러스터 형성 지원 	

○ 시·도가 수립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최대 3년간 지원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정부 재원은 공공기관 자체 재원 활용이 어려운 이전 공공기관 수요기반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
- 혁신도시의 지역산업여건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참여기관 참여도를 평가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30,288	167,390	174,100	6,71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력산업육성 (주력산업기술개발,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56,388 · (특화) 56,388백 만 원 -	85,688 · (특화) 85,688백 만 원 -	97,800 · (주력) 61,800백 만 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36,000백 만 원	12,112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 (풀뿌리기업육성, 지역 연고산업육성, 지역혁신 센터조성) 	73,900 - · (지역연고산업육성) 52,200백 만 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8,300백 만 원 · (지자체연구소육성) 3,400백 만 원	75,702 · (풀뿌리기업육성) 11,032백 만 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46,800백 만 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5,370백 만 원 · (지자체연구소육성) 2,500백 만 원	67,300 · (풀뿌리기업육성) 22,022백 만 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34,168백 만 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1,110백 만 원 -	△8,402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 육성 	-	6,000	9,000	3,000	50.0
□ 비목	130,288	167,390	174,100	6,71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350-01) 	130,288	167,390	174,100	6,710	4.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도단위 지역주력산업육성을 대표적인 지역산업으로 추진하되,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큰 행복생활권(시군구 포함) 단위 지역연고(전통)산업도 발굴·육성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도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6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기술개발) 85,688백만원 ▪ (풀뿌리기업육성) 11,032백만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46,800백만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5,370백만원 ▪ (지자체연구소육성) 2,500백만원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6,000백만원
'15	1,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육성) 61,800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36,000백만원 ▪ (풀뿌리기업육성) 22,022백만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34,168백만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1,110백만원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9,000백만원
'16	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육성) 61,800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36,000백만원 ▪ (풀뿌리기업육성) 22,022백만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34,168백만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1,110백만원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7,000백만원
'17	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육성) 61,800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36,000백만원 ▪ (풀뿌리기업육성) 22,022백만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34,168백만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1,110백만원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7,000백만원
'18	1,7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육성) 61,800백만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36,000백만원 ▪ (풀뿌리기업육성) 22,022백만원 ▪ (지역연고산업육성) 34,168백만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11,110백만원 ▪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7,0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제21조
- 추진경위
 - '94. 2 :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계획수립
 - '95. 3 : 지역협력연구센터(RRC) 3개소 지정
 - '03. 6 :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7대 과제의 하나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선정
 - '03. 7 : 시도, 중·장기 지방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제출
 - '04. 3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04. 4 : 특성화사업운영요령 제정 및 '04년도 시행계획 수립·공고
 - '04.12 :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RRC사업 이관
 - '06. 3 : TIC 및 RRC 통합개편 추진 및 신규 7개 센터 선정
 - '07. 2 :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명칭변경
 - '08. : 지방기술혁신사업 중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과 통합
 - '09.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명칭변경
 - '10. :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
 - '11. 7 : '13년부터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단순화하기로 결정(경제정책조정회의)
 - '13. 7 :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VIP보고, 지역희망프로젝트)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통산업 발굴 육성(지역행복생활권 또는 시·군·구 단위의 전통산업 육성)
 - '14. 3 : '15년부터 지역사업을 산업협력권사업,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시군구,행복생활권) 등 3개사업으로 전환(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지역특화산업육성(R&D)	1,016	872	1,303	1,674	1,74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이월 사유 :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세수부족으로 사고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16			1,016	1,016		
	(1,016)	()	()	(1,016)	(1,016)	()	()
'12년	872			872	872		
	(872)	()	()	(872)	(872)	()	()
'13년	1,303			1,303	1,055	248	
	(1,303)	()	()	(1,303)	(1,055)	(248)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역위 평가 결과

- 2014년도

사업명	평가 등급	평가의견(요약)
지역특화산업 육성(R&D)	B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고 기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용창출 등에 주력하고 있어 성과도 기대되나 내역사업간 통합적 시너지 발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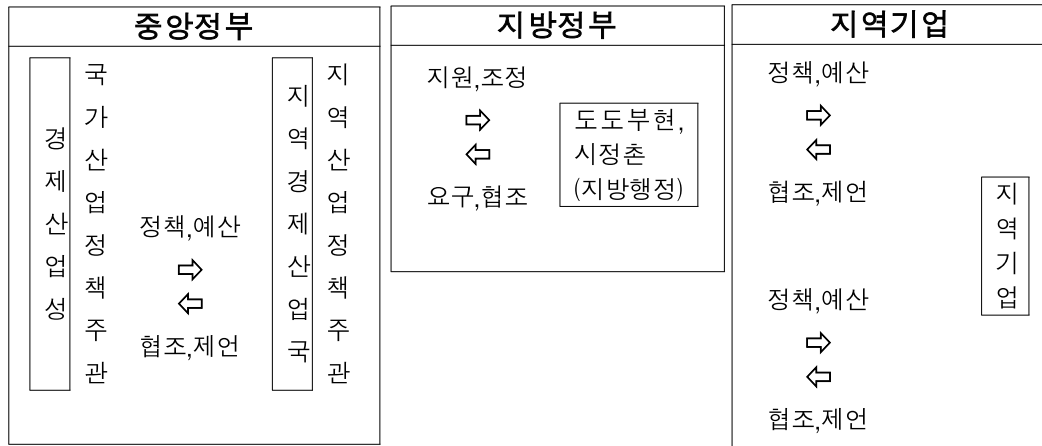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주체는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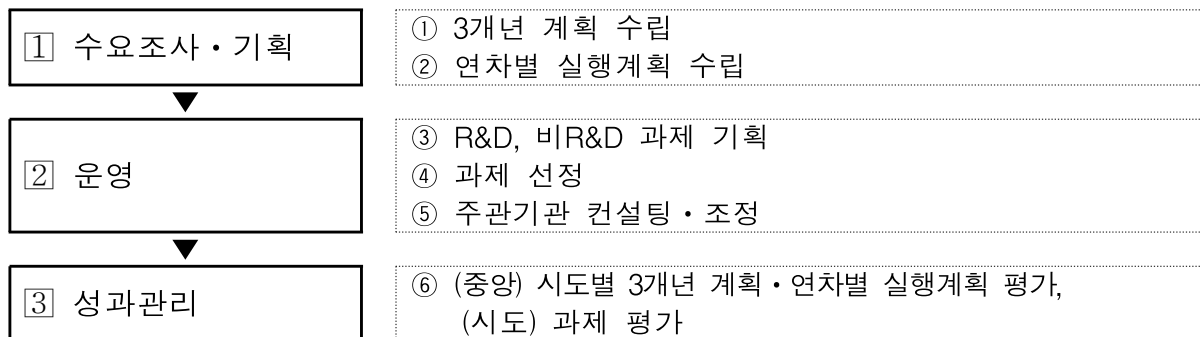
- 중앙정부는 경제산업성(우리나라의 산업부)이 지역정책의 최상위
조직으로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산업정책 전반을 조율
- 8개의 경제산업성 산하조직인 지방지부국내 지역경제산업국이
광역단위의 본부역할을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의사
조정 역할 수행

- 47개의 도도부현(광역지자체)과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단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을 받아 지역의 기업을 지원

< 일본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 구조 (출처 : 관동경제국, 2011) >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453,568	506,704	533,160	26,456	5.2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32,981	157,957	154,772	△3,185	△2.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13,946	23,346	21,011	△2,335	△10.0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12,000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	-	-	3,458	3,458	순증
○산업기술시험원	4,796	1,959	950	△1,009	△51.5
○산업기술저변확충	850	765	368	△397	△51.9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9,663	10,500	10,500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 및 신산업)	133,488	140,561	150,153	9,592	6.8
○기술확산지원(주력 및 신산업)	16,214	16,399	17,861	1,462	8.9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1,500	1,350	1,328	△22	△1.6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33,000	41,114	54,106	12,992	31.6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9,164	38,450	42,185	3,735	9.7
○산업기술국제협력	57,113	58,852	62,630	3,778	6.41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1,538	1,484	1,109	△375	△25.3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	7,315	10,629	12,249	1,620	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방이전	-	3,338	480	△2,858	△85.6
<지역발전특별회계>	-	-	1,000	1,000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	-	1,000	1,0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9,436	26,210	27,413	1,203	4.6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특)(R&D)	12,133	7,580	8,350	770	10.2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700	1,200	500	71.4
○에너지기술정책수립	2,156	1,034	982	△52	△5.0
○에너지인력양성	15,147	16,896	16,881	△15	△0.1
총계	483,004	532,914	561,573	28,659	5.3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32,981	157,957	154,772	△3,185	△2.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4800 - 4806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천영길, 044-203-4510), 사무관(전성규, 4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주체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2. 사업목적

- 산업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산업융합기반구축(29,512백만원)

-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 산출 내역 >

- '15년 계속과제(18개) : 25,839백만원

- '15년 신규과제(3개) : 3,000백만원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중장기전략에 의하여 수립된 산업분야별 50개 전략과제 Pool 중에서 정책적·기술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과제 지원

- 평가관리비 : 673백만원

② 디자인기반구축(5,329백만원)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디자인, 해외진출, 전략정보기반 등의 연구기반구축을 지원

< 산출 내역 >

- 지역 디자인 혁신 : 4,609백만원
- 디자인 해외진출지원 : 300백만원
- 디자인 전략정보기반 : 300백만원
- 평가관리비 : 120백만원

③ 엔지니어링기술진흥(4,170백만원)

- 플랜트·원전·건설 등 대형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엔지니어링*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플랜트 및 SOC 건설의 기획·타당성조사·기본계획·설계·구매·조달·시험·조사·감리·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칭

< 산출 내역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강화 : 4,070백만원
 - *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연구개발 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④ 성장동력기반구축型 내역사업(115,761백만원)

-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내역 사업(32개) >

- 한국적 생산혁신방법 개발(333백만원)
- High-Tech Mold 허브 구축(5,775백만원)
-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10,521백만원)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핵심기술개발 기반구축(1,190백만원)
- 차세대 마이크로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5,177백만원)
- LED 농생명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3,152백만원)
- 적외선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7,275백만원)
-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기술(2,200백만원)
-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6,171백만원)

- 그린카 에너지활용 핵심부품 기반구축(7,450백만원)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기반구축(3,796백만원)
-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15,841백만원)
- LED 융합산업 허브구축(2,880백만원)
-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5,000백만원)
- 첨단 융합 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구축(2,000백만원)
- 조선 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2,500백만원)
-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구축(3,500백만원)
-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6,000백만원)
-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2,500백만원)
-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3,000백만원)
-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2,000백만원)
-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2,000백만원)
- 로봇부품센터 장비지원(1,500백만원)
-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5,000백만원)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2,000백만원)
-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1,000백만원)
-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1,000백만원)
-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1,000백만원)
- 첨단산업 전략소재 · 부품 시험인증기반구축(1,000백만원)
- 유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1,000백만원)
- 레포츠섬유발전기반구축(1,000백만원)
- 조선해양기자재장수명기술지원센터구축(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업융합) 산업고도화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마련하기 곤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학·연구기관 등에 구축하여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R&D로 개발된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표준 제시, 애로기술 지원, 시제품 생산, 시험 및 인증 업무 등)를 종합적으로 지원중임. 이를 통해 개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이외에도 여기에 소요되는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으로 지원중인 28개 과제는 사업기간이 3~5년인 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이 필요

- (디자인) 디자인 산업은 대표적 저비용·고효율의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 및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여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으나, 디자인에 대한 인식·투자 미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바, 지속지원이 필요
 - 기능 및 품질 외에 제품의 가치와 창조성이 부각됨에 따라 디자인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 디자인기반구축은 「디자인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원자력·환경·에너지 등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할 필요
 -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중소 해외진출희망업체 및 수주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
- (성장동력)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분야를 발굴하고 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 경제정책조정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 중심
 - 기존 국가산업을 주도한 분야의 지속적 역량강화와 성장가능성 높은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지원추진
 - * LED융합산업 시장은 '13년경 자동차, 의료·환경(UV LED), 농생명·해양 등 본격적인 형성이 예상되며 '20년 1,000억불 이상으로 급성장 전망(CAGR 170%)
 - * 적외선광학계 산업은 '13년 3.6조원 세계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 신규시장 창출 예상
 - * 한국은 해양플랜트 설비 제작분야에서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나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이 자립화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제경쟁력 우위확보와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립화가 시급

-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시장의 미래트렌드에 대응하여 시장 선점을 통한 국가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 고령화/복지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항노화 및 의료로봇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선점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구축 필요
 - * 의료로봇시장은 매년 10.4% 이상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별 비교우위 경쟁력 보유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 * 광주·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레이저 응용분야의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32,981	157,957	154,772	△3,185	△2.0
▪ 산업융합기반구축	47,215	40,164	29,512	△10,652	△26.5
▪ 디자인기반구축	4,329	4,329	5,329	1,000	23.1
▪ 엔지니어링기술진흥	3,020	3,970	4,170	200	5.0
▪ 한국적 생산혁신방법 개발	500	500	333	△167	△33.4
▪ High-Tech Mold 허브구축	3,900	2,862	5,775	2,913	101.8
▪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2,993	6,993	10,521	3,528	50.5
▪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	5,490	13,380	-	△13,380	△100.0
▪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 핵심기술개발 기반구축	11,880	11,880	1,190	△10,690	△90.0
▪ 차세대 마이크로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4,475	4,251	5,177	926	21.8
▪ LED 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지원	2,900	2,755	3,152	397	14.4
▪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	4,408	4,408	7,275	2,867	65.0
▪ 항노화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4,750	4,730	-	△4,730	△100.0
▪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기술	1,900	1,900	2,200	300	15.8
▪ 희소금속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2,500	5,500	-	△5,500	△100.0
▪ 해양로봇연구거점센터 지원	1,800	1,710	-	△1,710	△100.0
▪ 항공산업기반구축	3,000	3,000	-	△3,000	△100.0
▪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1,000	4,000	-	△4,000	△100.0
▪ 전기차용 경량/감성샤시 부품연구기반구축	5,003	-	-	-	-
▪ 서남권 해양테저장비산업 기반구축	4,293	-	-	-	-
▪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500	2,000	6,171	4,171	208.6
▪ 개인용 이동수단 기술기반구축	800	800	-	△800	△100.0
▪ 그린카 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기반구축	3,425	3,425	7,450	4,025	117.5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기반구축	1,500	2,500	3,796	1,296	51.8
▪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2,000	10,000	15,841	5,841	58.4
▪ LED 융합산업 허브구축	2,500	3,500	2,880	△ 620	△ 17.7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 가공 산업기반구축	5,000	5,000	5,000	-	-
▪ 스마트뷰티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센터	1,900	1,900	-	△ 1,900	△ 100.0
▪ 첨단융합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	1,000	2,000	1,000	100.0
▪ 조선 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	-	1,000	2,500	1,500	150.0
▪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	1,500	3,500	2,000	133.3
▪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 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	-	1,000	6,000	5,000	500.0
▪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	1,500	2,500	1,000	66.7
▪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구축	-	1,500	3,000	1,500	100.0
▪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	1,000	2,000	1,000	100.0
▪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	-	2,000	2,000	-	-
▪ 로봇부품센터 장비지원	-	1,000	1,500	500	50.0
▪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	1,000	5,000	4,000	400.0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	-	2,000	2,000	100.0
▪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	-	1,000	1,000	100.0
▪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	-	1,000	1,000	100.0
▪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	-	1,000	1,000	100.0
▪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시험인증기반구축	-	-	1,000	1,000	100.0
▪ 유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	-	1,000	1,000	100.0
▪ 레포츠섬유발전기반구축	-	-	1,000	1,000	100.0
▪ 조선해양기자재장수명기술지원센터구축	-	-	1,000	1,000	100.0
□ 비목(합계)	132,981	157,957	154,772	△3,185	△2.0
▪ 출연(350-01)	132,981	157,957	154,772	△3,185	△2.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기술기반조성 중장기 전략 pool을 활용하여 신규사업 선정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경쟁기획을 통한 사업성과제고 도모
- 계속과제는 유형별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 심화를 통해 우수과제를 지원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 및 신규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 차년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 투자적정성 등을 신규사업 기획평가에서 사전 검증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기반구축(402) ▪ 디자인기반구축(4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40) ▪ 성장동력기반구축(1,095)
'15	1,5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기반구축(295) ▪ 디자인기반구축(5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42) ▪ 성장동력기반구축(1,158)
'16	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기반구축(295) ▪ 디자인기반구축(5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42) ▪ 성장동력기반구축(1,127)
'17	1,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기반구축(371) ▪ 디자인기반구축(5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42) ▪ 성장동력기반구축(1,127)
'18	1,6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융합기반구축(371) ▪ 디자인기반구축(5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42) ▪ 성장동력기반구축(1,20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디자인기반구축)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제1항4호(바이오의료기기)
-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형 제조혁신 기법(기술) 개발사업)
- 산업발전법 제27조(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 추진경위

< 산업융합기반구축 >

- 공동연구기반구축
 - '95년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96-2000) 수립
 - '08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개편
- 산업원천기반구축
 - '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중 기반구축사업을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
- '12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과 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을 산업융합 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
- '12. 9. 연구기반구축 통합관리방안 수립
- '13.12.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디자인기반구축 >

- '08년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08~'12) 수립
- '09년 21세기 산업디자인전략 수립 및 발표
- '12년 디자인 산업융합전략('13~'17) 수립 및 발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 >

- '05년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경제정책조정회의)
- '10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개정('10.4) 및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국경위 보고('10.4)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발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12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12~'16) 수립

< 성장동력기반구축型 >

- '10. 4.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0. 7. 조선산업 현황 및 향후대책(위기관리대책회의)
- '10.10.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1. 5. LED산업 제2도약 전략(경제정책조정회의) 등
- '12. 5.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804	1,095	1,330	1,580	1,54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수행(기재부)
 - 평가결과 : 공동연구기반구축(보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보통)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수행(기재부)
 - 평가결과 :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OECD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산된 대형연구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 증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 중
- 일본의 경우도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중기청이 연계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및 첨단기기공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첨단연구장비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부터 이노베이션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시설 및 장비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
-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첨단연구장비 및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기술관련 서비스, 성과육성지원 서비스, 실시훈련 서비스, 인재육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연구기획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 평가 및 관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¹⁾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²⁾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추진경과

- 심해수조 건설 협약서 체결(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2012.7)
- 예산 타당성 조사(~2013.4)
- 타당성 재조사(2013.4월~11월) : 2차에 걸친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재부 타당성 조사사업 통과
 - * 조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 * 조사결과: (B/C) 0.94
- 부지선정(해수부, 산업부, 부산시, 당 연구원의 다자간 협의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 생곡지구로 최종결정, 2013.6)
- 사업계획서(타당성 재조사 결과 반영) 제출 (2013.12.5)
- KIAT 선정평가 발표(2013.12.9)
- 선정평가 결과 보고서 송부(2013.12.10)
- 과제착수(2013.12.1~)

○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세부내역

<div> <div><표 1> 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 사업비 증감현황 세부내역</div> <div>(단위: 백만원)</div> </div>					
구 분	사업계획서(예산 타당성 조사 반영)	타당성 재조사(1차)	예타 대비 (증감)	타당성 재조사(2차)	예타 대비 (증감)
심해공학수조 (본체, 대형사각수조, PIT)	A. 설계비 (기본 및 실시) ① 건축/토목 설계비: 1,488백만원 - 30,588 x 4.866%(오늘) ② 수조시험설비 설계비: 1,000백만원 - 견적가 반영 소계: 2,488백만원	① 건축/토목 설계비: 1,371백만원 - 2,5827 x 4.827%(오늘) ② 수조시험설비 설계비: 929백만원 - 산업플랜트부문 오늘 적용 - 23,032 x 4.034% 소계: 2,300백만원	-117 -71 -188	① 건축/토목 설계비: 1,371백만원 - 2,5827 x 4.827%(오늘) ② 수조시험설비 설계비: 929백만원 - 산업플랜트부문 오늘 적용 - 23,032 x 4.034% 소계: 2,300백만원	-117 -71 -188
	B. 실험동 공사비 ① 본체 건축공사비: 11,258백만원 - 155m x 70m = 10,850m ² ② 심해 Pit 공사비: 2,900백만원 - 락플트+소크리트공법, 개략견적 소계: 30,588백만원	① 본체 건축공사비: 9,698백만원 - 10,850m ² x 893,750원/m ² ② 심해 Pit 공사비: 2,763백만원 - 미진동굴착 + 락플트 공법 소계: 28,410백만원	-1,560 -481 -137 -2,178	① 본체 건축공사비: 9,698백만원 - 10,850m ² x 893,750원/m ² ② 심해 Pit 공사비: 2,763백만원 - 미진동굴착 + 락플트 공법 소계: 28,410백만원	-1,560 -481 -137 -2,178
	C. 감리비 ① 감리비: 310백만원 - 30,588백만원 x 1.014%(오늘) 소계: 310백만원	① 감리비: 1,656백만원 - 28,410백만원 x 5.829%(오늘) 소계: 1,656백만원	1,346 1,346	① 감리비: 1,656백만원 - 28,410백만원 x 5.829%(오늘) 소계: 1,656백만원	1,346 1,346
	D. 시 설 부대비 ① 전력인입분담금: 960백만원 ② 실험실기본시설비: 300백만원 ③ 기타용역비: 152백만원 ④ 부대장비: 170백만원 소계: 1,582백만원	① 시설부대비: 284백만원 - 28,410백만원 x 1.1%(오늘) 소계: 284백만원	-1,298 -1,298	① 시설부대비: 284백만원 - 28,410백만원 x 1.1%(오늘) 소계: 284백만원	-1,298 -1,298
	총공사비 합계: 34,968백만원	합계: 32,650백만원	-2,318	합계: 32,650백만원	-2,318
	시 험 설비비 ① 시험설비비: 23,032백만원 - 견적가	① 시험설비비: 23,032백만원 - 견적가	-	① 시험설비비: 23,032백만원 - 견적가	-
용 지 보상비	부 지 매입비 ① 지자체 매입비: 10,941백만원	① 지자체 매입비: 10,941백만원 - m ² 당분양가 x 사업면적	-	① 지자체 매입비: 10,900백만원 - m ² 당분양가 x 사업면적	-41
예비비	10% ①미반영	①10% 반영: 5,568백만원 - 심해해양공학수조+시험설비비	5,568	①미반영	0
총 사 업 비	68,941백만원	72,191백만원	3,250	66,582백만원	-2,359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13,946	23,346	21,011	△2,335	△10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12,000				

* 사업코드 : 21-11-0-110-114-3200-3272-303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국장), 산업기술정책과(천영길 과장, 044-203-4510), 사무관(김애경, 4504)

※ '14년부터 '(세부)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내 '(내역)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을 '(세부)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으로 통합하여 추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14년까지 기투자액 996.48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으로 고급연구인력을 공급·활용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연구인력 파견지원

- 출연연 및 전문연의 연구인력(정규직, 기업지원연구직)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지원 (사업비 13,946백만원)

②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입 석·박사 및 경력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지원 (사업비 6,565백만원)

③ 연구인력 역량강화

- 중소·중견기업에서 채용한 신입 연구인력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 (사업비 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소·중견기업은 고급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석박사 고급연구인력은 중소중견기업을 기피하는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한 수준**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2011) :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3.5%(64,737명)이며, 이중 R&D인력은 5.4%(5,620명)
- 고급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고급연구인력 선순환 체계 마련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R&D)	13,946	23,346	21,011	△2,335	△10.0
▪ 연구인력 파견지원	13,946	13,946	13,946	-	-
▪ 연구인력 채용지원	-	8,900	6,565	△2,335	△26.2
▪ 연구인력 역량강화	-	500	500	-	-
☐ 비목	13,946	23,346	21,011	△2,335	△10.0
▪ 출연금	13,946	23,346	21,011	△2,335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출연연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 및 출연연-기업간 협력채널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촉진을 통한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33.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지원사업(139.46) : 연구기관 연구인력(245명) ▪ 채용지원사업(89) : 석박사(550명), 경력(30명) ▪ 연구인력 R&D 역량강화(5) : 20명(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15	2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지원사업(139.46) : 연구기관 연구인력(245명) ▪ 채용지원사업(65.65) : 석박사(348명), 경력(30명) ▪ 연구인력 R&D 역량강화(5) : 20명(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16	18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지원사업(139.46) : 연구기관 연구인력(245명) ▪ 채용지원사업(44.64) : 석박사(195명), 경력 30명 ▪ 연구인력 R&D 역량강화(5) : 20명(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17	23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지원사업(139.46) : 연구기관 연구인력(245명) ▪ 채용지원사업(94.35) : 석박사(495명), 경력 30명 ▪ 연구인력 R&D 역량강화(5) : 20명(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18	255.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지원사업(139.46) : 연구기관 연구인력(245명) ▪ 채용지원사업(111.07) : 석·박사(600명), 경력(30명) ▪ 연구인력 R&D 역량강화(5) : 20명(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2 및 제44조

<p>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p>

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4년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채용지원) 시행
 - ‘09년, ‘10년 : “비상경제대책 회의” 보고
 - * 고경력 연구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파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
 - ‘10년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에 반영
 - ‘14년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채용지원)과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파견지원) 통합
 - ‘04년 ~ ‘13년 : ‘13년말까지 총 4,271개사 4,800명 채용지원
 - ‘10년 ~ ‘13년 : ‘13년말까지 총 351개사 346명 파견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R&D)	265	265	259.46	233.46	210.11

* ‘11~’13년 사업예산에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예산 120억원 합산하여 표기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프로세스	수행주체 (운영지원 주체)	내용
전담-주관 협약체결	KIAT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간 협약 체결
사업 공고	산업부(KIAT)	사업 공고 추진
신청 접수	중소·중견기업	공고기간 내 기업의 신청
지원기업 선정	주관기관 (국과연, 산기협)	지원과제에 대한 선정 평가 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주관기관	세부 과제별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성과평가	KIAT	최종 성과평가 실시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산업부	사업 결과 산업부 보고 및 활용 현황 점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타당성 인정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한국산업기술대학 운영지원	-	-	3,458	3,458	순증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200 - 3161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천영길, 044-203-4510), 주무관(고현태, 45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간)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정부출연
사업시행주체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2. 사업목적

-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공학 실무교육과 채용연계형 현장교육을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대학 운영비 출연·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한국산업기술대학 출연(신규) : 교육부의 행정제재(정원감축 등)를 받지 않고 원활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지원금(법인전출금)인 3,458백만원* 지원 요구
 - 산출내역 : 1,235억원(산기대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수익 총액) × 2.8%
 - * 교육부 방침에 따라 '15년부터 산기대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수익 총액(1,235억원)의 2.8%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미확보시 정원감축에 준하는 행정제재 처분 우려
 - 법정부담금* 2,873백만원, 경상비(기자재 구축) 585백만원
 - * 사학연금법 제47조('12년),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거 법인 부담이 의무화

□ 지원 필요성

○ 한국산업기술대학 재정여건 취약

- 산기대는 우리부가 설립한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법인 부재, 등록금外 수입원 취약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최근 획일적인 대학 평가(재정상태 위주), 대학구조개혁(정원감축), 반값등록금 시책 등 대학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

○ 국가산업단지 기술인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중

-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애로기술을 공동해결하는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평가

○ 대학평가지 법인 재정역량이 강조되고 있어 '산학협력 우수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평가받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 이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여건 확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한국산업기술대학 운영지원	-	-	3,458	3,458	순증
☐ 비목					
▪ 출연금(350-01)	-	-	3,458	3,458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특성화 대학 모델 확산

- 선도적 산학협력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가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34.6	▪ 운영수익총액(1,235억원)×2.8% - 법정부담금, 경상비(기자재구축)
'16	34.6	▪ 운영수익총액(1,235억원)×2.8% - 법정부담금, 경상비(기자재구축)
'17	34.6	▪ 운영수익총액(1,235억원)×2.8% - 법정부담금, 경상비(기자재구축)
'18	34.6	▪ 운영수익총액(1,235억원)×2.8% - 법정부담금, 경상비(기자재구축)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4. 7.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시범 산업기술대학' 설립 결정
 - '95.12.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설립 허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한국산업기술대학 운영지원	-	-	-	-	3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대학 설립 유형별 법인 및 지원 현황(‘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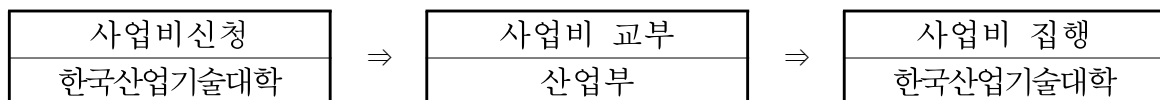
구 분	산기대	기술교육대	국립대 (서울과기대)	사립대 (성균관대)
학교 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산업부)	한국기술교육대학 (고용부 산업인력공단)	교육부	기업(삼성)
지원금	-	570억원	550억원	1,000억원 (재단)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산업인력공단법	국립학교 설치령	고등교육법

* 사립대학 & 정부 설립 대학은 산업기술대, 기술교육대 2개교만이 존재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산업 현장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운영지원비를 한국산업기술대학(법인)에 출연하고 법인은 소속대학(산업기술대, 경기과기대)에 운영경비를 전출하여 사업 수행

- 사업추진 흐름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한국산업기술대학 지원 필요성

참고 한국산업기술대학 지원 필요성

- 제조업 기반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도모할 우수기술인재 양성·공급이 필요
 - 27,154개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음에도 R&D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술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5%로 대기업 0.5%에 비해 7배 높음
 - 산업기술혁신은 기업중심(특히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고급 R&D인력*은 대부분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
 - * 국내 박사학위자 중 21%(18,621명)만이 기업체에 종사, 대학에 62%(54,705명), 연구기관에 16%(14,316명) 재직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대학설립준칙주의('96) 등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반면,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만은 계속 증가
 - * 대학진학률(%): ('90) 33.2 → ('95) 51.4 → ('05) 82.1 → ('11) 72.5 → ('13) 70.7
 - * 대학교육 경제사회요구 부합도(46위), 자격 갖춘 엔지니어 공급수준(48위) ('13, IMD)
- 중소기업 인력수급 어려움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지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산기대는 정부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정부 지원이 없어 재정기반이 취약
 - * 산기대 법인은 학교 지원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법정 기본재산의 19%만 확보('14)
 - 최근 대학평가시 법인 재정역량이 강조되고 있어 '산학협력 우수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평가받는 모순에 직면
 - 또한, 최근 대학개혁 추진, 반값등록금 시책 등 대학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구책 마련 및 정부 지원이 시급
-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 처분*시 인근 산업단지의 중소·중견기업 인력공급에 차질 발생 우려
 - * 산기대 입학정원 10% 감축시 편제정원 552명 감소(취업자 약 100여명 감소)

산업기술시험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시험원	4,796	1,959	950	△ 1,009	△ 51.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200 - 3241 - 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천영길, 044-203-4510), 주무관(고현태, 451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수지차보전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사업목적

- 제품·부품·소재 등의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과 이를 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자체수입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1.5% 감소한 950백만원 예산 편성

○ 산출근거

- 전체 예산소요 137,359백만원 중 수지차 950백만원(0.7%) 지원
 - * 수지차 보전비율(예산기준) : '11(9.8%) → '12(6.1%) → '13(3.7%) → '14(1.4%) → '15(0.7%)
- '14년도 예산에 과거 3개년('11년~'14년) 평균증가추세를 산출

- '15년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예산 편성
- * 사업수입은 3개년 평균 증가율, 비용은 3개년 평균 원가율과 지방이전을 고려한 요인을 반영, 이외 비목은 정부지침 등에 따름

구 분	'14예산	'15예산
☐ 산업기술시험원	1,959백만원	950백만원
▪ 산업기술시험원 수지차 보전	인건비 및 경상운영 경비 일부 지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 경비 일부 지원

② 인건비 : 지방이전수당 432백만원

○ 산출근거

-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수당 반영 : 이주인원 260명(정규직 180명에 대한 월 20만원씩 12개월분 반영
- * 관련근거 : '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③ 연구장비비 : 공공시험평가 및 신규서비스 수행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비 518백만원

○ 산출근거

- 남부지역의 공공시험평가 및 신규서비스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비 4,059백만원 소요
- * 국제방폭인증서비스, 기계부품시험평가서비스, 항공/국방산업 시험평가서비스 등 지원
- 이 중 지역특화산업지원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비 518백만원 정부 지원
- 정부 지원 외 자체재원(3,541백만원)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 지원

☐ 지원 필요성

- (전략적 투자) 기술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조기 정착 및 지역특화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대표 공공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 현재 인프라구축이 안된 항공, 조선해양플랜트, 방위산업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
 - ** 국제방폭인증서비스, 기계부품시험평가서비스, 항공/국방산업 시험평가서비스 등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개발한 제품이 시장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요구하는 시험·인증, 현장애로기술 및 관련정보 제공
 - * 50개 이상의 위탁시험·인증 분야에서 연간 18만건 이상의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규제에 대한 정보 및 기술능력 부족, 관련 비용의 부담 등으로 상품화·사업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 **(해외시장 진출 촉진)**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하게 요구하는 인증획득을 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정보 및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기관은 인증시간 및 비용이 과다
 - * (사례) 태양광 국제인증 기반구축 : (TUM) 12개월, 6천만원 → (KTL) 5개월, 20백만원
 - * 주요국 인증정보 무료제공(dic.ktl.re.kr) 및 51개국 113개 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해양플랜트 등 사업화 인프라가 미비한 신성장동력 분야 시험인증 기반구축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 * 연간 25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표준 및 시험인프라 구축 추진
- **(국내시장 잠식 대응)**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하여 **국내시험인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기관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
 - * (국표원 자료) 국내 시험인증시장 3조5,650억원, 해외기관이 25% 점유
 - 국내최대인 KTL은 SGS대비 매출 1.5%, 인원 1/80, 지사수 1/250 수준
 - * 정부는 글로벌 시험인증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14.1)
- **(국가 품질검증체계 확보)** 국가기간산업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통합품질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의 객관성 확보에 대응
 - * 원자력, 철도, 항공, 방위산업 등 국가기간 산업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 초래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4,796	1,959	950	△1,009	△51.5
▪ 산업기술시험원	4,796	1,959	950	△1,009	△51.5
☐ 비목별 분류(합계)	4,796	1,959	950	△1,009	△51.5
▪ 출연금(350-01)	4,796	1,959	950	△1,009	△51.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험인증시스템 선진화, 국제수준의 시험평가 기반 구축 등 국제 시험인증역량 확대 사업을 통한 **국제경쟁력 지속 강화**
 - * 국제수준의 80%까지 시험인증 역량 제고(현재는 분야에 따라 50%~80% 수준)
-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원** 및 무역기술 장벽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시험인증 네트워크 확대**
 - * 중동, 남미 등 신흥수출국에 대한 시험인증 협력기관 및 현지지소 설립 추진
-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발전 지원**
 - *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도약
- 항공기, 군함, 무기류 등 군수품에 대한 **남부지역 산업지원**
 - * 진주지역으로 이전 후 남부지역에서 항공기 및 방위산업시장에 대한 특화서비스를 추진하여 시험인증경쟁력을 확보
- 국가기간산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검증역량 지속 강화

【 해외시험인증기관과 규모 비교 】

기관명	본부	인력(명)	매출(억원)	진출국	지소
SGS	스위스	64,000	61,370	(100)	1,250
Intertek	영국	27,000	20,201	100	1,000
TUV Rheiland	독일	14,500	20,059	61	5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737	1,111	1	4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9.59	▪수지차보전(전체예산의 1.4% 해당)
'15	9.50	▪수지차보전(전체예산의 0.7% 해당, 매출 10% 증가 예상)
'16	8.36	▪수지차보전(전체예산의 0.5% 해당, 매출 10% 증가 예상)
'17	9.03	▪수지차보전(전체예산의 0.5% 해당, 매출 10% 증가 예상)
'18	7.67	▪수지차보전(전체예산의 0.4% 해당, 매출 10% 증가 예상)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원대상단체의 설립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 1항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을 설립한다.』

- 정부출연의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1조 3항

『정부는 시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3조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중략)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 연도 : 1999년
- 추진배경 : 국제규격 및 교역상대국의 요구조건에 따른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시험원	94	63	48	20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94	0	0	94	94	0	0
	(94)	()	()	(94)	(94)	()	()
'12년	63	0	0	63	63	0	0
	(94)	()	()	(94)	(63)	()	()
'13년	48	0	0	48	48	0	0
	(48)	()	()	(48)	(4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 다국적 시험인증기관들이 시험인증업무를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다국적 시험인증기관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음

- 주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현황

1 S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스위스 • 인력: 67,000명, 매출: 6.2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1,250개 • 한국 진출 년도: 1955년 	6 TÜV Rhein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독일 • 인력: 14,500명, 매출: 2.1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500개 • 한국 진출 년도: 1987년
2 Bureau Veri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프랑스 • 인력: 48,000명, 매출: 4.4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1,260개 • 한국 진출 년도: 1979년 	7 DN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노르웨이 • 인력: 9,000명, 매출: 1.9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300개 • 한국 진출 년도: 1992년
3 De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독일 • 인력: 25,000명, 매출: 2.8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N/A개 • 한국 진출 년도: N/A 	8 TÜV N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독일 • 인력: 10,000명, 매출: 1.6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70개 • 한국 진출 년도: 1996년
4 Intert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영국 • 인력: 27,000명, 매출: 2.4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1,000개 • 한국 진출 년도: 1994년 	9 Lloyds Regi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영국 • 인력: 5,937명, 매출: 1.4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246개 • 한국 진출 년도: 1991년
5 TÜV SÜ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독일 • 인력: 16,000명, 매출: 2.3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600개 • 한국 진출 년도: 1994년 	10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미국 • 인력: 7,024명, 매출: 1.2 조 원('10년) • Office & Laboratory: 176개 • 한국 진출 년도: 1996년

- 주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별 서비스 현황

국가	기관	서비스	
스위스	SGS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서비스를 통하여 제품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Support하는 역할을 수행함- 고객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서비스가 국내 및 국제 표준과 규정에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함• 각종 ISO, CE마크, GMP, 전기안전인증, HACCP인증 등 143개 인증마크의 업무를 수행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년의 경험을 가진 시험서비스는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가장 넓고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함-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험시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품 의 Time to market을 실현하면서 원자재·부품·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함• RoHS¹⁾ Testing, Hospitality Services, Biofuels, Noise Monitoring 등 444개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과 산업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산업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서비스는 글로벌 전 영역에 전 산업 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이해 시키는 데 도움을 줌
		기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 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Quantity와 Quality를 만족시키며, 타 지역과 시장을 포함하는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도와줌• 회계 감사 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제품, 공정, 업무가 시장규정과 기준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 시켜줌• 아웃소싱<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기관과 차별화된 경험, 전문성, 자원과 특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함-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제공함• 타당성 검토 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하여 가장 최신의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장해 줌

프랑스	Bureau Veritas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제 인증규격 제정 및 선진 각국 인정기관의 인증제도 수립활동에 적극 참여로 구축한 국제적 공신력과 폭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증 분야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보유함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 분야에서의 인증실적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심사 부문의 독보적 전문성을 보유함	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양 산업에 있어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에 따라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 건조 단계에서부터 운항 중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수행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생명, 자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산업의 기술적 기준을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있음각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선적 전 조사 서비스의 일부인 상품분류 기호체계(HS) 제공을 통해 정부가 조세징수와 무역통계 집계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객사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함교육서비스는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최대 인증 기관인 국제 심사원 등록기구(IRCA)에 등록된 다양한 심사원 개발 과정을 제공함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객사가 QHSE SA¹⁾의 영역에서 직면하게 될 잠재적 위험에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기술적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광범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산업 내 제조업자와 소매업자의 제품에 대한 필수안전, 규제, 정부 기준에 적합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건축재질 테스트, 비파괴 검사, 파괴 검사, 환경 분석과 같은 지역 규율이나 고객의 세부적인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설비, 장비, 제품에 대한 검사 서비스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검사 등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건물, 설비의 검사 및 측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사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돕는 한편, 전체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산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줌						
독일	TUV Rheinland	산업 분야	내용	세부 분야	서비스				
		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품질, 근무현장 안전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인증하고, 가장 진보하고 포괄적인 리스크 분석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압력기기 및 소재기술,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및 기계 설비 기술, 에너지 및 환경 기술 등	시험				
		교통 및 운송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별, 지역별로 적용되는 모든 지침과 규정으로 미래의 안전과 환경규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기적 기술 검사, 운전면허, 자동차 서비스 및 평가, 철도, 항공, 선급, 지능형 운송시스템 등	인증				
		제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완구에서부터 컴퓨터, 종장비 등 거의 모든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국내 및 국제 규격에 의거해 평가, 시험, 인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전 및 생활기기, 의류, 전기, 상업, 의료기기, 태양열 및 연료전지기술, 식품	검사				
		라이프 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병원 하이테크 설비에 대한 품질 확인, 기업체 심리 컨설팅서비스 등 건강분야에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업 보건 및 안전,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의료센터서비스	평가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직 및 시스템 컨설팅 등 최고 전문 기준에 부합하는 출판제품 등 광범위한 직업교육 및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교육, 학교, 인사인증, 인사관리, 경영자문, 출판 및 대중매체, R&D 및 혁신관리	타당성 검토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분석과 평가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리시스템인증, IT 및 통신시스템 보안, TÜVdotCOM웹서비스 및 브랜드 위험관리, 맞춤형 서비스	자격 심사				
미국	UL	<p>(제품안전) UL의 전통적인 시험인증 연구개발을 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안전 분야가 UL의 모든 시험인증에 있어서 우선 <p>(교육) 공공안전에 관련된 각종 교육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품 안전에서부터 건물 관련 시설 안전, 설비 설치, 감사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의료기기 및 산업제어 패널, 화재 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p>(환경) 유럽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업, 정부 및 일반 고객층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시험평가 연구개발 및 인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p>(생활 및 건강) 의료기기 및 식품관련 안전 시험 및 연구개발</p>							

< 주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별 사업 포트폴리오 >

구분	AGR	OGC	MIN	CTS	IND	AUT	LSS	GIS	SSC	ENV	MAR
SGS	○	●	●	●	●	△	△	○	○	○	
BV		△	△	●	●			○	●	○	●
TUV SUD				△	●	●	△		●		
UL		△		●			○		●	○	

주) 매출액 비중 ● 10% 이상 분야, ○ 10% 미만 분야, △ 5% 미만 분야

AGR: Agricultural Services

MIN: Minerals Services

IND: Industries Services

LSS: Life Science Services

SSC: System & Services Certification

MAR: Marine

OGC: Oil, Gas & Chemical Services

CTS: Consumer Testing Services

AUT: Automotive Industries

GIS: Governments & Institutions Services

ENV: Environmental Services

- (국내) 국내 시험인증 시장은 주로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기관이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관이 부재

* 2,408개 국내기관 중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관이 전체의 92%를 차지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
↓	
사업계획 승인신청	이사회 승인된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사업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여부 확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출연금 교부 및 집행	사업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및 집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	
사업실적 보고	해당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산업기술저변확충(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저변확충	850	765	368	△397	△51.9

* 사업코드 : 21 - 110 - 114 - 3200 - 3247 - 301

* 담 당 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천영길, 044-203-4510), 사무관(김성만, 451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2~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4년까지 기투자액(201.25억원)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기술인과 기업을 발굴·격려하고 산업 기술주간을 운영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대한민국기술대상 선정·시상) 산업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우수 기술 및 기술인 선정·시상 개최비용 : 250백만원
 - 기술대상 공고·선정·평가 : 70백만원, 기술대상 시상 : 180백만원
- ② (산업기술주간 운영 및 홍보) R&D성과 대전 등 산업기술 관련 행사 운영 및 홍보 : 118백만원
 - 산업기술주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11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직접투자와 더불어 기술개발 주체인 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조성도 매우 중요
- 산업기술 R&D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은 매우 부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저변확충					
▪ 기술대상 선정·시상	461	327	250	△77	△23.5
▪ 기술주간 운영·홍보	389	240	118	△122	△50.8
▪ 청소년체험프로그램	0	198	0	△198	△100
☐ 비목(합계)	850	765	368	△397	△51.9
▪ 출연금(350-01)	850	765	368	△397	△51.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수한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과 기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기진작 강화
- 기술주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R&D성과전시회와도 연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유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65	▪ 기술대상 선정·시상 및 기술주간 운영·홍보
'15	3.68	▪ 기술대상 선정·시상 및 기술주간 운영·홍보
'16	3.24	▪ 기술대상 선정·시상 및 기술주간 운영·홍보
'17	3.50	▪ 기술대상 선정·시상 및 기술주간 운영·홍보
'18	2.97	▪ 기술대상 선정·시상 및 기술주간 운영·홍보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경위
 - '92년 : 제1회 산업기술제품전 개최
 -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성과를 홍보하고 국산신기술제품의 수요창출을 촉진 목적
 - '02년 : 해외기술 최초 소개
 - '04년 : 기술대전 중심으로 관련 행사 통합
 - '06년 : 산업기술주간을 설정하여 유관행사 집중 개최
 - '07년 : '산업기술저변확충사업'으로 개편하여 '기술대전' 개최
 - '08년 ~ 현재 : 대한민국기술대상 및 산업기술주간 운영·홍보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저변확충	10.79	8.5	8.5	7.65	3.6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미흡
- 관리과제의 지표 모두 합리적 이유 없이 과거 실적치 대비 낮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 수준의 적극성이 미흡함
- 주무부처의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해결 실적이 일부 미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산업부
- ②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지급 : 산업부↔산업기술진흥원
- ③ 사업수행 : 산업기술진흥원
 - * 세부추진계획수립 : 산업부, 사업수행 : 산업기술진흥원
- ④ 사업수행 결과 평가 및 보고 : 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 ⑤ 사업비 정산·반납 및 종료 : 산업기술진흥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9,663	10,500	10,500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500 - 3556 - 306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차동형), 산업기술개발과장(유법민, 044-203-4520), 주무관(이맹섭, 45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14년까지 39,663백만원)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매칭,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50 ~ 75%)
사업시행주체	기업/대학/연구소

2. 사업목적

-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작업환경·범죄예방 등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맞춤형·문제해결형 따뜻한 기술개발 : 10,500백만원
 - 사회약자 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 : 8,900백만원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안전, 작업환경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계속과제 4,800백만원, 신규과제 3,55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550백만원)

< 산출 내역 >

- (계속) 13개 과제 × 369백만원, (신규) 15개 과제 × 236백만원

▪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공동사업 : 1,600백만원

- 성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인터넷·게임 디톡스,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한 다부처 공동사업(국정과제, 미래부 주도로 기획하고 다부처 참여)

< 산출 내역 >

- (계속) 9개 과제 × 17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기존의 국가 R&D는 기초, 원천, 첨단 기술만을 지향하여 일반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은 소홀

- 개발되었거나 개발가능한 기술의 재조합, 재디자인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

- 다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형태가 맞춤형에 가깝게 개발될 수 밖에 없고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

* 동 사업 영역은 공공재적 성격(안전, 편리, 자긍심, 경제격차 해소 등)이 강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움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 2만불 달성 시점에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수립에 본격적으로 관심

* (美, '88년~) 장애인 공학관련 지원법, 보조공학법 제정 등
(日, '87년~)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호(Care) 보험법 제정 등

- 우리도 경제수준의 전반적 향상,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삶의 질 향상관련 정책 수요 증대

○ 우리의 제반환경,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R&D를 정부가 추진해 나갈 시점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산업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

* 일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제품(예로 고령화/저출산 관련 제품)의 경우는 경제성 확보도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시장 진출, 고용확대, 수출 등 과도 연계 예정 (신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큼)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9,663	10,500	10,500	-	-
▪ 사회약자 배려형 및 사회이슈 해결	9,113	8,350	8,350	-	-
▪ 다부처 연계 사회문제 해결형 시범사업		1,600	1,600	-	-
▪ 기획평가관리비	550	550	550	-	-
☐ 비목					
▪ 출연금	9,663	10,500	10,5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증진과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이슈해결 등을 위한 분야에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사업 운영

구분	사전기획	기술개발	제품생산	성과확산
일반 R&D	기술성 중심	첨단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사업화 성공



국민편익	수요자 중심	목표 기능 실현, 맞춤형 문제해결형	신뢰성, 안전성	사회적 가치 증진
(세부내용)	·찾아기는 실수요자 의견수렴 ·대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수행 및 평가 시 실수요자 의견 반영 (계속·최종 실태조사 ·평가위원 섭외 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위촉)	·보급 및 활용 방안 공유 ·타부처 행사와 연계	

-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약자 배려 및 범죄·산업재해·4대악 등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 국민편익증진기술 분류 >

① 사회약자 배려		② 사회이슈 해결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사회약자의 일상 생활 편익 증진 및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작업환경, 식품안전, 범죄예방, 4대악*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대상자(예)	기술개발(예)	사회이슈(예)	기술개발(예)
장애인	이동 보조장치, 정보접근성 향상	작업환경	유해가스 환기, 냉방 작업복
고령자	질병 예방 및 케어, 생활편의 향상	식품안전	휴대용 방사능판독기
		자연재해	보급형 자가발전기
		비상구조	실종시 위치추적기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5	-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 기술개발 : 89(25개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 16(9개과제)
'15	105	-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 기술개발 : 89(28개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 16(9개과제)
'16	105	-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 기술개발 : 89(28개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 16(9개과제)
'17	105	-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 기술개발 : 89(28개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 16(9개과제)
'18	105	-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 기술개발 : 89(28개 과제)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 16(9개과제)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동법 제1조(목적),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장애인복지법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8조(의료와 재활 치료),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67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제68조(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 동법 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동법 제7조(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경위
 -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장애인 및 노인계층을 대상으로한 신체보조기기의 연구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보조재활공학센터(C.A.R.E)설립('08.7.11)
 - 지경부 <QoLT 기술개발 기획보고서> 연구과제 수행('09.1.20~'09.6.22)
 - R&D 중간조직 활성화 사업('09.3.1~'10.1.31)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기획사업과제>
 - 지경부 <국민편익증진 R&D 종합대책 수립> ('10.2)
 - 기존 장애인 대상의 QoLT 사업 범위를 일반 국민의 복지 증진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확대·재편
 - '10년도 QoLT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공청회/인터넷공시 포함) ('09.12~'10.3)
 - 지경부 사업체제개편에 따라, '11년부터 QoLT 사업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R&D)와 인력양성(QoLT 산업기술기반지원센터 구축사업)로 분리('10.6)
 - 지경부 사람중심의 따뜻하고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R&D 36.5℃ 전략 발표 ('11.11)
 - 기존 장애인 대상의 QoLT 사업 범위를 일반 국민의 복지 증진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확대·재편
 - 지경부 사람중심의 따뜻한 R&D 및 활용·보급 전략 발표('12.9월)
 - 실수요를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기술개발, 기업의 R&D 및 사업활동 지원을 위한 처계 구축, 개발 제품에 대한 공동 구매를 통한 판로확보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장려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47	55	99.6	105	1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재정부족으로 기재부 재량지출사업 불용요청에 따라 미집행 불용처리함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7						
	(47)	()	()	()	()	()	()
'12년	55						
	(55)	()	()	()	()	()	()
'13년	99.6						3
	(99.6)	()	()	()	()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0년 국회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적
 -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의 바이오의료기
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고령친화형 Automated Care System 기술개
발사업 등과 일정부분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10년 감사원 결산보고서 지적
 - 성과지표 설정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특허출원·등록건수, 기술개발
건수 등으로 설정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예산편성 요구
및 최종 예산안 반영'을 설정하여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보고하여,
사업을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됨

3) 자체평가 : 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부 자체평가 77점(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예결위 10년예산안 검토보고서)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서는 차별성이 있음

▶ 국민복지증진: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 이동보조 및 동작보조기기,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기술 등

▶ 보건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급여품목 중심으로 고령자·장애인의 일상 생활보조(욕창방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등)에 필요한 단기 제품 개발(사회안전망 확충 목적)

▶ 고령친화 ACS : 고령자 중심의 Care 제품 및 시스템 개발

* 건강모니터링(수면 모니터링 전동침대) 기술, 고령자를 위한 기능회복훈련(균형/보행 등)·일상생활지원(좌식 수욕 시스템)·이동성 향상 기술 등

▶ 산업원천 : 고령화 대비 포함 차세대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LED기반 피부치료기기, 의료용광학내시경 등 의료기기법상 의료장비(진단·치료용 기기)가 주 대상

- 기존 장애인 중점 기술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상 기술개발을 추가하고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여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확보

○ 감사원(10년 결산 감사보고서)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QoLT사업은 2010년 신규 사업임에 따라 사업성과를 추론하기 힘들어, 예산반영 실적으로 제시하였음. 2012년부터 성과지표를 시제품제작건수와 특허건수로 변경하여 지표개선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이 예산 지원을 받아 QoLT 센터(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를 설립('06)

- 고령자와 장애인이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QoLT 개발기술의 수요자 체험 및 피드백 진행

*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5년간 1,500만 달러 재정지원

- 기술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Point Four Program'('49), 국립적정기술 센터* 설립('76)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기술원조 추진

* 재생가능에너지 구현,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적정기술로 지속가능 해결책 제시

□ (일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를 설치('05)

- 경제적 위기, 저출산 고령화, 안전·안심 등 일본 내 사회이슈 및 지구온난화, 빈곤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형 혁신활동 수행

* '09년 약 18억 5천만엔, '10년 약 19억 7천만엔 예산 배정

- 'BOP* 비즈니스의 원년' 선포('09) 등 글로벌 이슈 차원의 개도국 기술협력과 사업화 추진을 중요전략으로 추진

* BOP(Bottom of the Pyramid) : 1인당 연간소득 3,000달러 미만의 경제적 빈곤층

□ (EU) EU의 종합연구개발 프로젝트인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

- 전체 예산 중 69.1%를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한 부분*에 투자('07)

* 안전(대 테러 및 범죄발생으로부터의 안전), 환경(재난·재해 발생예측) 등

(5) 사업추진절차

제3회 따뜻한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홈페이지, 일간지 등 (운영요령 제20조)
개발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개발계획서 제출 (운영요령 제21조)
개발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검토위원회)	-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요령 제22조)
대국민 선호도 조사	전담기관	-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이메일 회신 등)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운영요령 제21조)
신규과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평가 위원회 구성 - 기술성 및 사업비 검토 (운영요령 제22조)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분야 별 지원대상 과제 선정 - 지식경제부가 검토 후 최종 확정 (운영요령 제23조)
선정결과 통보	전담기관 → 주관기관	- 기술개발신청자 선정결과 통보 (운영요령 제23조)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과제 수행계획서 접수 - 과제협약 (운영요령 제23조, 27조)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과제 수행
중간평가	평가 위원회	- 분야별 중과제 단위로 년도별 수행성과보고 접수 및 현장실사 - 수행실적 및 계획 평가, 사업비 검토 (운영요령 제34조, 35조)
사업비정산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	- 연차별 사업비 사용보고서 제출 및 정산실시 (운영요령 제35조)
최종보고 및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이 최종보고 접수 및 현장실사 - 평가결과 지경부 보고 및 확정 (운영요령 제34조)
사후관리	전담기관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운영요령 제36조~45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 및 신산업)	133,488	140,561	150,153	9,592	6.8

※ '15년 타사업으로 이관된 디자인전문기술개발(내역사업)의 '13년(11,147백만원) 및 '14년(15,982백만원) 예산 제외

※ '13년 재정부족으로 '13년 예산에서 기재부 재량지출사업 불용 요청에 따라 미집행 불용처리(500백만원)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4800 - 4802 - 3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국장), 산업기술개발과장(유법민, 044-203-4520), 사무관(신유철, 4525)

- 내역사업 : 산업기술개발과(ATC), 섬유세라믹과(섬유생활), 디자인생활산업과(생활산업), 자동차항공과(개인용이동수단, 튜닝부품), 기계로봇과(첨단연구장비), 기후변화산업환경과(청정생산기반), 창의산업정책과(신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전자전기과(레이저핵심부품)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5,785.39억원) * 기투자액은 '13년 중기청 이관된 WC300('12년 300억원), '15년 타사업으로 이관된 디자인전문기술개발('13년 11,147백만원, '14년, 15,982백만원) 포함
사업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10억원/년 이내, 사업기간 5년 이내
지원조건	지원형태(출연, 사업비의 3/4이내), 지원조건(민간 Matching)
사업시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생활산업 고도화,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신산업기술개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튜닝부품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 10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140,561백만원('14) → 150,153백만원('15)】

- * '14년 156,543백만원에 '15년 타사업 이관된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5,982백만원 제외
- * 우수기술연구센터(66,383백만원→69,727백만원),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35,580백만원→34,179백만원), 생활산업고도화(4,471백만원→6,601백만원), 해양레저장비(2,406백만원→0백만원(중기청이관)), 개인용 이동수단(3,920백만원→2,492백만원), 첨단연구장비(4,567백만원→5,868백만원), 청정생산기반(19,616백만원→20,570백만원), 신산업기술개발(3,618→3,216백만원),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3,000백만원(신규)), 튜닝부품기술개발(2,000백만원(신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2,500백만원(신규))

① 우수기술연구센터(ATC) : ('14) 66,383백만원 → ('15) 69,727백만원

- 세계 일류의 기술력 및 상품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로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 * ('12) 259개(1.1%) →('13) 307개(1.3%) →('14) 355개(1.5%) → ('15) 403개(1.7%) → ('20) 1,200개(5%)
 - * ('15년) 신규과제 20,324백만원(48개), 계속과제 49,403백만원(127개)

②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14) 35,580백만원 → ('15) 34,179백만원

- (섬유스트림)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섬유제품, 고부가 의류제품 및 산업용 섬유 제품 개발 지원
 - * ('15년) 신규과제 15,084백만원(18개), 계속과제 13,400백만원(15개)
- (패션스트림) 글로벌 마켓 지향 패션디자인 제품 등 고부가 패션디자인 제품 개발을 지원
 - * ('15년) 신규과제 3,450백만원(12개)
- (성숙산업고도화)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섬유·세라믹 소비재산업 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 ('15년) 신규과제 1,185백만원(7개), 계속과제 1,060백만원(5개)

③ 생활산업고도화 : ('14) 4,471백만원 → ('15) 6,601백만원

- 가구·안경·주얼리 등 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 * ('15년) 신규과제 5,401백만원(18개), 계속과제 1,200백만원(4개)

④ 개인용이동수단 : ('14) 3,920백만원 → ('15) 2,492백만원

- 선진국 대비 조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최적화와 효율화를 통해 조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 중점 지원

* ('15년) 신규과제 1,300백만원(3개), 계속과제 1,192백만원(2개)

⑤ 첨단연구장비 : ('14) 4,567백만원 → ('15) 5,868백만원

- 수입의존도가 크며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지원 및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 ('15년) 신규과제 3,912백만원(6개), 계속과제 1,956백만원(3개)

⑥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14) 19,616백만원 → ('15) 20,570백만원

- (국제환경규제대응기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 ('15년) 신규과제 7,200백만원(16개), 계속과제 3,300백만원(6개)

- (녹색제품생산기술)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품생산 기술개발

* ('15년) 신규과제 0백만원(0개), 계속과제 5,700백만원(12개)

- (청정공정기술)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한 공정기술

* ('15년) 신규과제 0백만원(0개), 계속과제 3,920백만원(11개)

- (제품서비스화 기술) 제품의 품질·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시스템 개발

* ('15년) 신규과제 0백만원(0개), 계속과제 450백만원(1개)

⑦ 신산업기술개발 : ('14) 3,618백만원 → ('15) 3,216백만원

-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 ('14년) 계속과제 3,216백만원(8개)

⑧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15) 3,000백만원(신규)

-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18개 기선정, '14년 40개 예정)에 대한 기획·설계 역량 강화 신규과제 기술개발 지원

* ('15년) 신규과제 3,000백만원(10개)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개념 >

- **(두뇌)** 기획·설계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상위분야로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신체의 두뇌역할에 비유 가능하며, 인적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가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분야를 지칭
 - * 엔지니어링분야, 디자인분야, 임베디드SW분야, 시스템반도체분야, 바이오분야 등
- **(우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전문)**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가 기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을 지칭

⑨ 튜닝부품기술개발 : ('15) 2,000백만원(신규)

-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튜닝 부품 기술개발지원
 - * ('15년) 신규과제 2,000백만원(5개)

⑩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 ('15) 2,500백만원(신규)

- 해외 선진 기관·기업과의 공동 글로벌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모듈 관련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 기술개발 지원
- 시장 수요기술 및 상용화 기술로 레이저 핵심부품 선진화 촉진 및 시장진입이 가능한 품목 발굴
 - * ('15년) 신규과제 2,500백만원(3개)

구 분	'14예산	'15예산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140,561	150,153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63,383백만원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집중 지원으로, '20년까지 부설연구소 소유 중소기업 5%(약1,000개) 지원(기업당 연평균 5억원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확대	69,727백만원 ○기 선정된 ATC 기업부설연구소 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 계속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지원
▪ 섬유생활스트림 간 협력	35,580백만원 ○(섬유/패션) FTA 시장확대 대응, 숙련집약 고용창출 산업(패션 등) 지원 확대 등 ○(성숙산업고도화) 세계시장 선도 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국내 경쟁력 강화 및 성숙산업 전략적 고도화를 위해 기술 개발 지원 확대	34,179백만원 ○기존 계속과제 지원 ○스트림간 협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체계 구축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섬유/패션) 글로벌시장 환경변화와 한중FTA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유지 -(성숙산업고도화) 생활세라믹, 신발, 피혁, 섬유소 품목분야의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개발 지원
▪ 생활산업고도화	4,471백만원 (생활산업고도화) 가구·안경·주얼리 등 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성장 지원	6,601백만원 ○기존 계속과제 지원 ○생활용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업종별 현황조사를 통한 기획 다변화 및 글로벌명품 개발을 위한 신규지원
▪ 해양레저장비	2406백만원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분야의 신규품목 확대 예정	(중기청 이관)
▪ 개인용이동수단	3,920백만원 에코바이크 및 신개념 개인용이동수단으로 품목 확대 예정, 수요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발굴	2,492백만원 ○기존 계속과제 지원 -최근 선진국에서 출시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 제품 중에서 국내 잠재 기술 경쟁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 분야 및 전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이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
▪ 첨단연구장비	4,567백만원 계속과제 지속 지원	5,868백만원 ○기존 계속과제 지원 ○연구개발장비 로드맵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산 장비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첨단 연구장비 지원
▪ 청정생산기반	19,616백만원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지원 확대 필요	20,570백만원 ○기존 계속과제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강화되는 산업별 환경규제의 선제적 대응 및 사업화를 위한 신규과제 지원
▪ 신산업기술개발	3,618백만원 미래유망분야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분야 품목개발 및 중견기업 지원	3,216백만원 ○기존 계속과제 지원 -R&D 투자가 적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유도 및 활성화를 통한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 및 역량강화 지원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3,000백만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두뇌전문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획·설계 역량 강화 분야 연구개발 지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	2,000백만원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튜닝 부품 기술개발지원
▪ 레이저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	-	2,500백만원 ○해외 선진 기관·기업과의 공동 글로벌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모듈 관련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 필요성

- 산업부는 국정과제 「1-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 중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부의 대표적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예산 확대 필요

* 산업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 ('12) 29.4% → ('17) 50% 수준

- 또한 중소·중견기업 창의·자율성 제고를 위해 ATC사업과 같은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의 자유공모형 과제 지원 규모 : ('12) 608억원 (예산의 43%) → ('13) 721억원(예산의 50%) → ('14) 856억원(예산의 55%) 계획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 지원현황 >

내역사업		2012년 도			2013년 도			2014년 도(안)		
			품목	자유		품목	자유		품목	자유
우수기술연구센터(ATC)		54,190	-	54,190	58,760	-	58,760	66,383	-	66,383
주력 산업	섬유생활스트립	34,000	34,000	-	36,143	29,041	7,102	40,051	27,204	12,847
	해양레저장비	2,760	2,760	-	2,560	2,165	395	2,406	1,228	1,178
	개인용이동수단	5,350	5,350	-	4,525	4,525	-	3,920	3,920	-
	첨단연구장비	4,750	4,750	-	4,750	3,565	1,185	4,567	3,478	1,089
	舊 산업핵심	6,603	-	6,603						
	소계	53,463	46,860	60,793	47,978	39,296	8,682	50,944	35,830	15,114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4,500	24,500	-	22,750	21,410	1,340	19,616	16,910	2,706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0,847	10,847	-	11,147	8,874	2,273	15,982	13,580	2,402
신산업기술개발		-	-	-	4,000	2,790	1,210	3,618	2,527	1,091
소 계		143,000	82,207 57%	60,793 43%	144,635	72,370 (50%)	72,265 (50%)	156,543	68,847 (44%)	87,696 (56%)

* '12년 예산 중 '13년 중기청으로 이관된 WC300사업 300억원 미포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133,488	140,561	150,153	9,592	68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58,760 (=계속91과제x418 신규48과제x431)	66,383 (=계속113과제x420 +신규45과제x421)	69,727 (=계속127과제x389+ 신규48개과제x423)	3,344	5.0
▪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	48,478	50,944	49,140	△1,804	△3.5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6,243 (=계속21과제x655 +신규46과제x487)	35,580 (=계속27과제x705 +신규46과제x457)	34,179 (=계속20과제x723+ 신규37과제x533)	△1,401	△3.9
- 생활산업고도화		4,471 (=계속6과제x216 +신규10과제x318)	6,601 (=계속4과제x300+ 신규18과제x300)	2,310	47.6
- 해양테저장비·중소조선고도화	2,660 (계속5과제x453 +신규2과제x197.5)	2,406 (계속4과제x251.5 +신규5과제x280)	중기청 이관	△2,406	(이관)
- 개인용이동수단	4,525 (계속5과제x605 +신규2과제x750)	3,920 (계속5과제x584 +신규2과제x500)	2,492 (계속2과제x596 +신규3과제x433)	△1,428	△36.4
- 첨단연구장비	5,050 (=계속4과제x716 +신규3과제x728)	4,567 (=계속7과제x652)	5,868 (=계속3과제x652+ 신규6과제x652)	1,301	28.5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22,750 (=계속28과제x602 +신규13과제x454)	19,616 (=계속31과제x555 +신규5과제x485)	20,570 (=계속30과제x446+ 신규16과제x450)	954	4.9
▪ 신산업기술개발	4,000 (=신규9과제x444)	3,618 (=계속9과제x402)	3,216 (=계속8과제x402)	△402	△11.1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3,000 (=신규10과제x300)	3,000	순증
▪ 튜닝부품기술개발			2,000 (=신규5과제x400)	2,000	순증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2,500 (=신규3과제x833)	2,500	순증
☐ 비목(합계)	144,635	156,543	150,153	△6,390	△4.1
○출연(350-01)	144,635	156,543	150,153	△6,390	△4.1

* 기획평가관리비는 사업비에 既 포함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 기존 소규모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엄선하여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연구센터 : 663.8 ▪ 청정생산기반 :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 509.4 ▪ 신산업 : 36.1
'15	1,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연구센터 : 697.2 ▪ 청정생산기반 : 205.7 ▪ 두뇌역량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 491.4 ▪ 신산업 : 32.16 ▪ 튜닝부품 : 20 ▪ 레이저부품 : 25
'16	1,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연구센터 : 733.9 ▪ 청정생산기반 : 216.5 ▪ 튜닝부품 :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 517.2 ▪ 두뇌역량 : 31.6 ▪ 레이저부품 : 26.3
'17	1,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연구센터 : 757.6 ▪ 청정생산기반 : 223.5 ▪ 튜닝부품 :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 533.9 ▪ 두뇌역량 : 32.6 ▪ 레이저부품 : 27.2
'18	1,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술연구센터 : 852.5 ▪ 청정생산기반 : 251.5 ▪ 튜닝부품 :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 600.8 ▪ 두뇌역량 : 36.7 ▪ 레이저부품 : 30.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4호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
7. 디자인·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13. (중략)

○ 추진경위

- '10.6. 산업부 R&D사업 체계개편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 및 신산업)으로 통합
 -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해양레저장비,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디자인전문기술)
- '13년 "WC300"는 별도 세부사업(중기청)으로 분리, "신산업기술개발사업" 신설
- '15년 "해양레저장비"는 중기청으로 이관,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은 타사업으로 이관,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튜닝부품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신산업기술개발사업"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주력 및 신산업)	1,614.9	1,730	1,334.9	1,405.6	1,501.53

※ '15년 타사업으로 이관된 디자인전문기술개발(내역사업)의 '13년(11,147백만원) 및 '14년(15,932백만원) 예산 제외

※ '12년 예산에 '13년 중기청으로 이관된 WC300 예산(300억원)은 포함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재정부족으로 기재부 재량지출사업 불용 요청에 따라 미집행 불용처리(500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614.9	0	0	1,614.9	1,614.9	0	0
	(1,614.9)	(0)	(0)	(1,614.9)	(1,614.9)	(0)	(0)
'12년	1,730	0	0	1,730	1,730	0	0
	(1,730)	(0)	(0)	(1,730)	(1,730)	(0)	(0)
'13년	1,451.35	0	0	1,451.35	1,446.35	0	5
	(1,451.35)	(0)	(0)	(1,451.35)	(1,446.35)	(0)	(5)

※ '13년 재정부족으로 기재부 재량지출사업 불용 요청에 따라 미집행 불용처리한 금액(500백만원)

※ '15년 타사업으로 이관된 디자인전문기술개발(내역사업)의 '13년(11,147백만원) 예산 포함

※ '12년 예산에 '13년 중기청으로 이관된 WC300 예산(300억원)은 포함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지적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13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의 '12년 사업비 49.5%(49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과제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 디자인센터, 대학교 등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과제로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음

· (후속조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13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사업을 전면개편*하고 모든 세부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도록 조치 완료

* 공공디자인컨설팅,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등 종료

* '15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은 타사업(디자인역량강화사업)으로 이관

< '13년 결산기준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 외 과제 현황 >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09년, '10년 지원된 계속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외 대학, 연구소 등 주관기관 과제가 계속 진행 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산업분야별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산업기술 R&D 투자를 집중

* 미국(STAR, ETV, SSP, NNI, TIP), EU(ETP 2020 Vision, 7차 Framework('07~'13),

산디자인기술프로그램), 일본(신산업창조전략, Innovation25전략), 중국(제12차 5개년계획 ('11~'15), 국가중점연구개발 973계획), 인도(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여 중견기업 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

* 중견기업 사업체 비중('07, %) : (독)8.2 (일)1.1 (한국)0.2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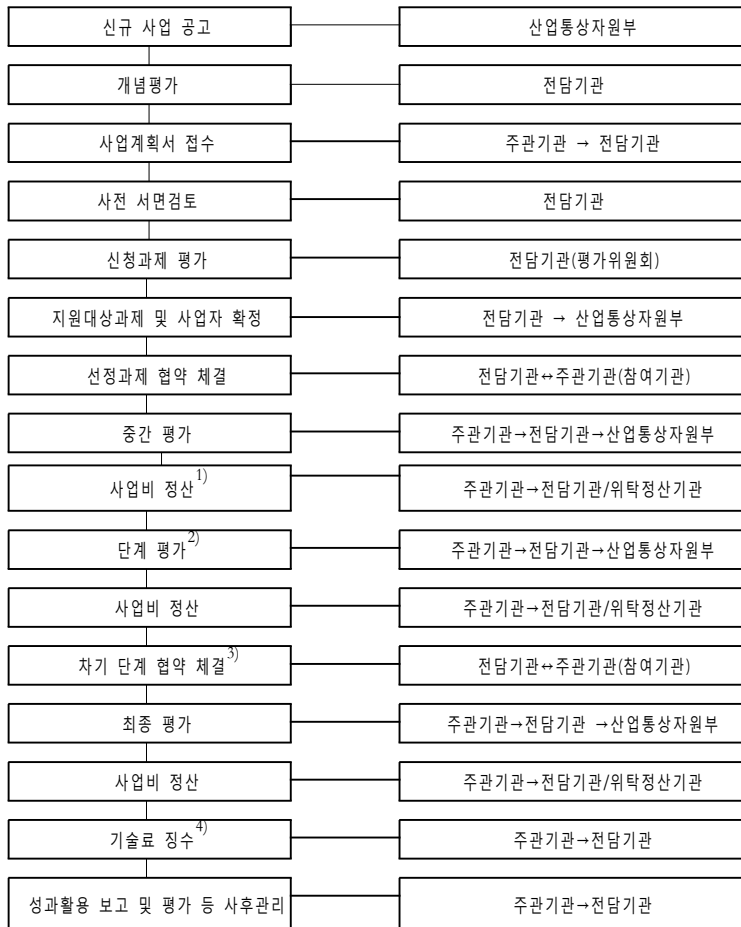
○ 품목지정 분야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후보목품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담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¹⁾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⁴⁾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순수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¹⁾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⁴⁾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 *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및 산업부 R&D혁신체계 개편 등에 의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

기술 확산지원(주력 및 신산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세부사업명	16,214	16,399	17,861	1,462	8.9%

* 사업코드 : 21-11-74-110-114-4800-4805-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차동형), 산업기술시장과장(김동주, 044-203-4530), 사무관(박희범, 453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14년까지 투자액 5,024억)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기술사업화를 통한 R&D 성과 활용 촉진
 -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공공연구기관의 이전·거래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 촉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술시장 지속성장 기반조성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정보를 수집, 선별, 가공, 분석하여 온라인 기반의 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
 - * 2,000백만원 : 기술은행 시스템 유지, 기술 DB 구축·가공, 수요 중심의 기술거래 지원, 기술은행 홍보 등
-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기술공급자-수요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 촉진
 - * 250백만원 : (국내) 250백만원 : 12회 × 20백만원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조달(융자)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 *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 500과제 × 2백만원
- (기술평가기법 개선) 기술평가기법 개발·보급, 기술평가정책·제도 연구 등 기술평가인프라 확충
 - * 500백만원 = 4개 분야 × 125백만원
- (산업기술분쟁조정) 산업기술분쟁조정 및 국내외 산업기술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지원
 - * 150백만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운영, 산업기술분쟁예방 교육·상담·홍보
- (우수 BI제품 지원) 우수 BI제품의 조기 시장진출을 위하여 제품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
 - * 250백만원 : 우수 BI제품 홍보 및 마케팅, 판로지원

② 글로벌 기술이전·거래 역량 강화

- (글로벌 성과 확산 촉진)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GCC, EEN)를 활용하여 국내 유망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촉진 지원
 - * 450백만원 : EEN 운영
 - * 1,600백만원 : GCC 운영
 - * 300백만원 : 기술이전 사업화통계 작성,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 (선도 TLO 육성 지원)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도모
 - * 2,800백만원 : 총 21개 TLO 지원 × 기관당 130백만원 내외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지역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TP를 중심으로 기술중개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
 - * 2,500백만원 : 8개 지역 네트워크 × 300백만원 내외
- (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공공기술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역량 강화 및 자립화 지원
 - * 4,550 백만원 : 6개사 기술지주회사 당 750백만원 내외
- (기술사업화 바우처) 중소기업이 기술중개자를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 1,000 백만원 : 50개 기업 × 20백만원 내외

③ (기획평가관리) 511백만원 : 43개 과제기획 × 1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는 R&D 성과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 해외 도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 적자 기조를 유지
 - * 기술무역수지 적자 : 68.9억달러('10) → 58.7억달러('11) → 57.4억달러
- 이는 논문 및 특허 등 R&D 성과의 질적 수준과 국가 R&D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낮은 활용도가 그 원인
 - * 논문 영향력 지수가 세계 평균인 1.0에도 못 미치고('07년 0.975 → '09년 0.949), 대학 및 공공연의 최근 3년 간 미활용율은 ('10)69.7%→('11)70.6% →('12) 72.9%
- 연구소 기술의 이전으로 국가 R&D 선순환 체계강화와 연구소 기술의 민간으로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
- 지역의 주요 혁신기관인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해 지역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TP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역거점기능 강화 필요
-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 중소기업 등에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공공기술사업화 성과확대, 자회사설립을 통한 벤처창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필요
-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원활한 이행이 필요하며, 지속적 지원 유지사업에 해당
 -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에 포함('14.2)
 - * 창업·벤처지원을 위해 「기술은행 설립」, 민간기술 등 NTB를 플랫폼으로 활용
 - 창조경제 정부3.0 주요추진 과제로 선정((산업부, '13.10)
 - * 「정부 3.0시대, R&D 기술DB 개방을 위한 NTB개편방안」 선정
 - * 정부3.0 대표과제(11개) 선정, 파급력 높은 우선개방 공공DB로 포함
 - 정부 산책계획, 기촉계획에 NTB개편 반영('13. 12월)
 - * 제6차(14~18년) 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 NTB 기술DB 良質 강화, 기술DB 민간개방,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 미래부 국과심 「국가R&D 기술성과 NTB 등록의무 이행」 강화 반영('13.12)
 - * 국과심 운영위 의결, 「국가R&D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기술확산지원(주력 및 신산업)	16,214	16,399	17,861	1,462	8.9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3,300	4,100	4,150	50	1.2
▪ 글로벌 기술 이전·거래 역량 강화	12,099	12,299	13,200	901	7.3
▪ 기획평가관리	815	0	511	511	100
☐ 비목	16,214	16,399	17,861	1,462	8.9
▪ 출연금(350-01)	16,214	16,399	17,861	1,462	8.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혁신적인 기술 발굴 및 이전·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사업화 촉진기반 조성
 - 기술공급자(기술이전조직), 기술중개자(기술거래기관) 및 기술수요자 등 기술시장 플레이어들의 역량 강화 및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기술 시장 성숙도 제고
 -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로 기술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기술, 국내 우수기술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기술무역수지 개선, 글로벌사업화 인프라 조성 등 지원
 -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활용 촉진을 통한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법 고도화 및 기술평가인프라 확산 등 기술평가 생태계 조성에 중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63.99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 41억 ▪ 글로벌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 122.99억
'15	158.19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 33억 ▪ 글로벌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 125.19억
'16	164.52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 33억 ▪ 글로벌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 131.52억
'17	172.74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 35억 ▪ 글로벌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 137.74억
'18	184.84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구축 : 37억 ▪ 글로벌기술이전거래역량강화 : 147.84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등

○ 추진경위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00.1)
- '제1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01~'05)' 수립('00.12)
-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대책' 수립('04.9, 중기특위)
-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연구성과확산사업 이관('04.10)
- '제2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06~'08)' 수립('05.1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7.6)
- 품질혁신기반구축, 기술사업화 촉진, 공공R&D추가기술개발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08.5)
- '기술이전사업화 발전방안(Tech-Biz 2014)' 수립('08.9)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기술표준원으로 이관('08.8)
- '제3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09~'11)' 수립('09.3)
- '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12~'15)' 수립('11.12)
-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12.5.24), 국가R&D 성과수집유통 활성화('12.11 국과위)
 - * 산학연협력관련 정보망 연계,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중개기능 강화, 국가R&D 성과수집유통 기능강화방안 등 발표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국정과제 발표('13.2)
 - * “경제부흥 - 창조경제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성과와 사업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및 지원활동 추진
- 산업부 정부3.0 추진계획('13.10),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4~16년), 제6차 산업기술혁신촉진계획('14~18년) 발표('13.12, 산업부)
 - * NTB에 등록된 R&D기술정보의 민간활용제공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 *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국제기술협력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술확산지원(주력 및 신산업)	247	217	162.14	163.99	178.6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국정 감사

- (지적사항)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효율화 방안 마련 요구
 - * 후발 TLO 지원확대, 관리주체 일원화
- (조치결과) 후발 TLO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 * 외부 이전·사업화 전문조직과 연계협력이 가능한 '아웃소싱형' 및 '컨소시엄형'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 유사·중복사업 정비차원에서 대학 TLO 지원을 교과부로 일원화하여 추진('12년 예산 분리 완료)
 -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인 KIAT는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관리규정 등을 개선할 계획
 - * 대학 TLO의 경우 그 동안 지경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지원
- (지적사항) 기술신탁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특허관리비' 예산 집행 과다)
- (조치결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강화('특허 관리비' 지원비율 축소 및 신탁계약건 수 축소)
 - * ('10년) 70%→('11년) 50%→('13년) 40%
 - * ('10년) 719건→('11년) 400건→('13년) 200건

- '11년 국회예산 정책처

- (지적사항)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과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술 거래시스템(IP-Mart)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치계획)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과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술 거래시스템(IP-Mart)간 기술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등 연계 하고 있음
 - * 통합에 대한 검토는 대학·연구소·기업 등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통합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

○ '13년 국정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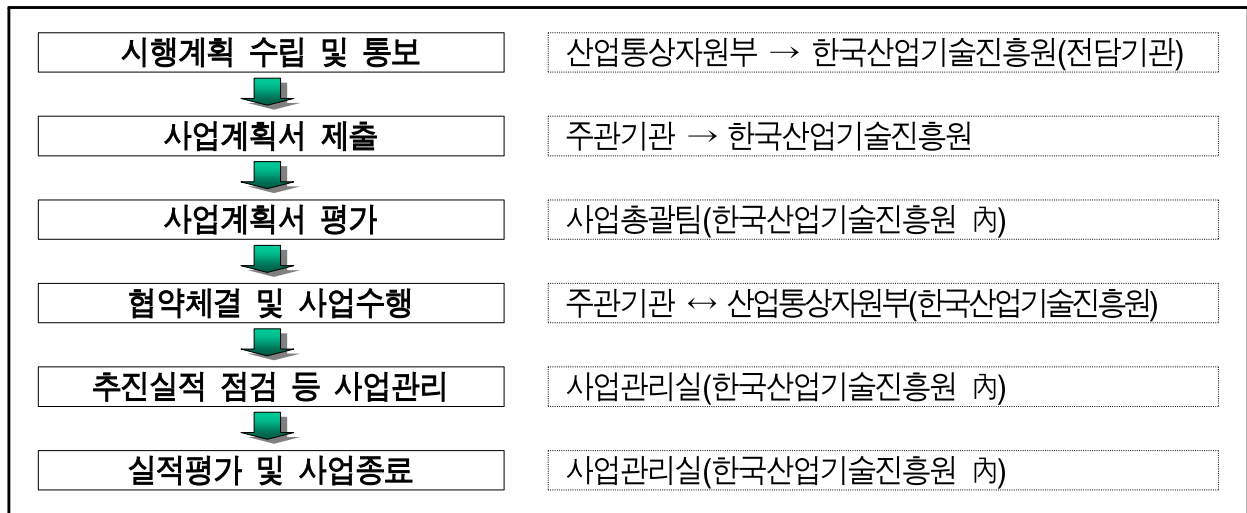
- (지적사항) 개발기술의 기술이전과 기부채납의 실적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기술의 기술이전과 기부채납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결과)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기부채납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나눔'과 연계 등을 통해 기부채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상 이전을 확대 예정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80년대 초에 이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기술사업화촉진을 위한 SBIR 프로그램 운영
 - 정부 R&D 성과를 개발주체에 이양하고(Bahy-Dole Act),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적 배정을 명문화
 - 공동연구자에 대한 독점실시 권한 부여(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이전 및 상업화 독려
 - 1억불 이상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기관은 일정비율(2.5%)을 할당
 -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화를 위한 3단계 자금지원 프로그램
- (일본) 일본판 SBIR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운영
 - 기술개발(1단계), 사업화(2단계) 등 단계별 지원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 '신기술창출촉진법'에 의하면 '99년 마련된 제도로, '05년 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근거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독일) 스타인바이스(Steinbeis) 재단은 기존 기술공급 기능에서 중소기업의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으로 기능 확대 전환
 - 세계 47개국 680개의 기술이전센터(STC), 합작회사 및 프로젝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전업무 수행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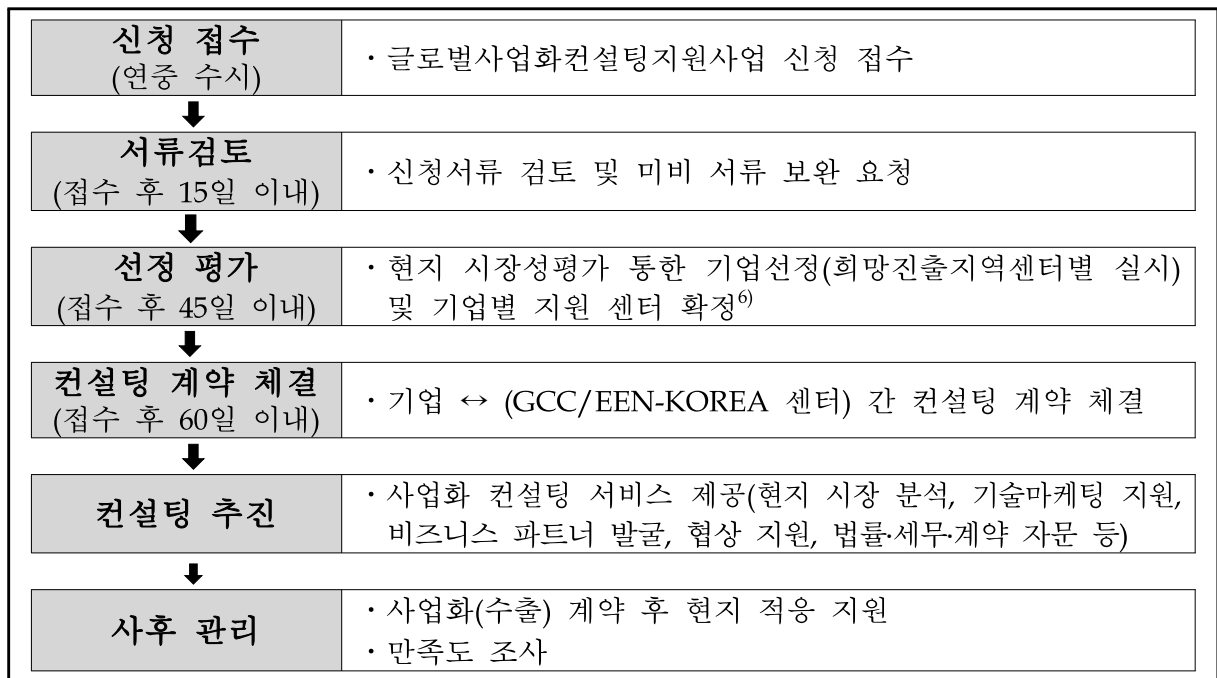
<기술지속성장기반 구축>



<기술 이전 거래역량 강화>

지원대상부문 공고	산업통상 자원부	- 경제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에 신청자격, 지원대상부문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관리기관	- 전산등록양식은 인터넷 접수 -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은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관리기관	-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업비 조 정
지원대상과제 선정	산업통상 자원부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 후 최종 확정
선정결과 통보	전담관리기관	- 주관기관에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기관과 체결 - 참여기관 부담금 입금 후 지원
사업수행	주관기관	
중간보고 및 평가	전담관리기관	- 전문기관이 연도별 중간보고 접수 및 현장실사 - 평가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계획 평가, 사업비 검토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 평가결과 조정금액 지원 - 참여기관 부담금 입금 후 지원
최종보고 및 평가	전담관리기관	- 전문기관이 최종보고 접수 및 현장실사 - 평가위원회가 최종 수행실적 평가
사후관리	전담관리기관	- 성과평가과제의 활용현황 접수 및 보고

<글로벌 성과 확산 강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1) 사업개요(현황)

- ☐ (개요) 국가 R&D를 통해 산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이전(조직)·거래기관의 역량을 강화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기술의 기술이전 및 글로벌 사업화 등의 성과확산에 기여

- ☐ 세부 내용

①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조성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체계구축) 수요기업, 기술거래·평가기관, 기술공급자, 기술투자자간 정보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자체 R&D 구축을 추가해 수요자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평가정보가 담긴 기술은행 구축
- (기술이전설명회) 대학·출연연구소 및 기업 등 기술시장 참여 주체 간에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 (혁신형기술금융지원)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기술금융(신용대출 등)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 (기술평가신뢰성 구축)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 기법 개발·보급, 기술평가정책·제도연구 등 인프라 확충

② 글로벌 기술이전 거래 역량 강화

- (글로벌 성과 확산)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GCC & EEN)를 활용한 국내외 수요 발굴 및 이를 통한 국내 유망기술의 글로벌화 촉진 지원
- (선도 TLO 육성) 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기관역량 및 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비 지원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역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기업 기술이전·사업화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
- (기술지주회사 육성) 기술지주회사 성과 및 자립화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선정 및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바우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2) 사업 성과

○ R&D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 * 기술정보 수집(1.3만건), 기술가공(1천건), 기술이전설명회 개최(20회), 기술상담 운영(연중), 뉴스레터 제공(매주), 기업대상 NTB홍보(21회), NTB개편안 정책반영(산촉·기촉계획 등)

< NTB 운영 성과 >

기준 : '14. 12. 1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이전 기술 정보 등록건	10,922	12,044	10,647	11,692	13,569	9,457	68,331
기술 뉴스레터 발송건	52	52	52	52	52	71	331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24	33	21	16	20	17	131
기술상담건	414	1,196	853	564	659	426	4,112
기술이전건	484	450	658	718	892	191	3,393

< '14년 NTB 기술이전설명회 운영 및 개최 현황 >

기준 : '14. 12. 1



분야	일자	테마	협업기관	비고
1 차세대 응용	6.19(목)	첨단 철도기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 기업 연합회 기술 분야 중소 기업 참여
2 정보통신	6.26(목)	스마트 융합기기	-	
3 정보통신	6.27(금)	디지털 콘텐츠	-	
4 농·식품	7.3(목)	농·식품 실용 기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친환경	7.8(화)	전기적 충전지 및 응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정보통신	7.10(목)	디스플레이 소재	-	
7 의료(바이오)	7.15(화)	바이오 메디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차세대 응용	8.27(수)	첨단 선박 및 해양기술	해양과학기술원	
9 차세대 응용	8.28(목)	IT융합	환경산업기술원	
10 국방	9.4(목)	창조국방 아이디어 활용	국방과학연구소	
11 친환경	9.17(수)	태양 전지 및 광 기술 응용	-	
12 소재·부품	9.25(목)	첨단 전자 / 로봇 부품	해양과학기술원	
13 의료(바이오)	10.16(목)	보건 의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 소재·부품	10.22(수)	자동차 부품 분야	한국로봇산업협회	
15 차세대 응용	10.30(목)	반도체 유망기술 분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친환경	11.6(목)	대용량 전지 및 전력 절감 응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7 의료(바이오)	11.13(목)	바이오 메디컬 분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 국방	12.16(화)	국방 특허 100선 활용	국방과학연구소	

< 기술정보DB 良質제고 협력구조 >



- 기술평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보급, 기술평가기관 지정, 기술평가기관협의회 운영, 전문가 포럼 개최
 - '13년도 시장접근법(거래사례를 이용) 가치평가시스템 및 지식재산권(IP)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요소를 개선한 IP 가치평가모형을 개발
 - 기술평가기관(10개)에 대한 매년 실적 관리, 신규 평가기관 지정 수행
 - 기술평가기관협의회 운영(연2회), 기술평가전문가 포럼(연2회) 개최
 - 기술평가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대출, 투자)
 - '13년도 629건의 기술평가비용 지원을 통하여 836억원의 기술금융 지원
 - * 대출 656억원(410건) 지원, 투자 180억원(4건) 유치

< 최근 3년간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사업 예산	평가건수	여신거부	여신승인	대출금액	평균대출금액	여신승인율
2013년도	1,000	629*	56	410	83,630	204.0	-
2012년도	1,060	749	31	718	83,127	115.8	95.9
2011년도	910	636	39	597	55,438	92.8	93.8

* 13년도 평가건수 629건(대출용 621건/투자용 8건) 중에 163건은 여신심사 중

○ 전담조직 지원을 통한 R&D성과의 이전·확산 강화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연구소 TLO) 및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동 지원을 통한 R&D 성과 기술의 이전 확대

* 선도 TLO의 기술이전건수는 '06년 330건에서 '13년 1,021건으로 증가했으며,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06년 149억에서 '13년 848억으로 증가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의 지역기업 구체적인 기술수요를 발굴해서 기술이전으로 연계한 건은 '10년 401건에서 '13년 598건으로 증가

- 기술지주회사 역량강화 및 자립화를 통한 공공기술 사업화촉진 및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기술지주회사 지원*

* 기술발굴, 기술평가, 자회사설립, 시제품제작비 등 기술사업화 직접비 등 지원

· (1단계, '10~'12년[3년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자회사 설립확대 등 초기 기반구축 집중지원 *13개 기술지주회사 지원(총 99.5억)

· (2단계, '13~'14년[2년간]) 성과지속·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신규 설립 기술지주회사 확대 지원 * 10개 기술지주회사 지원(총 64억)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주요성과 총괄표>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공공(대학)R&D 기술사업화수	93	33	59	64	249
자회사 설립수	42	30	35	18	125
자회사 직원 신규채용수	221	182	263	239	905
자회사 매출액(백만원)	12,188	28,925	52,252	56,435	149,800

○ GCC, EEN-KOREA 구축 및 운영

- (GCC) 4개 권역 6개 참여기관을 지정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 국내 기술보유자 및 기관에게 패키지형 컨설팅 서비스(시장분석, 기술 마케팅, 계약 체결 및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으로 기술수출입 계약 성사(68건) 지원

- (EEN-KOREA) EEN 온라인 기반 기술기업정보공유 및 협력파트너 발굴과 오프라인 기술중개행사 개최를 통해 유럽현지기업과의 기술사업화협력활동 지원

- (EEN 온라인) 235개사에 대한 기술·기업 프로파일 등록(230건), 협력의향서 교환(313건)을 통해 정보공유, 협력파트너 발굴, 협력방식 및 조건 협의 진행

- GCC/EEN 해외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기술중개 행사 개최
 - 국외 16건의 기술상담회, 기업미션단 파견 및 기술중개행사를 개최하여 84개 국내 기업이 참가하여 452건의 유효 상담 실시
- 글로벌성과확산 온라인 시스템 운영
 - 지역별 현지 기술정보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온라인 기반 구축
 -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글로벌기술 사업화 수요 접수/컨설팅 지원 (87건 신청접수)
 - (해외기술정보 제공) 기술 및 시장동향 350건, 기술 및 수요처 정보 83건, 국외 기술중개 행사정보 12건 등 총 445건의 해외 기술 및 시장 정보 상시 제공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1,500	1,350	1,328	△22	△1.6

* 사업코드 : 21-11-0-110-114-3200-3271-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국장), 산업기술시장과(김동주과장, 044-203-4530), 주무관(배승희, 453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정액)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재부 등 8개 부처

2. 사업목적

- 녹색기술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등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 8개부처 공동으로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제품) 시행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 1,050 백만원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운영 : 90백만원(18회 × 5백만원)

* (250천원×17명) + (15천원/인증서 1개 인쇄비용 × 50건) = 5백만원

- 녹색인증사무국 운영 : 650백만원

- 적합성 기준 개정 : 100백만원

- 인증평가비 지원 : 180백만원

- 녹색인증제 성과분석 : 30백만원

② 녹색인증 사후관리 : 78 백만원

- 인증마크 실태점검, 인증제품 적합성 유지점검, 인증침해실태조사 등

- ③ 녹색인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 유지보수 : 200 백만원
- 표준프레임워크 도입 설계, UI·인증서·통계 기능 강화,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지원 필요성

-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 녹색기술 및 사업 등의 인증기준을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인증함으로써, 정부 및 민간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아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1,500	1,350	1,328	△22	△1.6
▪ 녹색기술인증활성화기반구축	1,500	1,350	1,328	△22	△1.6
□ 비목	1,500	1,350	1,328	△22	△1.6
▪ 출연금(350-01)	1,500	1,350	1,328	△22	△1.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생태환경에 맞춰 신성장 녹색기술 및 사업의 인증기준을 발굴·개정·평가하여,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사업(기업)을 인증
 - (인증대상) 녹색기술(10대 분야 85개 중점분야)과 녹색사업(9대 분야 105개 사업) 인증, 녹색기술제품과 녹색전문기업 확인
 - * 10대 분야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기업의 수요가 없어 녹색사업 분야에서는 제외),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체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과 11개 인증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 (기대효과)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최고의 성과(Best Performance) 달성에 기여

- 정부 8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협력하여 성장동력 녹색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녹색인증 실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3.50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1.9억원,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 1.6억원
'15	13.28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0.5억원, 녹색인증사후관리 0.78억원,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 2억원
'16	11.69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0.79억원, 녹색인증사후관리 0.6억원,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 0.3억원
'17	12.63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1.53억원, 녹색인증사후관리 0.6억원,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 0.5억원
'18	10.73	▪ 녹색인증제도기반구축 10.억원, 녹색인증사후관리 0.43억원, 녹색인증시스템 운영 및 재구축 0.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정부는 녹색기술·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등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기준·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추진경위

- '08. 4월 신성장동력기획단 설치 및 3대분야17개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추진('09.1~)
- '08. 8월 녹색성장을 향후 60년간의 국가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
- '09. 1월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국가과학기술위원회)
- '09. 7월 녹색인증 도입 및 기본 방향 발표(녹색성장위 4차 보고대회)
- '09. 7월~9월 녹색인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총괄작업반 구성·운영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총 11회 실무회의 진행
- '09. 9월 녹색인증 도입방안 결정(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10.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부처합동) 고시 및 녹색인증제 시행(4.14)
- '12.12월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한 법, 시행령, 고시 개정
 - 녹색기술제품확인제도 도입
- '13. 3월 녹색기술제품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인센티브 개선
- '13. 6월 녹색기술제품 중기청 공공기관 우선 구매 추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녹색기술인증활성화 기반구축	19.98	19.98	15	13.5	13.2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1년 국정감사 지적위>

- (지적사항)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혜택이 부진
- (조치)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국은행의 총액금액대출 대상으로 확대, 인증분야 및 인증대상의 확대로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3년 국회 예산 정책처>

- (지적사항) 녹색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조치)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으로 녹색기술 적용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등 실효성 제고

<'14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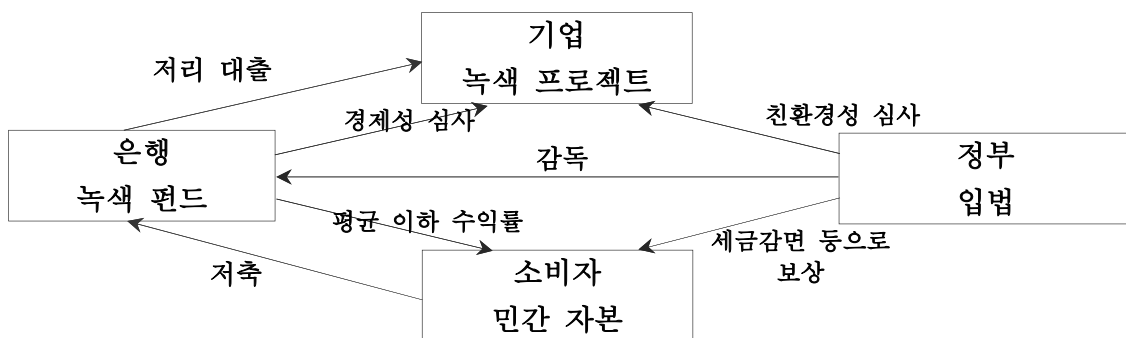
- (지적사항) 해외생산제품 확인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조치) 해외생산제품 확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수행지침개정('14.12월 완료 예정)으로 제도 개선 추진 중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네덜란드 Green Funs Scheme 사례

- 정부, 은행, 소비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 정부는 특정 프로젝트가 Green Project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확인서(certificate)를 발급
 - 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 투자펀드의 지분(share)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저리의 자금을 지원
 - 소비자는 은행에 자금을 제공
- Green Certificate 발급 기준
 - 프로젝트 자본은 적어도 22,689 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34백만유로까지 가능
 - 프로젝트는 일정 투자수익을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함

- Green financing이 없을 경우 리스크, 경제적 수익률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함
 - Green fund를 운용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Green Funds Scheme의 효과
- Green Funds Scheme은 새로운 환경기술을 상용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소비자, 은행, 기업, 정부 모두가 녹색투자가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일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



(5) 사업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 (단계)	주 관 기 관
1. 녹색기술·사업대상 고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4조	○ 관계부처 공동
↓	
2. 신청서 신청 및 접수/공람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 제24조 *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제12조	○ 전담기관
↓	
3. 선정 평가 및 인증대상 추천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5조, 제26조 *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평가기관 → 전담기관
↓	
4. 인증대상 확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 제28조 *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제18조	○ 전담기관(심의위원회)
↓	

5. 인증서 발급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9조 *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제19조 ↓	○ 전담기관
6. 녹색인증실적 보고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1조, 제34조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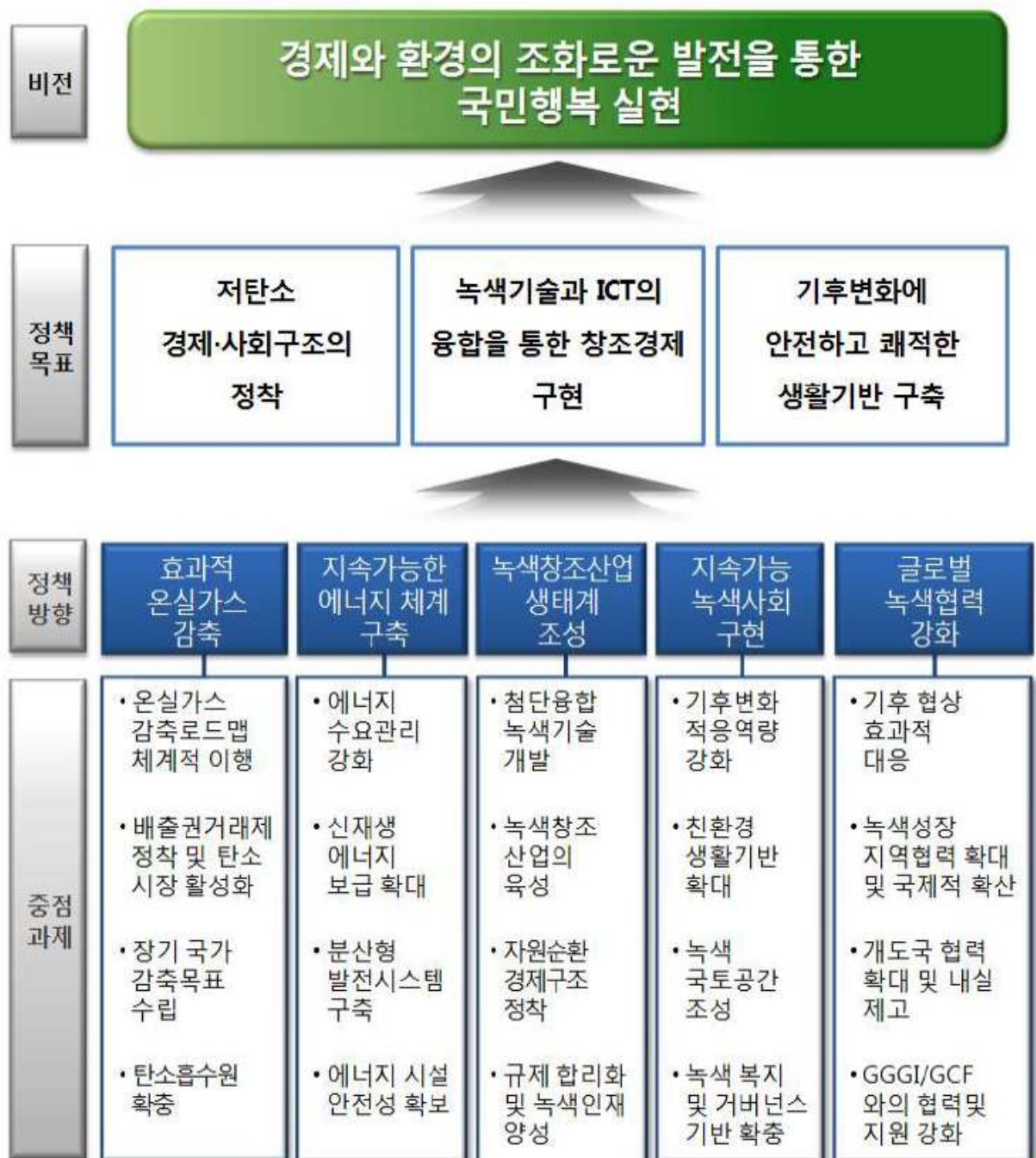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 녹색인증 운영 현황
- 녹색인증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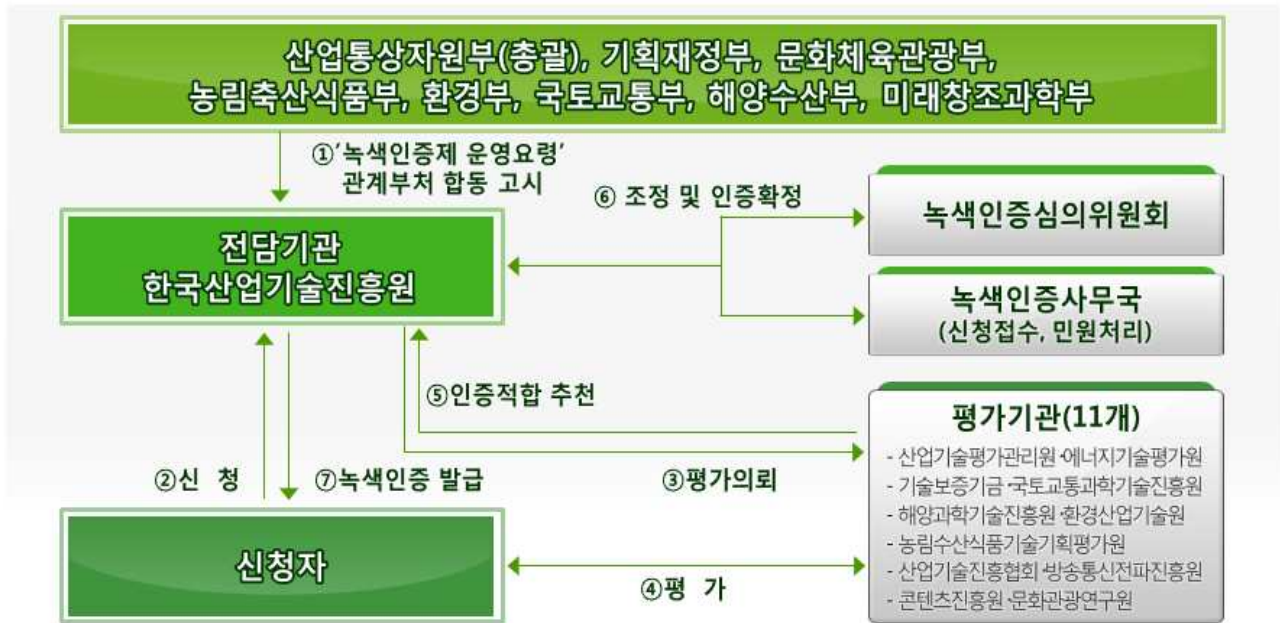
참고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14.6.3,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 「2차 계획」은 향후 5년('14~'18) 동안의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130개)들을 포함
 - 녹색창조산업의 육성의 일환으로, 신성장동력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의 인증 확대로 공공구매와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참고2 녹색인증 운영 현황

□ 운영체제



- 녹색인증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인증서 신청접수/발급 종합창구 운영, 인증 사업 수행
- 녹색인증 평가기관(11개) : 각 부처 산하 평가기관
 - * 인증평가업무 수행
- 녹색인증심의위원회(매 3주 단위 개최) : 인증 심의 및 확정
 - * 소관 부처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전담기관, 평가기관의 관련자

□ 인증서 발급

- (접수·평가기간) 수시로 접수하며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단, 추가자료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
- (발급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의 발급
- (유효기간) 인증·확인일로부터 2년, 만료 3개월 전부터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수수료)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단, 기술과 동시 신청시 총 120만원) (기업 확인은 무료)

□ 녹색인증 대상

○ 녹색기술

- (인증대상) 10대 분야*, 85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전략품목 및 핵심(요소)기술 선정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준) 평가기관은 기술우수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 억제 등

○ 녹색사업

- (인증대상)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

*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 제외, 9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

- (인증기준) “사업의 녹색성” 위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70점 만점에 50점 이상)

녹색기술활용성 ⁽¹⁾ (30점)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된 녹색기술 활용 여부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절감/CO₂저감/오염물질저감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 신기술/소재/공정/환경오염물질배출등 · 종합판단: 'A≥B'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구체성/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녹색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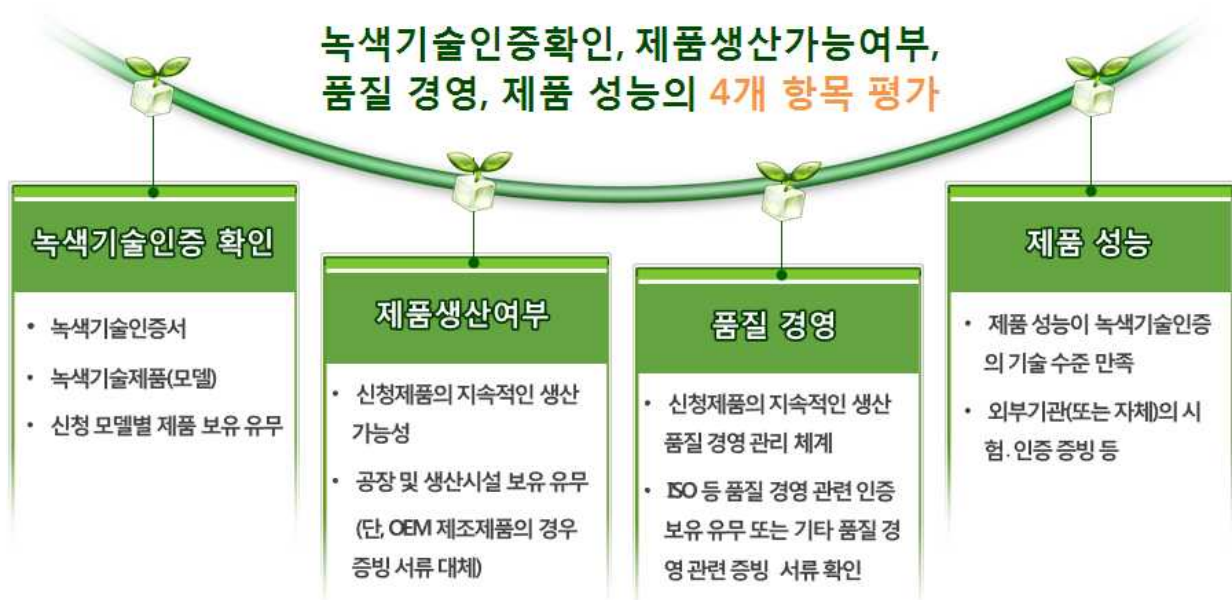
- (확인기준)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다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포함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신청요건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매출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총 매출액의 20%이상(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20% 이상인 경우 포함

-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해선 녹색기술 인증 필수
- 녹색기술 인증과 동시 신청 가능

○ 녹색기술제품

- (인증대상)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인증기준)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의 4개 항목을 평가하여 모두 만족하여야 함



참고3 녹색인증 추진 성과

- (신청 및 인증결과) '14.09말 현재 총 4,195건(기술 3,281, 제품 512, 사업 133, 전문기업 269) 신청, 기술 1,776건, 제품 328건, 사업 35건, 전문기업 206건 인증 확정

(단위 : 건)

구분		인증신청	인증적합	인증부적합
2010 년		637	232	118
2011 년		756	365	116
2012 년	신규	545	282	98
	연장	197	149	2
2013 년	신규	869	475	135
	연장	323	282	3
2014 년	신규	638	330	93
	연장	230	230	1
계		4,195	2,345	566

(단위 : 건)

구분		인증신청	인증심의 결과 적합
녹색기술	신규	2,646 (1,774개)	1,204 (979개)
	연장	635 (547개)	572 (494개)
녹색기술제품	신규	467 (288개)	293 (182개)
	연장	45 (33개)	35 (24개)
녹색사업	신규	122 (99개)	25 (19개)
	연장	11 (9개)	10 (8개)
녹색전문기업	신규	210 (174개)	162 (153개)
	연장	59 (55개)	44 (44개)
계		4,195 (1,829개)	2,345 (992개)

* ()기관수

미래 산업선도기술개발(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B-A)/A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33,000	41,114	54,106	12,992	31.6

* 사업코드 : 21-11-0-110-114-4800-4811-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국장), 산업기술개발과(유법민과장, 044-203-4520), 사무관(서성민, 452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 '18
총사업비	6,172억원(정부 2,300억원/민간 3,872억원) * '11년 예타결과 : '12~'18년 6년간 5,860억원(정부 2,045억원/민간 3,815억원) * 웰니스 과제(총사업비 대상 아님) : '13~'15년 3년간 173.16억원(정부 120억원/민간 57억원) 투입 * '15년 신규과제(총사업비 대상 아님) 정부 135억원('15) 포함
사업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120억원/년 내외, 사업기간 6년 이내 * 웰니스 과제는 40억/년 내외, 사업기간 3년
지원조건	지원형태(출연), 지원조건(민간 Matching)
사업시행주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 융합을 촉진, 6년 내외에 신시장을 형성하여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발 및 글로벌 특허·표준 선도
 - * 리스크가 많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혁신적 R&D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신시장 창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선도기술 개발 지원 【 41,114백만원('14) → 54,106백만원('15)】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10,457백만원→10,640백만원),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 플랜트(17,137백만원→15,356백만원),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9,846백만원→9,284백만원),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3,674백만원→5,326백만원), 첨단 소재가공시스템(4,500백만원(신규)), 경험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3,000백만원(신규)), 생체 모사 디바이스(3,000백만원(신규)), PR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3,000백만원(신규))

○ 동 사업은 향후 10년을 대비할 미래 新기술·新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6년 내외에 신시장을 형성하여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발 및 글로벌 특허·표준 선도하고자 함

* 리스크가 많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혁신적 R&D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 그러나, '12년 착수사업임에도 '12년과 '13년도 지원 예산이 예타에서 제시된 개발비 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임

- 축소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민간부담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 축소가 지속된다면, 개발목표 수정도 불가피

(단위 : 억원)

구분	'12			'13			'14		
	반영(A)	예타(B)	B-A	반영(A)	예타(B)	B-A	반영(A)	예타(B)	B-A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	120	389	△269	300	414	△114	374.4	418	△43.6

* '11년 예타받은 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연속시스템 등 3개 과제 예산임

①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 ('14) 10,457백만원 → ('15) 10,640백만원

총괄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100백만원
1세부	대면적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60인치이상, UD급, 투과도 40%인 패널/모듈 기술개발	3,380백만원
2세부	대면적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8세대급 (2200×2500 mm ²) 핵심 장비 개발	5,010백만원
3세부	60" 이상 대화면, UD 화질의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시각 공간 추적이 가능한 UI 및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개발	1,850백만원
평균비		300백만원

②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14) 17,137백만원 → ('15) 15,356백만원

총괄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100백만원
1세부	심해 석유 생산망 FEED 설계 및 부유체 핵심 기술 개발	3,070백만원
2세부	Floating Production Platform Topside 시스템 및 기자재 개발	4,240백만원
3세부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500 MPa URF 및 SIL 3 Manifold 개발과 Subsea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4,416백만원
4세부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시장진출을 위한 해저장비 및 URF설치용 3,000m급 심해 설치공사 기술개발	3,130백만원
평균비		400백만원

③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 ('14) 9,846백만원 → ('15) 9,284백만원

총괄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100백만원
1세부	인쇄/증착 hybrid 공정을 이용한 OLED 조명 모듈 개발	2,703백만원
2세부	인쇄 공정을 이용한 40인치 이상의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용 TFT array 개발	3,693백만원
3세부	R2R 인쇄전자를 이용한 40인치급 액티브 월페이퍼용 TFT 백플레인 개발	2,488백만원
평균비		300백만원

④ 일반인의 균형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14) 3,674백만원→ (‘15) 5,326백만원

총괄	일반인(직장인)의 균형 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 서비스플랫폼 구축	100백만원
1세부	일반인의 정신적 웰니스 증진을 위한 생체신호(뇌파, 맥파(PPG), 호흡(RSP), 코티졸)의 측정, 평가를 영상정보 기반으로 전환하는 ICT 융합 응용기술 개발	1,210백만원
2세부	일반인의신체적웰니스증진을위한 생체신호(활동량,심전도)와 식습관측정도구ICT융합응용기술및PWR기반기술개발	1,517백만원
3세부	일반인의 균형 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통합 웰니스 상태 결정 및 추천 서비스 플랫폼 구축	2,399백만원
평균비		100백만원

⑤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술개발 : (‘15) 4,500백만원(신규, ‘15년 9개월)

- 수요기업(자동차, 항공 등)과 연계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공 장비·검사·개방형 CNC(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을 통합적 개발 지원

총괄	대형 난삭부품 제조용 생산시스템 개발	100백만원
1세부	중대형 첨단소재 워터젯/드릴링 복합가공시스템 개발	1,075백만원
2세부	복합재료 가공용 융합공정 가공시스템 개발	1,075백만원
3세부	첨단소재 가공용 하이브리드 개방형 CNC 및 임베디드 S/W 개발	1,075백만원
4세부	제품 품질관리 연계형 SMART 검사공정 시스템 개발	1,075백만원
평균비		100백만원

⑥ 경험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 기술개발 : (‘15) 3,000백만원(신규, ‘15년 9개월)

- 가상훈련시스템에 요구되는 공통 핵심기술과 표준화된 개발플랫폼을 제공하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가상훈련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

총괄	경험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 기술개발	100백만원
1세부	현장 체감형 입출력 장치개발	700백만원
2세부	경험지식 획득 및 재현기술개발	1,300백만원
3세부	원격 협업 트레이닝 기술개발	800백만원
평균비		100백만원

⑦ 생체모사 디바이스 개발사업 : ('15) 3,000백만원(신규, '15년 9개월)

- 우리가 강점을 가진 미세공정 기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디바이스 개발 지원

총괄	생체모사디바이스 기술개발	100백만원
1세부	자동화 바이오파크터기 개발	800백만원
2세부	세포구조체 제조기기 개발	1,000백만원
3세부	바이오 분리정제장비 개발	1,000백만원
평관비		100백만원

⑧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15) 3,000백만원(신규, '15년 9개월)

- 공공기관의 건강정보와 병원 의료정보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및 건강관리 예측시스템 개발 지원

과제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900백만원
평관비		100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41,114	54,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10,457백만원 18인치 Color Prototype 플렉시블 패널 제작, 7인치 PF(CF/Touch 일체형), 18인치 PFF(Touch only) 패널 제작, 투과도 70%, CR 7 인 투과도가변 기술개발 추진	10,640백만원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D-IP(지재권)-국제표준에 중점 투자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을 위한 소재, 부품, 공정, 장비와 응용제품의 시장가치를 높일 UI개발을 세계최고수준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지원예산의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17,137백만원 신개념 해저 저장시스템 기본설계 완료 및 URF(Umbilical, Riser, Flowline) 시제품 제작	15,356백만원 ○3,000미터급 친환경 심해 해양플랜트의 해저·해상 통합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자재 개발과 설치기술 개발, 심해 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자재 개발을 통한 해양플랜트 Total Solution Provider 역량 확보에 중점 투자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완성하고 응용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테스트 및 기자재 제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원예산의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9,846백만원 독자 반도체 소재 개발 등 소재/장비 각 요소별 기반 기술 확보	9,284백만원 ○인쇄전자 소자 생산 공정개발, 인쇄공정용 소재 및 양산화 기술 개발, 소자별 장비 설계에 중점 투자 ○본격적인 양산 시제품, 장비, 소재, 공정개발 가속화 및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개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예산의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의 균형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3,674백만원 스마트활동량계(손목형, 클립형 및 무릎형) 및 패치형 3ch 심전도기 시제품 개발	5,326백만원 ○'15년은 최종연도임을 고려하여 산업에 대한 지속적 기술투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신산업생태계 육성에 중점 투자 ○측정된 생체신호, 영상정보 기반 기술간 매칭 알고리즘, 스트레스/웰니스 지수 추출용 알고리즘, 지수정형화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 등 실증시험, 웨어러블 기기의 인허가 연구를 위해 지원예산의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술개발 		4,500백만원 ○세계시장규모('23년 1,087억불) 증가 및 고강도·경량 소재 확대 추세에 대응한 가공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인터넷 기반 컨트롤러 개발 등 IT와 융합을 통해 시장선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 기술 개발 		3,000백만원 ○3D,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술 강점, 기술적 열세인 부품, 센서, SW, SoC분야의 新기술 확보가 필요(HW와 SW의 결합으로 신영역 개척)하며, 국방, 항만, 기계, 의료, 제조, 교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전산업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체모사 디바이스 개발사업 		3,000백만원 ○세계시장규모('25년 1,281억불)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바이오 메디컬시장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가 강점을 가진 미세공정 기술,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디바이스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3,000백만원 ○시장규모('20년 2,079억불)증가 및 우수의료산업 IT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 필요 ○현재 질병예방에 필요한 유전체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은 생산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예방·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은 취약한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패러다임변화에 맞춰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필요

□ 지원 필요성

- 현재 주력산업군(반도체, LCD, 원자력 등)을 대체할 미래 新산업이 부재하고 기업도 미래불확실성으로 차세대 신기술 투자에 주저하는 상황에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경쟁국에 추월당할 우려

* 노키아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기 R&D투자 실패로 시장 지배력 상실
 * 미래 먹거리에 대한 원천특허, 국제표준, 핵심부품 미확보시, 무역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술소국 전략, 특허로 지급, 핵심부품 수입 의존으로 글로벌 경쟁력 취약

(사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특허 전쟁 : 세계 10개국에서 30여건 소송

- 특히 투자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미래 신시장 창출과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정부주도의 혁신형 R&D 시스템을 적용한 대형 미래선도기술개발 추진으로 중소·대기업간 新산업생태계 창출이 절실
 ⇒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신시장 창출 시급

- 동 사업은 대기업이 총괄주관 기능을 통해 시장창출 및 중소·중견기업과 산업생태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미래선도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나, '13년 수행기관별 지원된 예산을 보면, 수행기관 중 대기업(17.7%) 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등 참여기관(82.3%)에 크게 지원되었음

* 인쇄전자용 초정밀연속시스템(삼성전자), 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엘지디스플레이), 심해자원생산용 친환경해양플랜트(현대중공업), 웰니스증진을 위한 서비스플랫폼구축(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기업 미참여)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별 예산지원 현황 >

- 최근 2년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대기업 지원 비율은 '12년도 21.3%에서 '13년도 17.7%로 감소
- 반면에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12년도 52.3%에서 '13년 54.5%로 증가
 * 중견기업('12년 10.4%→ '13년 12.3%), 중소기업('12년 41.9%→ '13년 42.2%)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대기업	2,554	21.3%	5,833	17.7%	8,387	18.6%
중견기업	1,244	10.4%	4,074	12.3%	5,318	11.8%
중소기업	5,024	41.9%	13,921	42.2%	18,945	42.1%
대학	1,279	10.7%	3,897	11.8%	5,176	11.5%
연구소	1,364	11.4%	3,655	11.1%	5,019	11.2%
기타	534	4.5%	1,621	4.9%	2,155	4.8%
계	12,000	100.0%	33,000	100.0%	45,000	100.0%

- 동 사업은 향후 10년을 대비할 미래 新기술·新산업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기술(제품) 및 웰니스 휴먼케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 필요
 - 소재에서 부품·완제품 및 서비스까지 연계된 토탈솔루션 개발형 사업으로 관련 대·중소기업간 新산업생태계 창출 가능
- 향후 미래산업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First-mover형 R&D 추진을 위해 첨단소재가공, 가상훈련, 생체모사디바이스, 개인맞춤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확대 추진 필요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33,000	41,114	54,106	12,992	△ 31.6
▪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9,600	10,457	10,640	183	1.8
- 총괄과제 : 150백만원 - 세부과제 1 : 5,200백만원 - 세부과제 2 : 2,600백만원 - 세부과제 3 : 1,300백만원 - 평가관리비 : 35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4,076백만원 - 세부과제 2 : 3,664백만원 - 세부과제 3 : 2,317백만원 - 평가관리비 : 3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3,380백만원 - 세부과제 2 : 5,010백만원 - 세부과제 3 : 1,850백만원 - 평가관리비 : 300백만원		
▪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11,850	17,137	15,356	△1,781	△10.4
- 총괄과제 : 150백만원 - 세부과제 1 : 2,226백만원 - 세부과제 2 : 3,247백만원 - 세부과제 3 : 3,774백만원 - 세부과제 4 : 2,053백만원 - 평가관리비 : 4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3,512백만원 - 세부과제 2 : 4,695백만원 - 세부과제 3 : 4,855백만원 - 세부과제 4 : 3,575백만원 - 평가관리비 : 4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3,070백만원 - 세부과제 2 : 4,240백만원 - 세부과제 3 : 4,416백만원 - 세부과제 4 : 3,130백만원 - 평가관리비 : 400백만원		
▪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8,550	9,846	9,284	△562	△5.7
- 총괄과제 : 150백만원 - 세부과제 1 : 1,793백만원 - 세부과제 2 : 2,400백만원 - 세부과제 3 : 1,803백만원 - 세부과제 4 : 2,104백만원 - 평가관리비 : 3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2,864백만원 - 세부과제 2 : 3,905백만원 - 세부과제 3 : 2,677백만원 - 평가관리비 : 3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2,703백만원 - 세부과제 2 : 3,693백만원 - 세부과제 3 : 2,488백만원 - 평가관리비 : 300백만원		
▪ 일반인의 균형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3,000	3,674	5,326	1,652	45.0
- 총괄과제 : 100 백만원 - 세부과제 1 : 1,000백만원 - 세부과제 2 : 800백만원 - 세부과제 3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632백만원 - 세부과제 2 : 1,032백만원 - 세부과제 3 : 1,810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1,210백만원 - 세부과제 2 : 1,517백만원 - 세부과제 3 : 2,399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술개발			4,500(9개월)	4,500	순증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1,075백만원 - 세부과제 2 : 1,075백만원 - 세부과제 3 : 1,075백만원 - 세부과제 4 : 1,075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경험지식기반 체험형 가상훈련 기술개발			3,000(9개월)	3,000	순증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700백만원 - 세부과제 2 : 1,300백만원 - 세부과제 3 : 800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생체모사 디바이스 개발사업			3,000(9개월)	3,000	순증
			- 총괄과제 : 100백만원 - 세부과제 1 : 800백만원 - 세부과제 2 : 1,000백만원 - 세부과제 3 : 1,000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3,000(9개월)	3,000	순증
			- 과제 : 2,900백만원 - 평가관리비 : 100백만원		
□ 비목(합계)	33,000	41,114	54,106	12,992	△ 31.6
○출연(350-01)	33,000	41,114	54,106	12,992	△ 31.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 기존 소규모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엄선하여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104.57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 171.37 ▪ 인쇄전자 연속생산시스템 : 98.46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 36.74
'15	54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106.4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 153.56 ▪ 인쇄전자 연속생산시스템 : 92.84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 53.26 ▪ 첨단기공 : 45 ▪ 가상훈련 : 30 ▪ 생체모사 : 30 ▪ PHR 건강관리 : 30
'16	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151.4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 218.5 ▪ 인쇄전자 연속생산시스템 : 132.1 ▪ 생체모사 : 40 ▪ PHR 건강관리 : 30 ▪ 첨단기공 : 58 ▪ 가상훈련 : 40
'17	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151.4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 218.5 ▪ 인쇄전자 연속생산시스템 : 132.1 ▪ 생체모사 : 40 ▪ PHR 건강관리 : 30 ▪ 첨단기공 : 58 ▪ 가상훈련 : 40
'18	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 331.55 ▪ 인쇄전자 연속생산시스템 : 200.45 ▪ 첨단기공 : 58 ▪ 가상훈련 : 40 ▪ 생체모사 : 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 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
7. 디자인·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8~13. (중략)

○ 추진경위

- '10.3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수립 및 VIP 보고
 - * 전략기획단 설립,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 '10.4 : 국과위 운영위원회 의결
- '10.5 : '지식경제 R&D 사업체제 개편' 추진
 - * 신시장 창출형의 대표 프로젝트로 신규 편성
- '10. 6 : 전략기획단 1차 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 '10. 9~12 : 전략기획단 MD 주도로 70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6대 과제 발굴
- '10.12 : '11년 지식경제부 VIP 연두 업무보고시 본격추진 보고
- '11. 4~8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11.9 : 3대 추진과제 확정(지경부, 기재부)
- '13.5 : 전담기관 변경(R&D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5년 "첨단가공", "생체모사", "PHR 건강관리" 신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	120	330	411.14	541.0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	(-)
'12년	120	0	0	120	120	0	0
	(120)	(0)	(0)	(120)	(120)	(0)	(0)
'13년	330	0	0	330	330	0	0
	(330)	(0)	(0)	(330)	(330)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 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 (미국) '04년 미국방성 지원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Center 설립 및 미국에너지국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OLED Lighting프로그램 추진

* 10년간 9,370만 달러 투자(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신소재, 장비 분야)

* 6,300만 달러 투자(GE, 오스람 등 조명분야 대기업들이 주도)

○ (유럽) '04년 ~ '07년 전자종이 및 유연한 디스플레이 장치 개발을 위해 FlexiDis Project 컨소시엄 구성 및 '08년 OLED 조명개발을 위해 OLED100.eu 프로젝트 추진

* 전자종이 모듈, 유기반도체 등 신소재분야

* 4년간 1.2억 달러 투자(조명 분야, 6개국 15개 기관이 참여)

○ (독일) '09년 용액 코팅 OLED 신소재 연구를 위한 NEMO 프로젝트 추진

* 3년간 3,200만 유로 투자(OLED 신소재 분야, 11개 참여기관으로 구성)

- (일본) '13년 혁신적 초저소비전력 Interactive Display 프로젝트 추진 및 '04년 ~ '11년 BLU 및 조명용 OLED 광원 개발
 - * 10억엔 투자(신소재, 신공정, UI/UX 분야)
 - * 43억엔 투자(조명 분야, 미쯔비시중공업과 IMES 등 조명 관련 업체 참여)
- (대만) '02년 양조쌍성(반도체, Panel, Digital Contents, BT)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주도하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 * 연 300억원 투자(플렉시블 Substrate 기술, 콤포넌트 기술, 시스템 기술)

②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EU)
 - 1999년 Oil & Gas 회사를 중심으로 ITF (Industry Technology Facilitator)를 결성하고, Oil & Gas 등 자원개발에 45M£를 투자하여 151개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Development & Implementation)
 - 2009년 1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4.5M£로 6 Field trials을 포함한 9개 기술개발을 수행하였고, 2010년에는 21M£로 45개의 진행 과제를 수행 중
- (노르웨이)
 - Oil & Gas 사업에서 장기간 독점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대륙붕에 위치한 석유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MPE)"에서 지원하는 DEMO2000 프로그램 진행 중
 - 현재까지 13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승인되었고, DEMO2000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Oil 회사로 하여금 총 자금 NOK 1,8Bn 이상의 보충자금 투자 유도
 - 1994년에 PETROMAKS(Optimal Management of Petroleum Resources)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석유자원 R&D지원 신호를 주어, '09년에 "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는 석유 R&D 자금으로 연간 예산 30M\$ 달러를 확보

○ (미국)

- 1992년도 이래로 현존하는 Deepwater 기술의 향상을 위한 “DeepStar”와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연구협력체 “RPSEA(Research Partnership to Secure Energy for America)”를 조직하여 운용
- DeepStar 프로젝트는 2년마다 phase를 갱신하여, '09년 12월까지 phase IX가 종료되고, 2010년 1월부터 phase X에 년 3.5~5M\$를 투자하면서 R&D를 진행 중
- Department of Energy중심으로 “RPSEA”프로젝트를 GoM(Gulf of Mexico)에 집중하여 R&D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연 15M\$를 투자중 (R&D, Demonstration & Commercialization).

○ (중국)

-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정부조달법, 국산화 제품 초기 적용 및 선별 조달에 관한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산 기자재 사용정책 시행 중
- 정부조달법 (PRC Government Procurement Law, '02) 시행: 정부 기관의 기자재 조달시,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의 경우는 자국산을 사용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강요>에서는 선박 공업에 대해 선박의 자주 설계 능력과 선박용 기자재 개발 능력, 대형 조선소 건설 능력을 강화하고 하이테크 기술, 고부가가치의 신형 선박과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장려
- 중국은 향후 30여 곳의 석유 가스전을 개발할 예정, 이에 따른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증가 예상, 중국은 선박 공업 발전을 위해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의 연구 개발 적극 지원

③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 (EU) 대형 컨소시엄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국가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인쇄전자 기술 센터들을 설립

* EU는 유연인쇄전자 연구개발에 2001~2013년 \$719M을 투자 하였으며, 소재개발 및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 (일본) 기존의 우수한 미디어 인쇄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소자 R2R 인쇄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고정밀 R2R 전자소자 인쇄장비 개발 및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대안으로 인쇄전자 기술을 이용한 FPCB 개발에 집중 투자

- * 도시계획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실증 작업 추진
- * 인쇄전자 제조 플렉시블 유기EL조명 개발 (2010~2019)

- (미국) GE는 디지털 벽지라는 개념에서 LED 기반의 월페이퍼로 개발하고 있고 HP와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은 월페이퍼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 미국정부는 유연인쇄전자 R&D에 2001~2013년 \$327M을 투자

④ 일반인의 균형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EU) '10년 독일 전국단위로 고령인구에 대한 ICT기반 eHealth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German Digital 2015사업 추진

- (EU) eHealth 서비스 연구를 위해 Horizon 2020사업 7대과제 추진

- * 2014/15년 549백만 유로 투자예정

- (EU) '10년~'14년 UniversAAL과제를 통하여 노령인구, 장애인, 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 9개 EU회원국 및 2개 EU비회원국의 참여, 13.9백만 유로 투자

- (EU) '10년~'13년 INTERSTRESS 사업을 통하여 ICT기반 스트레스 평가 기술 개발

- * 5개 EU회원국 및 1개 EU비회원국의 참여, 4.4백만 유로 투자

- (미국) Obama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 법안인 PPACA를 통해 2014년까지 미국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 * '13년 헬스케어 관련 기술기업에 대한 190억불 투자

-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시장규모는 400억불까지 증가 예상

- (미국) HP2020 계획에서 ICT 기술 기반 생애 전주기에 걸친 건강 정보 서비스방안 연구

- * 국가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을 중심

⑤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술개발

- (미국) 대통령기술자문위원회는 '12년 제조업 강화를 위한 11개 Top Cross Cutting Technology에 첨단소재 가공기술을 선정
- (EU) 대형 R&D프로그램인 FP7(Framework Programme7, '07~'14년) 및 Horizon 2020(FP7이후 프로그램)의 세부과제로 첨단소재대응 시스템 지원
 - * 독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조업 강국 위치 유지

⑥ 경험지식기반 체험형가상훈련 기술개발

- (미국) ICT와 VR 기반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및 치 응용분야에 적용 확산
 - ICT 기술의 핵심 요소 학문을 특정 영역(교통, 국방, 의학 등)에 적용하기 위해 분야 간 협업체제와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여 NITRD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를 설립('11년 예산 49억 달러)
- (EU) 기초연구부터 인프라정비와 실용화까지 다양한 R&D 정책을 포괄하는 범유럽 7차 종합계획 추진 및 장기 미래 R&D 프로젝트를 통한 실감미디어 기술개발 주력
 - 범유럽 IT R&D 투자를 위한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ICT) 추진('11~'13 총예산 533억 유로)
 -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위해 가상현실분야 기술개발에 700백만 유로 이상의 예산을 편성함
- (일본) 글로벌 IT 강국으로 재부상을 위한 차세대 실감미디어 산업 창출
 - 2004년 6월 콘텐츠 진흥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신기술 R&D지원, 인재양성, 해외 비즈니스 지원, 재원 다양화 등 종합적인 산업진흥 방안을 마련
 - * 국가에서 지원하는 38개 회사에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로 조성된 “Virtual Reality Techno Japan” 정책을 시행함
 - 콘텐츠와 첨단 전자산업의 강점을 실감미디어 부문으로 확대

- * 국가에서 지원하는 38개 회사에서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로 구성된 “Virtual Reality Techno Japan” 정책을 시행함
-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이외에도 경영학적 연구 및 시작분석, 전략수립까지 포괄하여 지원
- * WGN 프로젝트를 통해 '08년부터 '15년까지 300억 엔을 투자하여 현재 10Mbps 수준인 가입자망을 10Gbps급으로 향상 예정

⑦ 생체모사 디바이스 개발사업

- (미국) 생체 칩 기반 인간질환모사 디바이스 개발에 2012년부터 NIH, DARPA에서 연 2.1억불 투자, 2012년 국방첨단연구원은 미국 하바드 대학교에 추가로 3천7백만 달러 규모의 organs-on-chips 프로젝트를 투자
- (EU) 영국은 ‘재생의학 프로그램’라는 이름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재생의학 산업의 성장을 위해 2,150만파운드 지원하고, 4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
- (EU) 독일은 특히 연방교육연구부 (BMBF)를 통해, ‘Go-Bio’, ‘Bioindustry 2021’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BT 기술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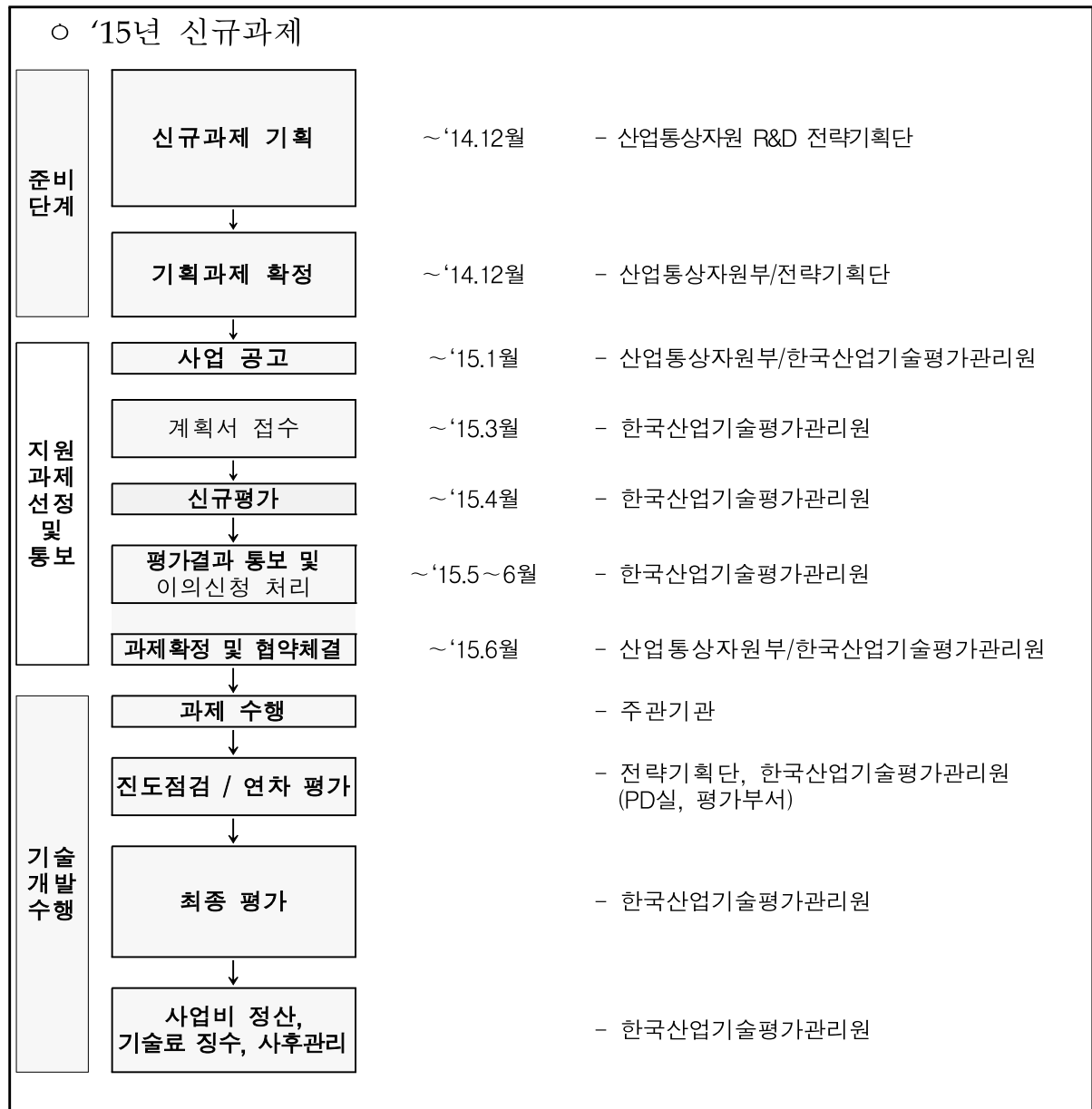
⑧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PHR 시범사업

- (미국) 전 세계 유전체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맞춤의학 연구개발 강화 정책을 추진 중
 - * NIH와 에너지성 산하 JGI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전체 연구비의 약 1/3을 투자(NIH 산하 NHGRI 및 NCI는 '07년 6.2억 달러를 유전체 연구에 투자, JGI는 '09년 4.1억 달러 투자)
- Human Genome Project 종료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범민관 합동 대규모 프로젝트에 정부투자 확대
 - * 미국은 23andMe(Google의 자회사), Navigenics, deCODE, Pathway genomics, Knome, Illumina 등 민간기업에서도 개인의 게놈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유전자 정보 및 질병에 대한 위험성 예측과 특정 약물에 대한 반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 (유럽) 세계 2위의 유전체연구 강국으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1/3을 수행하고 있음
 - * 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 BBSRC, Cancer Research UK를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 맞춤의학 구현을 위해 전략적 집중 투자
 - 영국 정부가 100% 출자한 Genomic England社は 국민건강보험(NHS)환자의 DNA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되었으며, 향후 5년간 10만명의 유전체 서열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국)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개도국으로 BGI (Beijing Genome Institute)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유전체정보 생산센터를 지향
 - * BGI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130여대를 보유, 현재 전 세계의 인간 게놈 정보의 25%를 생산 및 보유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 '15년 계속과제				
준비 단계	추진 방향 결정	'10.6월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전략기획단)	
	미래산업선도제품 후보도출	'10.9~12월	- 전략기획단	
	미래산업선도제품 선정	'10.10.12월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6개 과제)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 성 조사	사업추진의 타당성 조사(질의 및 응답)	'11.3~8월	-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규지원과제 확정	'11.9월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반영 3개 과제 확정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사업 공고	'11.10.14	- 신시장창출형과제 사업공고(45일)	
	기획과제계획서 접수	~ '11.11.14	- 전산접수(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전산접수' 접속)	
	신규평가	'11.12월	- 사전검토 / 신규 선정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11.12월	- 전략기획단 * 이의신청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수행자 선정	'11.12월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	
과제 기획 수행	협약 체결	'11.12월	- 협약 체결	
	과제 수행	4개월간 ('11.12월 ~ '12.4월)	- 사업비 지급(전액)	
	과제기획 결과 보고서 및 기술개발단계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12.4월	- 전략기획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 협약에 의거 종료 10일전으로 정함	
	과제기획 결과 평가 및 기술개발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12. 5월	- 전략기획단	
	이의신청처리 기술개발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12. 7월	- 협약 체결 ※ '13.5 전담기관 이관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기술 개발 수행	진도점검 / 연차 평가	'13.7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 등 위원회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	
	최종 평가	'18. 6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정산	최종평가 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료 징수, 사후관리	완료평가 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11년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대 추진과제 확정 ('11년도 3월~9월 KISTEP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11.9, KISTEP)
 - 전체 비용에 대한 B/C ratio 0.62(NPV -4,772억원) : 경제성 미확보
 - 최적 비용에 대한 B/C ratio 1.13(NPV 595억원) : 경제성 확보

- 예타를 통과한 3개 과제의 총사업비(정부출연금 기준)는 당초 3,950억원 대비 2,045억원으로 수정

< 201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요약) >

(단위 : 억원)

과제명	당초계획		예타조사결과 수정				
	개발내용	예산*		경쟁유무	개발내용	예산	
		전체	'12년			전체	'12년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응용제품	①패널 및 모듈 ②장비 ③UI ④THz	1,300	294	X	개발내용에서 '④THz' 제외	640	130
심해자원생산용 해양플랜트	①엔지니어링 ②Top-Side ③Subsea ④설치기술	1,550	308	X	원안 추진	822	154
인쇄전자용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①프린팅장비 ②코팅장비 ③패터닝장비 ④공정 ⑤양산화	1,100	210	X	원안 추진	583	105
합 계		3,950	812			2,045	389

* 예산 :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전체는 6년간 예산임

-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기술개발은 사업규모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 사업기간 '13~'16, 총사업비 480억원(정부출연금 240억원)으로 기획

- 사업 추진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기획 및 수요기술 조사를 통한 사전기획 작업을 완료

* 자체 수요조사('12. 3)를 거쳐 기획위원회 개최 및 기획 결과보고서 완성('12.5)

- '15년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에서 기획완료 후, 전담기관을 통해 신규공고 등 추진

사업화연계기술개발(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9,164	38,450	42,185	3,735	9.7%

* 사업코드 : 094 - 11 - 0 - 110 - 114 - 4800 - 4803 - 303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차동형), 산업기술시장과(김동주과장, 044-203-4530), 주무관(강윤구, 453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년~(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민간 Matching 총사업비의 40%이상)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2. 사업목적

-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제품화)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선도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 우수BM(Business Model) 및 BI(Business Idea)의 발굴 및 사업화개발 과정 지원

* (국정과제) 1-6-3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BM기획형 : 우수BI·BM 지원을 위한 사업비 21,923백만원

- 우수BM(Business Model) 기획 및 사업화개발 지원(추가기술·제품화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지속 추진
- 개인·기업 등이 제안한 우수BI(Business Idea) 발굴 및 사업화개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촉진
- 산출내역
 - BM기획형 : 신규과제(6개) 5,823백만원, 계속과제(5개) 5,100백만원
 - BI연계형 : 신규과제(33개) 9,750백만원, 계속과제(4개) 1,250백만원

- ② 투자유도형 : 글로벌시장 창출형 유망기술 사업화지원 11,012백만원
 -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민간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중대형과제에 대한 사업화지원(추가기술·제품화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추진
 - 산출내역 : 신규과제(6개) 5,971백만원, 계속과제(6개) 5,041백만원
- ③ 기관연계형 : 우수 BI에 대한 사업화환경 조성 사업비 5,000백만원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BM수립 등 사업화지원서비스 강화
 - 산출내역 : BI사업화지원기관(15개) 5,000백만원
- ④ 아이디어 팩토리 :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성공모델창출 지원 3,000백만원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발전을 위한 공간·장비·교육·목업 제작, 전문기관의 아이디어 고도화·사업화 등 지원
 - 산출내역 : 대학별 아이디어 팩토리 구축 및 아이디어 고도화·사업화 지원 예산 3,000백만원
- ⑤ 기획평가관리비 : 1,250백만원
 - 사업기획, 평가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지원 필요성

- 대부분의 R&D성과물은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적 완성도가 낮으므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추가기술개발·시제품제작 등 후속과정 필요
 - R&D성과물 사업화소요비용은 R&D비용의 10~100배로 조사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예산은 R&D예산의 1%내외에 불과
 - 기업들은 기술개발 성공후에도 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사업화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제시
 - 선진국들은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를 R&D와 사업화간에 발생하는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 추진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제품화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영역 집중지원을 통한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필요
 - 우수BM(Business Model) 및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기획과 사업화 개발의 종합지원을 통한 Time to Market(신제품컨셉부터 시장출시까지의 기간) 단축과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 벤처캐피탈·은행 등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와의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화 소요자금(설비투자, 운전자금, 마케팅 등)을 확보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 기술혁신형 기업이 사업화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공적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 제기
-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매우 높으나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지원이 매우 제한적
- 이에 따라 본 사업 평균 선정경쟁률('11~'14년)은 「7.3 대 1」이고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특히 '14년은 10 대 1), 중소·중견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 경쟁률(4 대 1 수준) 확보 필요
- 국정과제(창조경제 실현) 추진과 관련, 개인 및 기업 보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시장진출지원을 위한 BI연계형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인적자본의 집합체인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고도화 및 기술 이전·사업화로 연계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9,164	38,450	42,185	3,735	9.7
▪ BM기획형	10,964	23,050	22,573		
- BM기획	10,964	12,050 (신규:5개×1080백만 계속:6개×1108백만)	11,573 (신규:6개×971백만 계속:5개×1150백만)	△477	△2.1
- BI연계	-	11,000 (신규:22개×500백만)	11,000 (신규:33개×300백만 계속:4개×313백만)		
▪ 투자유도형	11,500	11,400 (신규:6개×840백만 계속:7개×908백만)	11,612 (신규:6개×995백만 계속:6개×940백만)	212	1.9
▪ 기관연계형	6,700	4,000	5,000	1,000	25.0
▪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	-	-	3,000	3,000	-
☐ 비목	29,164	38,450	42,185	3,735	9.7
▪ 출연금(35001)	29,164	38,450	42,185	3,735	9.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술의 사업화촉진을 위하여 대형과제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육성 도모
- 국정과제(창조경제 실현) 추진과 관련, 우수BI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BI연계형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아이템에 대해 대형과제와 연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8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기획형(22,250) : (BM신규 5,400) 5개x1,080백만원 (BM계속 5,850) 6개x975백만원 (BI신규 11,000) 22개x500백만원 ▪ 투자유도형(10,650) : (신규 5,041) 6개x840백만원 (계속 5,609) 7개x801백만원 ▪ 기관연계형(4,000) : 10개x400백만원 	
'15	43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기획형(21,923) : (BM신규 5,823) 6개x971백만원 (BM계속 5,100) 5개x1,020백만원 (BI신규 9,750) 33개x300백만원 (BI계속 1,250) 4개x313백만원 ▪ 투자유도형(11,012) : (신규 5,609) 6개x935백만원 (계속 5,041) 6개x840백만원 ▪ 기관연계형(5,000) : 10개x500백만원 ▪ 아이디어팩토리(3,000) : 3개x1,000백만원 	
'16	28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기획형(13,273) : (BM 8,273) 10개x827백만원 (BI 5,000) 20개x250백만원 ▪ 투자유도형(8,722) : 10개x872백만원 ▪ 기관연계형(3,000) : 8개x375백만원 ▪ 아이디어팩토리(2,000) : 2개x1,000백만원 	
'17	29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기획형(13,450) : (BM 8,450) 13개x650백만원 (BI 5,000) 20개x250백만원 ▪ 투자유도형(9,843) : 14개x703백만원 ▪ 기관연계형(3,000) : 8개x375백만원 ▪ 아이디어팩토리(2,000) : 2개x1,000백만원 	
'18	31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기획형(14,000) : (BM 9,000) 14개x643백만원 (BI 5,000) 20개x250백만원 ▪ 투자유도형(11,347) : 16개x709백만원 ▪ 기관연계형(3,000) : 8개x375백만원 ▪ 아이디어팩토리(2,000) : 2개x1,0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 추진경위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00.1월)
-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한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안)”에서 도입키로 한 기술개발사업화 프로그램('04.9월)
-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연구성과확산사업 이관('04.10월)

- “제2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05.12월)
- 사업화기획과제 접수 개시(‘05년), 사업화개발과제 선정 및 지원(‘06년 이후)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07.6월)
- “제3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09.3월)
- 지식경제 R&D혁신전략(‘10.3.3, 위기관리대책회의)
-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10.3.18, 비상경제대책회의)
- “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11.12월)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전략 1: 창조경제’ 과제(‘13.5월)
- ““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발전 전략” 수립(‘13.7월)
-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14.4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사업화연계기술개발	300	270	291.64	384.5	421.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00	-	-	300	300	-	-
	()	()	()	()	()	()	()
'12년	270	-	-	270	270	-	-
	()	()	()	()	()	()	()
'13년	291.64	-	-	291.64	291.64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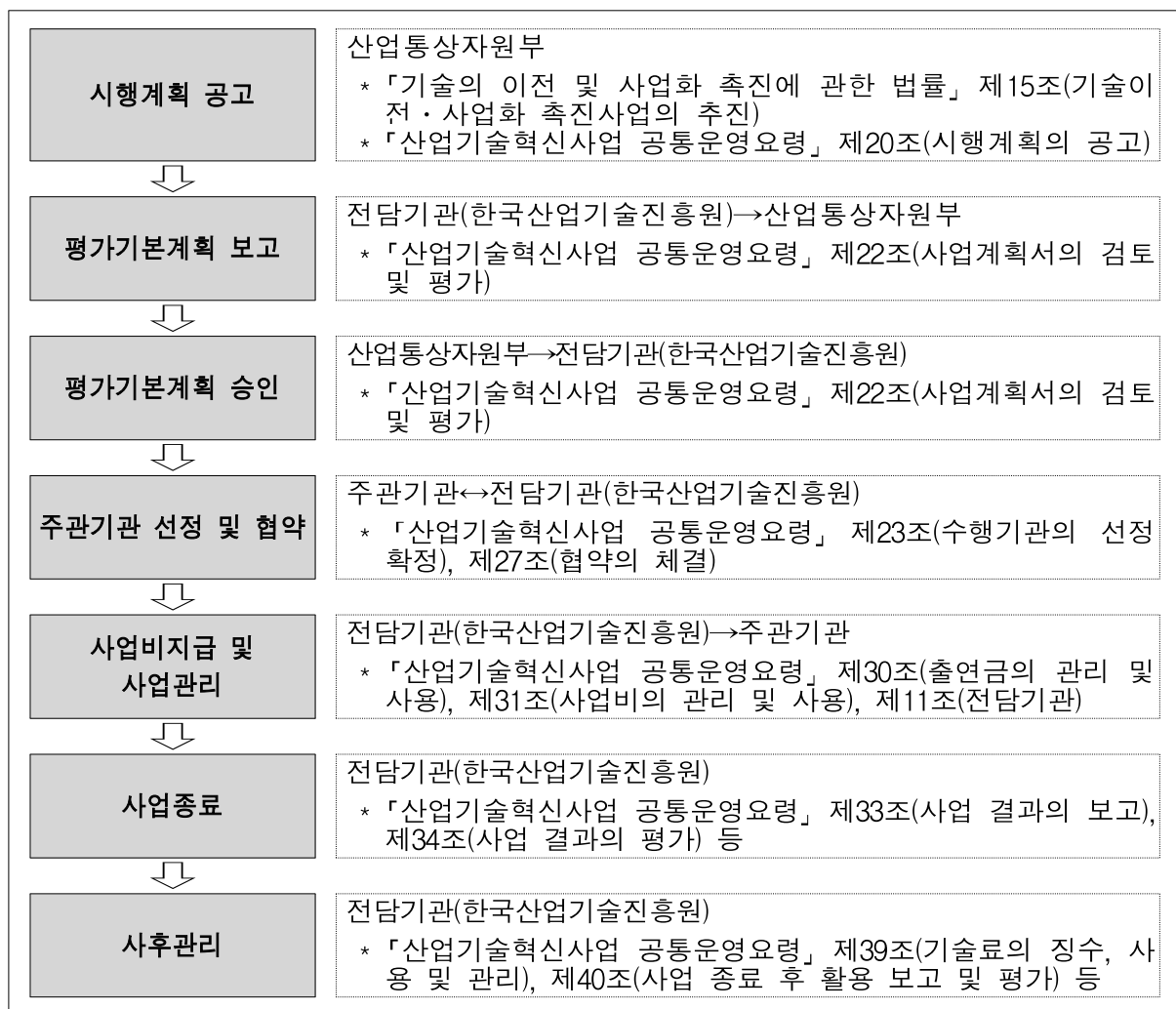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대형과제 신설보다는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혁신기업형 과제에 재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국회 예결위 ‘11년 예산심의)
- (조치계획) 세계적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파급효과 큰 우량기술 사업화 지원 정책이 필요(글로벌공동형 지원확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SBIR/STTR) R&D자금의 일정비율을 기술사업화에 할당하는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연구프로그램(STTR)’ 추진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R&D 예산의 2.5%를 중소기업(단독) 사업화 개발(R&BD)에 할당('82년~)
 -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 R&D 예산의 0.3%를 산·학·연 (공동) 사업화개발(R&BD)에 할당('94년~)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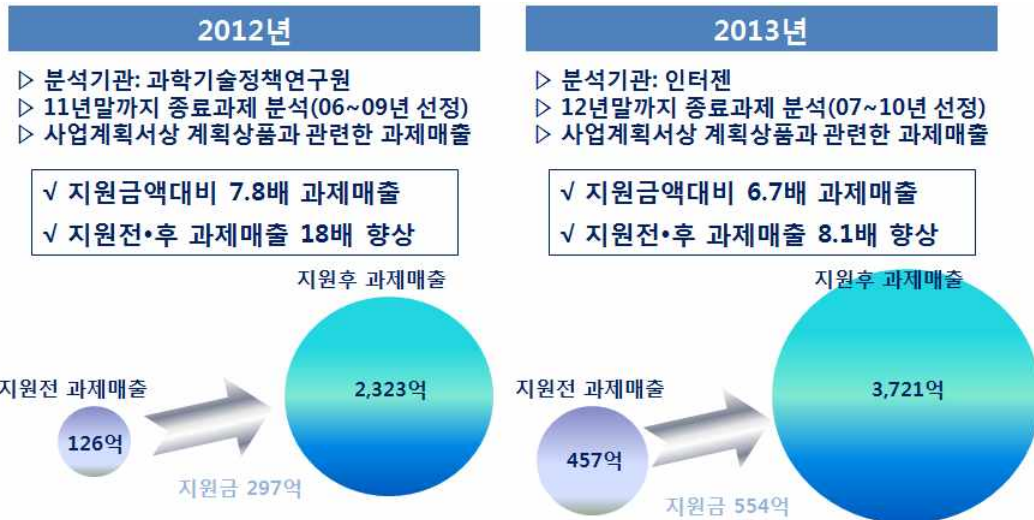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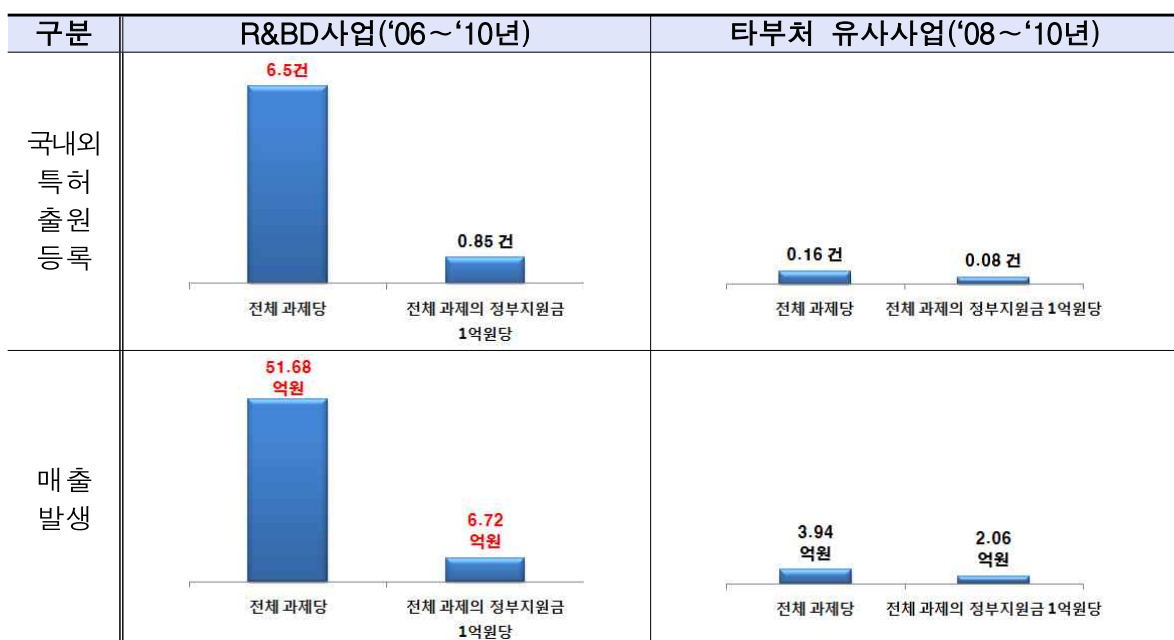
- (매출관련 성과) '13년 성과분석 결과 지원금 대비 6.7배의 과제매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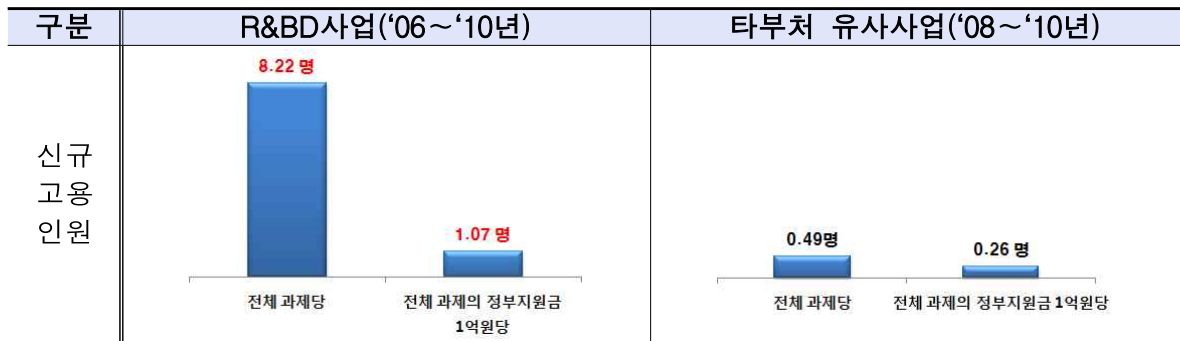


- (사업화성공률; 지원과제 매출발생률) '12년 81.4%, '13년 86.5% 등 산업 기술R&D 사업화성공률('12년 40.1%)을 2배 이상 상회

구분	실적치		목표치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매출발생률 (%)	81.4	86.7	84.9	85.4	86.8	85.7	86.0

- (주요성과) 타부처 유사사업과 비교하면(정부지원금 1억원당),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10배, 매출발생 3.3배, 신규고용인원 4.1배 등 높은 성과 산출





- (민간투자유치) 투자유도형 과제지원 시 사업화가능성에 대한 시장 검증과 신속한 사업화자금 확보 등을 위한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 촉진 지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민간투자유치액(억원)	146	152	121	120	539
정부출연금(억원)	100	100	116	68	384
정부출연금 대비 투자유치액	1.5	1.5	1.0	1.8	1.4

□ 높은 선정경쟁률

- 기술혁신형 기업이 사업화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공적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지원에 대한 요구 지속 제기
-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매우 높으나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지원이 매우 제한적
- 이에 따라 본 사업 평균 선정경쟁률('11~'14년)은 '7.3 대 1'이고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특히 '14년은 10 대 1), 중소·중견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 경쟁률(4 대 1 수준) 확보 필요

지원유형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투자유도형	신청	22	26	37	48	133
	지원	4	4	7	6	21
BM기획형	신청	-	30	46	62	138
	지원	-	5	6	5	16
합계	신청	22	56	83	110	271
	지원	4	9	13	11	37
선정 경쟁률		5.5 : 1	6.2 : 1	6.4 : 1	10 : 1	7.3 : 1
지원율(선정/지원)		18.2%	16.1%	15.7%	10.0%	16.1%

□ 우수사례(기업별)

★ [주]이코니, LCD패널가공을 위한 직하방식 에칭기술 사업화

- * 모바일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한 사업화 지원
- * 정부 사업화지원금 6.3억, 제품매출 '12년까지 1,157억원, '13년까지 1,653억원

제 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얇고 가벼운 화면을 만들 수 있는 LCD패널 가공 기술 ▶세계최초 제품화, 아태지역 고속성장 500대기업('11년, 딜로이트), 부품소재기술상('09년 지식경제부) ▶세계 1위 TFT-LCD 슬림 식각 업체 	
사업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09~'11년 ▶지 원 금 : 6.3억원 ▶과제매출 : 1,157억원('11~'12년) 	

★ (주)인트로메딕, 고통없고 안전한 캡슐내시경 사업화

- * 벤처기업에 이전된 공공연(KIST) 개발기술의 사업화지원
- * 정부 사업화지원금 10억원, 제품매출 '12년까지 180억원, '13년 300억원

제 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메라가 장착된 알약만한 크기의 캡슐이 11시간 동안 체내 촬영(식도~소장) ▶세계 3번째 제품화, 경쟁제품에 비해 최소전력통신, 최장동작시간, 최대초당촬영수, 최대시야각 확보 ▶'12.5월 FDA승인(510K) ▶'14.6월 FDA승인(사용연령 확대) 	 <p>▲캡슐내시경 MiroCam®의 모습</p>
사업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07~'09년 ▶지 원 금 : 10억원 ▶과제매출 : 280억원('10~'13년) ▶'13.12월 코스닥시장 상장 	

산업기술국제협력(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국제협력	57,113	58,852	62,630	3,778	6.41

* 사업코드 : 21-110-114-4800-4804-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산업기술개발과(유법민, 044-203-4520), 사무관(김효선, 450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매칭 여부 및 비율은 내역사업에 따라 상이, 주관기관별 최대 7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 등의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지원,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 기술 도입 촉진 및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세계시장진출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제공동기술개발지원(51,912 → 53,990백만원) : 해외 원천 기술 습득,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양·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지원

< 산출 내역 >

- 118개 과제 × 458백만원

- ② 국제협력기반구축(3,700 → 5,200백만원) : 국내·외 기관간 기술 협력 수요 발굴, 파트너 탐색 등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 해외기술협력거점(1,950 → **1,950백만원**) : 미국, 유럽, 이스라엘 현지에서 거점을 구축하고, G2G 협력, 파트너 발굴 및 기술동향 수집·확산 등을 수행

< 산출 내역 >

- 거점별 390백만원(사무실임대, 체제비, 활동비 등) × 5개소 = 1,950백만원

- 해외전문가활용지원(1,450 → **2,400백만원**) : 해외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산출 내역 >

- 30백만원 × 80개 과제

- 글로벌기술협력기반조성(300 → **850백만원**) : 중점 협력국별 기술협력 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고, 기술협력 컨퍼런스 추진을 통한 네트워크 확산

< 산출 내역 >

- 2개 컨퍼런스(EUREKA DAY 등) × 275백만원 + 기술교류회 3개 × 100백만원

- ③ 전략국가기술협력(3,240 → **3,440백만원**) : VIP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베트남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신흥국과 기술협력 추진

< 산출 내역 >

- 한-베트남 소재부품 및 인력양성 3,240백만원
- 한-카자흐스탄 기술지도 2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4 예산	'15 예산
□ 산업기술국제협력	58,852	62,630
▪ 국제공동기술개발	- 계속과제(78개) : 45,641 *기평비 : 2,360 포함, 과제수 미포함 - '14년 신규과제(26개) : 6,271	- 계속과제(78개) : 42,313 *기평비 : 2,500 포함, 과제수 미포함 - '15년 신규과제(40개) : 11,677
▪ 국제협력기반구축	- 기술협력거점 : 1,950 - 해외전문가활용 : 1,450 - 글로벌기술협력기반조성 : 300	- 기술협력거점 : 1,950 - 해외전문가활용 : 2,400 - 글로벌기술협력기반조성 : 850
▪ 전략국가기술협력	- 전략국가기술협력 : 3,240	- 전략국가기술협력 : 3,440

□ 지원 필요성

- (국제공동기술개발) 자국의 부족한 기술 보완 및 해외 시장 선점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필요
 - 주요국과 정부간 공동편당형 R&D 프로그램을 구성, 상용화 중심의 EU R&D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저변 확대
 - * 국내기업의 R&D혁신활동 중 해외와의 기술협력 비율은 1.3%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OECD, 2011)
 - ** 주요 국가별 협력수준 : 벨기에 33.7%, 영국 32.2%, 핀란드 27.5%, 스웨덴 27.1%, 이스라엘 24.2%, 독일 8.3%, 중국 1.6% 등
- (국제협력기반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수요 발굴, 파트너 탐색, 계약 및 IP 협상 등을 추진 시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기반 확충 필요
- (전략국가기술협력)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 국가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기술이전-인력양성-정책컨설팅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국제협력	57,113	58,852	62,630	3,778	6.41
▪ 국제공동기술개발	50,334	51,912	53,990	2,078	5.21
▪ 국제협력기반구축	1,926	3,700	5,200	1,500	40.5
▪ 전략국가기술협력	4,800	3,240	3,440	200	6.17
□ 비목	57,134	58,852	62,630	3,778	6.41
▪ 출연금(350-1)	57,039	58,767	62,545	3,778	6.43
▪ 국외업무여비(220-02)	74	85	85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 정부의 **일방편당형 R&D 지원을 축소**해나가고, 주요 국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자간 공동편당형, 다자간 공동편당형 R&D를 확대**
 - 공동편당형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의 공동 출연, 운영으로 ① 예산의 효율적 활용, ② 해외 협력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및 ③ 상호 Win-Win형 협력이 가능
- 국내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수요 발굴 등에 애로점이 있으므로 기반 구축형 네트워크 지원 확대
 - 해외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在外한인공학인, 해외퇴직기술자 등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89	▪ 국제공동기술개발(519), 국제협력기반구축(37), 전략국가기술협력(32)
'15	626	▪ 국제공동기술개발(540), 국제협력기반구축(52), 전략국가기술협력(34)
'16	626	▪ 국제공동기술개발(540), 국제협력기반구축(52), 전략국가기술협력(34)
'17	626	▪ 국제공동기술개발(540), 국제협력기반구축(52), 전략국가기술협력(34)
'18	626	▪ 국제공동기술개발(540), 국제협력기반구축(52), 전략국가기술협력(3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 근거 :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장(국제산업기술협력)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활성화), 제30조(해외우수기술인력의활용 촉진), 제31조(해외우수연구개발센터유치 촉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

○ 추진 경위

- '90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작
- '94년,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근거로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시작
- '00년, 한·이스라엘 국가간 공동기술개발협약 체결
- '04년,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근거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통해 외국 R&D센터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사업시작
- '06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및 해외R&D센터유치기반구축사업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 '08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5월),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12월) 제정 및 한미국제공동기술개발과제 신규지원
- '09년, 유레카 가입협정서 서명('09.6), 정부조직개편('08.2)에 따라 舊.정보통신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승계
- '11년, 한-중 국가간 공동기술개발협약 체결('11.10)
- '12년,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13~)
- '13년, 한-중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협력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체결('13.6) 및 VIP순방 성과로 중소기업 혁신형 R&D프로그램 유로스타2 가입 협정서 서명('13.11)
- '14년, VIP순방 성과로 한-스위스 기술혁신파트너쉽 체결('14.1), 한-프랑스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 체결('14.1), 한-독 산업기술협력협정 및 한-독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 체결('14.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국제협력	512	512	571	588	6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불용은 세수감소에 따른 산업부 여비 절감분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12	0	0	512	512	0	0
	(512)	(0)	(0)	(512)	(512)	(0)	(0)
'12년	512	0	0	512	512	0	0
	(512)	(0)	(0)	(512)	(512)	(0)	(0)
'13년	571	0	0	571	571	0	0.2
	(512)	(0)	(0)	(571)	(571.1)	(0)	(0.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① 국회('11년 예결 지경위 검토보고) 지적

- 유관기관 해외사무소의 중복의 소지가 크고, 성과평가 실적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
 - 해외기술협력거점과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는 기능 및 위치에 있어 차별성이 있음
 - 해외거점은 국내기업의 공동R&D 파트너 매칭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는 기관별 고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
 - 대부분 기 진출한 출연연의 해외사무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상대국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킹 등을 위해 별도 거점을 설치하여 운영
- * '11년 미국(산타클라라, 생기원사무소), 러시아(모스크바, 산업기술대학교 사무소)
- ** '11년 EU(프랑크푸르트), 중국(북경)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0.6월, 지경부는 해외거점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차 구조조정 既 실시
- * EU: 자브뤼켄(KIST-Europe 연구소) → 프랑크푸르트(진흥원)
- * 유라시아(우즈벡) 폐지, 청도(생기원) → 북경(북경미래내:한국이 합작투자한 GCC 기관)
- '12년, 지경부 내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와 해외기술협력거점(GT)를 통합 연계
- * GT, GCC 총 14개소 → GTBC(8개소, GT 3, GT+GCC 2, GCC 3)
- '14년, '산업기술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전담기관 중심의 거점

② 평가 결과

- 2010년도 조사분석평가(상위평가) : 보통 (62.7점)
 - * 2010년도 조사분석평가 점수가 낮은 것은 “성과계획” 항목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은 상당한정도(6.7점/9점)로 여타 R&D와 유사한 수준
- 2013년도 자체평가 : 보통 (77점)
- 2013년도 조사분석평가(상위평가) : 보통 (69점)
 - * 2011~12년 성과지표 개선 및 사업운영성과 제고에 따라 2013년도 평가점수 상승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 분야별 유관 부서와 기구들이 자율적인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첨단 융합산업 육성, 기간산업기술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수행
 -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 첨단 기술 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지원을 목적으로 산·학 협력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
- * Civil infra, Manufacturing, Energy, Healthcare, Water 개선 등을 주요 협력 영역으로 선정
 - 에너지부는 북미지역, 개도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에너지 관련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 * Clean Energy Initiative : 개도국과의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
- * NAEWG(North America Energy Working Group) 북미 3개국간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기술 협력 프로그램
- * NARSTO(North American Research Strategy for Tropospheric Ozone and Aerosols) 북미 3개국간의 오존, 대기환경 관리 프로그램
 - 과학재단(NSF)은 국제협력실(Office of International Science & Engineering)을 중심으로 국제기술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 * 융합 소재 및 소프트웨어, 화학, 수리 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협력

② EU

- Horizon 2020을 통해 첨단 융합기술, 기간 산업 기술, 중소기업 지원, 삶의 질 향상, 글로벌 사회적 이슈 대응 등을 강조
 - 산업 리더쉽(Industrial Leadership) 차원에서 ICT, 첨단 소재, 바이오, 첨단 제조, 우주 등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의 리더십 강화에 역점
 - 특히, 기술개발 및 국제화 역량을 보유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
 - 사회적 과제(Societal Challenges) 차원에서 효과적인 질병 해결, 안전한 식량 문제 대응, 효율적인 에너지, 안전한 사회 등을 중점 추진
 - EU는 ICT 국제 협력 보고서를 통해 첨단 융합산업의 육성 및 이동통신 등 기간산업의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를 구현하는데 정책에 중점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양국간 공동펀딩형 R&D프로그램 현황

□ '14년 현재, 산업부와 해외 관계 부처간 마련한 공동펀딩 프로그램

	한-이스라엘	한-중	한-독	한-프	한-스위스
협력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	한-중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협력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산업부-과학기술부)	한-독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산업부-경제에너지부)		한-스위스 기술혁신 파트너쉽(TIP, 산업부-경제교육연구부)
			한-독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DOI, KIAT-AiF)	한-프랑스 국제공동기술개발 합의(DOI, KIAT-BPIFrance)	
	국회비준 득	VIP 순방성과	VIP 순방성과	VIP 순방성과	VIP 순방성과
협력 시기	'01~	'13.10~	'14.3~	'14.1~	'15.1~
지원 필요성	기술개방성 高 무인항공기, SW 등 주요 상용화 가능한 산업 기술 역량 高	전략적 협력 6위국** 기업 수요 4위* 원자력, 우주항공 등 기초기술 역량 高 거대 시장 중심 국가	전략적 협력 3위국** 수요 2위국* 기계, 에너지 등 주요 산업기술역량 高	전략적 협력 4위국** 원자력, 우주항공 등 기초기술, 항공기, 기계 에너지 등 주요 산업 기술 역량 高	기술개방성 高 특수부품, 정밀 기계 등 기초기술 역량 高
출연 규모	연 \$200만('13~)	연 10.5억원	연 30억원 ('14년 10억원)	연 20억원 ('14년 10억원)	연 15억원
	\$100만(~'03)→\$150만(~'12) 확대	양국 수요 既 확인, 中측 예산 규모 확대 제안	獨측 연 65억원 既 확보	佛측 수요 확인 후 확대 제안 (2nd Call 既 제안)	스위스측 25억원 既 확보
펀딩 방식	공동기금 조성	매칭펀드	매칭펀드	매칭펀드	매칭펀드
지원 기간	6개월~3년	~2년	~3년	~3년	~3년
지원 규모	연 3천~2억원/과제	연 2억원/과제	연 ~3억원/과제	연 ~3억원/과제	연 ~3억원/과제
과제 공고	'14.3	'14.3	'14.3	'14.3	'15.3
주관 기관	양국 중소기업 공동 주관	양국 중소기업 공동 주관	양국 중소기업 공동 주관	양국 중소기업 공동 주관	한중소기업-CTI 지정 연구기관

* 2013 국제기술협력수요조사 결과보고서(2014, KIAT)

** 해외주요국별 협력전략보고서 中 10대 전략국가(2010, KIAT)

참고 2

다자간 공동펀딩형 R&D프로그램 현황

□ '14년 현재, 산업부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3국 이상) 프로그램

구분	HORIZON 2020* (2014년 ~ 2020년)	EUREKA (1985년 ~)	EUROSTAR2 (2014년 ~ 2020년)
주관	EC	EUREKA 사무국	EUREKA 사무국+EC
특징	EU 최대 R&D 프로그램	시장지향형 산업기술 협력	중소기업 전용 R&D 협력
회원 국가	EU회원국 (28개국) 준회원국 (14개국)	정회원국 (EU회원국 28개국 + 유럽 13개국) 준회원국 (한국, 캐나다, 남아공)	유로스타 파트너국 (EU28개 + 유럽 6개국 + 한국)
한국지위	비회원국 (제3국 중 기술 선진국으로 분류) * 한국은 EC 자금지원 제외	비유럽국가 최초로 준회원국 *가입('09.6) * 한국측 수행기관은 과제 주관(발 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책기구(총회, 워킹그룹) 등에 서 발언권 ·평가/승인권 확보	비유럽국가 최초로 파트너국 가입('13.11) * 한국측 수행기관은 과제 주관(발 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유럽R&D정책기구(EAG, IEP) 공 식 참여, 의사결정권 확보
한국 참여규모	제한 없음	연 신규 5~10개 과제(약 30억원 규모) 지원 선언 * '09 가입협정서 제 7조 (b)항	연 평균 €400만유로(약 60억원 규모) 참여 선언 * '13.11 가입협정서
운영분담금	없음	1억원/년 내외 * GDP 기준이며, 총 45억원/년	변동 가능 * 승인된 한국 참여 과제 수에 따 라 차년도 분담금 규모 결정
지원 조건 (先 과제선정) ↓ 자금 지원	EC 최종 승인 과제* 중 한국기관* 참여 과제 * EU 단독 과제공고, 평가, 승인 * 산업기술분야 R&D기관 혹은 국내기업 비회원국인 한국은 별도 출연, 한국측 참여 과제* 지원 * 산업기술분야 기업 참여과 제의 경우, 평가(전담 : KIAT) 후, 산업부가 지원	국별 소관부처/전담기관*의 先평가(분리평가) 후, EUREKA 총회에서 최종 과제* 승인 (Labelling)된 과제 * 한측) 산업부/KIAT * 중소기업 참여 필수 승인 과제는 각국이 개별 출연하여 지원 * 승인되었으나,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 과제참여기관이 개별 자금 활용	EUREKA 주도 공고 및 중 앙 평가 후, 총회에서 최 종 과제 승인된 과제 * 한국(산업부/KIAT)은 과제기획, 참여 기관 적절성 검토 후, 총 회 참석하여 과제 승인 표결 * 중소기업 과제 주관 승인 과제의 일부에 대해 여 출연·지원(KIAT 평가) * 유럽 국가는 EC 기금 펀딩(30%), 자국기금(70%) 활용
예산규모	800억 유로 (120조원) * '14~20년 EC 지원기금	291억 유로 (43.6조원) * '85~'13년 누적지원규모	11.4억유로 (1.6조원) * '14~20년 예상 지원규모
과제 특성	중·대형 과제	중·소형 과제	중·대형 과제
우리나라 참여현황	FP7(H2020의 전신)**에 8개 과제 참여 (약 33억원)	'07년 이후 51개 과제 참여 (약 322억원)	유로스타2부터 참여 확정('14~)
협력근거	EU FP지원사업 부처간 협약체('09.2)	대한민국과 유레카 네트워크간 파트너십 협정('09.6)	대한민국과 유로스타2 회원국 가입 MOU 체결 ('13.11) 및 EC 확정('13.12)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1,538	1,484	1,109	△375	△25.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200 - 3237-3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국장), 산업기술시장과(김동주과장, 044-203-4530), 사무관(유강열, 453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 사업목적

-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정책추진기구 운영 : 20백만원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등 운영
- ②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 10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80백만원) : 130개기업×0.62백만원
 - 해외진출기업 현장점검(20백만원) : 5개기관×4백만원
- ③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 : 989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역량강화 (150백만원)

- * 기업보안담당자 역량강화 교육(150백만원) : 수요맞춤형교육(10회x6백만원), 전문가양성교육(6회x15백만원)
- 산업기술보호 인식확산 (150백만원)
 - * 산업기술보호 주간 운영(50백만원) : 1회x50백만원
 - * 해피콜상담센터 운영(40백만원) : 40백만원(연간)
 - * 산업기술보호종합지원포탈 운영(60백만원) : 60백만원(연간)
- 산업기술보호 정책개발 (289백만원)
 - * 산업기술보호 정책포럼 및 전문가 간담회 운영(100백만원) : 정책포럼(4회x10백만원), 이슈페이퍼 발간(4회x5백만원), 간담회(8회x5백만원)
 - * 산업기술보호 법·제도 등 정책연구(100백만원) : 2회x50백만원
 - * 산업기술DB 조사 및 확인제도 운영준비(89백만원) : 1회x89백만원(연간)
-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확산 (200백만원)
 - *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추진 협의회 운영(5회x4백만원)
 - *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발·지원(2회x90백만원)
- 국가핵심기술 관리기반 구축 (200백만원)
 - *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위한 조사·연구(100)
 - * 국가핵심기술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운영(100)

□ 지원 필요성

- 우리기업들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해외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현황 >

연도	'09	'10	'11	'12	'13
건수(건)	43	41	46	30	49

* 출처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이처럼 기술유출 위험은 증가하는 반면, 우리기업들의 보안역량은 여전히 취약*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이 절실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역량 수준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전체 평균
점 수	89	70	58	88	72

* 출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2013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1,538	1,484	1,109	△375	△25.3
▪ 기술신탁 및 기부채납제도 활성화	616	616	0	△616	-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922	868	1,109	241	27.8
☐ 비목	1,538	1,484	1,109	△375	△25.3
▪ 출연금	616	616	0	△616	-
▪ 일반수용비	17	20	20	0	0
▪ 국외여비	10	16	20	4	25.0
▪ 보전금	9	0	0	0	0
▪ 민간경상보조	886	832	1,069	237	28.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의 부정 한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 및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8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 14.8억
'15	11.1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 11.1억
'16	9.8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 9.8억
'17	10.5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 10.5억
'18	9.0	▪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 9.0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9조(산업기술보호 교육),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 추진경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07.4)
-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7.8)
 - * 기본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등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 수립('10.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11.7)
 - * 산업기술의 정의, 종합계획 수립,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수·합병 신고 규정 등
- 제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13.2)
 -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13~'15) 심의, 승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보안 기반구축	21.3	23.2	15.8	14.8	11.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산업기술 유출 신고자 포상금 등 직접경비 일부가 불용되었으며, 출연금·보조금은 전액 집행
-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 담당공무원의 해외 실태 조사 여비 및 산업기술 유출 신고자 포상금 등 42백만원 불용
- ('12) 산업기술 유출 신고자 포상금 23백만원 불용
- ('11) 산업기술 유출 신고자 포상금 10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1.3	-	-	21.3	21.2	-	0.1
	(20.5)	(-)	(-)	(20.5)	(20.5)	(-)	(-)
'12년	23.2	-	-	23.2	23.0	-	0.2
	(22.4)	(-)	(-)	(22.4)	(22.4)	(-)	(-)
'13년	15.8	-	-	15.8	15.4	-	0.4
	(15.0)	(-)	(-)	(15.0)	(1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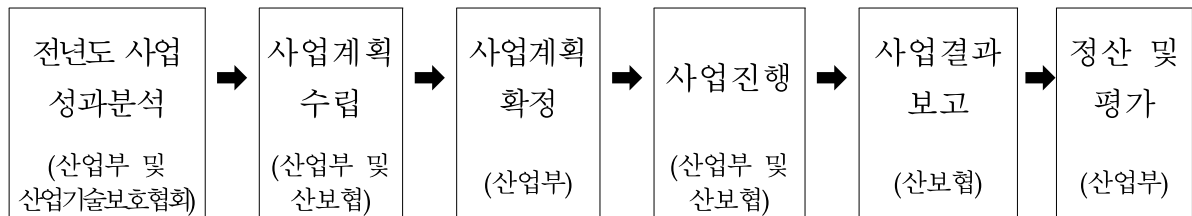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기술의 국외유출을 엄격히 예방·처벌하는 체계를 구축
 -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기술 등 영업비밀의 해외 불법유출시 형사처벌 강화
 - * 최근 처벌기준 상향조정(벌금 50만달러 → 500만달러 등) 개정('13)
 -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일본) 민사적 구제중심에 형사처벌 등 보호대책을 추가
 - 영업비밀보호의 법제화('90,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당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만 인정하였으나, 이후 벌칙 신설 및 처벌수준을 강화
 -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이하 벌금('03) → 10년이하 1천만엔 이하('06)
 - 「외국환 관리 및 외국무역법」을 통해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 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 국가안보(항공기, 무기, 원자력, 우주개발), 공공질서(전기, 가스, 통신, 방송, 수도)등
- (중국) 기술유출 및 외국인 투자활동을 엄격히 관리·통제
 -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기술수출입관리조례」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수출가능 여부를 자유, 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관리
 -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을 작성하여 대중국 투자업종을 유치장려, 제한, 금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통제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사업(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	7,315	10,629	12,249	1,620	15.2

* 사업코드 : 19-11-0-110-114-4800-4809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장(천영길, 044-203-4510), 사무관(김성만, 4514)
산업기술개발과장(유법민, 044-203-4520), 사무관(박만희, 45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518억원('14년까지 기투자액)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R&D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하는 산업기술R&D 기획·평가·관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관출연
- 산업기술 R&D 투자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 기획단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출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산업기술R&D 기획·평가·관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관출연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비목	'14년 예산	'15년 요구	증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인건비	809	809	-
	경상운영비	996	996	-
	연구사업비	619	619	-
	[대전]분원사육개보수비 ('15년 대전분원이전비)	992	2,612	1,620
	R&D(지역)교육센터 운영비	503	503	-
	소계	3,919	5,539	1,620

구분	세부비목	'14년 예산	'15년 요구	증감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인건비	3,025	3,025	-
	경상운영비	280	280	-
	소계	3,305	3,305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인건비	1,570	1,826	256
	기획평가관리비	1,295	-	△ 1,295
	경상운영비	540	1,579	1,039
	소계	3,405	3,405	-
합계		10,629	12,249	1,620

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년 3,919백만원→'15년 5,539백만원, 1,620백만원 ↑)

- ① 산업기술 R&D 사업 정책기획, 제도혁신, 성과활용평가 및 자체평가 등
전담인력 인건비 809백만원('14년 809백만원→'15년 809백만원)
- ② 제세공과금, 법정보험료 등 경상운영비 996백만원
('14년 996백만원→ '15년 996백만원, 전년동)
- ③ 연구사업비 : 619백만원 ('14년 619백만원 → '15년 619백만원, 전년동)
 - 산업기술기획조사분석사업(산업기술 R&D 정책 기획 및 제도 혁신)
 - 국내 기술동향 및 기획평가관리 세미나 개최(산업부·KEIT T-Map세미나)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에 대응한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
 - '정부3.0' 추진계획(민관협치 강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R&D 정책 기획 강화
 - 산업기술 R&D 성과활용 현황조사·분석·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부 자체평가
 - 산업기술 R&D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 ④ 대전분원 이전비용 : 2,612백만원('14년 992백만원→'15년 2,612백만원, 1,620백만원 ↑)
 - * ICT R&D 기능 일원화에 따라 현 산기평 대전분원의 소유권이 IITP로 이전되고,
임시적 사용공간에 대하여 예산이 반영되면 이전하기로 부처 및 기관간 상호 합의
 - 업무용시설(6,417.9㎡(1,941평)) 임대료 및 관리비 : 1,448백만원
 - 보증금 : 445백만원
 - 월임대료 및 관리비 : 83,600천원×12개월= 1,003백만원
 - 대전(분원) 업무용시설 이사비용 : 1,164백만원
 - 사무실 및 평가장 및 회의실 공사비용(785백만원)
 - 파티션 철거 및 재설치 작업비 등(276백만원)
 - 사무실 원상복구비(103백만원)

⑤ R&D지역교육센터 추가 및 운영지원 : 503백만원

(‘14년 503백만원 → ‘15년 503백만원, 전년동)

* 연구지원전문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연구비 관리·정산, 지재산 관리,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 ‘11.8월, VIP보고)

** R&D 교육센터에서 중소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과제 신청부터 지재산 관리에 이르는 R&D 전 과정에 대하여 25시간 무상 교육 실시(현장공감 R&D 전략, ‘12.5월, 장관보고)

- R&D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게 실무중심의 산업기술R&D 무상교육을 제공
- * 연구지원전문가교육은 80%이상의 내부강사(직원)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국내 최초의 R&D과제수행자 대상의 R&D전주기 실무형 맞춤형(실무/전문과정) 교육과정임
- 지역R&D교육센터 확대 및 지속운영을 통해 R&D지역편중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에 집중된 R&D 교육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 및 상시교육 운영체제를 구비
- * (현재) 서울(본원), 광주, 창원(임시) → (향후) 서울, 광주, 대구(본원), 창원

②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14년 3,305 → ‘15년 3,305백만원, 전년 동일)

① 인건비 : 3,025백만원(‘14년 3,025백만원 → ‘15년 3,025백만원, 전년동)

- 단장 : 무보수(기획단 2기 단장은 무보수 근로계약 체결)
- MD(3명) : 664백만원 (기본연봉 369백만원, 성과급 295백만원)
 - * MD 1인당 : 221백만원 (기본연봉 123백만원, 성과급 98백만원)
- 전문위원(22명) : 1,661백만원(기본급 및 성과급 등)
 - * 22명 × 75.5백만원 = 1,661백만원
- 사무비서 및 기사(7명) : 237백만원
 - * 사무비서·기사(7명) × 31백만원 = 217백만원 / 임시용역 운용 : 20백만원
- 기타(퇴직 충당금, 4대 보험료, 파견 수당 등) : 463백만원

② 제세공과금 등 전략기획단 경상운영비 : 280백만원

(‘14년 280백만원 → ‘15년 280백만원, 전년동)

- 임차료 및 건물관리비 : 17.33백만원 × 12개월 = 208백만원
- 특근매식비 및 기관공통경비 : 72백만원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년 3,405백만원 → '15년 3,405백만원, 전년 동일)

- '14년도 출연금은 4개 사업* 기획평가관리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15년도 출연금은 공통지원부서 인건비 일부와 경상운영비 일부, 연구사업비로 활용(4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는 목적에 맞게 해당사업으로 전환)

* 산업기술거점기반구축사업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기술지원확산

(단위: 백만원)

구분	'14년 예산(신규)	2015년	증△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3,405	-
- 인건비	1,570	1,826	256
- 기획평가관리비	1,295	-	△1,295
- 경상운영비	540	1,579	1,017

① 인건비 : 1,826백만원('14년 1,570백만원 → '15년 1,826백만원, 256백만원)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장, 본부장, 공통 지원부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② 기획평가관리비 : 해당없음('14년 1,295백만원 → '15년 -, △1,295백만원)

- '14년도 출연금 중 기획평가관리비는 해당사업으로 전환

* 산업기술거점기반구축사업(212백만원),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2,174백만원),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204백만원), 기술지원확산(815백만원) 환원

③ 경상운영비 : 1,579백만원('14년 540백만원 → '15년 1,579백만원, 1,017백만원)

- 사무실관리비, 사무실보안비, 직원교육훈련비, 기관부담 법정보험료, 제세 등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 소요비용 일부

□ 지원 필요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의 효과적 지원 및 연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R&D 정책·제도와 평가시스템의 지속적 혁신 필요

- ICT 진흥특별법('13.8.13) 제정 및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203, '14.4.30)에 따라 산업기술R&D 및 중소기업 R&D 사업의 안정적 평가관리를 위해 산기평 대전분원 이전비용 지원 필요

- R&D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에게 실무중심의 산업기술R&D 무상교육을 제공함으로써 R&D연구지원 강화 등 연구지원 서비스 확대에 기여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R&D 체계 강화를 위해 활동 지원 필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과 관련 R&D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 재원의 조달방식(기획평가비→출연금) 전환 필요
 - 기존 출연금의 경우 기관운영이 아닌 사업관리 목적으로만 지출토록 되어있어, 출연금의 전환취지(기관운영지원)에 맞도록 내역 변경필요
 - 직접사업비와 기관운영비로 사업비를 이원화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	7,315	10,629	12,249	1,620	15.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718	3,919	5,539	1,620	41.3
- 인건비	809	809	809	-	-
- 경상운영비	996	996	996	-	-
- 연구사업비	619	619	619	-	-
- 분원개보수·유지비 (‘15년 대전분원이전비)	1,294	992	2,612	1,620	163.3
- R&D (지역)교육센터 운영 지원	-	503	503	-	-
▪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3,597	3,305	3,305	-	-
- 인건비	3,317	3,025	3,025	-	-
- 경상운영비	280	280	280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405	3,405	-	-
- 인건비	-	1,570	1,826	-	-
- 기획평가관리비	-	1,295	-	-	-
- 경상운영비	-	540	1,579	-	-
□ 비목(합계)	7,315	10,629	12,249	1,620	15.2
○ 출연금(350)	7,315	10,629	12,249	1,620	15.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기술 R&D 정책 기획 및 제도 혁신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육성, 국민행복 등 新정부의 정책목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투자의 적정배분 및 효율성 증대
 - 국내·외 기술, 정책, 시장동향 파악과 현장 중심의 R&D 정책 기획 강화 통한 새로운 R&D 정책기술동향 발굴
- 산업부 R&D 과제의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유도
-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R&D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관리시스템의 지속적 혁신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 (산업기술 R&D 정책·전략발굴 및 제시) 산업기술관련 R&D 정책 어젠더 발굴, 산업기술 R&D의 미래 방향 제시, 신산업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협상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 수립
- (산업기술 핵심 대형과제 발굴 및 기획)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에너지분야 주력 먹거리 품목 및 핵심기술 발굴·기획(7~10년 후 세계시장 선정)
-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및 산업별 포트폴리오 제시) 차기년도 산업기술 R&D 투자를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투자방향에 따른 예산배분 등 산업별 투자 방안 제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R&D사업의 핵심이슈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성과도출 및 관리를 위한 사업프로세스 개선
 - 선도형 R&D 핵심이슈(개방성, 융합성, 신규성, 도전성, 준비성, 시장성)를 반영한 사업 프로세스 개선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산업부 R&D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의 투명성·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산업기술R&D 및 산업기술 지식DB개발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및 민간의 일자리 창출 촉진
- 경쟁우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주요산업에 대한 로드맵 등 장기적인 산업발전계획 수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8.09), 경상비(9.96) 연구사업비(6.19), 분원(개보수비(9.92), R&D 교육센터 운영 지원(5.03)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24,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5.7, 기획평가관리비 12.95 경상비 5.4
'15	12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8.09), 경상비(9.96) 연구사업비(6.19), 분원(대전)이전비(2,612), (지역)R&D 교육센터 운영지원(5.03)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24,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5.7, 기획평가관리비 12.95 경상비 5.4
'16	12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8.09), 경상비(9.96) 연구사업비(6.19), 분원(대전)이전비(2,612), (지역)R&D 교육센터 운영지원(5.03)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24,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5.7, 기획평가관리비 12.95 경상비 5.4
'17	12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8.09), 경상비(9.96) 연구사업비(6.19), 분원(대전)이전비(2,612), (지역)R&D 교육센터 운영지원(5.03)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24,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5.7, 기획평가관리비 12.95 경상비 5.4
'18	12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8.09), 경상비(9.96) 연구사업비(6.19), 분원(대전)이전비(2,612), (지역)R&D 교육센터 운영지원(5.03) ▪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3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24, 경상비 2.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15.7, 기획평가관리비 12.95 경상비 5.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99. 3.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기술평가원 설립
- 2006. 10. 29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설립근거 변경
- 2008. 8. 26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분야 R&D지원기관 개편·재편 추진(지식경제부)
- 2009. 1.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2009. 5. 4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설립
- 2010.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장관 고시)’에 전략기획단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
- 2010. 6. 1 민간 단장(황창규) 주도하에 5대 산업분야 MD 및 10명의 비상근위원을 선임하고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출범
- 2011.11.2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1.5월)으로 전략기획단 및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등 설치근거 마련
- 2014.04.25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ICT R&D 기능이관」 최종 확정
- 2014.05.02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 통보(산업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산업기술R&D관리기관지원	37.39	73.15	73.15	106.29	122.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7.39	-	-	37.39	37.39	-	-
	(37.39)	(-)	(-)	(37.39)	(37.39)	(-)	(-)
'12년	73.15	-	-	73.15	73.15	-	-
	(73.15)	(-)	(-)	(73.15)	(73.15)	(-)	(-)
'13년	73.15	-	-	73.15	73.15	-	-
	(73.15)	(-)	(-)	(73.15)	(73.1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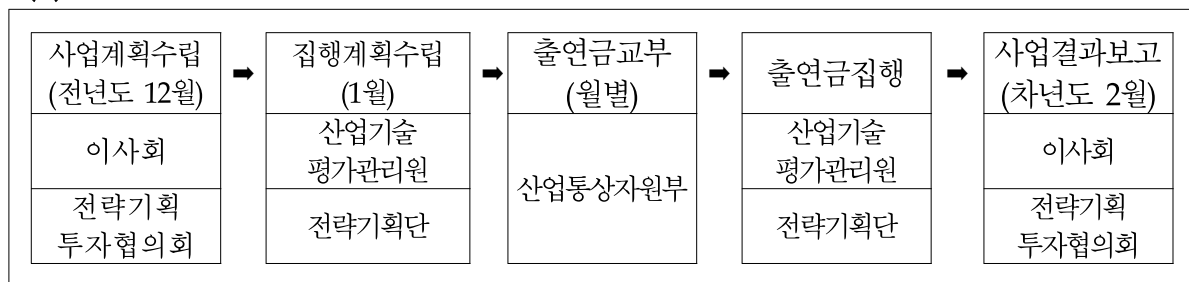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6. 참고자료

참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이전

ICT 진흥특별법(‘13.8.13) 제정에 따른 ICT R&D 소주기 기능 일원화를 뒷받침하고, ICT 해외진출 등 ICT 기관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14.4.25)에서 심의

*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203(‘14.4.30)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411(‘14.5.2),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 통보

□ 개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 청사는 2009년 정부의 R&D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관통합으로 구IITA에서 이관된 건물(대전분원)이었으나, 2013년 ICT 진흥 특별법 제정으로 정보화분야 기능조정결과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건물(자산)이관됨

□ 추진경과

- ‘13.08월~12월 : 기재부 ICT R&D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 및 NIPA로 일원화 결정 (4차례 회의 개최)
- ‘14.1월~3월 : ICT R&D 기능 일원화 관계부처 회의(7차례)
- ‘14.4.2/4.8 : 대전분원 사무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 ‘14.04.25 :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ICT R&D 기능이관」 최종 확정
- ‘14.05.02 :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 통보(산업부)
- ‘14.05.13 : 대전분원 소유권 이관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안) 이사회 의결

□ 정원이관

- 기능별 정원이관 규모

(단위:명)

이관기능	주는 기관*	이관정원	받는 기관*
ICT R&D	KEIT	45	NIPA
	KIAT	2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자산이관

○ (자산-토지·건물) (現)청사공동소유 → NIPA 단독 소유

구 분		당초	변경
토지	대전 유성구 화암동 58-4외 10필지 (면적 103,891.3㎡)	▪ 공동등기 - NIPA : 50% - KEIT : 50%	NIPA 100%
건물	대전 청사건물 3개동(상기 주소지) (면적 19,354.51㎡)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제130동 제1504호 (면적 99.84㎡)	KEIT	NIPA

○ (자산-임차보증금) 직원숙소용 아파트

(단위:백만원)

구분	위 치	세대수	임차보증금	위 치
이관 당시	경기도	1	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대 전	13	590	대전광역시 전민동 / 만년동 등
	계		680	
현재	대 전	12	590	대전광역시 전민동 / 만년동 등
	계		590	

* 임차보증금은 최초 이관당시 680백만원에서 원룸 소유주 체납세액으로 인한 압류·경매로 발생한 손실('10년, 2건, 90백만원)에 따라 590백만원으로 감소

* 경매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90백만원도 함께 양도

○ 대전분원 소유권을 NIPA(IITP)로 이관하고, 공관·숙소(한빛아파트 및 직원숙소)도 이관

- KEIT는 대전분원내 KEIT 전산센터, 중기청 R&D 평가관리 등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전분원을 사용하고 공관·숙소는 KEIT 지방이전 완료시까지 사용
- 다만, 장기적으로 대전분원에 있는 평가장을 외부에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재부-미래부-산업부-중기청이 공동 노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방이전(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방이전	-	3,338	480	△2,858	△85.6

* 사업코드 : 19-11-0-110-114-4800-4809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장(차동형), 산업기술개발과장(유법민, 044-203-4520), 사무관(박만희, 45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계속
총사업비	33.38백만원('14년까지 기투자액)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공적인 지방이전을 통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이행 및 이전직원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지방이전 직원 이전수당('14년 240백만원 → '15년 480백만원, 240백만원↑)
- 200명×20만원×12개월 = 480백만원

* 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및 '13년 기재부 예산편성·집행지침 기준(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

□ 지원 필요성

- 지방이전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 등을 통한 이전직원의 신속한 적응, 정착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방이전	-	3,338	480	△2,858	
▪ 대구사옥 건축비 차입원금 및 이자	-	1,049	-	△1,049	
▪ 직원이전수당	-	240	480	240	
▪ 직원 및 업무용시설 이사비용	-	2,049	-	△2,049	
☐ 비목	-	3,338	480	△2,858	
▪ 출연금	-	3,338	480	△2,85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성공적 지방이전 및 재무건전성 확보
- 성공적인 지방이전을 통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이행 및 정주여건 지원 등 이전직원의 신속한 적응, 정착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3.38	▪ 차입금상환 및 이자납부(10.49) 직원이사비용 및 이전수당(5.6) 본원 이사비용(5.88) 회의장 기자재구입비(5.51) 본원 원상복구비(3.29) 청사관리용역비(2.61)
'15	4.8	▪ 직원이전수당(4.8)
'16	2.4	▪ 직원이전수당(2.4)
'17	0	
'18	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7.05.06 : (舊)ITEP 대구광역시(신서혁신지구) 이전 확정
 - * 국무조정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안) 마련('07.3, '07.11)
- '09.05.04 : 제2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08.8.26 기획재정부)에 따라 ITEP 등 6개 R&D기관 통폐합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설립
 - * 제50차 지역발전위원회 심의('10.1.8) :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 확정
- '10.05.20 : 국토해양부 KEIT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 * 대구 이전 및 본사매각과 영구무상 임차중인 8층을 서울사무소로 활용
- '13.01.04 :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통보(국토해양부)
- '14.05.0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
 - * 신사옥 건축비 세부내역 변경 (직원숙소 및 임시사택 운영계획 반영)
- '14.9.26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원 대구이전 완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지방이전	-	-	-	33.38	4.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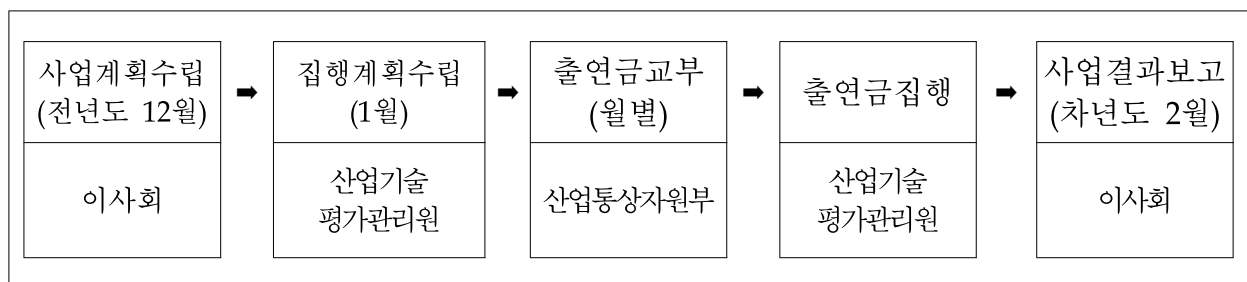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추진
 - * 「지식경제부 통합 R&D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개편(재편)계획」에 의거 (舊)ITEP의 지방이전계획을 승계
- 공공기관 선진화로 통폐합된 기관들에 대한 이전지역이 확정(지역발전위원회, '10.1.8)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지방이전

□ 추진경과

- '07.05.06 : (舊)ITEP 대구광역시(신서혁신지구) 이전 확정
- '10.05.20 : 국토해양부 KEIT 지방이전계획 확정
 - * 대구 이전 및 본사매각과 영구무상 임차중인 8층을 서울사무소로 활용
- '10.12.14~'11.04.13 : 지방이전관련 이사회 승인, 조달청 서비스계약
- '12.07.02 : 대구광역시 동구청 우리원 신사옥 건축허가 통보
- '12.11.29~12.27 : 폐기물, 책임감리, 분야별(통신, 소방, 건축, 전기) 계약
- '13.03.08 : 대구 신사옥 착공식
- '14.03.0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통보
 - * 이전시기 변경 '14.7월 → '14년 9월(국토교통부)
- '14.05.0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
 - * 신사옥 건축비 세부내역 변경 (직원숙소 및 임시사택 운영계획 반영)
- '14.08.2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신사옥 준공 완료
- '14.9.26~10.1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원 대구이전 완료
- '14.11.1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본원 개청식

국립산업기술박물관건립(신규)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1,000	1,000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4 -4200 - 4234 - 333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장(천영길, 044-203-4510), 사무관(민문기, 45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20년
총사업비	4,393억원 (국비 3,659억원, 지방비 734억원)
사업규모	1개소
지원조건	출연 (지자체에서 부지관련비용(734억/부지매입·조성·조경공사비) 제공)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목적

-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에 산업기술발전사, 전시관, 첨단기술홍보관,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관과 복합 문화공간이 융합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설립해 기술인의 자부심 고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설계·공사) 기획 : 1,000백만원
 - (타당성 조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규모, 관련 법규,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 요소 및 타당성 검토 : 50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사 목표, 내용, 기간, 비용, 연차별 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방식 결정 : 300백만원
 - (설계기획) 건축설계 발주를 위한 공간계획 수립, 설계지침서 작성 : 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사업의 시급성) 산업화, 경제발전 주역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여 우리 경제, 산업기술 발전의 가치 재조명 및 전수 시급
 - 산업기술 역사와 유산에 대한 국가적 보존노력 미흡으로 '55~'98년 개발된 252개의 산업기술유물 중 45%가 이미 사라진 상황
 - * 자료 : 울산시(2000), 「공업역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 (정부지원 타당성)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가사업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설립('12.12월)
 - * 자료 :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지역) 39p 울산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1,000	1,000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설계·공사) 기획			1,000		
☐ 비목			1,000	1,000	
▪ 출연금			1,000	1,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규모 국책사업인만큼 철저한 사전기획,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15	10	▪ 건립(설계·공사) 기획 : 1,000백만원
'16	173	▪ 설계비 : 13,990백만원 ▪ 시설부대비 : 129백만원 ▪ 부가가치세 : 1,512백만원 ▪ 예비비 : 1,663백만원
'17	549	▪ 건축공사비 : 44,099백만원 ▪ 설계비 : 1,130백만원 ▪ 시설부대비 : 129백만원 ▪ 부가가치세 : 4,536백만원 ▪ 예비비 : 4,989백만원
'18	915	▪ 건축공사비 : 42,971백만원 ▪ 전시공사비 : 28,755백만원 ▪ 감리비 : 3,741백만원 ▪ 시설부대비 : 129백만원 ▪ 부가가치세 : 7,560백만원 ▪ 예비비 : 8,316백만원

* 총사업비(4,393억원)의 국비(3,659억원) 중 '18년까지의 소요금액(1,647억원) 작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12.12월)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에 산업기술발전사 전시관, 첨단기술홍보관,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관과 복합 문화공간이 융합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설립해 산업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 자료 :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지역) p39 울산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추진경위

- '12.12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 '13.7~9월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보고
- '14.7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14.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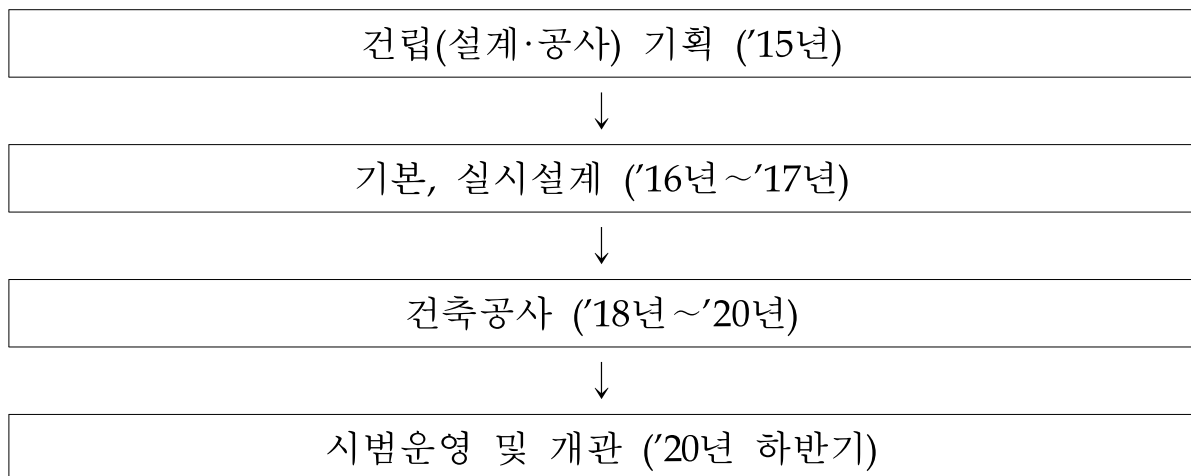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혁명기(18세기)부터 산업기술의 역사와 유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보존·전수하는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
 - (프랑스) 기술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술공예박물관(1794), 산업기술과 이공계 중요성 제고를 위해 라빌레트 과학산업관 건립(1986)
 - (영국) 세계최고의 산업기술력 과시를 위해 런던과학산업박물관 건립(1857)
 - (독일)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기술과 기술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국 산업기술의 선진성 과시를 위해 독일박물관 건립(1925)
 - (미국) 산업기술 발전과 함께한 미국의 역사를 보존, 전수하기 위해 국립역사기술박물관 건립(1964→1980년 미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참고> 해외 주요 산업기술박물관

명칭 (국가, 개관년도)	건립배경	규모
기술공예박물관 (프/파리, 1794)	기술 지식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국민의회 결의)	6,000 m ²
런던 과학산업 박물관(영, 1857)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기술력 과시를 통해 대영제국의 위상 제고(사우스켄싱턴박물관 부속에서 1909년 독립)	44,000 m ²
독일 박물관 (독/뮌헨, 1925)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일의 선진성 과시 및 자긍심 고취(민간 전기기술자가 발의)	70,000 m ²
스미소니언미국역사 박물관(미/워싱턴DC, 1964)	산업기술발전과 함께한 미국의 역사를 반추(당초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이었으나 1980년 명칭변경)	60,000 m ²
라빌레트과학산업관 (프/파리, 1986)	문화예술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프랑스의 산업 기술력 과시(이공계 출신 대통령 주도)	150,000 m ²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14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14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 특)(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 특)(R&D)	12,133	7,580	8,350	770	10.2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1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에너지기술과장(문양택, 044-203-4540), 사무관(이재형, 454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15년 84억
지원조건	출연, 민간 Matching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사업비의 50~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해 국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선진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 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에너지자원: 제로에너지 건물 기술, CO₂ 지중저장 안전성 확보 기술 등 국가 간 에너지기술 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지원 8,100백만원
 - (계속과제) 3,465백만원= 7과제 × 495백만원
 - (신규과제) 4,635백만원= 9과제 × 515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비용 2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R&D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대형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 기술 협력 필요성 증대, 에너지 기술개발 주기 단축으로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중요
 - 기술격차가 발생하는 선진 에너지기술을 단기간에 Catch-up 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필요
 - 개도국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 및 그린에너지 기술시장의 조기 선점을 위한 수출사업화 기반마련
 -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에너지기술부문 국제 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역할 요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특)(R&D)	12,133	7,580	8,350	770	10.2
▪ 에너지자원	7,828	7,360	8,100	740	10.1
▪ 신재생에너지*	4,010	-	-	-	
▪ 기획평가관리비	295	220	250	30	13.6
□ 비목	12,133	7,580	8,350	770	10.2
▪ 출연금(350-01)	12,133	7,580	8,350	770	10.2

* 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14년부터 에특 내역사업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열 에너지분야)를 전력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 지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부간 또는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국제공동 R&D의 추진을 통한 해외 선진기술 획득과 해외시장 진출형 지원체계 강화
 - (선진기술획득) 공동 R&D를 통해 선진국 보유 핵심 유망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한정된 국내 에너지 기술자원 및 기술역량 극복

- (해외시장진출) 개도국 현지 수요조건에 부합하는 공동 R&D 추진과 현지 실증을 통한 에너지기술 해외수출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하고 한국과의 협력의지가 높으며, 협력 장애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기관을 발굴하여 능동적 협력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6	▪에너지자원74(나노소재 전극소재 개발 등) ▪기획·평가관리비2
'15	83	▪에너지자원 80(한-미 에너지협력위원회를 통한공동 R&D포트폴리오 구축 등) ▪기획·평가관리비3
'16	83	▪에너지자원 80 (리튬이온전지 핵심부품소재개발 등) ▪기획평가관리비3
'17	83	▪에너지자원80(초고용량 커패시터 실증사업 및 CCS 실증사업 등) ▪기획평가관리비3
'18	94	▪에너지자원 91(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기술 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 ▪기획평가관리비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 14조(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
- 추진경위
 - '02.12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2~'11)
 - '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
 - '06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06~'15)
 - '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 '07.10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7~'16)
 - '08.12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
 - '09.05월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수립

- '10.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0~'19)
- '11.06월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수립
- '11.11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 '11년~현재 일반 R&D 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 별도분리
- '11년~현재 : 일반 R&D 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 별도 분리·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전력기금)(R&D)	119	128	121	76	8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19	-	-	119	119	-	-
	(119)	(-)	(-)	(119)	(119)	(-)	(-)
'12년	128	-	-	128	128	-	-
	(128)	(-)	(-)	(128)	(128)	(-)	(-)
'13년	121	-	-	121	121	-	-
	(121)	(-)	(-)	(121)	(12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DOE) ARPA-E Project : 2007년 설립되어 2009년 1차 FOA(Funding of Announcement, 자금 지원 발표안)를 시작으로 1억 8천만 달러('11), 2억 8천만 달러('12)를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간(2~4년)의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 대상으로 함

- * 2009년 'OPEN 2009'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16개 프로그램(ADEPT, AMPED, BEEST, BEETIT, Electofuels, GENI, GRIDS, HEATS, IMPACCT, MOVE, OPEN 2009, OPEN 2012, PETRO, REACT, SBIR/STTR 2012, Solar ADEPT)아래에 28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 NEDO) : 산업기술과 에너지 분야 R&D 촉진 및 평가기관으로 민간 기업이 수행하기 곤란한 중장기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주관
 - 연료전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EU FP) : 1984년 시작된 Framework Programme(FP)는 EU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간의 공동연구 증진과 유럽지역 연구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EU의 대표적 R&D 프로그램.
- (독일 JULICH) : 에너지 및 환경, 건강, 정보기술 3분야의 미래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안을 위한 연구 수행
 - JULICH는 과학1과 과학2로 구분되며 과학 2부문의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and Climate Research에서 에너지 및 기후 관련 연구를 수행.
 - 혁신적인 석탄 및 가스 발전 기술, 핵융합 원자력 안전연구,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소재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 2013년 기관 인력은 약 5,200명이며 R&D인력은 3,320명으로 전체 인력의 64%에 해당함

(5) 사업추진절차

○ 단기과제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5.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 단기과제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5.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계속, R&D)

< 예특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700	1,200	500	71.4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4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에너지기술과(문양택, 044-203-4540), 사무관(박천재, 454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안정적인 기관운동을 위하여 기관운영비 일부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운영경비 중 '15년도 사옥임차료(1,705백만원) 중 일부 지원
 - (경상경비) 사옥임차료 : 10백만원 × 12월 = 1,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하고 에너지 R&D의 총괄 관리 업무를 위탁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에너지분야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등의 에너지 R&D 관련 지원업무 수행
-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및 미래기술 발굴, 사업화 촉진 등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700	1,200	500	71.4
▪ 경상경비	-	700	1,200	500	71.4
□ 비목	-	700	1,200	500	71.4
▪ 출연금(350-01)	-	700	1,200	500	71.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R&D 기획·평가·관리의 효율적 지원 및 핵심기반 조성을 통해 에너지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
 - '에너지기술 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국산 에너지기술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추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 기획·평가·관리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연구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
 - 기술개발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창출·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R&D-사업화-시장지출 연계 지원체계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7	▪ 58.33백만원 × 12월
'15	12	▪ 100백만원 × 12월
'16	6	▪ 50백만원 × 12월
'17	6	▪ 50백만원 × 12월
'18	6	▪ 50백만원 × 12월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8. 8 :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효

* 에너지부문 4개 기관(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R&D 기획평가관리 기능 통합

- '09. 1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근거 마련(에너지법 제13조)

- '09. 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 '10. 1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14 ~ : 정부예산지원(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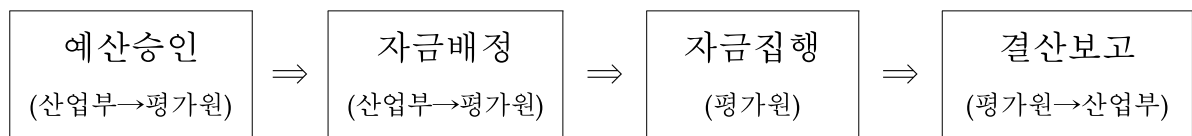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	-	-	-	7	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평가관리비 편성 관련 상임위 검토보고서 지적내용

□ '12년 예산안 편성 검토보고서(지경위, '11.11)

(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운영비 지원사업의 신설 필요(227p~229p)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09년 5월, 「에너지기본법」 제13조¹⁾에 따라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평가관리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동시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통합·일원화하여 수행하고 있음

'08. 8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에너지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에너지 분야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기술 외 산업기술 분야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각각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고, 이를 「에너지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반영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R&D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임.

- 그런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위와 같은 역할 부여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일반회계에서 “산업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10년 이후 37~39억원 규모로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사업비 등)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분야 R&D사업비의 평가관리비 내에 기관운영비를 포함시켜 계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임.

- 산업기술 분야 R&D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사업 전담 기관을 통합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한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예산 구조와 같이 기관운영비를 독립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²⁾

1)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제12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④(생략)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정책수립(계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기술정책수립	2,156	1,034	982	△52	△5.0

* 사업코드 : 21 - 24 - 4 - 110 - 115 - 5800 - 5803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국(차동형), 에너지기술과(문양택, 044-203-4540), 사무관(강은구, 454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88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 (Matching-Fund,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사업목적

- 에너지기술의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 에너지기술의 R&D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로써 기존 명칭(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이 사업 목적과 다소 상이함에 따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으로 사업명 변경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에너지·자원기술분야 기술개발 정책 과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952백만원
 - (중장기 R&D 계획 지원) 에너지기술 R&D 재원배분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영, 에너지기술 로드맵 및 R&D Warehouse 상시 개선 등에 400백만원 지원

- (정책시행 기반조성) 에너지기술 시장전망 및 통계조사분석, 산업간 융합을 위한 정책·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 기반자료 수집 등에 400백만원 지원
- (에너지기술 R&D정책 개선) 에너지기술개발 기획·평가체계 개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새로운 R&D관리지원체계 연구, 융합혁신기술 추진체계 수립 등에 152백만원 지원

② 기획평가관리비 :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에너지기술 R&D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신성장 동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인 R&D 기획 및 정책발굴 필요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BAU대비 30%) 등의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R&D 전략 수립
 - *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석, 에너지 R&D 통계 및 동향 분석,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비즈니스모델(BM) 및 융복합 R&D 등 추가적인 추진계획 수립 기반 마련 필요
 - 에너지기술 R&D의 효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R&D 기획·평가 등 전주기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에너지 R&D 관련 정부 정책방향과의 정합성을 갖는 에너지 R&D 투자전략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에너지 신기술·신산업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미래예측으로 에너지 비즈니스 유망 분야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실현방안]
- 에너지 미래기술기획 및 전략수립, 에너지기술 Warehouse 보완 등을 통해 에너지 R&D연계 및 균형있는 기술개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지원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기술정책수립	2,156	1,034	982	△52	△5.0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1,280	1,000	952	△48	△4.8
▪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	800	-	-	-	-
▪ 기획평가관리비	76	34	30	△4	△11.8
☐ 비목					
▪ 출연금(350-1)	2,156	1,034	982	△52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미래기술기획 및 전략수립, 그린에너지/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update 등을 통해 에너지 R&D연계 및 균형있는 녹색 산업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기술의 실증·사업화 및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에너지기술정책 수립
 - 에너지기술정책수립으로 발굴·수행된 과제에서 얻어진 정책제안, 제도개선, 통계정보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R&D 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의 활용
 - 에너지자원기술분야의 관련 기업실태조사, 정책 네트워크화 등을 통하여 산업분야 정보화 및 정보 공유에 의한 에너지산업기반조성 활성화 및 R&D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10.00억원 기획평가관리비 0.34억원
'15	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9.52억원 기획평가관리비 0.30억원
'16	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9.52억원 기획평가관리비 0.30억원
'17	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9.52억원 기획평가관리비 0.30억원
'18	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9.52억원 기획평가관리비 0.30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추진경위

- '87.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 '88년 기술개발 본격 추진
-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06) 수립
- '06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수립
- '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 '09년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수립
- '10.5월 지식경제R&D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R&D)'로 통합
- '11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및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수립
- '12.5월 내역사업인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 '13년 내역사업인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은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으로 이관
- '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35) 수립 및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추진, 에너지 R&D 과목구조개편에 의해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기술정책수립	156.67	156.67	21.56	10.34	9.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56.67	-	-	156.67	156.67	-	-
	(156.67)	(-)	(-)	(156.67)	(156.67)	(-)	(-)
'12년	156.67	-	-	156.67	156.67	-	-
	(156.67)	(-)	(-)	(156.67)	(156.67)	(-)	(-)
'13년	21.56	-	-	21.56	21.56	-	-
	(21.56)	(-)	(-)	(21.56)	(21.5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경위 '09년 결산심사

- (지적사항) '11년부터 기술개발 R&D(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와 기반조성 및 정책지원 R&D(에너지자원정보화 및 정책지원)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고, 전담기관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일원화 예정
- (조치결과) 지경위 '09년 결산심사 지적에 대하여 '10.10월 '에너지 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으로 재편하여 '11년부터 독립예산으로 수행 중

○ 산업위 '12년 결산심사

- (지적사항)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유사내용을 추진중인 에특회계 동일 명칭 사업과 통합 필요
- (조치결과) 에특과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라, 동 사업도 '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을 분리하여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으로 통합

○ '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재정부 상위평가 결과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미국

- 오바마 2기 정부의 전방위 에너지정책(All-of-the-above Energy Policy) 상의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13.6월)” 발표

* 청정에너지 보급(청정화력,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21세기 수송시스템 도입(연료 소비감축, 대체연료, 배터리 등), 가정/상업/산업 에너지소비절약(에너지효율향상), Non-CO₂ 배출감축(HFCs, 메탄)

② 일본

- 기후변화 대응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Cool Earth Innovative Technology Program(‘08.5월)”을 발표

* 21개 주요기술 발표 : 에너지절약기술, 초고효율 히트펌프, 차세대 고효율 조명, 에너지절약형 정보기기·시스템, HEMS/BEMS/EMS, CCS, 첨단 ESS시스템 등

-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석유·가스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갖는 취약성이 드러나 “에너지기본계획 4차(‘14년)” 발표

* 건물, 발전(CCS, 에너지저장, 에너지IT 등 포함), 자원 등 에너지 전반

③ EU

- “EU 전략적 에너지기술 계획(SET-Plan, ‘08년~)”을 구축, 국가간 연계를 통해 화석연료의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저탄소 기술 개발 추진

-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07년)” 이후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인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14.1월)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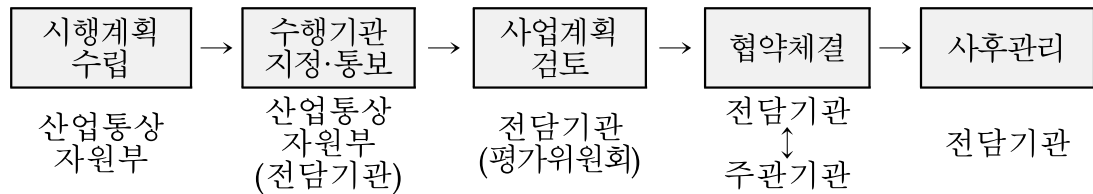
- 기존의 20-20-20 목표를 수정*하고, 범 EU 차원의 R&D 사업계획인 ‘Horizon 2020’*에 따른 에너지 R&D 지원 및 SET-Plan 적극 이행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소비비중 최소 27%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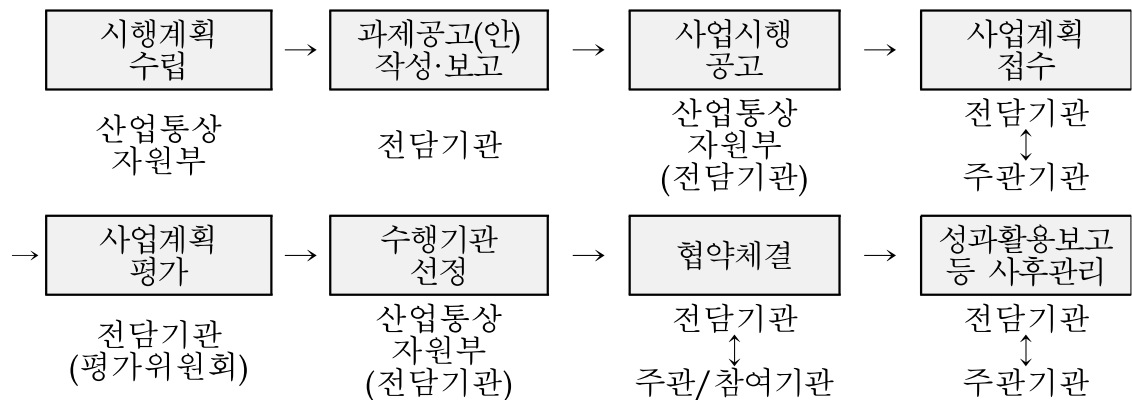
※ 에너지효율(배출량제로 건물, 제생가능 냉난방, 스마트 도시 등), 저탄소 기술(풍력, 태양에너지, CCS 등), 대체연료(바이오, 수소·연료전지, 광합성 미생물 등), 스마트전력망 등에 지원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지정 : 해당과제의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기한 과제요구서(RFP) 및 수행기관을 주관부처에서 지정 및 시행



- 지정공모 :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기한 과제요구서(RFP)를 기준으로 한 수행기관 선정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관련근거 법령조문

□ 에너지법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인력양성(에 특)(계 속, R&D)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에너지인력양성(에 특)	15,147	16,896	16,881	△ 15	△ 0.1

* 사업코드 : 21 - 35 - 0 - 110 - 115 - 5800 - 5802

* 담당자 : 산업기술정책관(차동형), 에너지기술과장(문양택, 044-203-4540), 사무관(전용옥, 45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5년도 169억원 규모
지원조건	연구수행형태에 따라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75%이내) 출연 (출연 및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외자원개발협회)

2. 사업목적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인력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R&D 전문인력 및 산업 현장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개발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학부인력 양성 6,300백만원

②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분야 기술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급 인력양성 8,020백만원

③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자원확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원부국 에너지분야 인력을 국내에서 교육하여 전략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1,950백만원

④ 인력지원기반조성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인력수급현황 분석, 에너지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산·학·연 성과확산 등 지원 100백만원

⑤ 기획평가관리

- 전담기관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획·평가·관리 운영 및 체계강화를 위한 비용 511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에너지분야 투자 급증 및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에 따라 기업의 에너지분야 인력수요 급증
 - 전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장 견인,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 및 비즈니스모델 관련 전문가 필요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14.1, 부처합동)
 - 셰일가스 등 자원개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내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산업특성(국가주도 대형장치 산업)을 고려, 에너지 산업 신성장 동력화와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중장기 인력 양성 확대 필요
 - 에너지 관련 단독 학과 부족, 급격한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 등 산·학간 질적·양적 인력 미스매치 완화 필요
 - 후쿠시마 원전사고, 유가 불안정, 글로벌 녹색성장 전략 추진에 따라 그린카, 에너지 다소비기기, 건물 등 효율향상 기술과

CCS(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등 온실가스 처리기술, 에너지 융합 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 급증

-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시 대응하여 관련 산업의 인력 공급을 위한 인력양성이 시급
 - ICT 연계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전력 수요관리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융·복합 인재양성이 시급
 - * ICT와 융합된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건물 효율 향상 분야 등 관련 인력 양성 시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감축 규제 제도화 중심에서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감축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기술 인력 양성 강화 필요
 - 자원개발 분야는 기존 지분참여 방식의 투자에서, 운영권 사업과 탐사·개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5,147	16,896	16,881	△ 15	△ 0.1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4,684	6,700	6,300	△ 400	△ 6.0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8,350	8,150	8,020	△ 130	△ 1.6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1,750	1,650	1,950	300	18.2
▪ 인력지원기반조성	75	100	100	-	-
▪ 기획평가관리비	288	296	511	215	79.9
□ 비목	15,147	16,896	16,881	△ 15	△ 0.1
▪ 출연금(350-01)	11,647	13,396	13,381	△ 15	△ 0.1
▪ 민간경상보조(320-01)	3,500	3,500	3,5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정책(2차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 에너지기술 및 자원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수급 분석을 통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양성
- 기업이 참여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기업참여형 등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고용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7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82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16억 ○ 인력지원기반조성 : 1억 ○ 기획평가관리 : 3억
'15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3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80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0억 ○ 인력지원기반조성 : 1억 ○ 기획평가관리 : 5억
'16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3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80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0억 ○ 인력지원기반조성 : 1억 ○ 기획평가관리 : 5억
'17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3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80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0억 ○ 인력지원기반조성 : 1억 ○ 기획평가관리 : 5억
'18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 63억원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 80억원 ○ 국제인력교류활성화 : 20억 ○ 인력지원기반조성 : 1억 ○ 기획평가관리 : 5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인력양성 등)
 - 해외자원개발법 제10조(보조)
- 추진경위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02.12, 51차 국무회의 심의)
 -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 착수('03.9)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06~'15)('06.5, 지식경제부)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보고('06.5,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 “에너지인력 마스터플랜” 수립('07.3, 지식경제부)
 - 3개 인력양성사업 통합운영('07.12, 전담기관 일원화)
(에너지자원/신재생에너지/전력)
 -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개편('10.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에너지인력양성(에특)	135	154	151	169	1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35	0	0	135	135	0	0
	(135)	(0)	(0)	(135)	(135)	(0)	(0)
'12년	154	0	0	154	154	0	0
	(154)	(0)	(0)	(154)	(154)	(0)	(0)
'13년	151	0	0	151	151	0	0
	(151)	(0)	(0)	(151)	(151)	(0)	(0)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 성인지 결산(예결위)

- (지적사항) 에너지인력양사업은 여학생 수혜비율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목표를 15.4%로 낮게 설정한 점에 기인하므로, 성인지 예산을 확대할 것
- (조치사항) '15년 성인지 예산서에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반영하였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기 관 명	교육과정	사 업 내 용
미 국	인력 양성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원위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과 우수장비 공유 - 전문인력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프로그램 추진
		DOE, Massachusetts 대학, 및 전력회사,NSTAR 및 WMECO의 지원	MAEEP(The Massachusetts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상업 및 공공 단체에 에너지효율기술 및 톨 보급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 DOE Training 및 Chiller Optimization등 Non DOE Training을 제공
	인력 재교육	IEA(Industrial Efficiency Alliance)	DOE, ODOE(Oregon Department of Energy), Northwest Energy Efficiency Alliance, BPA 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Northwest 지역의 산업계의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 -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Motor Systems, Compressed Air Systems, Pump Systems, Refrigeration Systems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캐 나 다	인력 양성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산하 국립연구소들과 함께 각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 Program : 공학·기술 분야를 전공학부생 공동연구 및 기술교육 수행 -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한 연구시설을 활용 및 실무연구능력 교육 시행
		Cape Breton University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과정 및 1년의 학점 취득 과정 등이 제공되며, 인증서 수여 - 5개 그룹의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진행
일 본	인력 양성	NEDO	Fellow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DO에서 에너지 관련 박사급을 선발하여 연계기관(59개, 대학, 연구소, 기업)에 파견
		Kyot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ergy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t. of Socio Environmental Energy Service, Dept. of Fundamental Energy Science, Dept. of Energy Conversion Science, Dept. of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를 운영
	인력 교류	ECCJ(Energy Conservation Center,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련 양국 또는 다국간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영 국	산학 연계 인력 양성	롤스로이스	UTC (University Technology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스로이스는 자체 R&D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세계 30개 대학기술연구센터(UTC)를 운영 - 대학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편당을 제공하여 원천 기술 및 우수 인력을 확보
EU	인력 양성	EC	EU FP7 유럽대학 연구/혁신/교육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기술 부분 대학간 협력 강화(예: 대학간 석박사 교환프로그램) - 에너지기술 산업계-대학 협력체계 활성화 - SET-Plan 관련자-대학간 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 - EU 역외지역 산학연 연계 추진

(5)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기관	세부 내용				
인력수급 조사, 인력양성로드맵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대학) 대상 수요조사에너지기술 분야별 인력양성로드맵				
기획	산업통상 자원부, 전담기관	<table><tr><th>일반과제</th><th>기획 과제</th></tr><tr><td>인력수급 조사·분석</td><td>GET-Future 등 기획·심의위원회</td></tr></table>	일반과제	기획 과제	인력수급 조사·분석	GET-Future 등 기획·심의위원회
일반과제	기획 과제					
인력수급 조사·분석	GET-Future 등 기획·심의위원회					
전략자문단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획내용 검토 및 자문				
심의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고대상과제 확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언론매체 공고 /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산·연 중심의 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대상과제 최종확정				
협약체결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체결				
중간 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 1년 단위 중간보고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장실사, 연차평가위원회연차 목표 달성도 평가해당연차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종평가위원회 개최<ul style="list-style-type: none">목표 달성도 및 실적 평가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발종료 후 5년간 활용보고<ul style="list-style-type: none">배출인력, 논문 등 실적 조사추적조사 실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제도 개요

참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제도 개요

- (정의) 기업이 원하는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교육 커리큘럼 체계
- (목적) 기업의 수요 반영 및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원) 또는 학과신설 절차없이 다학제/다전공 융복합 협동 커리큘럼 등의 산학협력 체계를 지원하여 융·복합적 인력의 양성
- (운영) 기존 학사 행정과 연계하여 과제별로 적절한 수의 과목을 묶어 트랙화할 수 있으며 기초·실무·심화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기존 교육체계	트랙 운영 체계
① 학과간 칸막이, 융복합형 인력양성 어려움 ② 학과신설 어렵고 졸업까지 장기간 소요 ③ 수요급변에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구조 ④ 산업현장과 대학교육과의 격차발생	① 실무형·융복합형 등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② 기업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및 인력양성 ③ 트랙 이수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

<트랙 예시(고급트랙)>

